

R 2025-10 | 2025. 12. |

농식품 수출상대국 비관세장벽 대응 방안

A Study on Measures to Address the Non-Tariff Barriers
in Agri-Food Export Markets

김상현 김종진 명수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 2025-10 | 2025. 12. |

농식품 수출상대국 비관세장벽 대응 방안

A Study on Measures to Address the Non-Tariff Barriers
in Agri-Food Export Markets

김상현 김종진 명수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김상현 | 연구위원 | 연구 총괄, 제1~6장 집필

김종진 | 선임연구위원 | 제4장 집필

명수환 | 연구원 | 제5장 집필

위탁 연구

서진교 | GSNJ 인스티튜트 원장 | 제2장 3절 반영

연구보고 R2025-10

농식품 수출상대국 비관세장벽 대응 방안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25. 12.

발 행 인 | 한두봉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 크리커뮤니케이션

I S B N | 979-11-6149-784-6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머리말

WTO 다자통상체제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농업 통상정책은 대체로 수입관리 중심의 방어적 기조 아래 발전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케이-푸드’와 ‘케이-컬처’의 세계적 확산에 힘입어 해외시장에서 한국 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신시장 개척, 현지 홍보, 한식 진흥 등 수출진흥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적극 추진하며 농식품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모색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주로 수요 창출형 마케팅 활동에 집중되어 실제 수출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무역장벽 대응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농식품 수출기업들은 통관절차, 기술규제, 검역기준, 인증제도 등 복잡한 비관세장벽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체계는 아직 충분히 정립되지 못하였다.

이에 최근 정부는 농식품 수출통상 기능 강화를 목표로 농식품 수출통상 로드맵을 수립하고, 수출검역·기술장벽·통관거부·할랄인증 등 주요 통상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주요 수출국의 비관세장벽 현황을 종합 진단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하여 정부의 정책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비관세장벽의 현황 파악, 영향분석, 수출기업 대상 설문조사, 그리고 이를 종합한 대응 방향 제시 등의 단계적 구조를 갖추고 있어 정책 활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기존 연구가 주로 통계적 분석에 의존했던 한계를 보완하여, 실제 수출기업의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한 질적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향후 본 연구가 정부의 수출통상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데 교두보 역할을 하는 정책적 근거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2025.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한 두 봉

요 약

연구 목적

- 세계 농식품 교역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농식품 수출통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비관세장벽은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케이-푸드 수출의 주요 제약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관세장벽(NTBs)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류체계에 근거하여 유형별 비관세장벽의 현황과 주요 동향을 정리하고자 한다. 둘째, 주요 수출상대국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셋째, 농식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면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업들이 실제로 직면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의 실태와 대응 현황, 애로사항 및 개선 요구를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우리 농식품의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관세장벽 대응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나아가 이런 분석 결과를 통해 향후 정부의 농업 통상정책 수립과 수출 지원정책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농식품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조치의 현황과 대응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문헌조사, 통계자료 구축, 계량 분석, 전문가 자문, 기업 설문조사 등 다각적인 연구 방법을 병행하였다. 먼저 국내외 관련 문헌조사 및 실증분석을 위한 통계자료를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구축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비관세조치와 농식품 수출 간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비관세조치 사례를 선별하고, 다양한 계량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비관세조치(NTMs) 지수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비관세조치가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관세조치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식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전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두 조사를 통해서 설문 항목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동시에 수출기업의 비관세조치 대응 실태와 정책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 비관세장벽(NTBs)에 관한 논의는 GATT/WTO 다자통상체제의 기반 아래 발전해 왔다. 향후 NTBs 관련 통상 의제는 완전히 새롭게 미지의 영역을 탐색하기보다 변화하는 환경을 고려하여 기존 규율을 더욱 정교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전망이다. 더욱이 다자통상체제는 NTBs의 투명성과 적법성 등을 보장하고, 해당 조치가 위장된 보호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강화해 나갈 것이다.
- ESG 경영 도입의 필요성이 한층 강조되는 가운데, 중·소규모의 농식품 수출기업은 현실적으로 여러 제약 요인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들이 ESG 경영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정책과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주요 수출상대국의 관련 부처와 정례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규제 변화를 조기에 공유하고 기업의 현장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 기업 또한 상대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규제 변화에 관한 정보를 빠르게 확보하여 급변하는 규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출 기반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 성숙·유망·잠재 수출시장의 주요 수출상대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조사에 따르면 비관세조치는 서로 다른 목적 아래 다양한 범위의 정책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SPS와 TBT와 같은 기술조치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대부분의 국제무역이 어떤 형태로든 기술장벽에 의해 규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공식음료 대상 비관세조치(NTMs)의 관세상당치(AVEs)는 분류별로 SPS 가 각각 12.3%, -2.8%, TBT가 13.8%, 1.0%, 선적전검사 외가 각각 7.8%, 4.9%로 크게 나타났다. 세부 유형별로 식품 안전 라벨링·표시·포장 요건, 기타 생산 및 사후 공정 요건, 제품 기술 규정 라벨링·표시·포장 요건, 기술 규정 표본추출·시험·검사·평가·검증·인증 요건의 관세상당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NTMs가 무역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타났으며, 저온·열처리·방사선조사·훈증처리, 생산 및 생산 후 공정·절차 요건, 특정 제품 수입허가·라이선스 요건, 제조 공정 및 운송·보관 규정이 부과되는 경우 무역량 감소가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신규 위생·검역 규정, 상품 품질·안전성·성능 요건, 세관통과 항구지정 등은 해당 NTMs가 부과되는 경우 무역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농식품 수출업체의 관세장벽 대응 실태조사 결과, 농식품 특성상 신선 농산물 취급 업체는 SPS 조치, 가공식품 취급 업체는 TBT 조치를 가장 많이 경험했고, 중요도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품목 및 수출업체 유형별로 비관세장벽 대응 실태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 맞춤형 지원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정부의 정책 지원사업은 실효성이 검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업체 규모별 정보수집 경로의 차이를 고려하여 맞춤형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중·소규모 업체의 구조적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매칭, 컨설팅 지원 등 실질적인 외부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 제언

- 국가 간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강화해야 한다. 비관세조치에 관한 국제 논의 흐름을 고려할 때 적법한 중요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비관세조치 대부분의 목표이기 때문에 비관세조치를 철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투명성, 국제 협력, 간소화 및 기타 모범 규제관행 등과 같은 접근방식을 통해서 국제무역 흐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비관세조치의 무역비용을 줄이는 국가 간 협력이 필수이다.
- 신규 비관세장벽 국제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 목적을 지닌 무역조치가 급부상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EU는 그린딜(Green Deal)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실사지침(CSDDD) 등을 통해 ESG 정책의 통상 규범화를 추진하고 있다. ESG 정책 추진과 함께 환경정책 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강화는 중소규모의 농식품 분야에도 환경·지속가능성 기준 강화, 생산공정의 탄소배출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요구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환경규제를 포함한 신규 비관세장벽의 동향과 영향을 폭넓게 검토하고, 중소규모의 농식품 업체 또는 기업이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사전 지원, 기업 자체의 노력 등 선제 대응이 요구된다.

- 농식품 부문 비관세장벽 상시 모니터링 및 일원화된 정보 창구의 구축이 필요하다. 글로벌 비관세장벽 데이터를 통합해 농식품 부문에 특화된 국가·품목별 비관세장벽 현황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국제기구들의 비관세장벽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출대상국의 위생검역, 기술규제, 환경규제 변화 시 즉시 통보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농식품 수출업체 또는 기업들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 공동의 해외 농식품 비관세장벽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현장 농식품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분석하도록 국내 신고 채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다양한 소스로부터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해외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가 매우 복잡하며, 빠르게 변경·수정되고 있어 중소규모의 케이-푸드 수출업체가 관련 규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들 수출업체가 비관세장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에 구축된 여러 공공 사이트 또는 포털을 단계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보체계는 사전경보-규정 확인-검증 및 증명-대응 및 사례분석 등의 4단계 절차를 중심으로 활용될 수 있다.
- 비관세장벽 분석, 위생·검역·통관·표시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를 양성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식품 안전, 기술규제, 환경 및 탄소 기준 등과 관련된 정책과 규제가 다층적으로 복잡해지면서 단순한 무역실무 지식만으로는 농식품 수출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수출대상국의 정책과 법규에 대한 이해력과 대응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 품목 및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과 인증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 맞춤형 지원사업은 안정적인 해외시장 개척과 지속가능한 수출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고, 단기 성과뿐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품목 및 기업 특성별 비관세장벽의 유형과 대응 양상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관세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품목별 특성과 가공단계에 따라 비관세장벽의 유형이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품목 특성별 맞춤형 대응 전략과 지원정책의 차별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비관세장벽 대응을 포함한 케이-푸드 수출 확대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내실 있는 설문조사와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농식품 수출기업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기업의 특성, 주요 수출 품목 및 시장 정보, 수출 애로사항, 정책 수요 등을 체계적·구조적으로 연계하여 기업 수준의 수출 활동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를 행정통계 및 무역통계와 연계·통합함으로써 보다 정밀한 정책 타기팅 및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 Study on Measures to Address the Non-Tariff Barriers in Agri-Food Export Markets

Purpose of Research

- As the global agri-food trade environment evolves rapidly, the importance of agri-food export trade has grown. With intensifying global market competition and major trading countries reinforcing various non-tariff barriers (NTBs) to protect their domestic industries, Korean agri-food products face growing challenges in accessing overseas markets. In this context, systematic research on NTBs is not only timely but also essential for strengthening national agri-food export policy. In particular, NTBs in the agri-food sector have become a major constraint on K-Food exports, which are gaining global attention.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present policy directions to strengthen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Korean agri-food products. It seeks to establish a stable export foundation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and influencing factors of NTBs. Ultimately, the goal is to position agriculture as a future growth sector through the sustainable expansion of K-Food.

Research Method

-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non-tariff measures (NTMs) affecting agri-food exports and propose countermeasures, this study employs multiple research methods, including literature reviews, compilation

of statistical data, quantitative analysis, expert consultations, and corporate surveys. First, literature from domestic and international sources was reviewed, and statistical data for the empirical analysis were compiled. Based on the collected data, the relationship between NTMs and K-Food exports was quantitatively analyzed. Major cases of NTMs were selected and various econometric techniques were applied to develop an NTMs index.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identify the impact of NTMs on K-Food exports.

- Expert advisory meetings on NTMs were held to improve the validity and robustness of the study. Finally, pre-interview investigations and surveys were conducted targeting agri-food export companies. These efforts helped ensure the validity and relevance of the survey items while comprehensively identifying how companies respond to NTMs and the policy support they require.

Main Findings

- Discussion on NTBs developed under the framework of the GATT/WTO multilateral trading system. Moving forward, trade agendas related to NTBs are expected to focus more on improving existing regulations in response to the changing environment, rather than venturing into entirely new areas. Moreover,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will continue to ensure the transparency and legality of NTBs and reinforce relevant rules to prevent their misuse as disguised protectionism.

- As the importance of ESG management has been increasingly emphasized, small- and medium-sized agri-food export companies face several constraints. Therefore, to successfully implement ESG practices, government support policies and voluntary efforts by businesses must be combined.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regular consultation channels with the relevant departments in major export destinations to share early regulatory changes and support businesses' practical responses. Companies, for their part, should strengthen cooperation networks with partner countries and swiftly acquire information on regulatory changes, to flexibly adapt to rapidly changing regulatory environments and secure a sustainable export base in the medium to long term.
- A survey of NTMs in major export destinations across mature, emerging, and potential markets showed that NTMs encompass a wide range of policy measures that serve different purposes. Among these initiatives, technical measures such as SPS and TBT are the most common, with most international trade being regulated to some extent by technical barriers. The ad valorem equivalents (AVEs) of NTMs on processed food and beverages vary by category. For SPS measures, the AVEs were 12.3% and -2.8%; for TBT measures, 13.8% and 1.0%; and for pre-shipment inspection and other measures, 7.8% and 4.9%, respectively. Among detailed types, the AVEs were the highest for food safety labeling, packaging requirements, other production and post-production process requirements, product technical regulation labeling/packaging requirements and requirements

for sampling, testing, inspection, evaluation,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NTMs have been found to reduce trade volumes. Significant declines were observed in cases involving cold pasteurization, irradiation, fumigation treatment, production and post-production process requirements, specific import permits or licensing requirements, and manufacturing, transport and storage regulations. Conversely, trade volumes increased when new sanitary/phytosanitary rules, product quality, safety, and performance standards and designated customs ports were applied.

- According to a survey on how agri-food exporters respond to tariff and non-tariff barriers, companies handling fresh produce most frequently encountered SPS measures because of the nature of agricultural goods. In contrast, companies handling processed foods faced TBT measures more often. Both types of measures were rated as highly important. In addition, the survey found that the responses to NTBs varied by product and exporter type, highlighting the need for tailored support programs. Furthermore, government support initiatives should prioritize programs with proven effectiveness. They should establish customized information systems that account for differences in information access by company size and develop practical external support measures, such as expert matching and consulting, to address the structural vulnerabilities faced by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Policy Suggestions

-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channels) In the context of global NTMs discussions, most NTMs aim to achieve legitimate and important policy objectives; therefore, abolishing them is not the solution. Instead,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essential for reducing trade costs through transparency, simplification, and the adoption of good regulatory practices, thereby increasing predictability in trade.
- (Respond proactively to new forms of NTBs) Recently, trade measures for environmental purposes have rapidly emerged, raising concerns about their potential to become new NTBs. The EU is promoting the standardization of ESG-related trade regulations through initiatives such as the Green Deal,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an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As ESG policies progres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in the agri-food sector face stricter environmental and sustainability standards, requirements for carbon emission management in production processes, and demands for biodiversity preservation. Preemptive measures by the government or voluntary efforts by businesses are necessary to prevent confusion among SMEs.
- (Establish a real-time monitoring system and unified information hub for agri-food NTBs) There is a need to integrate global NTB data and develop a platform specialized in the agri-food sector that updates and

monitors NTB status by country and product in real time. Additionally, a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promptly notify exporters of changes in sanitary, phytosanitary, technical,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target markets. Furthermore, a joint NTB reporting center should be established and operated by the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KOTRA) and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to collect and analyze on-site difficulties reported by exporters.

- (Systematically link and utilize information from various sources) Information on overseas NTBs is highly complex and rapidly changing, making it difficult for SMEs in the K-Food sector to respond quickly. Thus, there is a need to gradually interlink and utilize multiple domestic public websites and portals. This information system can be used in a four-step process: early warning, regulation confirmation,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response, and case analysis.
- (Foster experts with specialized knowledge and operate joint public-private education programs) With increasingly complex policies and regulations concerning food safety, technical regulations, environmental standards, and carbon criteria, basic trade knowledge alone is insufficient for entering agri-food export market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train personnel who understand the policies and regulations of the various target markets and possess strong response capabilities.

- (Enhance tailored consulting and certification support based on product and company characteristics) Customized support programs for agri-food exporters can contribute to stable market entry and a sustainable export foundation. These programs play a key role not only in short-term performance but also in strengthening long-term global competitiveness. The survey results showed that the types of NTBs and response strategies differed depending on product and company characteristics. Thus, a support system tailored to company size is necessary. Moreover, as NTBs vary depending on product type and processing stage, differentiated strategies and support policies based on product characteristics are required.
- (Build a comprehensive agri-food export company database to improve policy effectiveness) A well-structured database is required to support meaningful surveys and analyses for K-Food export policies, including NTB countermeasures. This database should systematically connect company characteristics, key export products, market information, export difficulties, and policy requirements to provid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export activities at the company level. More precise policy-targeting and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s can be established by linking and integrating survey results with administrative and trade statistics.

Researchers: KIM Sanghyun, KIM Jongjin, MYEONG Suhwan

Research period: 2025. 1. - 2025. 10.

E-mail address: sanghyun@krei.re.kr

차 례

제1장 서론	1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3
2.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3. 연구 범위 및 방법과 연구추진 체계	17
4. 연구 기대 효과 및 활용	21
제2장 비관세조치 및 장벽 국제 논의	23
1. 국제 논의 동향	25
2. 유형별 비관세조치와 GATT/WTO 협정과의 관계	35
3. ESG 경영의 글로벌 논의 동향과 시사점	64
제3장 비관세조치 및 장벽 분류 동향과 특징	71
1. WTO 비관세장벽 현황	73
2. UN 비관세조치 유형별 분포 현황	90
3. 요약 및 시사점	108
제4장 비관세조치의 농식품 수출 영향분석	111
1. 분석 개요	113
2. 농식품 교역에 미치는 비관세조치 영향	126
3. 요약 및 시사점	139
제5장 농식품 수출업체 비관세장벽 대응 실태조사	141
1. 조사개요 및 농식품 수출 현황	143
2. 비관세장벽 경험 및 대응 실태	153
3. 정부 지원사업 경험 및 향후 계획	165

4. 수출업체 특성별 비관세장벽 대응 현황	173
5. 요약 및 시사점	184
제6장 케이-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비관세장벽 대응 방안	187
1. 비관세장벽 대응 기본 방향	189
2. 비관세장벽 세부 대응 방안	191
부록	
1. UNCTAD MAST 비관세조치 세부 분류체계	203
2. 미국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의 NTBs 주요 내용	216
3. WTO 비관세장벽 수출시장별 현황: 유망·잠재 시장	218
4. NTMs 영향분석 자료 및 결과	237
참고문헌	251

표 차례

제1장

〈표 1-1〉 유형별 선행연구	8
〈표 1-2〉 주요 NTMs 데이터베이스	19

제2장

〈표 2-1〉 GATT 협상 라운드	27
〈표 2-2〉 UNCTAD 비관세조치 분류체계 및 유형별 주요 내용	36
〈표 2-3〉 WTO 비관세장벽 분류체계	37
〈표 2-4〉 NTE 보고서의 유형별 무역장벽	38
〈표 2-5〉 SPS와 TBT 규정 주요 내용	42
〈표 2-6〉 선적전검사 규정 주요 내용	43
〈표 2-7〉 수입규제조치 협정 주요 내용	45
〈표 2-8〉 수입수량제한 주요 내용	47
〈표 2-9〉 가격통제 및 준관세 주요 내용	48
〈표 2-10〉 상품대금 결제에 대한 지불제한 주요 내용	50
〈표 2-11〉 국영무역 규정 주요 내용	51
〈표 2-12〉 무역 관련 투자조치 협정 주요 내용	52
〈표 2-13〉 상품 관련 보조 서비스 규정 주요 내용	54
〈표 2-14〉 보조금 규정 주요 내용	57
〈표 2-15〉 정부조달 규정 주요 내용	58
〈표 2-16〉 지식재산권 규정 주요 내용	60
〈표 2-17〉 원산지 규정 주요 내용	61
〈표 2-18〉 수출 관련 조치 주요 내용	62
〈표 2-19〉 관세평가협정 주요 내용	63
〈표 2-20〉 GATT/WTO 규정 및 협정과 비관세조치(NTMs)와의 연계성	63

제3장

〈표 3-1〉 對세계 1995~2024년 누적 기준 비관세장벽 현황	75
〈표 3-2〉 세계 對한국 1995~2024년 누적 기준 비관세장벽 현황	77
〈표 3-3〉 전산업 수출시장 유형별 비관세장벽 활용 비중	79
〈표 3-4〉 농식품 부문 수출시장 유형별 비관세장벽 활용 비중	79
〈표 3-5〉 성숙시장 對세계 1995~2024년 누적 기준 비관세장벽 현황	80
〈표 3-6〉 성숙시장 對한국 1995~2024년 누적 기준 비관세장벽 현황	81
〈표 3-7〉 미국 對세계 1995~2024년 누적 기준 비관세장벽 현황	82
〈표 3-8〉 미국 對한국 1995~2024년 누적 기준 비관세장벽 현황	84
〈표 3-9〉 중국 對세계 1995~2024년 누적 기준 비관세장벽 현황	85
〈표 3-10〉 중국 對한국 1995~2024년 누적 기준 비관세장벽 현황	87
〈표 3-11〉 일본 對세계 1995~2024년 누적 기준 비관세장벽 현황	88
〈표 3-12〉 일본 對한국 1995~2024년 누적 기준 비관세장벽 현황	90
〈표 3-13〉 비관세지표 주요 지표 설명	91
〈표 3-14〉 ESG 경영 관련 비관세조치 분류	105
〈표 3-15〉 농식품류별 ESG 경영 관련 비관세조치의 정량 지표	106

제4장

〈표 4-1〉 주요 변수의 내용 및 출처	125
〈표 4-2〉 농식품 대상 가격 및 수입량 함수 추정 결과	128
〈표 4-3〉 품목별 가격 및 수입량 함수 추정 결과	131
〈표 4-4〉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품목별 가격 및 수입량 함수 추정	135
〈표 4-5〉 ESG 경영 관련 NTMs 도입 시 가격 및 수입량 함수 추정 결과	138

제5장

〈표 5-1〉 농식품 수출업체 비관세장벽 대응 실태조사 기본통계	144
〈표 5-2〉 업체 규모별 생산방식(중복응답)	145

〈표 5-3〉 업체 규모별 가공방식(중복응답)	146
〈표 5-4〉 업체 규모별 수출방식(중복응답)	146
〈표 5-5〉 업체 규모별 수출대상국	149
〈표 5-6〉 업체 규모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2022~2024년)	149
〈표 5-7〉 주요 수출대상국	151
〈표 5-8〉 신규 개척 중인 수출대상국	151
〈표 5-9〉 업체 규모별 비관세장벽 유형별 경험 여부	157
〈표 5-10〉 업체 규모별 비관세장벽 유형별 중요도	158
〈표 5-11〉 HS2 단위 품목별 비관세장벽 유형별 경험 여부	159
〈표 5-12〉 주요 수출대상국별 비관세장벽 유형별 경험 여부	160
〈표 5-13〉 업체 규모 및 비관세장벽 유형별 정부 수출지원사업 만족도	168
〈표 5-14〉 업체 규모 및 비관세장벽 유형별 정부 비관세장벽 대응 실효성	171
〈표 5-15〉 업체 특성 및 역량별 비관세장벽이 수출 성과에 미친 영향	180
〈표 5-16〉 업체 특성 및 역량별 정부 수출지원사업 만족도	182
〈표 5-17〉 업체 특성 및 역량별 ‘현지화 지원사업’의 실질적 도움 정도	183
〈표 5-18〉 업체 특성 및 역량별 정부 비관세장벽 대응 실효성	183

제6장

〈표 6-1〉 비관세장벽 정보 제공 플랫폼 특징	196
〈표 6-2〉 비관세장벽 정보의 단계별 대응	197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자유무역 추이와 비관세장벽(WTO TBT/SPS) 통보 건수	4
〈그림 1-2〉 현행 수입제한조치 대상 누적 수입액 추이(2009~2024. 10. 15.)	5
〈그림 1-3〉 연구 범위 및 대상	18
〈그림 1-4〉 연구추진 체계	21

제3장

〈그림 3-1〉 전산업 지역·국가별 비관세장벽 현황	74
〈그림 3-2〉 농식품 부문 지역·국가별 비관세장벽 현황	75
〈그림 3-3〉 對세계 3개년 기준 비관세장벽 분포	76
〈그림 3-4〉 세계 對한국 3개년 기준 비관세장벽 분포	77
〈그림 3-5〉 수출시장 유형별/산업별 비관세장벽 분포	78
〈그림 3-6〉 성숙시장 3개년 기준 對세계 비관세장벽 분포	80
〈그림 3-7〉 성숙시장 對한국 3개년 기준 비관세장벽 분포	81
〈그림 3-8〉 미국 對세계 3개년 기준 비관세장벽 분포	83
〈그림 3-9〉 미국 對한국 3개년 기준 비관세장벽 분포	84
〈그림 3-10〉 중국 對세계 3개년 기준 비관세장벽 분포	86
〈그림 3-11〉 중국 對한국 3개년 기준 비관세장벽 분포	87
〈그림 3-12〉 일본 對세계 3개년 기준 비관세장벽 동향	89
〈그림 3-13〉 세계시장과 주요 수출대상국 비관세조치 활용	92
〈그림 3-14〉 주요 수출대상국 분야별/조치별 비관세조치 활용	93
〈그림 3-15〉 주요 수출대상국 비관세조치 분포(국별 비관세조치의 비중)	94
〈그림 3-16〉 주요 수출대상국 비관세조치 분포 현황	95
〈그림 3-17〉 주요 수출대상국 분야별 비관세조치 분포	95
〈그림 3-18〉 주요 수출대상국 조치별/시장별 비관세조치 분포	96
〈그림 3-19〉 수출대상국의 비관세조치별 세부 품목별 분포	97
〈그림 3-20〉 주요 수출대상국 GDP별 CR, FI, PS 분포	99

〈그림 3-21〉 주요 수출대상국 관세수준별 CR, FI, PS 분포	100
〈그림 3-22〉 경제 규모별 기술적·비기술적 비관세조치 분포 비교	101
〈그림 3-23〉 관세 수준별 기술적·비기술적 비관세조치 분포 비교	103
〈그림 3-24〉 ESG 경영 관련 비관세조치 지표의 동태 변화	107

제4장

〈그림 4-1〉 비관세조치 도입의 수입(가격 및 수입량) 영향	116
〈그림 4-2〉 농식품 대상 NTMs 도입 시 수출가격 및 수입량 변화	130
〈그림 4-3〉 농식품 대상 수출상대국 소득수준별 NTMs 도입 시 수출가격 및 수입량 변화	130
〈그림 4-4〉 품목류별 NTMs 도입 시 수출가격 및 수입량 변화	132
〈그림 4-5〉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품목류별 NTMs 도입 시 수출가격 및 수입량 변화	136
〈그림 4-6〉 ESG 경영 관련 NTMs 도입의 농식품 수출가격 및 수입량 영향	139

제5장

〈그림 5-1〉 수출 전담부서 운영 여부	147
〈그림 5-2〉 업체 규모별 평균 수출 전담 인력	147
〈그림 5-3〉 보유하고 있는 해외 인증(중복응답)	148
〈그림 5-4〉 수출과정의 애로사항별 인식도	150
〈그림 5-5〉 주요 수출 품목	152
〈그림 5-6〉 취급 품목의 내수용 판매이유	153
〈그림 5-7〉 업체 규모별 비관세장벽 경험 여부	154
〈그림 5-8〉 업체 규모별 비관세장벽 정보수집 경로	155
〈그림 5-9〉 기타 절차상 장벽의 구체적 유형(중복응답)	161
〈그림 5-10〉 비관세장벽이 수출 성과에 미친 영향	161
〈그림 5-11〉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피해(중복응답)	162

〈그림 5-12〉 비관세장벽 발생 시 대응 방법(중복응답)	162
〈그림 5-13〉 비관세장벽 대응 시 애로사항(중복응답)	163
〈그림 5-14〉 비관세장벽에 대한 내부 대응 역량	163
〈그림 5-15〉 비관세장벽 대응 결과	164
〈그림 5-16〉 정부의 수출지원사업 활용 경험	165
〈그림 5-17〉 참여 경험이 있는 수출지원사업(중복응답)	166
〈그림 5-18〉 정부 수출지원사업 신청 절차 수월성	167
〈그림 5-19〉 현지화 지원사업 항목별 지원 여부 및 중요도	168
〈그림 5-20〉 현지화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169
〈그림 5-21〉 현지화 지원사업의 실질적 도움 정도	170
〈그림 5-22〉 비관세장벽 대응력 강화를 위한 향후 계획(중복응답)	171
〈그림 5-23〉 업체 규모별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 방식	172
〈그림 5-24〉 업체 특성별 수출과정의 애로사항 인식도	174
〈그림 5-25〉 업체 역량별 수출과정의 애로사항 인식도	175
〈그림 5-26〉 업체 특성별 비관세장벽 정보수집 경로(중복응답)	176
〈그림 5-27〉 업체 역량별 비관세장벽 정보수집 경로(중복응답)	177
〈그림 5-28〉 업체 특성 및 역량별 비관세장벽 경험 여부	179
〈그림 5-29〉 업체 특성 및 역량별 비관세장벽 대응 결과	181

제6장

〈그림 6-1〉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구축 3단계 정책 로드맵	191
---	-----

제1장

서론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 필요성

최근 국내외 농업은 급격한 시장 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생산량의 증가로 인한 잦은 과잉 공급과 이에 따른 가격 하락은 농가소득 불안정성과 경영 리스크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도전 속에서 농산물 수출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은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차원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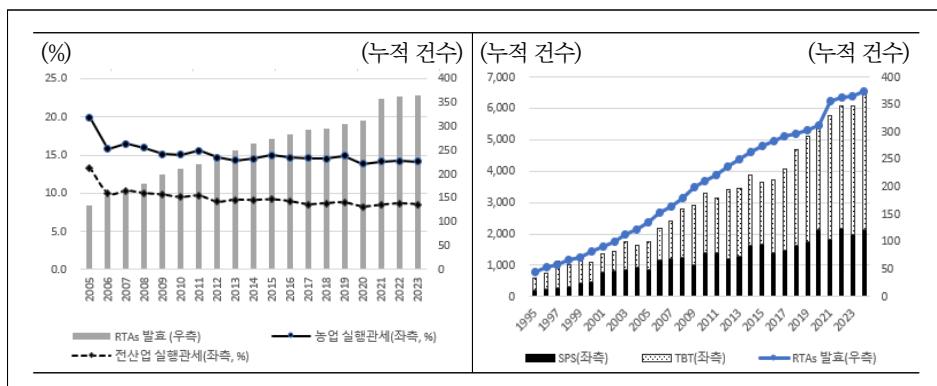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으로 첨단산업 국가 도약(국정과제 029)’을 제시하고, 그 핵심 추진 방향으로 농식품 수출 확대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남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개척과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시장 확대를 목표로 한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전략을 발표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4. 2. 20.). 이 전략은 개별 수출업체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s)¹⁾ 대응을 포함한 종합

1)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s)은 교역 물량과 가격을 변화시켜 잠재적으로 국제무역에

적인 수출 여건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비관세장벽 대응 역량 강화는 케이-푸드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WTO 체제의 출범과 양자·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관세장벽은 점차 완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통관, 표준 및 인증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은 새로운 형태의 무역제한 수단으로 확대되고 있다<그림 1-1>. WTO(2024)에 따르면, 2009년 이후 각국의 수입 제한조치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누적 대상 수입액은 약 2조 9,420 억 달러로 세계 총수입액의 약 11.8%를 차지한다<그림 1-2>.²⁾ 이런 통계는 농식품 무역에서 비관세장벽이 차지하는 영향력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1-1〉 자유무역 추이와 비관세장벽(WTO TBT/SPS) 통보 건수



주: TBT는 농식품을 포함한 전체 상품과 관련하여 WTO에 통보된 건수임.

자료: WTO Regional Trade Agreements Database(검색일: 2025. 1. 23.); WTO SPS&TBT Platform ePing(검색일: 2025. 1. 23.).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 조치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UNCTAD가 개발·발전시킨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 NTMs)보다 협의의 개념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2장 제2절 비관세조치 및 장벽 정의와 분류체계를 참조 바란다. 본 연구에서는 두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한다.

- 2) 농식품 수출업체는 수출대상 시장의 요건을 탐색·이해하는 정보비용(information cost), 수입국의 요건에 맞춰 제품·생산공정을 조정하는 공정비용(specification cost), 이런 요건들이 충족되는지 확인·인증하는 적합판정비용(conformity assessment cost)에 직면한다(OECD, 2020). 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무역비용은 관세로 인한 비용보다 약 3~4배 높게 나타나며, 이는 수출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추가 거래비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UNCTAD & World Bank, 2018).

〈그림 1-2〉 현행 수입제한조치 대상 누적 수입액 추이(2009~2024. 10. 15.)



주: 현행 수입제한조치 대상 수입액은 누적기준임.

자료: WTO(2024)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비관세장벽은 단순한 건수 증가를 넘어 규범의 엄격성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며 적용 범위도 환경, 사회, 지속가능성 등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농식품 부문은 위생검역, 기술, 인증, 통관 등 다층적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런 비관세장벽이 다른 공산품에 비해 농식품 교역의 핵심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들 조치는 수입국 입장에서 자국 산업 보호 수단이지만, 수출국 입장에서 시장 진입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이에 따라 무역협정의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수출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서 수출상대국의 비관세장벽 수준과 규제 동향을 상시 종합 점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케이-푸드’ 열풍과 함께 농식품 수출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 정책 기조도 과거의 ‘수입 규제를 통한 국내 산업 보호’에서 ‘수출 확대를 통한 산업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농식품 수출상대국 역시 과거의 미국·일본·중국 중심에서 동남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유럽 등으로 다변화되는 추세이다. 그 결과 우리 수출기업은 국가별로 상이하고 복잡한 비관세장벽에 새롭게 직면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 특히 유럽연합(EU)은 환경·사회·거버넌스 이슈를 통상 규범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농식품 교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20년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은 환경·노동 관련 조항을 한층 강화하였고, 한·EU FTA에도 지속가능한 발전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기준의 확산으로 탄소국경조정 제도, 지속가능한 농업방식 준수 요구, 공급망 인권 실사 의무화 등 이른바 ESG 규제의 통상 규범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향후 체결될 무역협정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통상이슈를 어느 수준까지 반영할지에 대한 전략적 검토가 필요하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식품 수출 증가가 농가소득 제고와 거시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케이-푸드 수출업체들이 직면하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정책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구체적으로 비관세장벽의 현황과 동향을 춤촘히 파악하고, 쟁점별 영향 요인을 분석하여 효과성과 실효성을 겸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1.2. 연구 목적

세계 농식품 교역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농식품 수출통상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국 간 경쟁이 심화되고, 주요 수출상대국이 자국의 농업과 식품산업 보호를 위해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농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은 점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비관세장벽에 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는 시의 적절할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농식품 수출정책을 고도화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농식품 부문 비관세장벽은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케이-푸드 수출의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관세장벽의 특성과 영향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케이-푸드의 지속가능한 수출 확대를 통해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주요 수출시장별 비관세장벽의 현황과 동향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비관세장벽 또는 조치가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나아가 케이-푸드 수출업체의 대응 실태를 토대로 정책적 또는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관세장벽에 대한 이해 제고와 체계적 정리를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류체계에 근거하여 유형별 비관세장벽의 현황과 주요 동향을 정리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수출시장 다변화 및 품목 다양화 전략에 부합하도록 성숙시장(미국·중국·일본), 유망시장(EU·아세안·UAE·브라질·인도), 잠재시장(남아프리카공화국·우즈베키스탄·라오스·칠레·과테말라) 등을 중심으로 케이-푸드 수출을 제약하는 주요 비관세요인을 심층 분석한다.

둘째, 주요 수출상대국의 비관세장벽이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어떤 유형의 비관세장벽이 농식품 수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 케이-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적 개선 방향을 도출한다.

셋째, 케이-푸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면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출업체들이 실제로 직면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의 실태와 대응 현황, 애로사항 및 개선 요구를 파악한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농식품 수출업체의 구체적 경험을 체계화하고, 실효성 있는 비관세장벽 대응 정책지원 방향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우리 농식품의 수출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 대응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정부의 농식품 통상정책 수립과 수출 지원정책 개선에 활용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비관세장벽(NTBs) 또는 비관세조치(NTMs)에 관한 연구는 WTO 다자통상체 제의 출범과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으로 그 중요성이 주목받으면서, 다양한 연구 목적과 분석 방법을 토대로 활발히 수행되었다.³⁾ 선행연구는 목적과 방법에 따라 이론연구, 실증연구, 사례연구, 그리고 ESG의 무역 영향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1-1>. 본 절에서는 이러한 연구 지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한계를 토대로 본 연구의 차별성을 도출한다.

〈표 1-1〉 유형별 선행연구

주요 내용	선행연구
비관세장벽 이론연구	van Tongeren et al.(2009); WTO(2012); UNCTAD & World Bank(2018); 최원목·이지형(2019)
비관세장벽 실증연구	Beghin & Bureau(2001); Nardella & Boccaletti(2004); Ferrantino(2006); Dean et al. (2009); 송주호 외(2010); Bao & Qiu(2012); Cadot et al.(2015); Crivelli & Groeschl (2015); 박근호(2017); 조문희 외(2017); 조성주 외(2017); Ghodsi et al.(2017); 박찬업 (2018); Santeramo & Lamonaca(2019, 2022); 강민지(2023); 곽성일 외(2023); 유정호 (2023)
비관세장벽 사례연구	Liu & Yue(2009); Yue & Beghin(2009); 문한필 외(2011); Cadot & Gourdon(2014); International Trade Centre(2014, 2016); 김경필 외(2015); Cadot & Ing(2015); 서대석 외(2016); Yan et al.(2016); Sanjuán et al.(2017); Wood et al.(2017); 순병민·한석호 (2022); ESCAP(2023)
ESG의 무역 영향 연구	김현정(2023); 박슬기(2023); 박혜리·박지현(2021); 하선경·이슬기(2023)

자료: 저자 작성.

2.1. 비관세장벽 또는 조치 이론연구

이론연구에 따르면, 비관세장벽 또는 조치는 단순한 무역제한 수단을 넘어 후

3) 선행연구 대부분은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 NTMs) 또는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s)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자세한 용어의 설명은 제3장 1절에 제시하였다.

생 증대, 환경 보호, 소비자 안전 보호 등 다양한 사회적 목표 달성을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van Tongeren et al.(2009)은 농식품 분야 비관세 조치가 후생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시장 실패와 정책 대안을 구분하고 비용-편의 분석을 통해 비관세조치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비관세조치는 단순한 무역장벽이 아니라 후생 증대 및 환경 보호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정책 설계 시 경제적 효율성과 환경적 외부효과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WTO(2012)는 21세기 국제무역 환경에서 비관세조치가 지니는 복잡성과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비관세조치는 소비자 안전 보호, 환경 보전, 공중 보건 등 다양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지만, 투명성과 일관성이 결여될 경우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국제협력과 조화로운 규제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UNCTAD & World Bank(2018)는 비관세조치의 정의와 분류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에서는 비관세조치를 기술조치(SPS, TBT 등)와 비기술조치(수량 규제, 가격 조치 등)로 구분하고, 각 조치의 특징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분석 결과, 비관세조치는 농업, 제조업, 광물 자원 등 다양한 산업에서 관세보다 더 큰 무역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관세조치 준수비용이 저소득 국가의 무역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비관세조치는 단순한 무역제한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평가하며, 이를 위해 국가 간 규제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최원목·이지형(2019)은 WTO SPS 위원회의 운영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농식품 무역에서 비관세장벽의 국제적 규범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SPS 조치의 과학적 근거 확보와 국제 규범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나라 케이-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국가 간 규제 조화 및 상호인정의 추진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2.2. 비관세장벽 또는 조치 실증연구

실증연구들은 중력모형, 가격격차모형, 일반균형모형 등 다양한 계량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비관세조치(NTMs)와 비관세장벽(NTBs)의 정량적 영향을 규명해 왔다. Beghin & Bureau(2001)는 농식품 무역에서 SPS와 TBT 조치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계량모형을 통해 시장균형과 무역 흐름 간 상호작용을 평가한 결과, 기술적 장벽은 무역을 제한하는 동시에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이중적 효과를 가진다고 지적하였다. Nardella & Boccaletti(2004)는 EU와 미국의 비관세조치가 개발도상국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SPS 및 TBT 조치가 개발도상국의 수출 비용을 증가시키고, 특히 EU의 품질 기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출제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무역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양자 협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Ferrantino(2006)는 비관세조치가 무역 흐름과 경제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기 위한 가격격차 분석 및 일반균형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비관세조치는 무역비용을 높이고 동시에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여 교역량을 늘릴 수 있는 잠재적 긍정효과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Dean et al.(2009)은 과일·채소, 육류, 가공식품 등 47개 소비재를 대상으로 비관세장벽의 가격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비관세장벽은 과채류 가격을 44%, 육류를 54%, 가공품을 41%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관세장벽과 관세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음을 밝혔다.

송주호 외(2010)는 GMO 표시제와 원산지 표시제 사례를 중심으로 비관세조치가 우리나라 농식품 무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비관세조치는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한편 생산자 잉여를 감소시키는 복합적 효과를 가지며, 규제 설계 시 이러한 균형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Bao & Qiu(2012)는 WTO TBT 데이터를 활용하여 TBT 조치가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중력모형으로 분석하였다. TBT 조치는 수출 성공 확률을 낮추지만, 규제를 준수한 기업의 수출량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 TBT 준수비용을 완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Cadot et al.(2015)은 비관세조치의 경제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농식품 산업에서 비관세조치가 상품 가격을 5~27% 상승시키는 효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국가 간 규제 거리(regulatory distance) 지표를 활용하여 규제 유사성을 분석하고, 규제 조화 가능성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식품 가격 상승이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비관세조치의 분배적 영향(distributive impact)을 고려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Crivelli & Groeschl(2015)은 SPS 조치가 농식품 무역 흐름과 시장 진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SPS 조치가 일부 국가에서는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지만, 동시에 소비자 신뢰 제고를 통해 무역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균형 잡힌 SPS 설계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

박근호(2017)는 글로벌 가치사슬(GVC) 관점에서 비관세조치가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신흥시장에서는 비관세장벽이 수출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GVC 기반 수출전략과 국제협력을 통한 무역장벽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조문희 외(2017)는 UNCTAD의 비관세조치 분류체계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SPS와 TBT 조치가 가장 빈번한 무역장벽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개도국과 선진국 간 규제 차이가 무역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 규제 조화와 한국의 법적 대응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조성주 외(2017)는 중력모형을 이용해 SPS와 TBT 조치가 한국의 신선 농산물 및 가공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SPS 조치는 신선 농산물, TBT 조치는 가공식품 수출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품목별 맞춤형 대응 전략과 주요 수출국 모니터링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Ghodsi et al.(2017)은 1995~2014년 WTO I-TIP 데이터를 기반으로 SPS, TBT 등 다양한 비관세조치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전체 비관세조치 중 약 60% 가 무역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지며, 특히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그 영향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일부 비관세조치는 품질 개선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통해 무역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도 나타냈다. 박찬엽(2018)은 국내 식품산업의 통관거

부 사례를 분석하여 비관세장벽의 특성을 규명하였다. 위생검역 기준 미달과 라벨링 요건 불충족이 주요 사유로 지적되었으며, 복잡성과 투명성 부족이 핵심 문제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무역규범 명확화와 기업의 규제 준수 역량 강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Santeramo & Lamonaca(2019)는 농식품 무역에서 비관세조치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메타분석(meta-analysis)을 수행하였다. 비관세조치는 무역을 촉진하거나 제한하는 이중적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국가 및 품목별로 상이함을 밝혔다. 연구는 비관세조치 설계 및 집행 방식이 무역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Santeramo & Lamonaca(2022)는 양자 간 SPS 조치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농식품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 중력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수입 개발도상국의 경우 SPS 조치가 무역을 촉진하는 반면, 수입 선진국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연구는 경제발전 수준이 상이한 국가 간 SPS 조치 공유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강민지(2023)는 메가 FTA 내 SPS 규범의 최근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강화된 SPS 조치가 기술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지적 하며, 규제의 과학적 근거와 투명성 확보, 주요 교역상대국의 규제 모니터링, 기업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곽성일 외(2023)는 SPS와 TBT 조치를 중심으로 아세안 경제통합이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TBT와 SPS 조치가 아세안 지역의 규제 조화와 통합 촉진 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일부 산업에서는 무역장벽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한국과 아세안 간 규제 거리가 일본보다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가 디지털경제·환경 분야 규제 조화에 적극 참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유정호(2023)는 SPS 조치와 WTO 분쟁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 농식품 무역에 미치는 법적·실질적 영향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SPS 조치의 무역 억제 효과는 국가 및 품목별 특성에 따라 상이하며, 국가 별 대응 전략의 차별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2.3. 비관세장벽 또는 조치 사례연구

사례연구는 구체적인 시장과 산업 사례를 중심으로 비관세조치 또는 장벽이 무역 흐름, 품질, 후생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규제 조화와 정책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Liu & Yue(2009)는 일본 절화(切花) 시장을 대상으로 SPS 조치와 통관절차 등 비관세장벽이 상품 품질과 무역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비관세장벽은 상품 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세관 절차의 지연이 품질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통관절차 개선과 비관세장벽 완화가 무역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Yue & Beghin(2009)은 TBT 조치의 관세상당치와 무역 손실 효과를 추정하였다. 뉴질랜드 사과의 호주 수출 사례분석 결과, TBT가 수입금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해 뉴질랜드 사과 수출을 실질적으로 차단하였으며, 이로 인한 연간 후생 손실이 약 5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연구는 TBT 조치 제거가 무역 확대와 후생 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문한필 외(2011)는 한·중 농산물 교역구조와 비관세장벽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SPS와 TBT 조치의 비중을 평가하고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농업 부문의 변화를 추정한 결과, 중국산 농산물이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검역장벽이 주요 무역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Cadot & Gourdon(2014)은 세계은행 국제비교프로그램(ICP) 데이터를 활용하여 아프리카 지역의 비관세조치가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SPS 조치는 식료품 가격을 평균 14%, 저소득 가구의 생활비를 9%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비관세조치의 사회·경제적 부담이 취약계층에 집중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International Trade Centre(2014, 2016)는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의 기업을 대상으로 비관세장벽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캄보디아의 경우 수출기업의 82%, 농식품 수출기업의 89%가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신선식품 소규모 수출기업의 72.6%, 가공식품 소규모 기

업의 64%가 규제 부담을 보고했으나, 중대형 기업의 경우 각각 36.5%, 19%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기업 규모에 따라 비관세장벽의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김경필 외(2015)는 아시아 신흥국의 농식품 분야 비관세조치 현황과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과 관련하여 중국이 가장 많은 비관세장벽을 설정하고 있으며, 주로 SPS 조치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품질 기준 및 수입허가제 등 비기술적 규제를 중심으로 비관세조치를 시행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비관세조치가 점차 복잡화·전문화되는 추세에 있어 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Cadot & Ing(2015)는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비관세조치의 조화와 상호인정 문제를 분석하였다. 동아시아 국가 간 규제 조화를 통해 규제 격차를 41%까지 줄일 수 있고, 비관세조치의 투명성 강화 및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이 무역 원활화에 실질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서대석 외(2016)는 수출상대국의 비관세장벽이 우리나라 딸기 수출에 미치는 경제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수출국의 SPS와 TBT 조치에 대한 관세상당치를 추정한 결과, 비관세장벽의 평균 관세상당치는 약 17.2%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서로 다른 비관세조치가 수출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맞춤형 완화 전략과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Yan et al.(2016)은 ASEAN 지역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비관세조치 무역 흐름뿐 아니라 시장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며,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비관세조치 준수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ASEAN 회원국 간 규제 조화와 상호인정제도 도입을 통한 무역 원활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Sanjuán et al.(2017)은 EU와 미국 간 농식품 무역에서 비관세조치의 경제적 영향을 중력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비관세조치는 전통적 관세보다 더 큰 무역 저해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SPS 및 TBT 조치가 주요 장벽으로 작용하였다. 연구는 양국 간 규제 조화가 무역비용을 낮추고 교역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

하였다. Wood et al.(2017)은 중력모형과 PPML 추정법을 활용하여 중국의 SPS 조치가 주요 교역국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의 SPS 조치가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뉴질랜드·미국·일본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국가별 제도·경제 구조 차이에 따라 SPS 조치가 상이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순병민·한석호(2022)는 공적분 분석과 부분균형모형을 결합하여 우리나라 쇠고기 시장에서 SPS 조치의 경제효과를 추정하였다. SPS 조치의 관세상당치는 약 77%로 분석되어 기존 연구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SPS 조치가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ESCAP(2023)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업들이 직면한 주요 비관세조치 문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지역 내 기업의 55%가 비관세조치를 주요 무역장벽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이 이상이 상대국이 부과한 비관세조치로 인한 행정적 지연과 비공식 비용 부담을 호소하였다. 특히 SPS와 TBT 조치가 핵심 무역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으며, 절차적 복잡성과 행정적 비효율성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4. ESG의 무역 영향 연구

ESG와 무역 관련 연구들은 환경규제가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녹색무역장벽(green trade barriers)이 산업과 무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나 정부·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혜리·박지현(2021)은 CBAM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는 중소기업의 간접 수출 경로까지 고려한 CBAM 영향분석을 수행하여, 대기업과의 협력 및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 생산공정의 탈탄소화와 저탄소·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를 제안하였다. 김현정(2023)은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탄소국 경조정제도, 공급망 실사법 등 ESG 시대의 3대 녹색무역장벽이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는 이러한 제도가 무역비용을 증가시켜 산업 경쟁력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정책·교육·통상 외교 차원의 종합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환경위기와 무역의 상관성을 논의하며 지속 가능한 무역 환경 조성을 위한 이해관계자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박슬기(2023)는 GTAP-HS 모형을 활용하여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보호 무역적 성격을 띤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WTO 통상 규범과의 합치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산업별·품목별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탄소가격 정책의 글로벌 불균형이 교역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허선경·이슬기(2023)는 주요국의 환경 관련 TBT가 국내 제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중력모형을 통해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환경 TBT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지만, 전기·전자 부품 산업에서는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는 산업별 특성에 기반한 차별화된 대응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5. 본 연구의 차별성

최근 세계 통상 환경에서는 전통적인 비관세장벽이 공급망, 환경, 사회, 인권 등과 같은 새로운 통상이슈와 결합하면서 그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케이-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핵심 요인으로 비관세장벽의 중요성이 관세보다 한층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들은 주로 중국 등 특정 교역상대국을 중심으로 한 제한적 분석에 머무르거나, 과거의 농업 통상 환경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일부 연구에서 SPS와 TBT 조치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한 사례는 있지만, 비관세장벽이 농업 부문 전반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FTA 추진 확대와 교역상대국 다변화, 그리고 급변하는 대내외

농업 통상 여건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케이-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비관세장벽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비관세장벽 관련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분석하고, 주요 수출국뿐만 아니라 잠재 수출국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비관세장벽 이슈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케이-푸드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장벽의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수출업체를 대상 정책 수요 조사를 병행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비관세장벽 대응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명확히 구별되는 차별성을 지닌다. 즉 교역상대국 다변화와 비관세장벽의 복합적 영향에 대한 통합적 접근, 사례·통계·현장 수요를 연계한 실증 기반 분석, 그리고 정책 설계로의 실질적 환류 가능성 제시라는 측면에서 학문적·정책적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농식품 수출정책 수립 및 국제통상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실질적 연구 성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연구 범위 및 방법과 연구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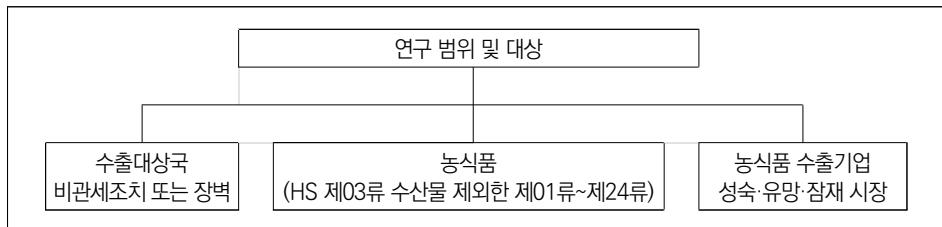
3.1. 연구 범위 및 대상과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농식품 분야로 한정하며, 구체적으로는 HS 코드 기준 01~24류(단, 03류 수산물은 제외)에 해당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계량 분석을 수행할 때, 품목별 특성을 세분화하여 파악하기 위해 HS 6단위 수준의 세부 품목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 시장은 정부의 수출시장 및 품목 다변화 추진 방향에 부합하도록 시장 특성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성숙시장은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교역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우리 농식품의 주요 수출국으로 자리 잡은 미국·중국·일본을 포함한다. 둘째, 유망시장은

향후 성장 잠재력과 교역 확대 가능성이 높은 UAE·브라질·인도·EU·아세안 지역으로 구성하였다.셋째, 잠재시장은 상대적으로 교역 규모는 작지만 중·장기적으로 시장 진입 및 수출 확대의 여지가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라오스·칠레·과테말라를 포함하였다.

〈그림 1-3〉 연구 범위 및 대상



자료: 저자 작성.

3.2. 연구추진 방법

본 연구는 농식품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조치의 현황과 대응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문헌조사, 통계자료 구축, 계량 분석, 전문가 자문, 기업 설문조사 등 다각적인 연구 방법을 병행하였다. 먼저, 국내외 관련 문헌조사 및 실증분석을 위한 통계자료를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비관세장벽 또는 조치에 대한 이론적 및 실증적 선행연구를 폭넓게 검토하였으며,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비관세장벽 또는 조치가 적용된 다양한 사례와 관련 이슈를 분석하였다.

또한 비관세장벽 또는 조치의 유형과 특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수출시장 확대에 대한 기존 실증연구를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의 분석 틀을 마련하였다. 나아가 주요 국제기구 및 국내외 기관에서 제공하는 비관세조치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통계자료를 구축하였다<표 1-2>.

〈표 1-2〉 주요 NTMs 데이터베이스

국제기구	데이터베이스	주요 내용
UNCTAD	TRAINS Portal (Trade Analysis Information System)	시행국/수입국/수출국/품목별/세번별(HS2~6) NTMs 정보 제공
WTO	I-TIP(Integrated Analysis and Retrieval of Notified Non-Tariff Measures)	국별/품목별/연도별 NTMs 정보
	Trade Remedies Data Portal (https://trade-remedies.wto.org/en)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 내역
	ePing(SPS & TBT Platform)	국별 SPS, TBT 통보 정보
	Trade Concerns Database	국별/세번별/NTCs별 특정무역현안(STCs)
World Bank	Import Licensing Procedures	국별 통보내역(주요 수출대상국 정보 활용)
	WITS(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국별/유형별 NTMs, 분야별 NTMs 지표
한국무역협회	KITA(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지역별/주요국별/세번별(HS6)/유형별/품목별/ 기간별 NTMs 정보

자료: 저자 작성.

다음으로, 구축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비관세조치와 케이-푸드 수출 간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비관세조치 사례를 선별하고, 다양한 계량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비관세장벽 또는 조치 관련 지수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비관세장벽 또는 조치가 케이-푸드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관세조치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자문회의에서는 연구의 중간 결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분석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으며, 품목 및 수출대상국별 케이-푸드 수출 전문가 그룹과의 논의를 통해 연구 결과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신규 환경 관련 통상이슈인 ESG 경영에 관한 위탁원고를 통해 케이-푸드 수출업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전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면담조사는 설문 항목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이후 본 설문조사를 통해 케이-푸드 수출업체의 비관세장벽 또는 조치 대응 실태와 정책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비관세조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3.3. 연구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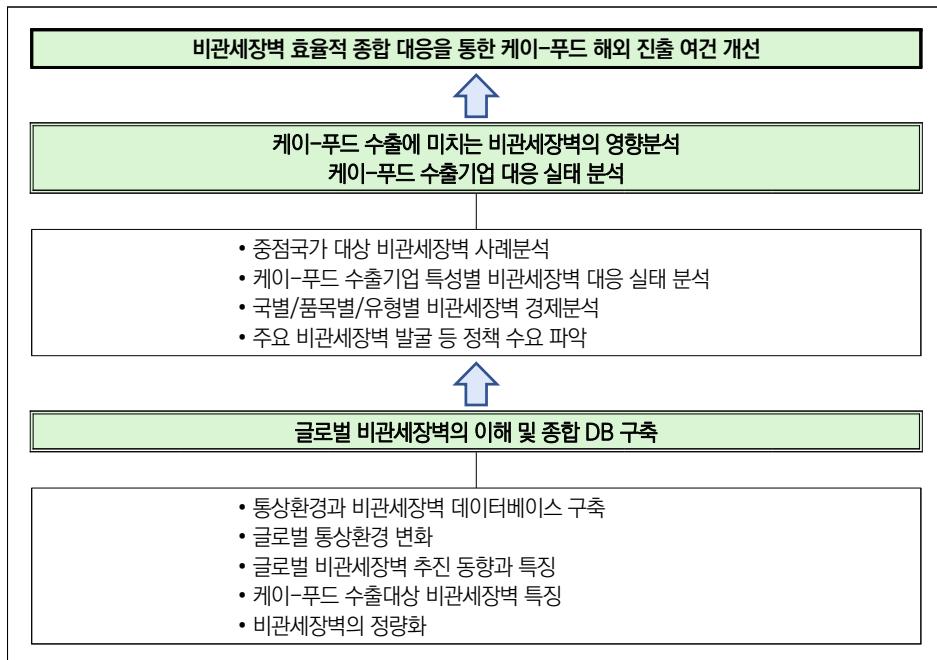
본 연구는 케이-푸드 수출 확대를 저해하는 비관세장벽 또는 조치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 체계를 설정하였다.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그림 1-4>.

첫째, 글로벌 비관세장벽의 이해 및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단계에서는 세계 통상환경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추이를 검토하고, 국가별 비관세조치 추진 동향과 주요 특징을 정리하였다. 또한 케이-푸드 주요 수출상대국의 비관세장벽 또는 조치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비관세장벽 또는 조치 관련 정보를 정량화하여 종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였다.

둘째, 케이-푸드 수출에 미치는 비관세장벽 또는 조치의 영향분석 및 수출기업 대응 실태 분석 단계에서는 주요 교역상대국을 중심으로 한 비관세장벽 또는 조치 사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아울러 케이-푸드 수출업체의 규모, 품목, 수출국 특성 등에 따른 비관세장벽 및 조치 대응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국가별·품목별·유형별로 비관세장벽 또는 조치가 케이-푸드 수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주요 비관세장벽을 발굴하고 정책적 대응 수요를 파악하였다.

셋째, 비관세장벽 또는 조치의 효율적 대응을 통한 케이-푸드 해외 진출 여건 개선 단계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출제한 요인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수출 확대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케이-푸드의 해외시장 진입 여건을 개선하고, 비관세장벽에 대한 체계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림 1-4〉 연구추진 체계



4. 연구 기대 효과 및 활용

본 연구는 단기적으로는 농식품 수출통상정책의 실증적 기반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비관세장벽 또는 조치의 완화 및 해소를 통해 농식품 수출업체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높이며 시장 다변화를 촉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 연구 결과는 정부의 수출지원정책이 단순한 마케팅 중심의 지원을 넘어 제도적·규범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정책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비관세장벽 또는 조치 데이터베이스(DB)는 정부의 대외 수출 리스크 대응 추진방안 중 비관세장벽 대응 강화에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비관세장벽 또는 조치의 개선 협상과 신규 통상 협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케이-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실행 계획 수립의 근거 자료의 역할도 수행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농식품 수출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통상환경 속에서 케이-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시장 확대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장

비관세조치 및 장벽 국제 논의

비관세조치 및 장벽 국제 논의

1. 국제 논의 동향

1.1. 개요⁴⁾

지난 수십 년간 무역자유화는 개발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특히 세계 무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가들이 그 혜택을 크게 누려왔다. 다자·지역·양자 간 무역협상과 차별적 양허 조치는 글로벌 평균 관세율을 실질적으로 낮추는데 기여했고, 시장접근 확대는 국제무역의 급성장과 전 세계적 후생 및 생활 수준의 향상을 이끌었다. 한편 비관세조치(NTMs)의 오남용은 관세 인하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다. 그러나 소비자 후생, 환경 보호, 국가안보 등 정당한 정책 목적을 위해 NTMs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성 또한 존재한다. 그럼에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많은 국가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대체 수단으로 NTMs에 의존해 왔다고 지적한다.

4) 비관세조치(NTMs)는 관세 이외에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의미하고, 비관세장벽(NTBs)은 이 가운데 수출입국에 부담을 주는 무역제한의 성격을 띠는 조치를 의미한다. 본 장에서는 주로 비관세조치 용어를 사용하여 국제 논의 동향을 기술한다.

NTMs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관세보다 더 큰 무역 저해 효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표 2-1>. 특히 복잡한 요건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의 기업들은 NTMs에 더 취약하다.⁵⁾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기업은 무역 인프라와 행정 역량이 부족해 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NTMs조차도 큰 부담이 된다. 수출보조 정책의 미비, NTMs 정보 접근 제한 역시 국제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이에 대한 대응 역량 부족은 시장 접근 기회를 제한하고 세계화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

국가·지역별 규제 강도 차이는 무역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시장에 수출하려는 국가나 기업은 자국의 품질 기준을 개선하고 변화하는 규제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며, 이로써 준수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기술 규정·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가 국제무역 흐름을 불필요하게 저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특히 TBT 협정은 같은 조건에 있는 국가 간 자의적·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한편 품질보증, 국민건강, 안전, 동식물 보호, 환경 보호 등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허용하고 있다(박웅용, 2006).

NTMs는 상품무역에 잠재적 영향을 미치는 다자통상체제의 핵심 과제이다. NTMs가 적법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무역을 왜곡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GATT/WTO 체제 출범 이후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되면서 주요 관심사는 NTMs로 이동해 왔다. 이는 글로벌화에 따른 상호의존성 증대, 소비자 관심 증가, 건강·안전·환경 문제의 부상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 GATT/WTO 체제는 분쟁해결기구와 협상 라운드를 통해 NTMs 관련 이슈를 지속적으로 다뤄왔다. 도쿄 라운드와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는 표준 등 NTMs 관련 규범이 강화되었으며, 기술무역장벽(TBT), 위생검역(SPS) 등과 같은 규제 조치의 투명성 확보는 중요한 국제협력 과제로 부상하였다. NTMs는 공공정책 목적을

5) UNCTAD(2022)에 따르면, NTMs가 적용된 수입 품목 비중은 선진국 75%, 개도국 50%, 최빈개도국 60%이며, 무역액 기준으로는 각각 80%, 70%, 80%에 달한다. 농식품 부문은 규제 강도가 특히 높아 전체 수입 품목의 90~100%가 NTMs의 영향을 받는다. 선진국은 농식품 수입에 평균 13개의 NTMs를 적용하며,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은 각각 10개, 7개 수준이다.

반영하지만, 부차적 무역제한 효과를 유발할 수 있고 개도국 정부와 기업에 구조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GATT/WTO 틀에서 NTMs가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지를 검토한다.

〈표 2-1〉 GATT 협상 라운드

연도	장소	통상 안건	체약국/ 회원국 수
1947	스위스 제네바	관세	23
1949	프랑스 암시	관세	13
1951	영국 토키	관세	38
1956	스위스 제네바	관세	26
1960~61	스위스 제네바 (딜런 라운드)	관세	26
1964~67	스위스 제네바 (케네디 라운드)	관세, 반덤핑조치	62
1973~79	스위스 제네바 (도쿄 라운드)	관세, 비관세조치	102
1986~94	스위스 제네바 (우루과이 라운드)	관세, 비관세조치, 규범, 서비스,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섬유, 농업, WTO 창설	123

자료: 저자 작성.

1.2. GATT/WTO 비관세장벽 논의 동향⁶⁾

다자통상체제에서 비관세조치(NTMs)는 항상 핵심 정책과제 가운데 하나였다. NTMs는 무역을 왜곡하거나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고 합법적인 정책 목표 달성을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러한 기본 과제는 유지되고 있으나 논의의 초점과 구체적 이슈, 해법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 초기 GATT 체제는 국제수지, 고용, 개발 이슈와 연계된 조치에 중점을

6) WTO(2012)의 2장(Trade and Public Policies: A Closer Look at Non-tariff Measures in the 21st Century)과 UNCTAD(2018)의 Part I 2장(Non-tariff Measures and Trade facilitation: WTO Disciplines and Policy Space for Development)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GATT/WTO 규정은 박웅용(2006)을 참고 바란다.

두었지만, 최근에는 기술, 보건, 환경 관련 조치가 주된 관심 대상으로 부상하였다. 과거 NTMs는 정책 설계 과정에서 주로 생산자 관점에서 다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소비자 관점과 다양한 공공정책 목표를 함께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농업·서비스·지식재산권 등 새로운 영역으로 통상 규범이 확장되고, 경제통합이 심화되면서 국내 규제 차이를 둘러싼 새로운 통상 마찰이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등 새로운 이해당사자들이 통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국제규범과 국가 정책주권 간 갈등도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하였다. WTO 다자무역체제는 이런 변화하는 이슈와 압력에 대응하여 과거의 보호주의 지향과 비차별성·투명성 확보에 대해 규제 협력, 상호인정협정, 국제표준의 조화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GATT 출범 이후 초기 수십 년간 회원국들은 관세 양허 및 감축 협상에 주로 집중했지만, NTMs 역시 주요 통상이슈로 인식되었다.

관세 인하 합의의 효과가 다른 무역조치에 의해 상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GATT는 WTO의 전신인 ITO(국제무역기구) 협장 초안에 포함되어 있던 여러 통상정책 조항을 흡수하였다. 그러나 당시 미국 의회는 1945년 상호무역협정 연장권이 ‘관세 및 기타 무역제한의 인하’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이에 회의적 이었다. GATT 일반 규정은 관세 인하 협정을 보완하는 필수 장치로 정당화되면서 간신히 의회를 통과하였다. 1948년 하바나 협장⁷⁾을 통해 ITO 설립이 추진되었지만, 1950년까지 미국이 비준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지자 GATT는 ITO가 맡을 예정이었던 통상정책 역할을 대신 떠맡게 되었다. 다만 GATT는 ITO가 갖추려 했던 조직·절차적 장치와 ‘고용 및 경제활동’, ‘경제개발 및 재건’, ‘제한적 기업 관행’, ‘국제 상품 협정’ 등 일부 규정을 포함하지 못하였다.

7) 1947. 11.~1948. 3. 쿠바 수도 하바나에서 개최된 국제연합무역고용회의에서 채택된 국제무역협장으로서 ITO 협장이라고 한다. 관세 인하 및 특혜관세 폐지, 할당제와 차별대우 금지, 외환통제 철폐, 사적 카르텔 금지, 잉여물자처리법 규제, 수출보조금 폐지, 완전고용 유지, ITO 설립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당시 내용이 지나치게 자유무역의 이상에 치우쳐 조인국의 인준을 받지 못하였다. 이 내용의 일부가 1947년 10월 GATT 규정에 반영되었다(농림축산식품부 국제무역국, 2007).

무역자유화 측면에서 GATT는 관세와 비관세조치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세 사용을 선호하였다. 관세는 재정 확보 수단이면서 보호무역의 한 형태이지만, 보다 ‘공정하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며 협상을 통해 감축하기 용이한 수단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수량제한과 기타 비관세조치는 본질적으로 더 차별적이고 유형이 다양하며, 시장 기능을 더 심하게 왜곡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미국 협상단은 특히 비관세조치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 포괄적 규범 아래 수량제한과 대다수 비관세장벽을 금지하고, 국제 관세 인하 협상을 병행하기를 원하였다. 동시에 미국은 자국 농업 지원 프로그램을 뒷받침하는 할당제·제한조치는 유지하고자 했으며, 다른 국가들 역시 국내 정책 수행을 위해 수량제한, 외환통제, 기타 비관세조치를 활용할 재량을 지키려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과 유럽 국가들은 심각한 국제수지 위기에 직면해 있었고,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진 무역·외환 통제를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재정정책을 중시하는 케인스 경제학과 전시 경제 운영 경험의 영향 아래, 영국은 국내 완전고용 달성을 위해 무역제한조치를 사용할 여지를 확보하려 하였다. 한편 개도국은 더욱 안정적인 국제 상품협정을 설계하고, 국내 개발·산업화 전략에 대한 외부 간섭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하바나 헌장을 둘러싼 ITO 협상은 비관세조치, 특히 수량제한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으로 흐르게 되었다. 이에 각국은 상충하는 국내 목표와 이해관계를 포괄하는 보편적 법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었다.

NTMs의 협상 역사는 복잡하며, 조치 유형도 매우 다양하다. 많은 NTMs는 무역과 간접적으로만 관련된 정책 목적을 지니고 있어 GATT 설계자들은 모든 NTMs를 포괄하는 단일한 종합 규범을 마련하지 못하고 조치 유형별로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였다. GATT의 기본 정책 기조에 따라 일부 비관세조치는 전면 금지되었고, 특히 당시 가장 중요한 비관세조치였던 수량제한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복잡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GATT 제11조(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는 새로운 수량제한 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조치의 철폐를 요구했으나, 여기에 세 가지 주요 예외를 두었다. 첫째, 유럽의 국제수지·통화 문제를 반영해 국제수지 목

적의 수량제한 및 외환통제를 허용하였고(제12~15조) 둘째, 국내가격을 세계시장가격보다 높게 유지하는 특정 농업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수량제한을 인정하였다. 셋째,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는 유치산업 보호, 경제개발, 특정 외환문제 대응을 위한 제한적 예외를 허용하였다. 이외의 NTMs는 비차별성과 최소 무역제한 원칙을 전제로 규율의 대상이 되었다.

GATT의 기본 원칙인 내국민대우는 제3조(내국 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대우)에 명시되어 있으며, 수입 제품에만 적용되는 내국세·부과금을 금지한다. 또한 판매·구매·운송·유통 관련 국내 규정은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GATT는 기술·보건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제3조의 ‘법률·규정 및 요건’은 통상 이들 기준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제20조(일반적 예외)는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정당화하며, 각국이 상품이 자국 기준을 충족하도록 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고, ‘임의적·부당한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10조(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는 수입 관련 법률·규정·판정의 신속한 공표를 의무화함으로써 특정 NTMs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일부 비관세조치는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 일반 규칙이나 ‘행동 강령’만으로는 충분히 다루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와 관련해 GATT 제6조(반덤핑 및 상계관세)는 덤플방지관세와 상계관세를 엄격히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하고, 승인된 목적 달성을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제7조(관세 목적의 평가)는 수입품 관세평가가 임의적·허위 가치에 기초하지 않도록 했고, 제8조(수입·수출 관련 수수료 및 절차)는 행정 수수료를 제한하며 통관절차 단순화를 지향하였다. 제9조(원산지 표시)는 원산지 규칙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차별적 제한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제16조가 통보·협의를 요구하면서 장기적으로 보조금 축소를 지향하는 정도에 그쳤다.

국영무역은 제2조 4항, 제3조 4항, 제17조(국영무역기업)를 통해 규율되었으나, 국영무역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시장 원리에 따른 구매·판매를 요구하는 수준이었다. 관세 인하 약속을 비관세조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GATT는 분쟁해결 규

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23조 제1항(비위반 제소)을 도입하였다. 이는 GATT 의 무 위반이 없는 경우에도 특정 조치나 ‘기타 상황’으로 인해 시장접근 혜택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때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이 조항의 의도적 모호성은 기존 규범의 적용 범위를 넘어서는 NTMs와 향후 등장할 새로운 회피 수단까지 포괄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네바(1947), 안시(1949), 토키(1951), 제네바(1956, 1960~61)에서 열린 초기 다섯 차례 GATT 협상 라운드는 주로 관세 협상과 신규 가입에 초점을 두었다. 다만 1954~55년 검토 회기에서는 비관세조치 관련 일부 조항 개정 의정서가 초안으로 마련되었다. 초기 라운드는 의미 있는 관세 인하를 도출했지만, 많은 회원국이 여전히 NTMs를 사용해 무역개방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되었다. 이는 보호주의적 NTMs와 정당한 NTMs를 명확히 구분하라는 요구를 강화하였다. 당시 상당수 유럽 국가는 여전히 수량제한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국제수지 조절보다는 일본 등으로부터의 수입 경쟁을 제약하는 목적이 점차 강해지고 있었다. 동시에 미국과 캐나다는 반덤핑조치의 확산, 국가별 기술·보건·안전 기준의 자의적 사용에 대한 우려를 키워갔다.

1962년 체결된 섬유류 국제무역에 관한 장기협정(LTA)은 섬유·의류 수출에 대한 복잡한 규제 체계를 도입해 산업계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동시에 미국 정부가 케네디 라운드 협상권을 의회에서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개도국을 중심으로 이러한 자발적 협정이 시장 기능을 약화시키고, 다자무역체제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 밖의 영역에서도 GATT 규정만으로는 NTMs에 대한 국제적 규율이 충분히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GATT 잠정 적용 의정서는 회원국에게 비관세조치 관련 규정을 기존 국내법과 양립하는 범위에서만 최대한 준수하도록 허용했는데, 그 결과 1947년 이전 국내법에 근거한 비관세조치들은 사실상 GATT 규율을 회피할 수 있었다.

1964년 케네디 라운드 개시 당시, 각국 정부는 예외 조항, 잔존 수량제한, 반덤핑, 국영무역, 정부조달, 관세평가, 차별적 수입제한, 국경세조정, 기술·보건 기준 등 폭넓은 NTMs를 다룰 것을 요구하였다. 1963년 사전 회의에서 무역장관들은

관세와 함께 비관세장벽도 협상 대상으로 삼는 데 합의하였다. 캐네디 라운드는 반덤핑 규약(Anti-dumping Code)과 미국 판매가격제도(ASP) 관련 합의를 끌어내는 등 NTMs 규율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였으나, 미국 의회 내 반발로 이들 합의의 국내 이행이 좌초되면서 비관세 분야에서 GATT 규범에 본질적 변화는 가져오지 못하였다.

결국 1973~79년 도쿄 라운드가 GATT 비관세 규범의 개혁·확장을 본격적으로 담당하게 되었고, 이는 캐네디 라운드의 미완 과제를 이어받은 성격을 지녔다. 관세 인하만으로는 시장접근을 보장할 수 없고, NTMs가 관세 약속의 실질적 효과를 약화시키며, 기존 규칙은 NTMs의 비차별성과 최소 무역제한을 확보하기에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미국은 과대 평가된 달러와 유럽공동시장 통합이 자국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였고, 1971년 설치된 국제무역투자위원회는 미국 수출이 해외 비관세장벽으로 크게 제약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NTMs를 포괄하는 새로운 다자협상을 제안하였다. 유럽도 관세평가, ASP 폐지, 반덤핑, 정부조달 등 비관세 의제를 적극 제기하였다. 한편 1967년부터 GATT 사무국은 회원국 역통보를 바탕으로 NTMs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NTMs가 국제무역 규범에서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쿄 라운드는 관세 인하와 더불어 비관세조치에 대한 포괄적 규약(codes)을 도입한 점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규약 가입국 수가 제한적이어서 완전한 다자주의 구현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로 인해 GATT 체제가 이중 구조화되고, 비차별 원칙이 약화되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규약별로 별도 위원회·규정·분쟁절차를 운용한 점 역시 다자체제의 단편화를 초래하였다. 1979년 GATT 결정은 정부조달을 제외한 협정이 최혜국대우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확인하고, 비가입국의 권리 유지와 옵서버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일부 우려를 완화하였다. 그럼에도 도쿄 라운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NTMs에 대응하는 종합적 체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NTMs는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으며, 이는 도쿄 라운드의 성과를 확대·심화하려는 성격을 띠었다.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를 출범시킨 ‘푼

타 텔 에스테 선언'은 수량제한을 포함한 NTMs의 감축·철폐를 명시적 목표로 제시하였다. 특히 일본은 자발적 수출규제 등 관리무역 조치에 대한 GATT 규율 강화를 요구하였다. 미국은 공산품과 농산물의 시장접근 개선뿐 아니라 서비스 수출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통해 보다 포괄적인 NTMs 규범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EC 역시 서비스(GATS)·지식재산권(TRIPS) 규범 강화에 관심을 가졌고, 다수 개도국은 선진국 제조업 시장접근성 개선을 조건으로 새로운 규범 수용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다자섬유협정(MFA) 폐지, 세이프가드 개정, 비차별 규칙 강화 등이 주요 협상 과제로 부각되었다.

우루과이 라운드는 서비스, 지식재산권을 다자규범으로 편입함으로써 NTMs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장하였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그간 예외적 지위를 인정받던 수입쿼터·보조금 등 비관세장벽을 관세로 전환하는 관세화가 이루어졌고, 국내보조·수출보조에 대한 새로운 규율이 도입되었다. 기존 TBT 협정이 개선되고, 농업 관련 기준을 다루는 SPS 협정이 새로 체결된 것도 중요한 성과였다. SPS 협정은 식품 안전과 농산물 무역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협상된 관세·보조금 감축 효과를 잠식할 수 있는 수단으로 SPS 조치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지녔다. 이와 함께 수입허가제, 원산지 규정, 보조금 규칙 강화, 다자섬유협정의 단계적 폐지 등도 추진되었다.

1947년 이후 각 GATT 협상 라운드의 초점과 범위 변화는 NTMs가 여전히 국제무역체제의 핵심 이슈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개별 조치의 상대적 중요성이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음을 시사한다. 초기에는 전시 통제의 잔존과 유럽의 국제수지·달러 부족 문제로 인해 수량제한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 이후 달러 부족이 해소되고 무역·외환 통제가 완화되면서 이 이슈의 비중은 감소했지만, 1960년대 후반까지도 수량제한·수출금지가 전체 NTMs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였다. 도쿄 라운드에서는 생산보조금과 보건·안전 기준 관련 갈등이 새롭게 부상했고,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는 농업·섬유뿐 아니라 서비스·지식재산권 등 국내 규제 영역까지 논의가 확장되었다.

도하 개발 라운드에서는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과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표준, 통관·행정절차가 핵심 NTMs로 다시 부각되었다. 이전 라운드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GATT 제5조(통과의 자유), 제8조(수수료 및 절차), 제10조(투명성) 등 통관·행정·투명성 관련 조항이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논의를 통해 재조명된 것은 비관세 의제의 지속성을 보여준다. 요컨대, 다자무역협상에서 NTMs 관련 의제는 완전히 새로 등장하거나 사라지기보다 환경 변화에 맞추어 형식과 비중을 달리하며 계속 재구성되었다.

NTMs가 WTO 활동에서 점점 더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체제의 실패 라기보다 성공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세계 무역 확대, 경제 간 통합 심화, 통상 규범의 확장·강화는 비관세조치를 국제무역 환경에서 더욱 중요한 요소로 만들었다. 관세 보호 수준이 낮아지면서 일부 국가는 더욱 다양한 형태의 NTMs를 활용하기 시작했고,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건·안전·환경 규제가 확대되면서 이와 연계된 행정절차·준수요건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었다.

NTMs가 WTO에서 다루기 어려운 이슈로 남아있는 이유는 첫째, 조치의 구조적 복잡성과 국가별 특수성 둘째, 전통적인 ‘관세 교환’ 방식의 협상 구조와의 부조화 셋째, 무역과 간접적으로 연계된 국내 정책 목표를 함께 포함한다는 특성 때문이다. 그럼에도 수십 년에 걸쳐 다자무역체제는 비관세조치를 규율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발전시켜 왔다. 여기에는 보호주의적 조치의 금지, 차별적·과도한 무역제한 조치에 대한 제약, 일반·특정 분야에서의 투명성 강화, 국경 간 규제 협력 및 규범 수렴 촉진 등이 포함된다.

향후 GATT/WTO 다자통상체제 아래에서 NTMs 관련 의제는 전면적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보다는 변화하는 환경을 고려해 기존 규범을 정교화 또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WTO 내에서는 무역원활화 및 무역비용 감소를 위해 NTMs를 간소화하고 조화를 추진하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동시에 NTMs가 이행·준수비용을 수반하지만, 경제·사회·환경 등 공공정책 목표 달성에도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회원국들은 규제 비용과 편익 간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NTMs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보장하고, 위장된 보호 수단으로 약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가고 있다.

2. 유형별 비관세조치와 GATT/WTO 협정과의 관계

2.1. 비관세조치 및 장벽 정의와 분류체계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의 확산을 계기로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글로벌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국가마다 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다양한 수입규제조치를 도입하는 등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s)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적으로 통일된 공식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비관세장벽은 교역 물량이나 가격을 변화시켜 잠재적으로 국제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 조치를 통칭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UNCTAD가 개발·발전시킨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 NTMs)와 비관세장벽(NTMs)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NTMs가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 조치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⁸⁾인 반면, NTBs는 이 중에서도 특히 수입제한 효과에 초점을 둔 협의의 개념이다. 이 때문에 NTBs는 NTMs의 하위개념으로 이해되며(UNCTAD, 2023), 무역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보호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이에 WTO 등 국제기구에서는 그 완화 또는 철폐를 권고하고 있다. 반면 NTMs는 단순한 무역제한 수단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보호, 환경 보호, 동식물 위생 및 보건·안전 등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어 반드시 보호주의적인 조치로만 볼 수 없다.⁹⁾

UNCTAD의 비관세장벽 전문가 그룹(Group of Eminent Persons on Non-Tariff Barriers)은 UN FAO, UNCTAD, UNIDO, ITC, OECD, World Bank, WTO 등 7개 국제기구로 구성된 다기관지원팀(Multi-Agency Support Team: MAST)과 함께

8) UNCTAD(2023)에 따르면, 비관세조치는 교역 물량 또는 가격, 또는 두 변수 모두를 변화시켜 국제 상품무역에 잠재적으로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세 이외의 정책 수단으로 정의된다.

9) 특정 국가의 특정 상품에 대한 NTMs의 존재 자체는 특정 국가의 특정 품목에 대한 NTMs의 존재를 의미한다, 즉 특정 국가의 NTMs의 존재 여부는 해당 국가가 더 제한적인 무역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NTMs의 성격, 내용 및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UNCTAD, 2023).

NTMs의 정의와 분류체계를 구축하였다. 현재 NTMs는 15개 수입 관련 조치와 1개의 수출 관련 조치 등 16개 유형(A~P)으로 구분되며, 이를 다시 대분류 89개 조치, 중분류 206개 조치, 소분류 204개 조치, 세분류 24개로 세분화하여 총 427개의 조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표 2-2>. 세부 분류 내용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표 2-2> UNCTAD 비관세조치 분류체계 및 유형별 주요 내용

구분	비관세조치 유형		주요 내용	개수
기술 조치	A	동식물위생조치 (SPS 조치)	물질 및 위생 요건 관련 조치, 질병 확산 방지 조치, 시험·검사·검역 관련 조치 등 식품 안전 관련 적합판정 조치	34
	B	무역기술장벽 (TBT 조치)	라벨링, 기타 환경 보호조치, 인증·시험·검사 등 기술요건 관련 적합판정 조치	23
	C	선적전검사 및 기타형식	선적전검사, 선적 이전 수출국에서 수행된 기타 형식	5
수입 조치	D	조건부 무역보호조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불공정무역 관행 등 수입국 시장에서 수입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특정 조치,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13
	E	비자동수입허가, 쿼터금지, 수량통제	허가, 쿼터 등 무역량을 제한하는 조치, SPS·TBT와 무관한 허가 및 수입금지 조치	38
	F	가격통제조치 (부가세 및 과징금)	i) 수입재화의 가격이 낮을 때 특정 품목의 국내 가격을 지지하기 위해서, ii) 국내시장의 가격 변동성·해외시장의 가격 불안정성으로 특정 품목의 국내가격을 통제하기 위해서, iii) 조세수입을 늘리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수입재화의 가격을 통제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관세 이외의 가격통제조치	24
	G	금융조치	외환 규제 시 수입대금 결제를 제한하는 조치	14
	H	경쟁조치	하나 이상의 경제주체에 독점적 특권을 제공하는 경쟁조치, 국영무역, 단독수입대행기관, 독점적 국가 서비스 또는 운송 이용	6
	I	무역투자조치	수출입 균형 조건 투자 요청이나 현지조달 요구에 의해 투자를 제약하는 무역 관련 투자조치	3
	J	유통제한	수입재화의 국내 유통 관련 제약조치	4
	K	판매 후 서비스 제한	부속품 서비스 규정에 대한 제약조치	3
	L	보조금 및 기타 보조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관련 조치	91
	M	정부조달 제한	외국인 입찰자에 대한 정부조달 제한조치	51
수출 조치	N	지식재산권	지식재산 조치 및 권리 관련 제한조치	41
	O	원산지 규정	완제품 또는 중간재의 원산지를 제약하는 조치	44
P	수출 관련 조치	수출세·수출쿼터·수출금지 조치 등 수출에 부과된 모든 제한조치	27	
소계	16개 유형			427

주: 수출조치(P)는 수출국 정부가 수출품에 적용한 조치로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남.

자료: UNCTAD(2019)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WTO는 NTBs를 크게 무역구제조치, 기술적 조치, 기타 무역제한조치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표 2-3>. 무역구제조치에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및 특별세이프가드가 포함되며, 기술조치에는 SPS(위생검역조치), TBT(기술적 무역장벽) 조치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기타 무역제한조치에는 통관 제도 및 절차, 수입금지 및 허가제, 수량제한, 가격통제, 정부조달, 투자 및 서비스장벽,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조치를 포괄한다. WTO 회원국들은 NTBs가 투명하고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협정문 부속서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위장된 보호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다.

<표 2-3> WTO 비관세장벽 분류체계

대분류	소분류
무역구제조치	반덤핑관세(ADP) 상계관세(CVD) 세이프가드(SG), 특별세이프가드(SSG)
기술조치	기술적무역장벽(TBT) 위생검역조치(SPS)
기타 무역제한조치	통관 제도 및 절차, 수입금지 및 허가, 수량제한, 가격통제, 정부조달, 투자 및 서비스장벽, 지식재산권 등

자료: WTO(2024)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974년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1985년부터 매년 국별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정례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 내 기업·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의견을 토대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약 60여 개 주요 교역상대국의 무역 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산업통상부 보도참고자료, 2025. 4. 1.). NTE 보고서는 해외 무역장벽을 14개 유형으로 구분한다. 이들 항목은 상품·서비스 교역뿐 아니라 해외 직접투자, 전자상거래 등 국제 교역을 제한·방해·지연하는 다양한 조치와 정책을 포괄하고 있다 <표 2-4>.

〈표 2-4〉 NTE 보고서의 유형별 무역장벽

유형		세부 유형
1	수입정책	관세 및 기타 수입세, 수량제한, 수입허가제, 세관 장벽 및 무역 원활화의 미비점, 그리고 기타 시장접근 장벽들
2	기술무역장벽 (TBT 조치)	불필요하게 무역을 제한하는 기준, 적합성 평가 절차 또는 기술 규정 - 여기에는 통신 제품에 대해 불필요하거나 차별적인 기술 규정이나 기준이 포함
3	위생검역조치 (SPS 조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적용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거나 충분한 과학적 증거 없이 유지되어 안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불필요하게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들
4	정부조달	국산품 구매 정책 및 폐쇄형 입찰 제도
5	지식재산권	부적절 특허, 저작권, 무역비밀, 상표권, 지식재산권 부적절 집행
6	서비스장벽	해외시장 진입 금지 및 제한, 차별적 허가요건 또는 규제표준, 특정 지역 요건, 비합리적 협약
7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장벽	국경 간 데이터 흐름에 대한 장벽, 디지털 제품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차별적 관행, 인터넷 기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제한, 그리고 기타 제한적인 기술 요건들
8	투자장벽	외국 자본 참여에 대한 제한, 외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연구개발(R&D)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제한, 현지조달 요건, 기술 이전 요건 및 수출 실적 요건, 그리고 수익·자본·수수료 및 로열티의 본국 송환에 대한 제한
9	보조금(수출보조포함) 및 수입대체 보조금	• 제3국 시장에서 미국의 수출을 대체하는 우대 조건의 수출금융 및 농업 수출보조금 • 수입품이 아닌 자국산 제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조건으로 제공되는 보조금
10	시장 경쟁 제한 관행	외국 시장에서 미국산 재화 또는 서비스의 판매나 구매를 제한하는 국영기업 또는 민간기업의 반경쟁적 행위를 해당 정부가 묵인하거나 무역을 저해하기 위해 경쟁법을 남용하는 행위, 그리고 해당 국가의 경쟁 관련 조사 및 집행 절차에 참여한 기업들이 겪는 공정성과 적법 절차에 대한 우려
11	국영기업	미국 기업과 노동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의 전자상거래, 투자, 재화와 서비스 수출에 중대한 장벽이나 왜곡을 초래하는 서비스의 공급 또는 비농산품 제조 및 생산과 연계된 국영기업(SOEs)에 대한 정부에 의한, 그리고 SOEs에 의한 조치 - 이러한 조치에는 국영기업(SOE)에 제공되거나 SOE로부터 제공되는 보조금 및 비상업적 혜택, 미국산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SOE 관련 관행, 그리고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 및 판매에 있어 상업적 판단에 부합하지 않는 SOE의 행위가 포함
12	노동	어떤 정부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거나 고용 또는 직업에 있어 차별을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실태가 무역 흐름이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쳐 미국의 재화 및 서비스 수출, 미국의 투자 또는 미국의 전자상거래에 중대한 장벽이나 왜곡을 초래하여, 이로 인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사항
13	환경	정부의 환경 보호 수준, 지속가능하지 않은 천연자원 관리, 그리고 해로운 환경 관행이 미국의 재화 및 서비스 수출, 미국의 투자 또는 미국의 전자상거래에 중대한 장벽이나 왜곡을 초래하여 미국 기업이나 노동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사항
14	기타 장벽	위 1~13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거나, 뇌물수수와 부패와 같은 하나 이상의 유형에 걸쳐 있는 또는 단일 산업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장벽 또는 왜곡

자료: USTR(2025)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2.2. 유형별 비관세조치와 GATT/WTO 협정¹⁰⁾

본 절에서는 UNCTAD 분류체계에 따른 비관세조치(NTMs)를 WTO 규범과 연계하여, WTO 협정에서 비과세장벽(NTBs)이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통상 규범 관점에서 유형별 NTMs와 관련된 WTO 협정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2.2.1. 비관세조치 A 유형(SPS 조치) – WTO SPS 조치

WTO 다자 협정 중 하나인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은 GATT 제20조(b)항의 일반적 예외 규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회원국이 인간·동물·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타국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야기하거나 무역제한을 위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며, 과학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무역제한 수준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율을 통해 SPS 협정은 국민건강과 농업·생태계 보호라는 공익을 보장하면서도 회원국 간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WTO SPS 조치의 적용 범위에는 식품 안전, 동물·식물 위생과 직결되는 다양한 규정과 절차가 포함된다. 여기에는 제품 기준, 생산 및 제조 방식, 시험·검사·인증·승인 절차, 검역 처리, 관련 통계 및 위험 평가 방법, 그리고 식품 안전과 직접 연관된 포장·라벨링 요건 등이 모두 해당된다. SPS 협정의 기본 원칙은 조치가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무역제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무역을 제한할 의도로 마련된 위장된 조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협정은 국제 기준 준수, 위험 평가, 상호인정 협상, 정보 투명성 확보 등 다양한 운영 원칙을 제시한다.

10) UNCTAD(2018)의 내용을 보완·정리하였다. GATT/WTO 규정은 박웅용(2006) 참고 바란다.

특히 SPS 협정은 국제표준의 활용을 강하게 권장한다는 점에서 TBT(무역기술장벽) 협정보다 더욱 엄격한 접근방식을 취한다. SPS 관련 국제 기준을 제정하는 주요 기구로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등이 있다. 회원국은 이들 기구의 기준·지침·권고안을 가능한 한 국내 조치 설계에 반영하도록 요구된다. WTO 회원국은 SPS 조치를 도입할 때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생산 및 제조 방식, 검사·샘플링 방법, 질병 및 해충 발생률, 환경 조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위험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조치가 방지하고자 하는 질병의 특성과 이에 따른 생물학적·경제적 영향, 그리고 해당 질병의 유입·정착·확산 가능성을 평가하는 과정도 포함되어야 한다. 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예외의 경우 예방 원칙을 적용하여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SPS 협정은 조치의 상호인정을 통한 무역원활화도 촉진한다. 협정 제4조에 따라 수출국이 자국의 SPS 조치가 수입국의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수입국은 이를 인정해야 하며 양국 간 동등성 인정 협상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권장된다. 또한 적합성 평가 절차는 비차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관련 기준·절차의 투명한 공개, 기밀 보장, 이의 제기 절차 마련 등도 요구된다. 아울러 회원국은 TBT 협정과 동일하게 SPS 관련 문의처를 지정하고, 타 회원국의 질의에 대응하며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국제 기준과 다른 새로운 SPS 조치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WTO 사무국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특정무역현안(STCs)으로 SPS 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여 회원국 간 논의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SPS 협정은 개발도상국의 이행 여건을 고려한 특례 조항을 포함한다. SPS 위원회는 개발도상국에 대해 일정 기간 의무 이행을 유예하거나 예외를 인정할 수 있으며, 최빈개도국의 경우 협정 발효 후 상당 기간 동안 의무 적용이 유예된 바 있다.

2.2.2. 비관세조치 B 유형(TBT 조치) – WTO TBT 조치

WTO 기술무역장벽(TBT) 협정은 회원국이 의무적인 기술 규정이나 적합성 평가 절차를 도입할 때 따라야 할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협정이다. 이 협정은 상품과 관련된 기술규제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회원국이 소비자 보호, 환경 보전, 건강 및 안전 확보 등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TBT 협정은 회원국이 기술규제와 평가 절차를 자율적으로 도입할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로 인해 무역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구조는 WTO의 기본 이념인 무역 원활화와 밀접하게 연계된다.

TBT 협정은 비차별성, 최소 제한성, 성능 기반 규정 권장, 국제 기준 활용, 절차적 투명성 등 다양한 원칙을 토대로 무역 촉진과 공공정책 목표 간의 균형을 달성하도록 요구한다. 첫째, 비차별성 원칙에 따라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는 내국 제품과 외국 제품을 동일한 조건 아래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 둘째, 최소 제한성 원칙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 범위 내에서 규제를 설계하도록 요구하며, 과도한 규제로 인해 무역이 불필요하게 저해되는 상황을 방지한다. 셋째, 성능 기반 규정 설정이 권장되며, 이는 제품의 설계나 외형이 아니라 기능·성능을 기준으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제품의 특정 온도 유지 기능이나 단열 성능 수준을 규정하는 방식이 이에 해당한다.

국제표준의 활용 또한 TBT 협정의 중요한 요소이다. 동 협정 제2조 4항(중앙정부기관에 의한 기술 규정의 준비·채비·적용)은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기술 규정의 기반으로 삼을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기후적·지리적·기술적 특성 등으로 인해 국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된다. WTO 판례 역시 회원국이 국제 기준과 다른 규범을 채택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다. 적합성 평가와 관련하여 TBT 협정은 회원국 간 상호인정을 적극 장려한다. 수출국의 적합성 평가 결과가 수입국의 보호 수준과 동등하다는 점이 확인되면 수입국은 이를 인정해야 한다. 또한 국가 간 기술장벽을 줄이기 위해 외

국 인증기관의 참여를 차별 없이 허용해야 하며, 국내 인증기관만을 인정하는 배타적 운영은 금지되고 있다.

아울러 협정은 국제 기준과 실질적으로 서로 다른 기술 규정을 도입하려는 경우 WTO에 사전 통보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다른 회원국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수출업체가 새로운 규정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와 함께 각 회원국은 국가 단위의 문의처(Enquiry Point)를 설치하여 새롭게 제정되거나 제안된 기술 규정, 적합성 평가 절차, 관련 조치 등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

〈표 2-5〉 SPS와 TBT 규정 주요 내용

구분	SPS 협정	TBT 협정
적용 범위	인간·동물·식물의 건강 보호에 필요한 규제에 한정	모든 산업 제품포함 (환경 보호, 소비자안전 등 광범위)
기준 성격	과학 기반위험 평가 기반 규제강조	성능 기준 기반 기술 규정 권장
포함 대상	생산공정, 검역, 잔류물질 등 포함	의무 규정과 자율적 표준 모두 포함

자료: 저자 작성.

2.2.3. 비관세조치 C 유형(선적전검사 및 기타 형식) – WTO 선적전검사

WTO 선적전검사(PSI) 협정은 수출국에서 물품이 선적되기 전에 전문 검사기관이 해당 상품의 수량, 가치, 품질 등을 점검하는 절차를 규율한다. 이러한 PSI 제도는 수입국 정부가 과대·과소 송장 발행을 방지하고, 물품의 품질 및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세수 누수 및 관세 탈루를 억제하고, 무역 사기와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특히 세관 역량이 부족하거나 부패 문제가 상존하는 국가에서 PSI 제도가 빈번하게 도입되는 경향이 있다. PSI 조치가 도입된 배경에는 세관 행정의 전문성 부족, 정부 기관 내부의 부패나 이해관계 개입 가능성, 수입 품목의 정확한 가격·수량 확인에 대한 행정적 한계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런 PSI는 제도와 행정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환경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

WTO PSI 협정은 PSI 제도를 운영하는 회원국에 대해 몇 가지 핵심 기준을 제시한다. 첫째,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PSI는 객관적이고 비차별적으로 시행되어 모든 수출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둘째, 가격 검증 방식에 있어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 같은 수출국에서 비슷한 시기에 판매된 가격을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하며 국내 판매가 기준, 타 수출업체 가격, 생산원가, 임의 기준가격 등은 사용을 금지한다. 셋째, PSI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다룰 수 있는 불복 절차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한편 2013년 제정된 WTO 무역원활화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 TFA)은 PSI의 신규 도입에 관한 제한을 포함한다. TFA는 기존에 PSI를 운영하지 않던 국가가 이를 새롭게 도입해 상품 분류나 가격평가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PSI가 단기적으로는 세금 회피 및 부패 방지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세관 제도의 제도적 강화가 보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라는 판단에 기반한 것이다. 즉 세관 당국의 고유한 권한과 제도적 역량을 회복하고 관세 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TFA의 PSI 금지 규정이 특정 상황(특히 부패가 심각한 국가)에서 오히려 무역 원활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PSI는 여전히 효과적인 감시·검증 수단으로 기능할 여지가 존재한다는 시각이 공존한다.

〈표 2-6〉 선적전검사 규정 주요 내용

항목	내용
목적	과세 누락 방지, 사기 및 부패 방지, 상품 기준 확인 등
대상	수출 예정 상품에 대한 제3기관의 사전 검사
WTO 규정	공정성, 투명성, 비차별성, 가격 검증 기준, 이의 제기 절차 보장
TFA 조치	기존 PSI 제도 없는 국가는 신규 도입 금지(분류·평가 목적에 한함)

자료: 저자 작성.

2.2.4. 비관세조치 D 유형(조건부 무역보호조치) – WTO 무역구제조치

WTO 협정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회원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무역 의무 이행을 중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에는 ①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하는 반덤핑 조치(Anti-Dumping), ② 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③ 국가의 대외 지급불능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국제수지 조치(Balance-of-Payments Measures), ④ 특정 품목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거나 위협할 때 발동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 등이 있다. WTO는 회원국의 산업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되,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발동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특히 제도적 역량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은 높은 요건으로 인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며, 역량 강화가 필요한 영역으로 지적된다. 그럼에도 이러한 제도들은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국내 산업 안정화와 국제무역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

반덤핑 조치는 수출가격이 수출국의 내수 가격, 생산비용 또는 제3국 판매가격 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 적용되며, WTO 규정에 따라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발동할 수 있다. 반덤핑관세는 원칙적으로 최대 5년간 유지할 수 있으며, 재검토 조사에서 덤핑과 피해가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덤피ング마진이 2% 미만이거나, 피해가 경미하거나, 해당 수입품의 시장점유율이 3% 미만인 경우에는 조치를 부과할 수 없다. 이러한 엄격한 기준은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로 기능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이 제도를 무리하게 활용하기 어렵게 하는 구조이기도 하다. 장기적으로는 무역 질서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의 존재뿐 아니라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와 보조금 지급 간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피해 판단 시 수입 증가 추세, 가격 하락 또는 국내 가격 인하 압력, 산업 전반에 대한 영향 등이 고려된다. 조

사 과정에서는 증거 수집 절차,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장, 피해 판정 기준의 명확성, 사법적 검토 가능성 등 엄격한 절차적 요건이 요구된다. 상계관세 역시 최대 5년 간 유지가 가능하며, 연장 시 보조금 및 피해의 계속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국제수지 조치는 GATT 제12조(국제수지 보호), 개발도상국은 GATT 제18조 B절(경제개발 지원) 및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12조(국제수지 보호)에 근거한다. 과거에는 국제수지 악화를 이유로 수입제한이 비교적 빈번히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환율 조정과 거시경제 정책이 더욱 적절한 대응 수단으로 간주되면서 활용 빈도가 크게 감소하였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양적 제한 축소와 감시 강화가 이루어지며, 수입부과금·예치금과 같은 가격 기반 조치가 상대적으로 선호되고 있다. 양적 제한은 엄격히 제한되며, 다만 필수 소비재나 생산재와 같은 품목은 예외적으로 조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조치 도입 시에는 4개월 이내 WTO 국제수지위원회와의 협의가 의무화되어 있다.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는 ①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 발동되며, ② 철저한 조사, 공청회 실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③ 산업 전반의 실질적·심각한 손상을 확인해야 하며, 수입 증가와 피해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세이프가드는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국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만 급증하는 경우 쿼터 조정을 통해 차등적 조치가 가능하다. 조치 기간은 원칙적으로 4년이며, 최대 8년까지 연장이 허용된다. 연장하면서 국내 산업이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긴급 상황에서는 잠정조치를 즉시 발동할 수 있으며, 이는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제6조(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근거한다.

〈표 2-7〉 수입규제조치 협정 주요 내용

조치 유형	주요 목적	발동 조건	기간
반덤핑	덤핑 피해 상쇄	실질적 피해 입증	5년(연장 가능)
상계관세	보조금 피해 상쇄	보조금+피해+인과관계 입증	5년(연장 가능)
국제수지 조치	대외 지급불능 방지	국제수지 악화	임시적, WTO 협의 의무
세이프가드	수입 급증 피해 방지	심각한 피해 또는 우려	4년(최대 8년)

자료: 저자 작성.

2.2.5. 비관세조치 E 유형(수량제한조치) – WTO 수입수량제한

WTO는 수출입에 대한 수량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도입된 포괄적 관세화와 관세 중심의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핵심 규범이다. 이러한 원칙은 GATT 제11조(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WTO 체제에서 수량제한은 철저히 금지되며, 회원국은 무역 규제를 필요로 할 경우 관세 또는 SPS·TBT 조치 등 합법적이고 투명한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수입허가제도의 운영 자체는 허용되지만, 그 목적과 절차는 반드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GATT 제11조는 회원국이 수출 또는 수입 과정에서 쿼터, 허가제, 기타 어떠한 방식의 조치라도 관세 및 조세를 제외한 형태의 금지나 제한을 부과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즉 수출·수입 모두에 대해 수량적 제한을 금지하며, 이러한 조치에는 수입수량제한, 가변수입부과금, 최소수입가격, 임의적 수입허가, 국영무역을 활용한 비관세조치, 수출자율규제 등 다양한 형태의 제한이 포함된다. 제11조는 특정 조치가 차별적인지 아니면 비차별적인지를 불문하고 원천적으로 수량제한 자체를 금지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수량제한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하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WTO 판례에 따르면, 국경에서 집행되는 국내 규제나 특정 산업 내에서의 생산할당제와 같은 국내 생산량 제한은 GATT 제11조에서 금지하는 수량제한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제11조가 국경을 통한 교역 제한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반영한다.

수량제한의 우회적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WTO는 수입허가절차 협정(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s: ILP 협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이 협정은 수입허가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고, 허가요건·유효기간·심사기준·이의제기 절차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규정한다. ILP 협정은 수입허가제가 사실상 정량적 제한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고, 회원국 간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 2-8〉 수입수량제한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기본 원칙	GATT 제11조: 수입·수출에 대한 정량적 제한 금지
금지 대상	수출자율규제, 수출절제, 가격 모니터링, 수출·수입 감시, 의무적 수입 카르텔, 재량적 허가제
예외	국경 규제(TBT/SPS), 국내 생산 할당제
보완 협정	수입허가절차협정 → 투명성·예측 가능성 보장, 차별적 제한 방지

자료: 저자 작성.

2.2.6. 비관세조치 F 유형(가격통제조치) – WTO 가격통제/준관세

WTO 체제에서 회원국은 관세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수수료 및 기타 부과금을 사용하는 데 엄격한 제약을 받는다. 외환거래세, 수입업자 대상 서비스 수수료, 특별 수입부과금 등은 대표적인 준관세(para-tariffs)¹¹⁾이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재정수입의 주요 원천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WTO 규범은 이러한 준관세 조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하며, 회원국은 이를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가격통제조치가 최혜국대우 원칙을 충족하는 조건에서 허용될 수 있으나 무역제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최소수입가격제도는 WTO 규정 위반 가능성이 높아 관세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WTO의 기타 부과금 규정과 관련하여 GATT 제2조(양허표)는 모든 기타 부과금과 수수료의 성격 및 부과 수준을 품목별 양허표(schedule)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회원국의 정책 재량은 제한되며, 양허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실제로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나 과징금은 예외로 취급되며, 서비스 제공 비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제2조 2(c) 항). GATT 제8조(무역 관련 수수료 및 절차)는 무역과 관련된 행정 서비스 수수료

11) 준관세(para-tariffs)는 외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관세’가 아닌 국경세나 수수료로서, 관세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며 오직 수입품에만 부과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국내산 동종 제품에도 동일하게 부과되는 간접세나 부담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특정 서비스 제공에 상응하여 부과되는 수입수수료는 부가관세 조치로 간주되지 않는다(Law Insider, 검색일: 2025. 9. 24.).

가 제공된 서비스의 실제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보호주의적 목적이나 수출입에 대한 간접 과세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적용 대상에는 영사송장·증명서 발급, 통계·허가·수량제한 관련 절차, 외환통제, 문서작성 및 인증, 분석 및 검사, 검역 및 소독 등 다양한 정부 행정 서비스가 포함된다. 즉 정부가 수출입 과정에서 부과하는 절차·요건·수수료 전반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가격통제는 특정 조건 아래 허용되지만, WTO 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특정 상품에 대해 최고가격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수입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최혜국대우 원칙을 충족하고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한 WTO 협정과 양립될 수 있다. 다만 가격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외국 기업이 정상적인 이윤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수입이 중단될 위험이 있으므로 정책 설계 시 주의가 필요하다. 최소수입가격을 설정하려면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GATT 제11조(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는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 원칙에 따라 관세·조세·과징금 이외 모든 형태의 수량적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최소수입가격은 WTO 위반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가격을 보전하기 위한 추가 부과금 역시 양허표에 기재된 관세 수준 이내에서만 허용된다. 농산물의 경우에는 농업협정(AoA)이 적용되며, 최소 수입가격 대신 관세 부과 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표 2-9〉 가격통제 및 준관세 주요 내용

구분	WTO 규율	허용 범위
준관세	GATT 제2조 및 제8조에 의해 규제	실제 서비스 비용 연동 수수료 허용
최고가격	국내외 기업에 동일 적용 시 허용	외국 기업의 시장 진입 차단 위험 존재
최소수입가격	원칙적으로 금지	단, 관세 인상 방식으로 대체 가능 (농산물은 농업협정 규율)

자료: 저자 작성.

2.2.7. 비관세조치 G 유형(금융조치) – WTO 상품대금 결제에 대한 지불제한

국제무역에서 상품대금의 지급과 송금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 영역의 기본 규율은 WTO가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이 담당한다. 즉 통화 및 환율 정책은 WTO의 규율 범위를 벗어나며, IMF 협정 제8조 제2(a)항(가맹국의 일반적 의무: 경상지불에 관한 제한의 무효)은 회원국이 IMF의 승인 없이 국제 거래와 관련된 지급·송금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급·송금 규율에서는 IMF와 WTO의 역할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한다. IMF는 지급 및 송금 제한의 기본 원칙을 설정하고, WTO는 최혜국대우(MFN)를 통해 차별적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적 규율을 제공한다. 따라서 회원국은 무역대금 결제 관련 정책을 설계할 때 IMF 승인 여부와 WTO의 차별금지 원칙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IMF 규율이 존재하더라도 회원국에는 일정한 정책적 재량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국제 거래 대금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제출 요구, 특정 지급 방식이나 채널을 통한 송금 의무 부과, 무역업자 또는 기업에 대한 등록요건 설정 등이 가능하다. 또한 거주자에게 외화를 당국에 반납하도록 요구하는 외화 반납 의무도 도입할 수 있다. WTO는 회원국이 경상거래와 관련한 지급·송금의 가능성은 보장 할 것을 요구하지만, 환율 통제나 외환 규제를 전면 철폐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일정 수준의 외환 관리 권한은 회원국이 유지할 수 있다.

비록 지급·송금과 관련한 주요 규율은 IMF가 맡고 있지만, WTO의 기본 원칙 역시 적용된다. 특히 최혜국대우(MFN) 원칙은 결제·송금 제도에도 유효하므로, 특정 수입 또는 수출 거래에만 외환 수수료나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 이는 비관세장벽(NTBs)으로 간주되며 WTO 규범 위반에 해당한다. 모든 거래에 동일하게 적용될 때만 정당화할 수 있으며, 국제수지 보호조치를 내세워 차별적 외환 수수료를 정당화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IMF와 WTO 규범은 서로 다른 영역을 담당하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회원국은 두 제도의 정합성을 고려한 정책운영이 요구된다.

〈표 2-10〉 상품대금 결제에 대한 지불제한 주요 내용

구분	규율 기관	주요 내용
통화·환율 정책	IMF	WTO 규율 비대상
지급·송금 제한	IMF 협정 제8조	IMF 승인 없이 제한 불가
재량 가능 조치	회원국	서류 제출, 특정 지급 방식 강제, 기업 등록, 외화 반납 의무 등
WTO 규율	MFN 원칙 적용	특정 거래에만 수수료 부과 시 불법 NTBs로 간주

자료: 저자 작성.

2.2.8. 비관세조치 H 유형(경쟁조치) – WTO 국영무역 및 국영무역기업

국영무역과 국영무역기업은 특정 상품의 수입·수출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거나, 국내 구매자 및 국제시장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독점적 권한을 보유함으로써 무역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영향력은 자칫 특정 국가 또는 기업을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WTO는 국영무역이 최혜국대우 등 비차별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엄격한 규율을 마련하고 있다. 국영무역기업에 관한 핵심 규정은 GATT 제17조(국영무역기업)이다. 이 조항은 회원국에 자국 내 국영무역기업이 차별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를 부과한다. 국영무역기업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세부 규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수입 독점권을 설정·유지하거나 승인하는 회원국의 의무이다. 상대국이 특정 제품의 교역에서 중요한 이해관계를 보유한 경우, 해당 회원국은 그 제품의 수입 마진(Mark-up) 또는 불가한 경우 재판매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제17조 4(b)항). 이는 국영무역의 운영이 비밀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이다. 둘째, 수입·수출 거래에 참여하는 국영기업·마케팅보드·독점권 부여기업 등은 반드시 비차별적 기준에 따라 구매·판매 거래를 수행해야 한다(제17조 1(a)항). 거래 기준은 상업적 고려에 근거해야 하며, 정치적·비상업적 이유로 특정 국가나 기업을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다. 셋째, 정부의 감독 의무가 명시된다. 회원국 정부는 자국 관할 내 국영무역기업이 비차별 원칙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관리·감독 조치를 마련해야 한

다(제17조 1(c)항). 이는 국영기업이 비차별적 운영을 이행할 책임이 단순히 기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도 제도적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국영무역기업이 부과하는 가격 마진도 WTO 규율 대상이다. GATT 제2조(양허표) 4항에 따르면, 국영무역기업이 판매 과정에서 부과하는 마진은 관세와 동일하게 양허표에 명시되어야 한다. 일단 양허(binding)된 경우, 해당 마진은 관세상 당치(Tariff Equivalent)를 초과할 수 없다. 이는 국영무역기업이 사실상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우회 수단으로 마진을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표 2-11〉 국영무역 규정 주요 내용

구분	규율 내용
기본 원칙	국영무역기업은 MFN 원칙에 따라 차별적이지 않는 운영 의무
수입 독점	교역상대국 요청 시 수입 마진·재판매 가격 정보 제공
거래 행위	상업적 고려에 따라 수행, 차별 금지
정부 의무	기업이 비차별 원칙을 준수하도록 보장
가격 마진	관세와 동일하게 스케줄링, 구속된 수준 초과 불가

자료: 저자 작성.

2.2.9. 비관세조치 | 유형(무역투자조치) – WTO 현지조달 및 무역 관련 투자조치

무역 관련 투자조치(TRIMs)는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특정 형태의 국내 조달이나 교역 조건을 부과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현지조달 요건이 있으며, 이는 기업이 사용하는 투입재의 일정 비율을 국내 생산품으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조치는 외국산 투입재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관세 또는 수량제한과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키며, GATT 제3조(내국민대우)의 비차별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TRIMs 협정은 이러한 투자 관련 교역 제한 조치를 명확히 규율하고 있다. 협정은 현지조달 요건, 수입·수출 균형 요건, 외환균형 요건, 국내 판매 요건 등을 금지 대상 조치로 열거한다. 회원국은 이러한 조치를 폐지해야 하며, 이행 기간은 선진

국 2년, 개발도상국 5년, 최빈개도국 7년으로 규정되어 있다(TRIMs 제5조 2항). 또한 국내산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보조금 역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SCM 협정) 제3조에서 금지되고 있다. 다만, 최빈개도국과 일부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제한적 예외가 허용된다.

TRIMs 협정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이행 유예 및 연장 규정이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한다. TRIMs 제5조 3항은 회원국이 무역·재정·개발상의 필요성을 근거로 이행 유예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시장 개방 과정에서 많은 개발도상국이 장기적 유예기간을 요구해 왔으며, 도하 개발 아젠다(DDA) 협상에서도 관련 논의가 지속되었다. 개발도상국들은 특히 ① 제5조 제2항의 이행 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② 부속서에 규정된 성과요건(현지조달, 균형 요건) 모두를 면제할 것, ③ 새로운 규율이나 금지 항목을 추가하지 말 것, ④ 제5조 제3항에 따른 유예 연장 신청을 자동 승인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처럼 TRIMs 협정은 무역·투자 연계 분야에서 비차별 원칙과 시장접근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범적 장치를 제공하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의 산업정책 필요성과 규범 준수 간의 균형 문제가 여전히 핵심 쟁점으로 남아있다.

〈표 2-12〉 무역 관련 투자조치 협정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TRIMs 정의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내 조달 의무·장려
대표적 조치	현지조달, 무역균형, 외환균형, 국내 판매 요건
협정 규율	GATT 제3조(내국민대우), 제11조(수량제한 금지) 위반 → 금지
폐지 기한	선진국 2년, 개발도상국 5년, LDC 7년
보조금 연계	국내산 사용 조건부 보조금도 금지(SCM 협정)
개도국 입장	무제한적 연장, 성과요건 면제, 추가 규율 반대, 자동 승인 요구
사례	태국·말레이시아는 TRIMs와 SCM 협정의 규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산업정책을 활용하여 자동차산업 발전과 성장을 촉진 → WTO 규율 속에서도 산업정책 운용 여지가 존재

자료: 저자 작성.

2.2.10. 비관세조치 J 유형(유통제한) – WTO 수입 품목 유통

정부는 특정 상품에 대해 수입 독점 또는 의무적 수입허가제를 도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는 해당 상품의 국내 유통경로와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영역에서 적용되는 WTO의 핵심 규범은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를 포함한 비차별 원칙이다. 독점적 유통 구조의 혜용 여부와 그 범위는 국가가 채택하는 권리소진 원칙에 따라 달라진다. 국내 권리소진 채택 시 병행수입이 제한되어 수입 억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만, 국제 권리소진 채택 시 병행수입이 혜용되어 시장 경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독점 유통이 단일가격제보다 더 낮은 가격을 초래하는 경우 소비자 후생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정부 정책 외에도 민간 부문의 유통 관행 역시 NTMs로 작용할 수 있다. 유통·공급망에서의 독점 계약 관련, 특정 제조업체가 유통업자에게 자사 제품만을 취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경쟁 기업의 시장 진입이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실제 반경쟁적 행위인지는 시장 구조·대체 유통망 확보 가능성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WTO 규범은 민간기업 간의 이런 독점적 유통 계약을 직접 규율하지 않으며, 기업의 전략적 결정의 범주로 간주된다. 독점 유통이 지식재산권(IPR) 보호와 결합하는 경우 그 정책적 의미가 더욱 커진다.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제28조(허가된 권리)는 특허권자에게 제품의 생산·사용·판매 및 수입을 제3자 동의 없이 수행하지 못하도록 할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의 양도·승계·라이선스 계약 체결 권리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권리소진 원칙을 채택하는 경우 특허권자는 국내 독점 유통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고, 세관 당국은 권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병행수입을 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실질적으로 수입제한적 NTMs로 기능할 수 있다.

2.2.11. 비관세조치 K 유형(판매 후 서비스제한) – WTO 상품 관련 보조 서비스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의 경계는 국제무역 규범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서

비스 규제가 외국 상품의 판매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경우 NTBs로 작용할 수 있다. 가령, 애프터서비스(AS) 제공 제한, 운송 서비스 접근 제한, 금융·보험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은 상품 자체에 대한 규제가 아니지만, 외국 상품의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조치는 결국 외국 상품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실질적 무역제한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비관세조치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 관련 조치들은 상품 자체에 대한 규제(GATT 적용 대상)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제(GATS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1995년 발효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이 규율의 근거가 된다. GATS는 GATT와 달리 서비스 분야에 대해 선택적 약속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은 자국의 정책 여건과 산업 수준에 따라 분야별·방식별로 시장 개방 정도를 선택할 수 있다.

정책적 재량과 제약도 GATS 체제의 중요한 특징이다. 우선 최혜국대우 원칙은 GATS에서도 기본적으로 적용되므로, 회원국은 특정 국가의 서비스 공급자에게만 특혜를 부여하는 방식의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국민대우나 시장접근 의무는 국가가 GATS 양허표에 어떤 약속을 기재했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다시 말해, 특정 서비스 분야에 대해 내국민대우 또는 시장접근 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속하지 않는 경우 그 분야에서 규제적 재량이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된다. 이러한 규율 구조는 서비스 규제가 상품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면서, 동시에 회원국의 정책적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작동한다.

〈표 2-13〉 상품 관련 보조 서비스 규정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문제점	애프터서비스, 운송·금융 서비스 제한 → 외국 상품 판매 저해
GATT 적용 여부	해당 없음(상품이 아닌 서비스 규제이므로)
GATS 적용 여부	적용(1995년 발효)
기본 제약	MFN 원칙
추가 제약	국가가 특정 서비스 분야에 대해 내국민대우·시장접근 약속 여부에 따라 상이
특징	서비스 분야별·국가별 선택적 약속 가능, 상품에는 미적용

자료: 저자 작성.

2.2.12. 비관세조치 L 유형(보조금/기타 보조) – WTO 보조금

WTO의 보조금 규율은 엄격한 구조로 이뤄져 있는 동시에 회원국의 정책 자율성을 위해 일정한 유연성도 제공한다. 보조금 규율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SCM 협정)에 근거하며, 그 목적은 보조금으로 인해 타 회원국에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조금이 양허(concessions)를 무력화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WTO 규범은 보조금의 정책적 목적이나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하지 않지만, 수출보조금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모든 기업과 산업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보편적 보조금은 비교적 정책 자율성이 보장되지만, 특정 기업·산업 또는 수출 실적과 연계된 보조금은 제소와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식적으로는 규제가 엄격하나, 실제로는 개발도상국이 다양한 산업정책을 추진하는데 활용하며, 때로는 보조금이 비관세장벽으로 기능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보조금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 기여로 특정 수혜자에게 혜택이 제공되는 모든 조치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자금 이전(보조금, 대출, 보증 등), 세금 감면, 공공재 제공, 가격 및 소득 지원, 정부가 민간기관에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 등이 포함된다. SCM 협정은 보조금을 금지 보조금과 제소 가능 보조금으로 구분한다. 금지 보조금에는 수출 실적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수출보조금과 국산품 사용을 요구하는 보조금(현지조달 기반 보조금)이 포함되며, 최빈개도국과 일부 개도국에는 제한적 예외가 허용된다. 제소 가능 보조금은 상대국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상계관세 부과나 분쟁 해결 절차의 대상이 된다. 한편 차별적 과세·규제·관세로 인해 발생하는 사실상의 혜택은 보조금으로 보지 않으며, 수출 세 환급이나 부가가치세 환급은 내국세 부담을 초과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

농업 보조금 규율은 농업협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운영된다. 농업협정은 수출 경쟁·시장접근·국내보조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수출 경쟁에서 모든 수출 보조금은 양허표에 기재되어야 하며 신규 보조금은 금지된다.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는 2000년까지 수출보조금의 가액을 36%, 물량을 21% 감축하도록 규정했으

며, 2015년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는 선진국의 즉각적 철폐 및 개도국의 2018년 말 철폐가 합의되었다. 최빈개도국 및 순수입개도국은 2030년까지 일부 마케팅·내부 운송 보조금 사용이 허용되었다.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모든 수량제한을 관세로 전환하고 선진국은 36%, 개발도상국은 24%의 평균 관세 감축을 이행하였다. 아울러 관세화 품목에 대해 가격·물량 조건 충족 시 자동 발동되는 특별세이프 가드(SSG)와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할당제(TRQ)가 도입되었다. 국내보조에서는 선진국의 총 보조금 20% 감축 의무가 부과되었고 선진국 5%, 개발도상국 10% 수준의 ‘최소허용보조(De minimis)’가 인정되었다. 또한 농업 전반 지원이나 생산과 무관한 소득 이전 등 생산·무역 왜곡이 적은 보조금은 제한 없이 허용된다.

개도국에는 여러 특혜가 부여된다. 농업협정에 따라 개도국은 선진국 감축 수준의 3분의 2만 이행하면 되고 2005년까지 유예가 허용되었다. SCM 협정 제27조 (개도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는 최빈개도국과 1인당 GNP 1,000달러 미만의 20개국에 대해 수출보조금 금지 규정의 예외를 인정하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8년 내 폐지가 요구된다. 현지조달 조건부 보조금은 개발도상국 5년, 최빈개도국은 8년의 유예기간이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지만, 특정 제품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3.25%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경우 2년 내 조치를 철폐해야 한다. 또한 많은 개도국은 무역박람회·광고·무역사절단 등 수출 촉진 지원과 수출가공구역 운영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이 사실상 수출보조금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어 WTO는 개도국의 수출보조금 금지 예외를 2015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도 보조금 규율은 중요한 논점이 되어 왔다. 개도국들은 수출보조금 사용 기간 연장, 철폐 기준 완화, 수산업 보조금에 대한 차별적 규율(남획 및 과잉어획 방지 목적), 수출신용보증 등 사실상의 수출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규율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표 2-14〉 보조금 규정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보조금 유형	금지(수출·현지조달), 제소 가능
농업 규율	수출 경쟁, 시장접근, 국내보조(그린박스는 자유)
개도국 특례	수출보조금 금지 예외, 유예기간 연장 가능
도하 협상	개도국 보조금 사용 여지 확대 요구
정책 시사점	WTO는 목적보다 효과 규율, 개도국에는 실질적 정책 공간 여전

자료: 저자 작성.

2.2.13. 비관세조치 M 유형(정부조달 제한) – WTO 정부조달

정부조달은 원칙적으로 GATT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내국 민대우 및 시장접근 의무에서 제외되는 영역이다. GATT 제3조(내국 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대우) 제8항은 정부가 자국의 목적을 위해 구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내국민대우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GATS 제13조(정부조달)에 따라 정부가 상업적 판매 목적이 아닌 공공 목적을 위해 서비스 조달을 하는 경우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조달은 전통적으로 국제무역 규범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정부조달에 대한 최초의 국제규범은 1979년 도쿄 라운드에서 마련된 정부조달 협정(GPA)이며, 이는 일부 정부조달 영역에서 비차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범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이후 GPA는 WTO 내 복수국가 간 협정(Plurilateral Agreement)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2012년 개정판이 채택되고 2014년 발효되면서 규율이 한층 강화되었다. GPA의 적용 범위는 포괄적 적용이 아니라 적용 대상 목록(Listed Coverage)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즉 협정에 명시된 특정 정부 기관의 조달이며, 일정 금액 기준(threshold)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GPA 규율이 적용된다. GPA의 핵심 원칙은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로, 이는 단순히 외국 상품의 수입 뿐 아니라 해당 국가에 설립된 외국계 자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점에서 GPA는 GATT보다 적용 범위가 넓은 규율 구조를 가진다.

GPA는 차별 조치를 엄격히 제한한다. 특히 가격우대 정책, 현지조달 요건, 상쇄조치 등 특정 공급자를 우대하기 위한 정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는 일정한 전환적 특혜가 허용된다. 개도국은 최대 3년, 최빈개도국은 최대 5년 동안 일부 GPA 규정을 단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추가 연장도 요청할 수 있다. GPA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은 정부 조달 정책 설계에 대해 사실상 완전한 자율성을 보유한다. 이러한 국가들은 현지 조달 요건이나 가격우대 정책 등 다양한 산업정책적 조치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현재 많은 개도국이 GPA에 가입하지 않았고, 일부 국가만이 협정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GPA 가입 여부는 정책 자율성 확보와 국제 조달시장 접근 확대라는 상충하는 목표 간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국가별 전략적 판단이 요구된다.

〈표 2-15〉 정부조달 규정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GATT/GATS 규율	정부조달은 내국민대우·시장접근 의무에서 제외
GPA 도입	1979년 최초 채택, 2014년 개정판 발효
적용 방식	허용목록 및 금액 기준 초과 시 적용
핵심 규율	비차별(내국민대우+MFN) → 외국 자회사 포함
금지 정책	가격우대, 현지조달 요건, 상쇄조치 등
개도국 특례	3~5년 전환적 허용+연장 가능
비가입국	정부조달 조건 설계 시 완전한 정책 자율성 보유

자료: 저자 작성.

2.2.14. 비관세조치 N 유형(지식재산권) – WTO 지식재산권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 협정)은 개도국의 산업정책 수단을 제약하는 동시에, 강제실시나 권리소진 원칙 등 일부 제도적 유연성을 통해 일정한 정책 공간을 보장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TRIPS 협정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공연자·방송사·음반제작자 권리 포함), 집적회로 배치설계, 지리적 표시, 상표, 산업디자인, 특허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IPRs)을 포괄하며, 최소한의 실체적 보호기준

과 권리 집행 절차 및 구제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투명성과 비차별 원칙을 지식재산권 보호체제에 적용함으로써 WTO 체제 내 규범적 일관성을 강화하였다.

WTO 이전에는 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TRIPS 협정의 도입은, 특히 개도국의 정책 공간을 상당 부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많은 개도국이 역사적으로 역설계(Reverse Engineering)와 기술 모방을 통해 산업화를 추진해 왔음을 고려하면, TRIPS 협정은 이러한 산업 정책 수단에 구조적 제한을 부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TRIPS 협정은 특히 분야에서 최소 기준만을 설정하고 있어 회원국은 특히 심사와 보호 방식에서 상당한 재량을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좁은 범위의 특허 청구를 허용하거나, 실용신안 제도를 운용하는 것, 특히 부여 이전 이의신청 절차를 도입하는 것은 모두 허용된다. 동시에 TRIPS는 국가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더욱 강력한 수단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ing)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경쟁 제한행위 시정, 시장지배력 남용 규제, 국가비상사태 대응, 권리 불실시(Non-working) 문제 해결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TRIPS 제40조는 지재권 사용허가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경쟁적 관행을 규제할 수 있도록 회원국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정부의 개입 역시 허용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권리소진 원칙은 국가별 선택사항으로 남겨져 있어 병행수입 허용 여부 역시 각국이 정책적으로 자율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TRIPS 체제 내에서 개도국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 유연성에 해당한다.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이행 유예는 TRIPS 협정의 중요한 특징이다. 개도국에는 5~10년의 이행 유예가 부여되며, 최빈개도국에는 초기 12년의 유예기간(2006년 1월 1일까지)이 인정되었다. 이후 WTO 회원국들은 도하개발아젠다 (DDA) 논의를 통해 추가 연장 요청을 승인해 왔으며, 그 결과 최빈개도국은 2016년 말까지 연장된 이행 유예를 확보하였다. 이는 지식재산권 체제의 정착이 경제·기술 발전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표 2-16〉 지식재산권 규정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포괄 범위	저작권, 상표, 특허, 지리적 표시, 집적회로 설계 등
핵심 원칙	최소 보호기준, 집행 절차·구제 규정, 투명성·비차별
정책 공간 축소	WTO 출범 전에는 규율 부재 → TRIPS 협정으로 구속력 강화
유연성	좁은 특허 청구, 실용신안, 강제실시, 소진원칙 등
강제실시 허용 사유	경쟁제한·시장지배력 시정, 국가비상사태, 권리 불실시
개도국	5~10년 유예
LDCs	12년 유예(→ 2016년까지 추가 연장)

자료: 저자 작성.

2.2.15. 비관세조치 O 유형(원산지 규정) – WTO 원산지 규정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RoO)은 세관 당국이 제품 또는 생산자의 국적, 즉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며, 특정 국가에 대한 특혜적 시장접근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활용된다. 원산지 규정은 모든 교역상대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비특혜원산지 규정과 특정 국가에만 적용되는 특혜원산지 규정으로 구분된다. WTO 규율의 대상은 비특혜원산지 규정에 한정되며, 특혜원산지 규정은 수입국의 정책 판단 또는 FTA 체약국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WTO는 비특혜원산지 규정이 무역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기본 원칙을 제시한다. 이에 따르면 원산지 규정은 비차별성을 준수하고, 운영 과정에서 투명성·일관성·공정성·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WTO는 원산지 판정의 구체적 기준까지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며, 동일한 제품이라도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이 반덤핑, 기술표준 상호인정, 통계 등 정책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한다.

WTO 원산지 규정 협정 제9조(목적 및 원칙)는 비특혜원산지 규정의 국제적 조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WTO는 원산지규정위원회와 관세협력이사회 산하 기술위원회를 설치해 원산지 규정의 국제 조화를 추진해 왔다. 조화 작업은 HS 코드의 부(section) 또는 류(chapter) 단위를 토대로 진행되며 완전 획득 기준, 최소 공정·가공 기준, 실질적 변형에 따른 관세 분류 변경 기준, 특정 생

산·가공공정 기준 등 주요 개념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판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조화 작업은 여러 한계에 직면해 있다. 원래 조화 작업은 1998년 7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1999년 세계관세기구가 기술검토 결과를 제출한 이후에도 WTO 회원국 간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일부 회원국은 원산지 규정을 정책 수단별로 통일하는 경우, 자국의 무역정책 재량권이 지나치게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결국 2000년대 중반 이후 정식 협상은 중단되었으며, 2007년 이후에는 HS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초안 개신과 비공식 워크숍만이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표 2-17〉 원산지 규정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필요성	소비자 정보 제공, 반덤핑관세 부과, 특혜 시장 접근 여부 판단
유형	비차별적 규정(WTO 규율 대상) → 특혜적 규정(수입국·FTA 당사국 결정)
WTO 원칙	비차별성, 투명성, 무역장벽화 금지, 일관·공정·합리적 운영
조화 작업 목표	HS 코드 기반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판정 기준 마련
현황	1999년 기술검토 완료 → 최종 합의 실패 → 2000년대 중반 협상 중단
최근 동향	2007년 이후 초안 개신 및 비공식 논의만 진행

자료: 저자 작성.

2.2.16. 비관세조치 P 유형 – 수출 관련 조치

WTO 규범은 회원국의 수출세 부과를 폭넓게 허용하는 반면, 수출량 제한·수출금지·수출보조금과 같은 직접적인 수출제한 조치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수출 관련 정책 수단은 크게 세금 기반 조치(수출세)와 수량 기반 조치(쿼터 등)로 구분되는데, 현행 GATT 규정은 수출세에 대한 명시적 제한을 두지 않아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WTO 가입 시 중국처럼 예외적 의무를 부과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수출독점제도의 운영 역시 허용되는 구조이다.

반면 WTO 규범은 수출금지·수량제한·수출보조금과 같은 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농산물의 경우에는 GATT 제11조(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가 특

정 상황에서 수출제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율은 수출제한 조치가 국제무역 흐름을 왜곡하고 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과거 일부 국가가 활용했던 자발적 수출제한은 수입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수출국이 특정 품목의 수출량 또는 수출액을 자율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WTO 세이프가드 협정은 이러한 조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통제와 이행이 어렵고 모니터링 체계가 불완전하다는 실무적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자발적 수출제한은 현재 WTO 체제 아래에서 허용되지 않는 대표적 비관세장벽이다.

〈표 2-18〉 수출 관련 조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허용 조치	수출세 부과, 수출 독점제도(단, 가입 시 약속 예외 가능)
금지 조치	수출금지·수량제한·수출보조금
특별 예외	농산물 수출제한 → GATT 제11조 일부 예외 인정
자발적 수출제한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서 금지/통제·집행 어려움

자료: 저자 작성.

2.2.17. 기타 WTO 규정

WTO 관세평가협정은 세관 당국의 임의적 관세 산정을 방지하고 통관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규범이다. 이는 관세가 NTMs의 역할을 하거나 무역비용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무역원활화협정 등 WTO의 다른 관련 규범과 함께 통관 분야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제도적 여건을 고려해 점진적 이행을 허용하는 등 일정 수준의 정책적 유연성도 부여하고 있다. 이 협정은 세관의 자의적이거나 허구적인 가격 산정을 금지하며, 기본적으로 거래가격 또는 송장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운송비·보험료 등은 개별 국가의 선택에 따라 CIF(운임·보험 포함), CF(운임 포함), FOB(본선 인도) 방식 중 하나를 적용해 조정할 수 있다.

이 협정은 또한 거래가격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대체 평가 방식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세관이 제출된 가격의 정확성을 문제 삼는 경우, 가격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다. 이러한 절차적 규정은 관세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의 재량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이다. 개도국에 대해서는 이행과정에서 일정한 유연성이 제공된다. 과거 일부 개발도상국은 최저가격제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해 왔으며, 관세평가협정은 해당 제도의 폐지가 단기간에 어려운 국가들에 대해 한시적 유지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예외는 WTO 이사회에 승인 아래 운영되며, 협정 부속서에서는 이행 유예기간 연장 신청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도국의 제도적 적응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이자, 점진적 제도 개선을 유도하는 메커니즘으로 이해된다.

〈표 2-19〉 관세평가협정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목적	수입품 가격평가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원칙	거래가격·송장가격을 기준으로 평가, 임의적 관세평가 금지
예외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준 경우 대체 평가 방식 적용
입증책임	가격 진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음
개도국 지원	최저가격제 한시 유지 가능, WTO 승인 필요/이행 유예 연장 가능

자료: 저자 작성.

〈표 2-20〉 GATT/WTO 규정 및 협정과 비관세조치(NTMs)와의 연계성

GATT 및 WTO 협정	주요 내용	분야별 비관세장벽(NTMs)
제1조	최혜국대우(MFN) 원칙	모든 NTMs에 적용
제3조. TBT, SPS, TRIMs 협정(1995)	내국민대우 원칙 및 국내 제품 규제, 국산화 요구에 대한 구체 규정	제3조는 모든 NTM에 적용 A, B, I 포함
제5조. 무역원활화협정(TFA) (2017)	물품의 자유 통행 보장	H, J
제6조. 반덤핑·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1995)	반덤핑 및 상계관세 하용 및 조사 절차 및 기준 명시	D
제7조. 관세평가협정; PSI 협정(1995)	실제 가격 기준으로 한 관세 평가 규정	C
제8조. TFA(2017)	수입 및 수출 관련 수수료는 비용 기준	C, F
제10조. TFA(2017)	무역 관련 법령과 규정의 공개 의무	해당 없음

(계속)

GATT 및 WTO 협정	주요 내용	분야별 비관세장벽(NTMs)
제11조. TRIMs 협정(1995)	수출입의 정량적 제한 금지	E
제12조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무역 제한 허용	D, G
제13조. 수입허가협정(1995)	수입허가의 비차별적 운영	E, J
제16조.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농업협정(1995); 나이로비 수출보조금 폐지 협정(2015)	농산물 외 보조금 금지(LDC 및 저소득국 예외) 농업 수출보조금 폐지	L
제17조	국영무역기업에 MFN 원칙 적용	H
제18조	개발도상국에 대한 보호산업·국제수지 보호 목적의 무역 제한 허용(제12조보다 완화된 조건)	D, E, F, H, I, P
제19조. 세이프가드 협정	산업 피해 시 특정 품목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 허용	D, E, F
제20조. TBT 및 SPS 협정	공공 보건·안전 등 비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한 일반 예외 조항	A, B, C, E, H, I, L, N, P
제21조	국가 안보 예외 조항	E, F, G, I, L, M, P
원산지규칙 협정	비특혜원산지 규정의 조화	O
TRIPS 협정	최소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	J, N
정부조달협정	외국 기업에도 공정한 경쟁 보장; 투명성·절차적 규범 적용(서명국만 대상)	M
농업협정	생산·수출 보조금 및 정량적 제한에 대한 규율	E, F, L
GATS	서비스 부문의 MFN 및 시장 접근/내국민대우 원칙	G, K

자료: UNCTAD(2018)의 내용을 저자 재정리.

3. ESG 경영의 글로벌 논의 동향과 시사점¹²⁾

3.1. ESG 경영 개념 및 논의 동향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그리고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용어다. 기업이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경영 방식을 의미한다. ESG 경영

12) GSnJ 서진교 원장의 위탁원고를 바탕으로 저자 보완·정리하였다.

은 기업이 친환경적 활동을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투자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전략적 경영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KRX)의 ESG 포털에서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각 영역의 주요 하위 요소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¹³⁾ 첫째, 환경(Environmental)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배출 저감, 환경오염 및 규제,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호이며 둘째, 사회(Social)는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인권 존중, 성평등 및 다양성 제고, 지역사회와의 관계 강화이다. 셋째, 지배구조(Governance)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구성, 반부패 및 기업윤리,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로 구분하고 있다.

기존 기업 평가는 주로 투입과 산출 중심의 재무적 정량 지표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기업이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면서 단순한 재무성과만으로 기업의 실질 가치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였다. 이에 따라 비재무적 지표가 기업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부상하였고, 투자자와 소비자 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ESG의 개념은 적용 관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규범적 관점에서는 ESG를 기업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법적 의무로 인식하며, 통합적 관점에서는 사회가 기업에 기대하는 경제적·법적·윤리적 요구를 포함한 포괄적 개념으로 본다. 또한 도구적 관점에서는 ESG가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기준으로 작용하며, 정치적 관점에서는 기업이 공공재 공급자로서 책임 있는 비즈니스를 수행해야 함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ESG 개념의 근원은 ‘지속가능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철학에서 비롯된다. 즉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지속가능 발전의 원리가 기업 경영에 적용되면서 재무적 성과 외에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으로

13) KRX ESG 포털(검색일: 2025. 9. 30.) 참조.

발전한 것이다. 따라서 ESG 경영은 궁극적으로 지속가능 경영의 연장선 위에 있고,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 제도화되고 규범화된 진화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ESG 경영에 관한 글로벌 논의는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반(反) ESG 정책 기조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 확산세가 다소 둔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정부 차원의 ESG 경영 관련 규제 강화 움직임이 제한되고, 일부 주(州)에서는 기업의 ESG 경영활동에 대한 반발과 규제 완화 조치가 병행되는 등 정책적 후퇴 조짐도 관찰되고 있다(홍지연, 2025).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들의 ESG 경영 정책과 규제 논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ESG 경영 정책의 후퇴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가치의 약화가 본격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와 공급망 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을 통해 ESG 경영 정책의 통상 규범화를 추진하고 있다(강애림, 2021).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역내 기업의 탄소 감축 부담을 완화하고, 역외 기업에도 동일한 환경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로 글로벌 무역 질서 내에서 탄소배출의 공정한 책임 분담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공급망 실사지침은 기업이 전 공급망 단계에서 인권 침해와 환경 해손에 대한 실사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ESG 경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업 생존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ESG 경영 가치에 관한 관심 증대,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확산,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평가 반영, 각국의 공시 의무화 및 환경규제 강화 등은 ESG를 기업 경영의 핵심축으로 전환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 부문에서는 공급망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기여, 노동권 보호 등 다양한 ESG 요소가 국제 교역과 수출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일반기업은 물론, 중견 또는 중소규모 농식품 기업 또한 조속히 ESG 경영 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경영 전반에 내재화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3.2. 농식품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 시사점

3.2.1. 농식품 수출기업의 ESG 경영 도입 필요성

글로벌 차원에서 ESG 경영이 보편적 기업 경영의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주요 국가들은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ESG 경영 도입의 필요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 먼저 EU의 ESG 경영 관련 규제 강화가 대표적이다. EU는 2018년부터 유럽 내 본사를 둔 5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기존의 재무적 정보 외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관련된 비재무적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였다. 더 나아가 2024년에는 협력업체의 인권 및 환경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이 최종 의결되어 같은 해 7월부터 발효되었다. 비록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1단계 적용 시점이 2028년 7월로 1년 연기되었지만, 이 제도의 시행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EU 시장 진입 시 준수해야 할 기준이 한층 강화됨을 의미한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생산성본부, 2024; 강애림, 2021).

한편 국내에서도 ESG 경영 정보공시의 단계적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1월 ‘ESG 경영 공시 로드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코스피(KOSPI) 상장사 전면 의무화를 목표로 단계적 확대 계획을 제시하였다. 당초 2025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사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경제 여건과 기업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 시점이 2026년 이후로 연기된 상태이다. 하지만 정부는 세부 이행계획을 포함한 구체적 로드맵을 준비 중이다. 이런 국내외 규제 환경 속에서 ESG 경영 수준은 기업의 투자 유치, 공급망 참여, 거래 지속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ESG 경영 평가가 미흡한 기업은 글로벌 투자자로부터 배제되거나 거래 기회를 상실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긍정 평가를 받은 기업은 안정적 투자 유치와 해외 협력 네트워크 확장 기회를 얻는다. 특히 농식품 수출기업의 ESG 경영 성과는 해외 바이어와의 신뢰 구축, 공급망 안정성 확보, 장기적 수출 경쟁력 강화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2.2.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자발적 노력

중소규모 농식품 기업의 ESG 경영 도입은 필수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제약 요인에 직면해 있다. 첫째, 중소기업의 ESG 인식 부족이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된다. 경기연구원이 2023년 2월 경기도 내 중소기업 13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약 49.7%가 ESG 개념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고, 26.7%는 ESG가 실제 경영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강철구 외, 2023). 다만 기업 규모가 더 큰 대기업·중견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일수록 ESG의 필요성 인식과 준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023년 6월 495개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3). 먼저 종사자 수 300명 이상 대규모 기업이나 대기업과 거래하는 업체는 ESG 도입에 적극적이었으나, 중소규모 식품제조업체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둘째, 정부 정책의 영향이 ESG 도입 결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연구원 조사 결과, ESG 경영 추진 이유로 ‘정부의 정책 영향’을 꼽은 응답이 40%에 달해, 중소기업의 ESG 도입이 자발적이라기보다 정책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대상 중 약 83%의 중소기업은 ESG 경영 전담 조직이나 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많은 기업이 ESG 경영 활동이 오히려 생산비용 증가와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었다(강철구 외, 2023). 셋째,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ESG의 긍정적 효과가 입증되고 있지만, 기업의 즉각적인 도입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ESG를 도입한 대기업의 경우 임직원 생산성 향상과 기업 이미지 제고 등 긍정적 평가가 높지만, 소규모 기업에서는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실태를 고려할 때 농식품 수출기업이 ESG 경영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정책과 기업의 자발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먼저 정부는 ESG 경영의 필요성에 대한 체계적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단순히 ESG 개념을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 성공사례와 실패 후 회복사례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인식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산업별 특성에 맞는 ESG 경영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농식품 수출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둘째, ESG 경영 도입 초기 단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및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대부분은 ESG 경영 전담 조직이나 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관련 활동을 수행해야 하므로 단기적으로는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 특히 중국 제조업체와의 가격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ESG 경영 투자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세제 감면, 금융지원, 보조금 등 정부의 실질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셋째, 무임승차 문제 방지도 중요하다. 현재 ESG 경영 미도입 기업에 대한 직접 제재가 없어 일부 기업은 ESG 경영을 도입하지 않아도 단기적으로 손해가 없다는 판단하에 참여를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ESG 경영 도입 기업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참여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 내부의 자발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ESG 경영은 단기적 유행이 아니라 장기적 경쟁력 확보의 핵심 요소이므로 CEO를 비롯한 경영진의 확고한 신념과 지속적 관심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관련 협회는 글로벌 ESG 경영 도입 사례, 국제 규제 동향, 성공적 전환 사례 등 실증적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한다.

3.2.3. 주요국 ESG 규제 동향의 실시간 파악 필요

향후 글로벌 ESG 경영규제 환경은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 ESG 경영 정책 기조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부 국가의 ESG 경영규제가 완화되는 경향이 있으나, 기후변화의 심화와 소비자의 높은 사회적 기대를 고려할 때 ESG 경영규제는 조만간 다시 강화될 전망이다(한상범 외, 2021). 따라서 우리 정부와 농식품 수출기업은 주요 교역국의 ESG 경영 관련 정책 변화와 규제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선 농산물 등은 수입국의 환경·사회 기준 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대응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주요 수출상대국의 관련 부처와 정례적 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규제 변화를 조기에 공유하고, 기업의 현장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 기업 또한 수입국 내 거래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규제 변화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ESG 경영 관련 통상 규제는 입법화 이전에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므로 해당 분야 전문가를 통한 적극적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농식품 수출기업이 급격한 규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

비관세조치 및 장벽 분류 동향과 특징

비관세조치 및 장벽 분류 동향과 특징

1. WTO 비관세장벽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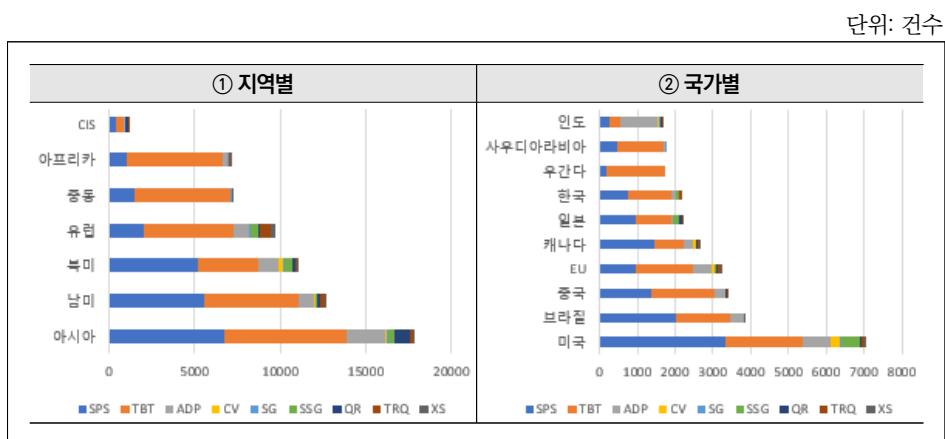
1.1. 전체 비관세장벽 동향

본 절에서는 WTO 회원국들의 위생검역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및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반덤핑(Anti-Dumping: ADP),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CVD), 수량제한조치(Quantitative Restrictions: QR), 세이프가드(Safeguards: SG), 특별세이프가드(Special Safeguards: SSG), 국영무역기업(State Trading Enterprises: STE), 관세할당(Tariff-Rate Quotas: TRQ), 수출보조(Export Subsidies: XS) 조치들에 대한 통보자료를 바탕으로 전 산업 및 농식품 관련 비관세장벽 동향을 살펴보았다. WTO I-TIP 비관세장벽 통계는 발효 일자(In force date) 및 발동 또는 개시 일자(Initiation date) 기준으로 분류된다. 발효 일자는 비관세장벽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날짜로서 일반적으로 발동 또는 개시 이후 일정 기간을 거쳐 해당 조치가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반면 발동 일자는 비관세장벽을 처음으로 도입하거나 발표한 날짜로서 해당 조치를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알린 시점을 의미한다. SSG, TRQ, XS, 보조총액측정

치(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AMS) 등과 같은 농업 부문 조치들은 연간 단위 기준으로 통보되고 있으며 ADP, CVD, SG 등은 발동 일자가 비관세장벽 조사 개시 일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 조치 모두는 발효 일자 기준으로 분류한다. SPS와 TBT 등은 발동과 함께 효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발동 일자 기준으로 분류한다.¹⁴⁾

1995~2024년 누적 기준 전산업의 지역·국가별 비관세장벽 현황을 살펴보면 아시아, 남미, 북미, 유럽 등의 순으로 SPS와 TBT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 브라질, 중국, EU 등의 순으로 SPS와 TBT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 농식품 부문 지역별·국가별 비관세장벽 현황을 살펴보면 남미, 아시아, 중동 등의 순으로 활용도가 높았고, 국가별로는 미국, 브라질, 일본, EU, 페루 등의 순으로 SPS와 TBT 등의 활용도가 높았다<그림 3-2>.

〈그림 3-1〉 전산업 지역·국가별 비관세장벽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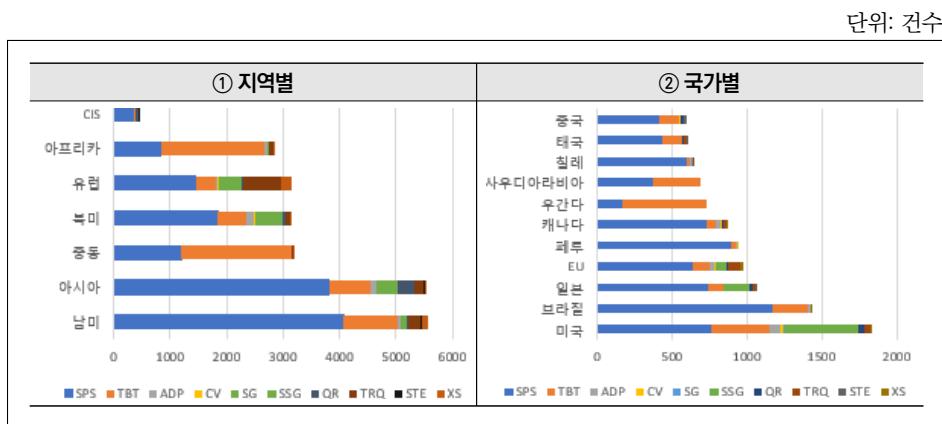


주: 1995~2024년 누적기준임.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14) WTO(검색일: 2025. 5. 8.), I-TIP Glossary 참조.

〈그림 3-2〉 농식품 부문 지역·국가별 비관세장벽 현황



주: 1995~2024년 누적 기준이고,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1995~2024년 전 세계 유형별 비관세장벽 누적 현황을 살펴보면 전산업의 경우, 기술무역장벽(TBT)이 전산업의 53.7%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다음으로 위생검역 조치(SPS) 28.0%, 반덤핑(ADP) 8.4%, 수량제한(QR) 4.8% 등의 순이다. 전산업 비관세장벽 가운데 41.4%를 차지하는 농식품 부문 비관세장벽의 경우, 전체의 53.1%를 차지하는 SPS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TBT 34.3%, TRQ 4.2%, SSG 3.9%, QR 1.9% 등의 순이다. 전산업 대비 농식품 부문의 비중이 높은 비관세장벽 유형은 SSG(98.1%), TRQ(97.5%), XS(95.6%), SPS(78.5%) 등이다<표 3-1>.

〈표 3-1〉對세계 1995~2024년 누적 기준 비관세장벽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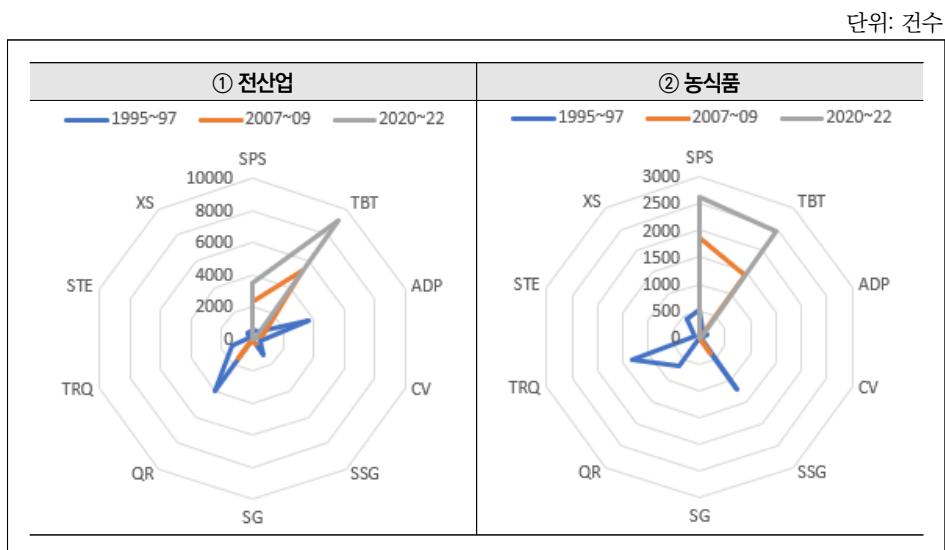
구분	SPS	TBT	ADP	CV	SSG	SG	QR	TRQ	STE	XS	전체(C)
전산업A) A/C(%)	21,262 (28.0)	40,759 (53.7)	6,382 (8.4)	453 (0.6)	1,234 (1.6)	193 (0.3)	3,644 (4.8)	1,341 (1.8)	189 (0.2)	431 (0.6)	75,888 (100.0)
농식품B) B/C(%)	16,692 (53.1)	10,772 (34.3)	265 (0.8)	43 (0.1)	1,211 (3.9)	48 (0.2)	586 (1.9)	1,308 (4.2)	86 (0.3)	412 (1.3)	31,423 (100.0)
B/A(%)	78.5	26.4	4.2	9.5	98.1	24.9	16.1	97.5	45.5	95.6	41.4

주: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세번 01~97류,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자료: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WTO 출범 초기와 최근 3개년을 비교하여 전산업과 농식품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 적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최근 들어 비관세장벽 중 TBT와 SPS의 활용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식품 부문에서 이러한 조치의 적용 비중이 두드러지게 증가하며, 비관세장벽이 농식품 교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3>.

〈그림 3-3〉 對세계 3개년 기준 비관세장벽 분포



- 주 1) WTO 회원국의 NTMs 통보 추이가 2023~24년 감소세로 전환됨. 이는 WTO 회원국 대부분의 통보 지연인 것으로 나타나 2022년을 최근 자료로 활용하여 분석함.
 2)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기준 01~97류,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1995년~2024년 누적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전산업과 농식품 부문에 적용된 주요 비관세장벽은 SPS, ADP, CVD 등이었다. 특히 농식품 부문을 세부 품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01~05류)의 경우 인도에서 1건, 미국에서 2건의 ADP 조치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성 생산품(06~14류)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1건, 남아프리카공화국 6건, 미국 2건의 조치가 부과되었다. 또한 조제식료품·음료·주류·식초·담배류(16~24류)에는 호주 1건, 중국 1건, 인도 1

건, 남아프리카공화국 1건, 미국 4건 등 여러 국가가 ADP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2>. 한편 WTO 출범 초기와 최근 3개년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비관세장벽 통보의 중심이 기존의 반덤핑(ADP) 조치에서 인간·동식물의 건강과 안전을 다루는 SPS 조치로 점차 전환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그림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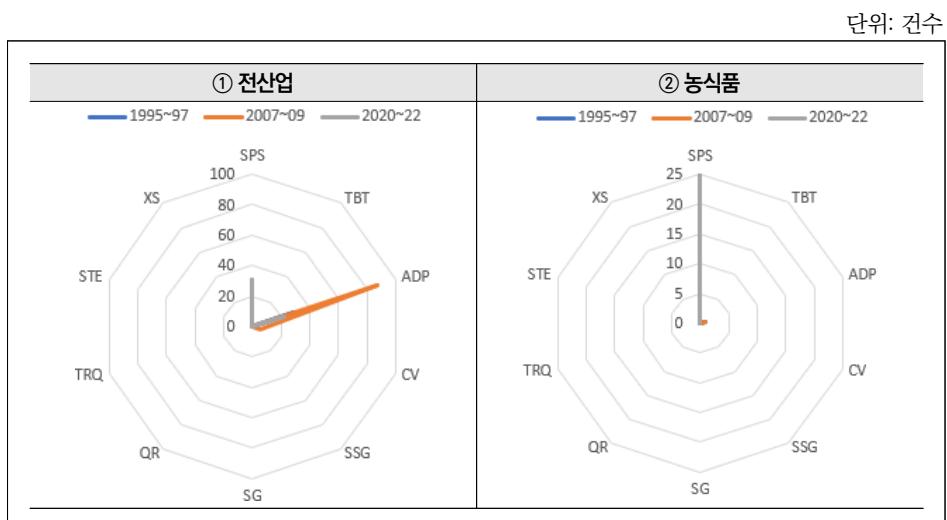
<표 3-2> 세계對한국 1995~2024년 누적 기준 비관세장벽 현황

구분	SPS	TBT	ADP	CVD	SSG	SG	QR	TRQ	STE	XS	단위: 건수, %
											전체(C)
전산업(A) A/C(%)	86 (9.1)	- (87.5)	819 (87.5)	31 (3.3)	- (-)	- (-)	- (-)	- (-)	- (-)	- (-)	936 (100.0)
농식품(B) B/C(%)	70 (77.8)	- (-)	19 (21.1)	1 (1.1)	- (-)	- (-)	- (-)	- (-)	- (-)	- (-)	87 (100.0)
A/B(%)	81.4	-	2.3	3.2	-	-	-	-	-	-	9.6

주: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세번 01~97류,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그림 3-4> 세계對한국 3개년 기준 비관세장벽 분포



주 1) WTO 회원국의 NTMs 통보 추이가 2023~24년 감소세로 전환됨. 이는 WTO 회원국 대부분의 통보가 연인 것으로 나타나 2022년을 최근 자료로 활용하여 분석함.

2)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기준 01~97류,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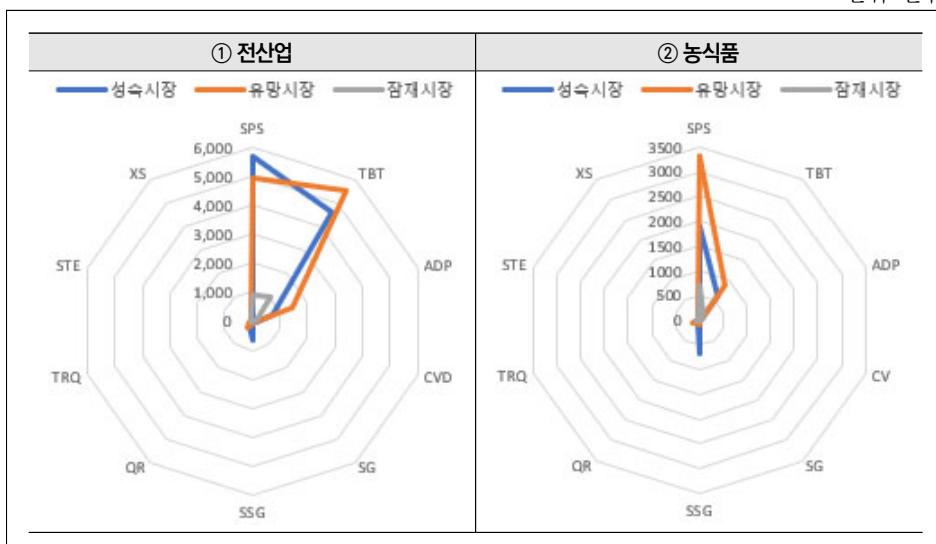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1.2. 수출시장 유형별 비관세장벽 동향

정부는 성숙시장, 유망시장, 잠재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시장 다변화와 수출 품목 다양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시장 유형별 비관세장벽의 적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전산업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잠재시장에서는 비관세장벽의 분포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성숙시장에서는 SPS 조치가, 유망시장에서는 TBT 조치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농식품 부문에서는 잠재시장, 성숙시장, 유망시장 순으로 비관세장벽의 분포가 크게 나타나 전산업과는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그림 3-5>. <표 3-3, 3-4>는 전산업 및 농식품 부문을 대상으로 성숙·유망·잠재 수출시장 유형별 비관세장벽의 활용 비중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3-5> 수출시장 유형별/산업별 비관세장벽 분포

단위: 건수



주 1) WTO 회원국의 NTMs 통보 추이가 2023~24년 감소세로 전환됨. 이는 WTO 회원국 대부분의 통보 지역인 것으로 나타나 2022년을 최근 자료로 활용하여 분석함.

2)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기준 01~97류,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표 3-3〉 전산업 수출시장 유형별 비관세장벽 활용 비중

구분	SPS	TBT	ADP	CVD	SG	SSG	QR	TRQ	STE	XS	단위: %
성숙시장	(26.6)	(11.4)	(11.5)	(39.1)	(5.2)	(54.2)	(5.1)	(6.0)	(25.9)	(3.0)	
유망시장	(23.3)	(13.6)	(23.0)	(14.6)	(40.4)	(6.6)	(7.7)	(10.8)	(9.0)	(8.6)	
잠재시장	(4.1)	(2.6)	(2.1)	(0.9)	(7.8)	–	(0.3)	(5.7)	–	(14.4)	
소계	(54.0)	(27.6)	(36.6)	(54.5)	(53.4)	(60.9)	(13.2)	(22.4)	(34.9)	(26.0)	
세계시장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세번 01~97류를 기준으로 분류함.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표 3-4〉 농식품 부문 수출시장 유형별 비관세장벽 활용 비중

구분	SPS	TBT	ADP	CV	SG	SSG	QR	TRQ	STE	XS	단위: 건수
성숙시장	(11.4)	(5.8)	(23.0)	(34.9)	(4.2)	(55.2)	(13.0)	(5.4)	(23.3)	(3.2)	
유망시장	(19.9)	(8.2)	(17.7)	(39.5)	(12.5)	(6.8)	(15.4)	(10.9)	(15.1)	(8.7)	
잠재시장	(4.2)	(1.4)	(12.5)	0.0	(18.8)	0.0	(0.3)	(5.7)	0.0	(7.5)	
소계	(35.5)	(15.4)	(53.2)	(74.4)	(35.4)	(62.0)	(28.7)	(22.1)	(38.4)	(19.4)	
전 세계시장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HS 코드 없는 NTMs는 제외함. 농식품 부문은 HSK 세번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1.2.1. 성숙시장 전체 현황

WTO 출범 이후 최근까지 누적기준 비관세장벽 현황을 살펴보면, 전산업의 경우 전체의 54.9%를 차지하는 TBT의 활용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SPS(21.6%), ADP(8.6%), SSG(6.9%) 등의 순이다<표 3-5>. 3개년 기준 비관세장벽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산업의 경우 WTO 출범 이후 SPS의 분포가 소폭 증가한 데 반해 TBT의 활용도는 소폭 감소하였다. 농식품의 경우도 전산업의 경우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는 한편, 최근 SSG의 활용도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그림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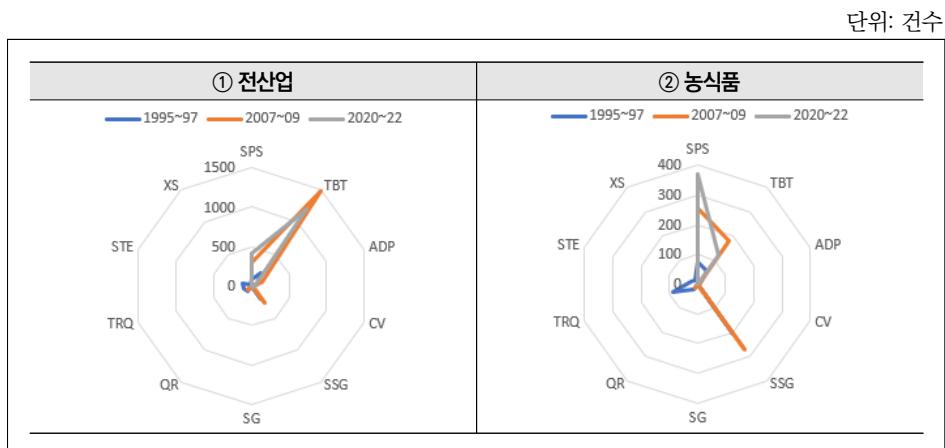
〈표 3-5〉 성숙시장 對세계 1995~2024년 누적 기준 비관세장벽 현황

구분	SPS	TBT	ADP	CVD	SSG	SG	QR	TRQ	STE	XS	단위: 건수, %
											전체(C)
전산업(A)	3,170	8,075	1,269	282	1,012	8	655	98	114	14	14,697
A/C(%)	(21.6)	(54.9)	(8.6)	(1.9)	(6.9)	(0.1)	(4.5)	(0.7)	(0.8)	(0.1)	(100.0)
농식품(B)	2,567	1,014	78	15	998	2	117	89	23	14	4,917
B/C(%)	(52.2)	(20.6)	(1.6)	(0.3)	(20.3)	(0.0)	(2.4)	(1.8)	(0.5)	(0.3)	(100.0)
A/B(%)	81.0	12.6	6.1	5.3	98.6	25.0	17.9	90.8	20.2	100.0	33.5

주: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세번 01~97류,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그림 3-6〉 성숙시장 3개년 기준 對세계 비관세장벽 분포



주 1) WTO 회원국의 NTMs 통보 추이가 2023~24년 감소세로 전환됨. 이는 WTO 회원국 대부분의 통보 자연인 것으로 나타나 2022년을 최근 자료로 활용하여 분석함.

2)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기준 01~97류,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성숙시장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비관세장벽 현황을 살펴보면, 전 산업의 경우 전체의 85.4%를 차지하는 ADP의 활용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CVD(10.5%), SPS(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식품 부문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시행된 비관세장벽 유형은 전체의 52.6%를 차지하는 SPS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42.1%를 차지하는 ADP, 5.3%를 차지하는 CVD의 순으로 분석되었다<표 3-6>.

〈표 3-6〉 성숙시장 對한국 1995~2024년 누적 기준 비관세장벽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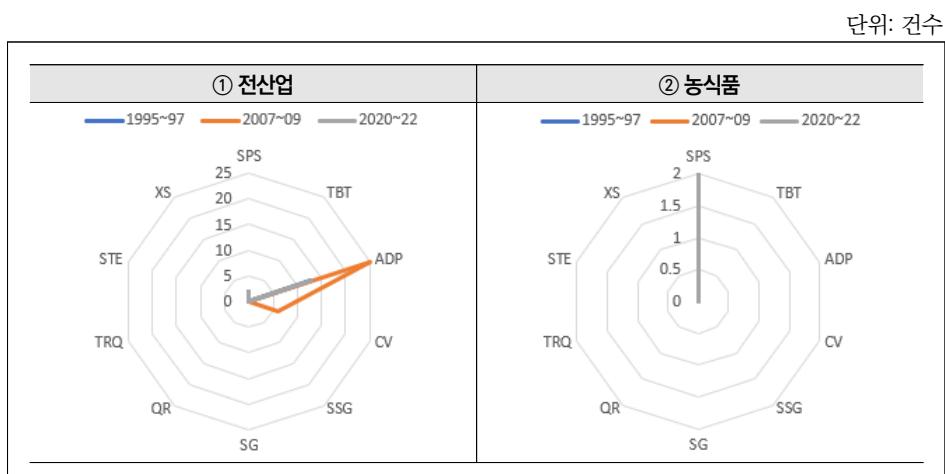
구분	SPS	TBT	ADP	CVD	SSG	SG	QR	TRQ	STE	XS	단위: 건수, %
											전체(C)
전산업(A)	10 (4.0)	-	211 (85.4)	26 (10.5)	-	-	-	-	-	-	247 (100.0)
농식품(B)	10 (52.6)	-	8 (42.1)	1 (5.3)	-	-	-	-	-	-	19 (100.0)
B/A(%)	100.0	-	3.8	3.8	-	-	-	-	-	-	7.7

주: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세번 01~97류,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성숙시장에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시행된 비관세장벽의 분포 변화를 살펴보면, 전산업의 경우 WTO 출범 초기 이후 ADP의 활용도가 증가한 반면, 농식품 부문의 경우 SPS의 분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7>. 농식품 부문 우리나라 대상 2건의 SPS 조치는 신선 당근(070610)에 대한 수입 승인, 동양배(080830)에 대한 수입 승인 요건과 관련하여 미국이 시행한 조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7〉 성숙시장 對한국 3개년 기준 비관세장벽 분포



주 1) WTO 회원국의 NTMs 통보 추이가 2023~24년 감소세로 전환됨. 이는 WTO 회원국 대부분의 통보가 연인 것으로 나타나 2022년을 최근 자료로 활용하여 분석함.

2)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기준 01~97류,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1.2.2. 성숙시장 국가별 현황

① 미국¹⁵⁾

WTO 출범 이후 전산업을 대상으로 비관세장벽의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 산업의 활용도는 60.8%를 차지하는 TBT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SPS(11.9%), SSG(10.9%), ADP(10.8%)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 부문에 적용된 비관세장벽은 전산업 대비 3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식품 부문에 서는 SSG가 3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SPS(31.7%), TBT (26.9%), ADP(2.7%) 등의 순으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7>.

WTO 출범 이후부터 최근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산업에서는 TBT의 활용도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가 확인되었다. 농식품 부문에서는 SSG 조치의 활용도는 감소하는 반면, SPS 조치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그림 3-8>.

<표 3-7> 미국 對세계 1995~2024년 누적 기준 비관세장벽 현황

단위: 건수, %

구분	SPS	TBT	ADP	CVD	SSG	SG	QR	TRQ	STE	XS	전체(C)
전산업(A) A/C(%)	977 (11.9)	5,010 (60.8)	890 (10.8)	271 (3.3)	896 (10.9)	7 (0.1)	104 (1.3)	65 (0.8)	-	14 (0.2)	8,234 (100.0)
농식품(B) B/C(%)	832 (31.7)	706 (26.9)	72 (2.7)	11 (0.4)	887 (33.8)	2 (0.1)	38 (1.4)	59 (2.3)	-	14 (0.5)	2,621 (100.0)
B/A(%)	85.2	14.1	8.1	4.1	99.0	28.6	36.5	90.8	-	100.0	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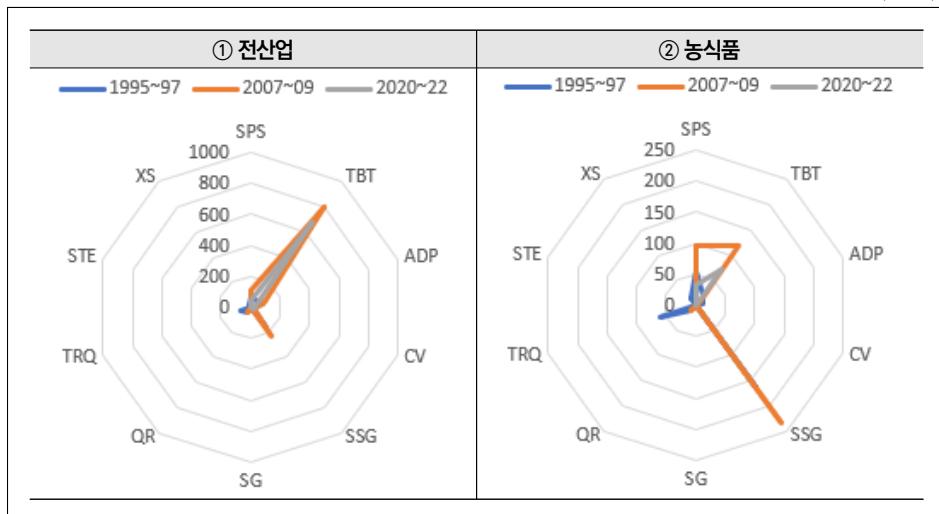
주: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세번 01~97류,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15) 미국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특정 국가에서 나타나는 주요 무역장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인 성숙·유망·잠재 시장 국가별 무역장벽에 관한 내용을 <부록 2>의 ‘미국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의 주요 수출시장별 NTBs 주요 내용’에 정리·제시하였다. 주요 수출시장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분석은 수출국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확대를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8〉 미국 對세계 3개년 기준 비관세장벽 분포

단위: 건수



주 1) WTO 회원국의 NTMs 통보 추이가 2023~24년 감소세로 전환됨. 이는 WTO 회원국 대부분의 통보 지원인 것으로 나타나 2022년을 최근 자료로 활용하여 분석함.

2)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기준 01~97류,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1995~2024년 누적 기준 미국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시행한 비관세장벽 건수를 살펴보면, 전산업의 경우 75.4%를 차지하는 ADP의 활용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CVD(18.3%), SPS(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관세장벽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0%인 농식품 부문의 경우 52.9%를 차지하는 SPS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ADP(41.2%), CVD(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3-8>. 미국이 우리나라 대상 시행한 SPS 조치 9건은 식물 및 절화류(HS0602, HS0603), 쇠고기(HS0201, HS0202), 토마토(HS0702), 가금육 및 부산물(HS0207), 오렌지(HS080510), 난초류(HS060290), 고추류(HS070960), 신선 당근(HS070610), 신선 배(HS080830)와 관련된다.

〈표 3-8〉 미국 對한국 1995~2024년 누적 기준 비관세장벽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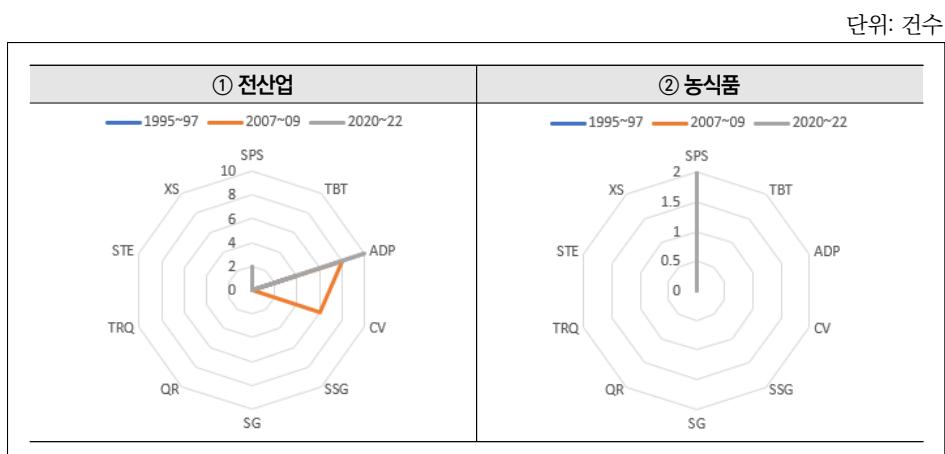
구분	SPS	TBT	ADP	CVD	SSG	SG	QR	TRQ	STE	XS	전체(C)
전산업(A) A/C	9 (6.3)	- (75.4)	107 (18.3)	26 (18.3)	- -	- -	- -	- -	- -	- -	142 (100.0)
농식품(B) B/C	9 (52.9)	- (41.2)	7 (5.9)	1 (5.9)	- -	- -	- -	- -	- -	- -	17 (100.0)
B/A	100.0	-	6.5	3.8	-	-	-	-	-	-	12.0

주: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세번 01~97류,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WTO 출범 이후 3개년 기준 미국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시행한 비관세장벽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산업의 경우 SPS나 ADP의 활용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 부문의 경우 예상과 같이 SPS의 활용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3-9>. 2020~22년 농식품 부문 우리나라 대상 미국이 시행한 2건의 SPS 조치는 신선 당근(070610) 수입인증 결정, 신선 배(080830) 수입요건과 관련된 조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9〉 미국 對한국 3개년 기준 비관세장벽 분포



주 1) WTO 회원국의 NTMs 통보 추이가 2023~24년 감소세로 전환됨. 이는 WTO 회원국 대부분의 통보 지역으로 나타나 2022년을 최근 자료로 활용하여 분석함.

2)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기준 01~97류,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② 중국

중국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시행한 비관세장벽을 살펴보면, 전산업에서는 전체의 61.7%를 차지하는 TBT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SPS(20.5%), ADP(10.4%), QR(3.7%) 등의 순이다. 농식품 부문에서는 전체의 68.1%를 차지하는 SPS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고, 다음으로 TBT(23.8%), QR(2.9%), STE(2.6%)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9>.

2001년 WTO에 가입한 중국의 3개년 기준 비관세장벽 분포를 살펴보면, 전산업의 경우 SPS보다 TBT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농식품 부문의 경우 예상과 같이 SPS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최근 3개년 동안 SPS나 TBT의 활용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0>.

〈표 3-9〉 중국 對세계 1995~2024년 누적 기준 비관세장벽 현황

단위: 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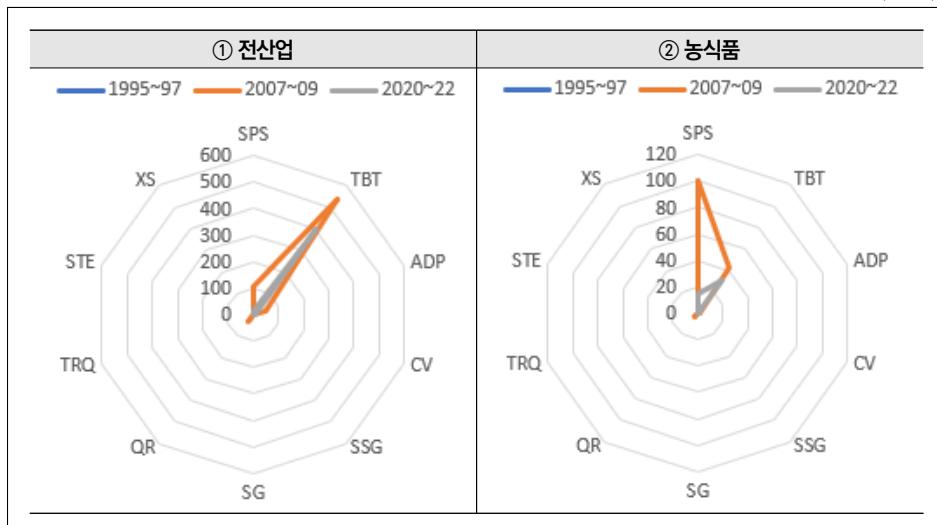
구분	SPS	TBT	ADP	CVD	SSG	SG	QR	TRQ	STE	XS	전체(C)
전산업(A) A/C(%)	717 (20.5)	2,153 (61.7)	362 (10.4)	11 (0.3)	- -	1 (0.0)	128 (3.7)	10 (0.3)	108 (3.1)	- -	3,490 (100.0)
농식품(B) B/C(%)	472 (68.1)	165 (23.8)	6 (0.9)	4 (0.6)	- -	0 (0.0)	20 (2.9)	8 (1.2)	18 (2.6)	- -	693 (100.0)
B/A(%)	65.8	7.7	1.7	36.4	-	0.0	15.6	80.0	16.7	-	19.9

주: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세번 01~97류,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그림 3-10〉 중국 對세계 3개년 기준 비관세장벽 분포

단위: 건수



주 1) WTO 회원국의 NTMs 통보 추이가 2023~24년 감소세로 전환됨. 이는 WTO 회원국 대부분의 통보 자연인 것으로 나타나 2022년을 최근 자료로 활용하여 분석함.

2)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기준 01~97류,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1995~2024년 누적 기준으로 중국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시행한 비관세장벽을 분석한 결과, 전산업에서는 ADP 조치가 전체의 99.0%를 차지하며 대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는 SPS 조치가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3-10>. 농식품 부문에 한정하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시행한 비관세장벽은 2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1건은 식품 및 식물성 생산품에 대한 식물검역 요건과 관련된 SPS 긴급조치이며, 다른 1건은 양조 또는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HS230330)에 대한 ADP 조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WTO 출범 직후와 최근 3개년을 비교해 보면, 전산업의 경우 중국은 2007~09년 기간 15건의 ADP 조치를 시행하였다. 반면 2020~22년 기간에는 3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 부문에서는 최근 3개년 동안 SPS 조치 1건이 시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3-11>.

〈표 3-10〉 중국 對한국 1995~2024년 누적 기준 비관세장벽 현황

단위: 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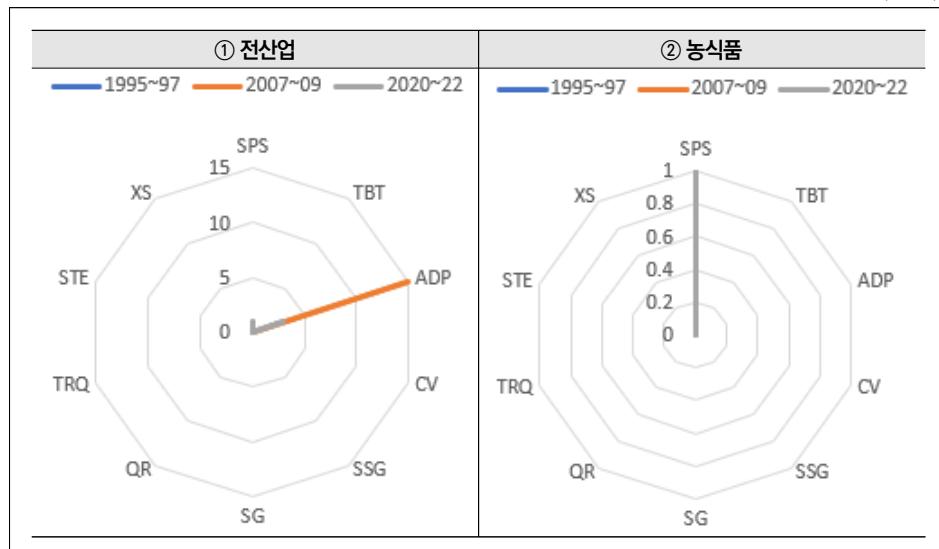
구분	SPS	TBT	ADP	CVD	SSG	SG	QR	TRQ	STE	XS	전체(C)
전산업(A) A/C(%)	1 (1.0)	- (99.0)	97 -	- -	98 (100.0)						
농식품(B) B/C(%)	1 (50.0)	- (50.0)	1 -	- -	2 (100.0)						
B/A(%)	100.0	-	1.0	-	-	-	-	-	-	-	2.0

주: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세번 01~97류,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그림 3-11〉 중국 對한국 3개년 기준 비관세장벽 분포

단위: 건수



주 1) WTO 회원국의 NTMs 통보 추이가 2023~24년 감소세로 전환됨. 이는 WTO 회원국 대부분의 통보 지역으로 나타나 2022년을 최근 자료로 활용하여 분석함.

2)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기준 01~97류,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③ 일본

1994~2024년 누적 기준으로 일본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시행한 비관세장벽을 분석한 결과, 전산업에서는 SPS 조치가 전체의 45.7%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활용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TBT(28.3%), QR(13.1%), SSG(1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 부문에서도 SPS 조치의 비중이 6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SSG(19.5%), TBT(7.7%), QR(3.2%)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표 3-11>. 또한 전산업 대비 농식품 부문에서 비중이 특히 높게 나타난 비관세장벽으로는 STE(83.3%) SPS(85.6%), TRQ(95.7%), SSG(97.6%) 등이 있으며, 이는 대부분 농식품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비관세장벽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WTO 출범 이후 3개년 동안 비관세장벽의 분포 변화를 살펴보면, 전산업과 농식품 부문 모두에서 SPS 조치의 활용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TBT 조치의 활용도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3-12>.

<표 3-11> 일본 對세계 1995~2024년 누적 기준 비관세장벽 현황

단위: 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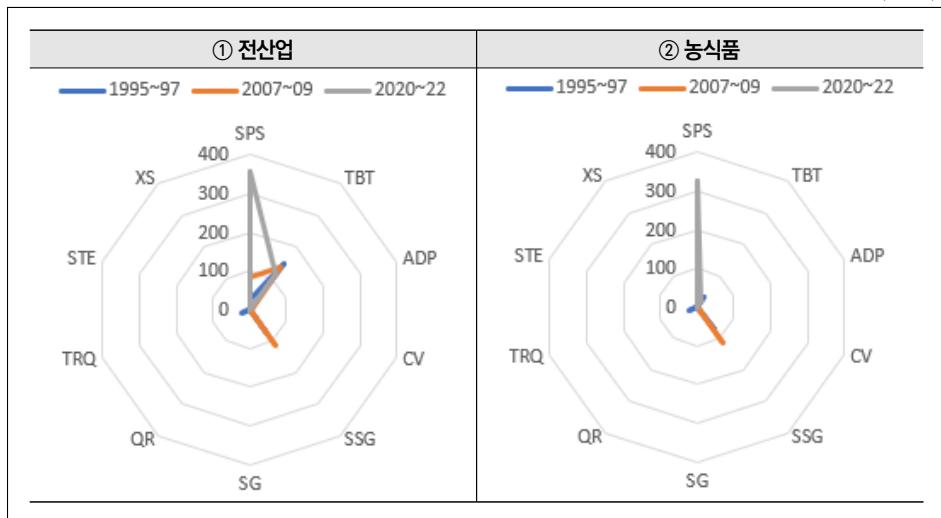
구분	SPS	TBT	ADP	CVD	SSG	SG	QR	TRQ	STE	XS	전체(C)
전산업(A) A/C(%)	1,476 (45.7)	912 (28.3)	17 (0.5)	-	370 (11.5)	-	423 (13.1)	23 (0.7)	6 (0.2)	-	3,227 (100.0)
농식품(B) B/C(%)	1,263 (68.2)	143 (7.7)	0 0.0	-	361 (19.5)	-	59 (3.2)	22 (1.2)	5 (0.3)	-	1,853 (100.0)
B/A(%)	85.6	15.7	0.0	-	97.6	-	13.9	95.7	83.3	-	57.4

주: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세번 01~97류,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그림 3-12〉 일본 對세계 3개년 기준 비관세장벽 동향

단위: 건수



- 주 1) WTO 회원국의 NTMs 통보 추이가 2023~24년 감소세로 전환됨. 이는 WTO 회원국 대부분의 통보가 지연인 것으로 나타나 2022년을 최근 자료로 활용하여 분석함.
 2)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기준 01~97류,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1995~2024년 누적 기준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시행한 비관세장벽을 살펴보면, 전산업에서는 SPS 조치 1건과 ADP 조치 7건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SPS 조치 1건은 농식품 부문에서 시행된 것으로, 기타 살아 있는 식물·꺾꽂이용 가지·접붙임용 가지·버섯의 종균(HS0602), 절화 및 꽃봉우리(HS0603), 사과·배·마르멜로(HS0808), 기타 신선과일(HS0810) 등 식물 및 식물성 생산물을 대상으로 화상병균(*Erwinia amylovora*)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12>.

한편 WTO 출범 초기와 최근 3개년을 비교해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시행한 비관세장벽은 농업 부문이 아닌 비농업 부문에서만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는 2004년 D램 관련 상계관세 조치와 2020년 탄산칼륨 관련 반덤핑 조치 등 2건이 적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망시장과 잠재시장의 전체 및 국가별 비관

세장벽 현황은 <부록 3>의 ‘WTO 비관세장벽 수출시장별 현황’에 추가로 제시하였다. 해당 부록에서는 앞서 성숙시장을 중심으로 살펴본 비관세장벽의 주요 내용을 유망시장과 잠재시장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표 3-12> 일본 對한국 1995~2024년 누적 기준 비관세장벽 현황

구분	SPS	TBT	ADP	CVD	SSG	SG	QR	TRQ	STE	XS	단위: 건수, %
											전체(C)
전산업(A) A/C(%)	1 (12.5)	- -	7 (87.5)	- -	8 (100.0)						
농식품(B) B/C(%)	1 (100.0)	- -	- -	- -	- -	- -	- -	- -	- -	- -	1 (100.0)
B/A(%)	100.0	-	-	-	-	-	-	-	-	-	12.5

주: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세번 01~97류,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2. UN 비관세조치 유형별 분포 현황

2.1. 비관세조치 관련 주요 지표

UNCTAD TRAIN 포털과 세계은행(WB) WITS(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는 전 세계 무역 관련 규제와 비관세조치(NTM)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¹⁶⁾ 이 포털에서 제공하는 빈도지표(Frequency Index: FI), 적용 또는 범위지표(Coverage Ratio: CR), 강도지표(Prevalence Score: PS)를 활용하여 품목별·주요 수출대상국 별 비관세조치의 분포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가장 만연하는 규제 유형, 정책 선호도, 분야별 규제 정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비관세조치 관련 주요 지표의 정의·의미·특징은 <표 3-13>과 같다.

16) UNCTAD TRAINS Portal(검색일: 2025. 9. 17.), Non-Tariff Measures Data for Researchers; World Bank WITS Portal(검색일: 2025. 9. 17.), Non-Tariff Measures Download.

〈표 3-13〉 비관세지표 주요 지표 설명

지표	정의	의미	특징
빈도지표 (FI)	$FI_j = \left[\frac{\sum_i D_i M_i}{\sum_i M_i} \right] \times 100$ <p>여기서 FI_j는 j국의 빈도지표, D_i는 품목 i에 하나 이상의 NTMs 적용되었는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M_i는 품목 i의 수입 존재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p>	특정 국가가 수입하는 전체 품목 중 NTMs가 적용된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	무역 규모 및 수입 물량 미반영, 빈도만 측정
범위지표 (CR)	$CR_j = \left[\frac{\sum_i D_i V_i}{\sum_i V_i} \right] \times 100$ <p>여기서, CR_j는 j국의 적용지표, D_i는 품목 i에 하나 이상의 NTMs 적용되었는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V_i는 품목 i의 수입액</p>	NTMs가 영향을 미치는 교역 물량의 비중을 측정, 즉 NTMs가 적용된 품목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무역 규모 및 수입 물량 반영, 실질적 영향 측정 가능
강도지표 (PS)	$PS_j = \left[\frac{\sum_i N_i M_i}{\sum_i M_i} \right] \times 100$ <p>여기서 PS_j는 j국의 강도지표, N_i는 품목 i에 적용된 NTMs의 수, M_i는 품목 i의 수입 존재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p>	특정 국가 또는 산업 및 품목에서 비관세조치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수입 품목에 영향을 미치는 NTMs의 평균 수	수입 물량 미고려, NTMs 존재 여부만 고려, 수입량 미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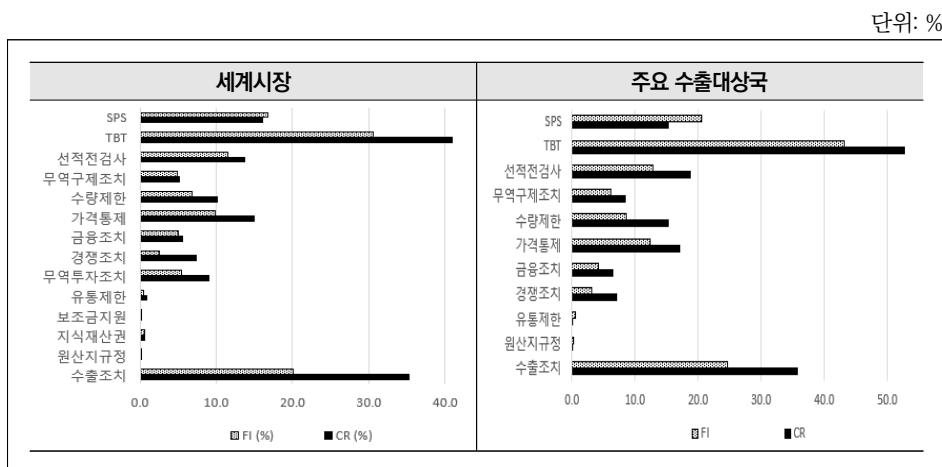
자료: UNCTAD & WTO(2019)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2.2. 비관세조치 유형별 분포 특징

성숙·유망·잠재 수출시장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비관세조치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관세조치는 서로 다른 정책 목적 아래 다양한 형태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 3-13>은 세계시장과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상대국의 대상으로 한 비관세조치의 분포를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전체 비관세조치 유형 가운데 SPS 와 TBT 조치와 같은 기술조치는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유형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의 국제무역이 일정한 형태의 기술규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세계시장뿐 아니라 우리나라 주요 수출상대국의 기술조치 활용 비중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세계시장과 주요 수출상대국은 모두 주로 TBT 조치를 통해 수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세계시장 수입 품목의 약 30%, 주요 수출상대국

수입 품목의 약 43% 이상이 이런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입량 기준으로 각각 41%, 52%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로 기술장벽이 국제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상당함을 보여준다.

〈그림 3-13〉 세계시장과 주요 수출대상국 비관세조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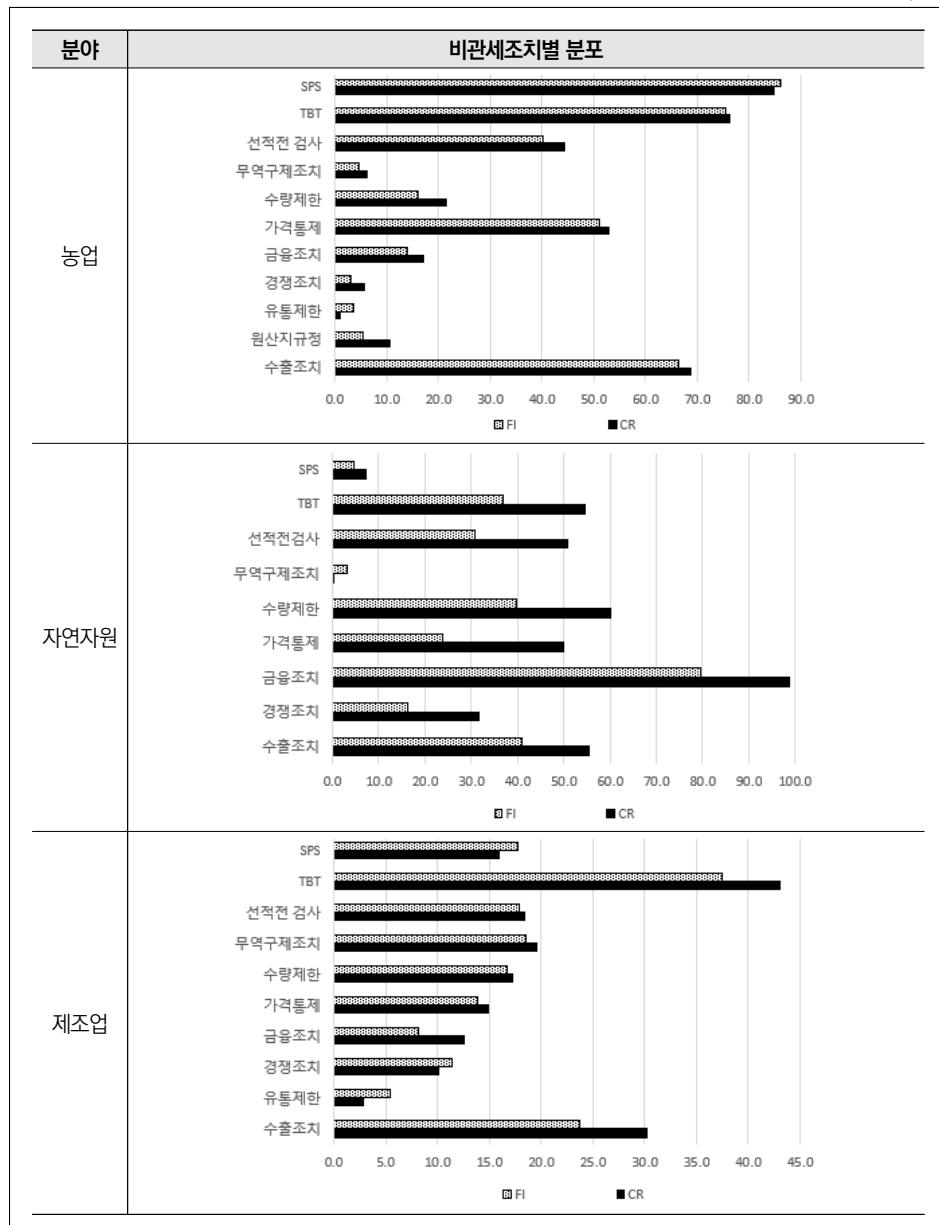


자료: WITS Non-Tariff Measures(NTMs) Data Download(검색일: 2025. 8. 26.), NTM Indicators Measure Sector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 수출상대국에서 비관세조치는 농식품 부문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활용되고 있다. 농식품 분야는 비관세조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영역으로, 주요 수출상대국의 농식품 수입 대부분이 SPS나 TBT 형태의 비관세조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실제로 SPS와 TBT 조치의 경우 수입 품목의 86%, 75% 이상이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는 수입량 기준으로 약 84%, 76% 이상에 해당한다<그림 3-14, 3-15>. 자연자원 부문은 금융조치, 수량제한, TBT, 가격통제조치(최저수입가격, 가변 부과금 및 수수료) 등의 다양한 형태의 규제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조업 부문은 주로 TBT 조치에 의해 규제를 받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이는 수입 품목의 약 37%, 수입액 기준 43%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14〉 주요 수출대상국 분야별/조치별 비관세조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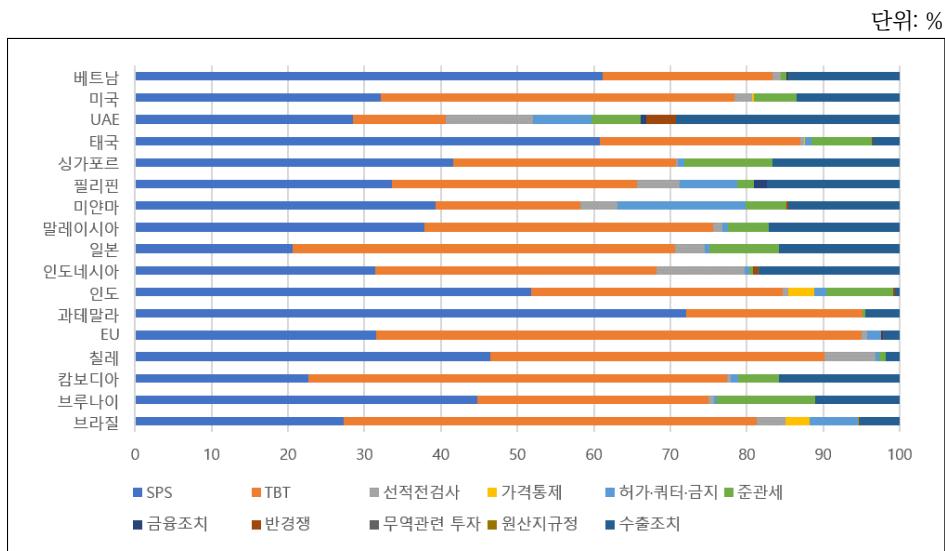
단위: %



주: 각 분야는 HS 2단위에서 정의되며 농업은 HS1~24류, 자연자원은 HS25~27류, 제조업은 HS28~97류로 정의됨.

자료: WITS Non-Tariff Measures(NTMs) Data Download(검색일: 2025. 8. 26.), NTM Indicators Measure Sector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15〉 주요 수출대상국 비관세조치 분포(국별 비관세조치의 비중)



주: 주요 수출대상국의 전체 비관세조치 대비 개별 비관세조치의 활용 비중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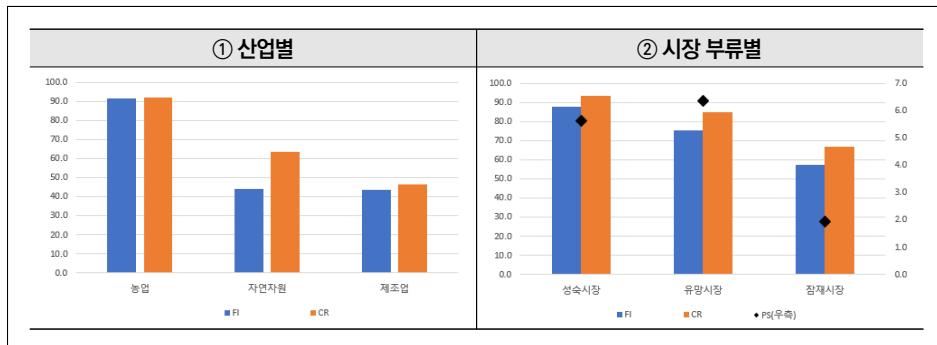
자료: WITS Non-Tariff Measures(NTMs) Data Download(검색일: 2025. 8. 26.), NTM Indicators Measure Sector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주요 수출상대국의 농업 부문을 살펴보면, 수입 품목의 92%가 비관세조치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는 수입액 기준으로 92%에 달하는 높은 수준을 보인다. 자연자원과 제조업 부문 역시 수입 품목의 약 44%, 43%가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는 수입액 기준으로 각각 63%, 47%에 해당한다<그림 3-16>.

시장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숙시장은 전체 수입 품목의 약 88%에 대해 비관세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유망시장과 잠재시장은 성숙시장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각각 수입 품목의 75%, 58% 수준의 규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규제는 성숙시장 수입액의 94%, 유망시장 수입액의 85%, 잠재시장 교역액의 67%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 품목별 평균 적용 건수를 살펴보면, 성숙시장과 유망 시장은 5~6개의 비관세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잠재시장은 평균 2개의 비관세 조치를 적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16〉 주요 수출대상국 비관세조치 분포 현황

단위: %(좌측), 개수(우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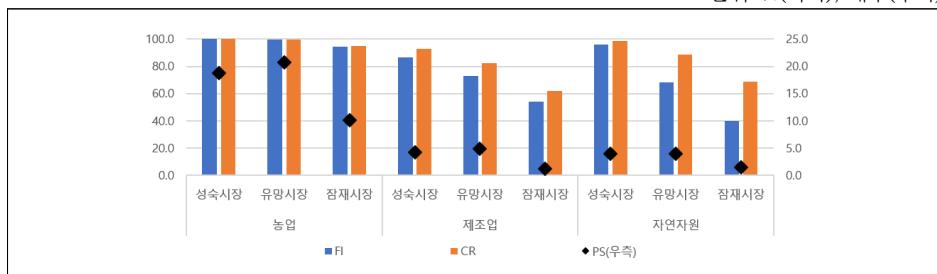


자료: UNCTAD(검색일: 2025. 8. 26.), Data on non-tariff measures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분야에서 잠재시장, 유망시장, 성숙시장 순으로 비관세조치의 영향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농식품 부문은 비관세조치의 영향이 가장 크게 받는 영역으로 농식품 수입 품목의 95~100%가 비관세조치의 규제를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비관세조치는 교역 규모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범위지표(CR) 역시 모든 시장에서 62~100%의 범위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수입 농식품 품목당 적용되는 비관세조치의 평균 적용 건수를 살펴보면 잠재시장은 약 10개, 성숙시장은 19개, 유망시장은 21개의 비관세조치가 시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7>.

〈그림 3-17〉 주요 수출대상국 분야별 비관세조치 분포

단위: %(좌측), 개수(우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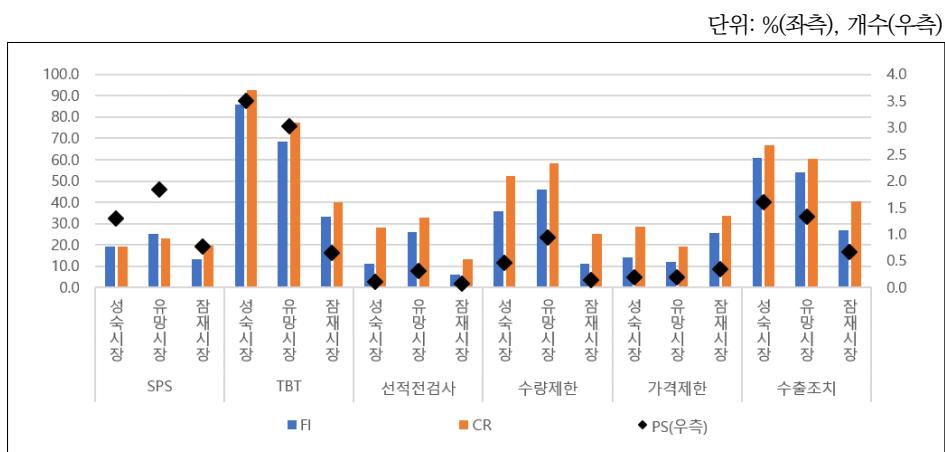
주: 각 분야는 HS 2단위에서 정의되며, 농업은 HS1~24류, 자연자원은 HS25~27류, 제조업은 HS28~97류로 정의됨.

자료: UNCTAD(검색일: 2025. 8. 26.), Data on non-tariff measures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장별 비관세조치 중 가장 두드러지는 유형은 TBT 조치이다. 특히 성숙시장은 TBT 조치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장으로 수입 품목의 85% 이상이 최소 1개 이상의 TBT 조치를 적용받고 있으며, 이는 성숙시장 전체 수입량의 92% 이상을 차지한다. 성숙시장에서 수입되는 각 품목은 평균적으로 3개 이상의 비관세조치가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망시장과 잠재시장은 성숙시장보다는 규제 수준이 낮지만, 비관세조치의 활용 유형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성숙시장 수입 품목의 약 36%는 협약요건이나 쿼터와 같은 수량제한조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SPS 조치는 농업 부문에서 활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전체 산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 전체 기준으로 보면 SPS 조치의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각 시장의 SPS 조치 비중은 수입액 기준으로 19~23%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시장 유형별 규제 특성을 살펴보면, 성숙시장과 유망시장은 TBT 및 SPS 조치, 선적 전 검사 등 기술적 조치와 더불어 수량제한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반면 잠재시장은 상대적으로 가격제한조치를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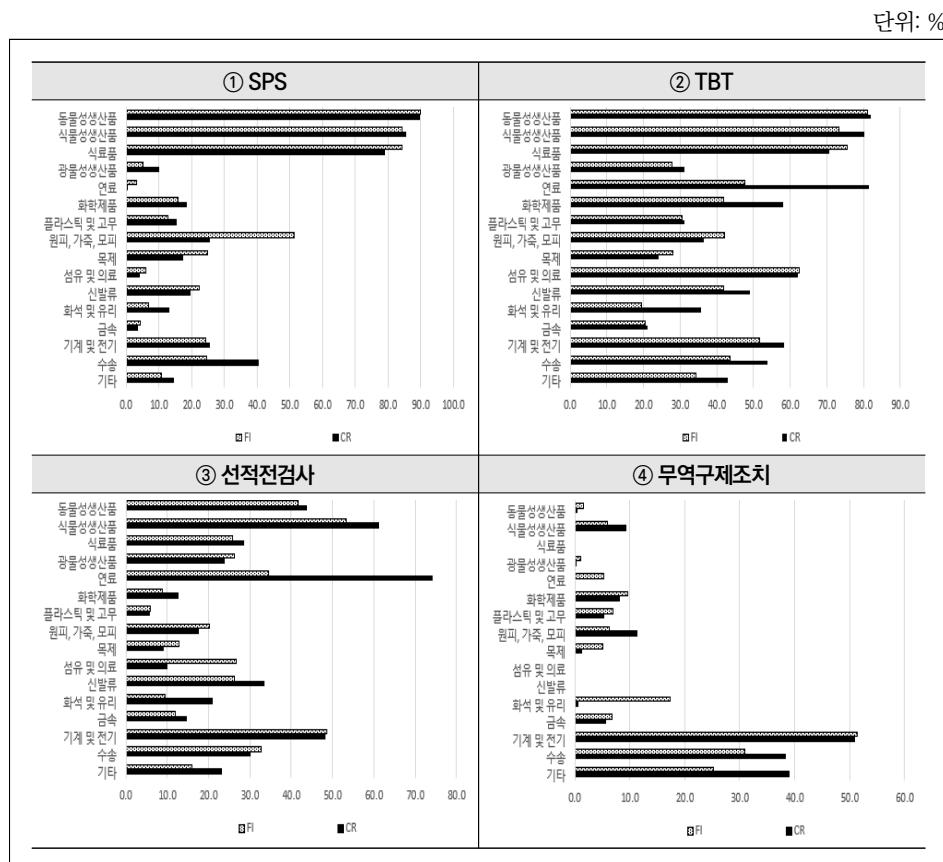
〈그림 3-18〉 주요 수출대상국 조치별/시장별 비관세조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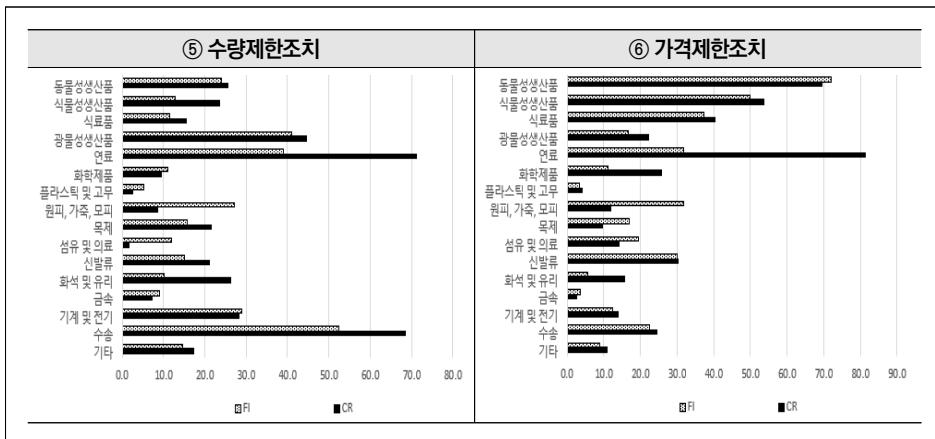


자료: UNCTAD(검색일: 2025. 8. 26.), Data on non-tariff measures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19>는 우리나라 주요 수출상대국이 시행하는 품목별 비관세조치 분포 현황을 보여준다. SPS 조치는 주로 동물성·식물성 생산품과 식료품 등 농산물에 적용되며, 환경 위험성이 내재된 품목에도 폭넓게 활용된다. TBT 조치는 국제무역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규제 수단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가격 또는 수량제한조치와 같은 비기술적 비관세조치는 농업 부문을 포함한 여러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선적전검사 등 다른 유형의 비관세조치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며, 주요 수출 대상국 간 전반적인 규제 패턴이 비슷한 방향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19> 수출대상국의 비관세조치별 세부 품목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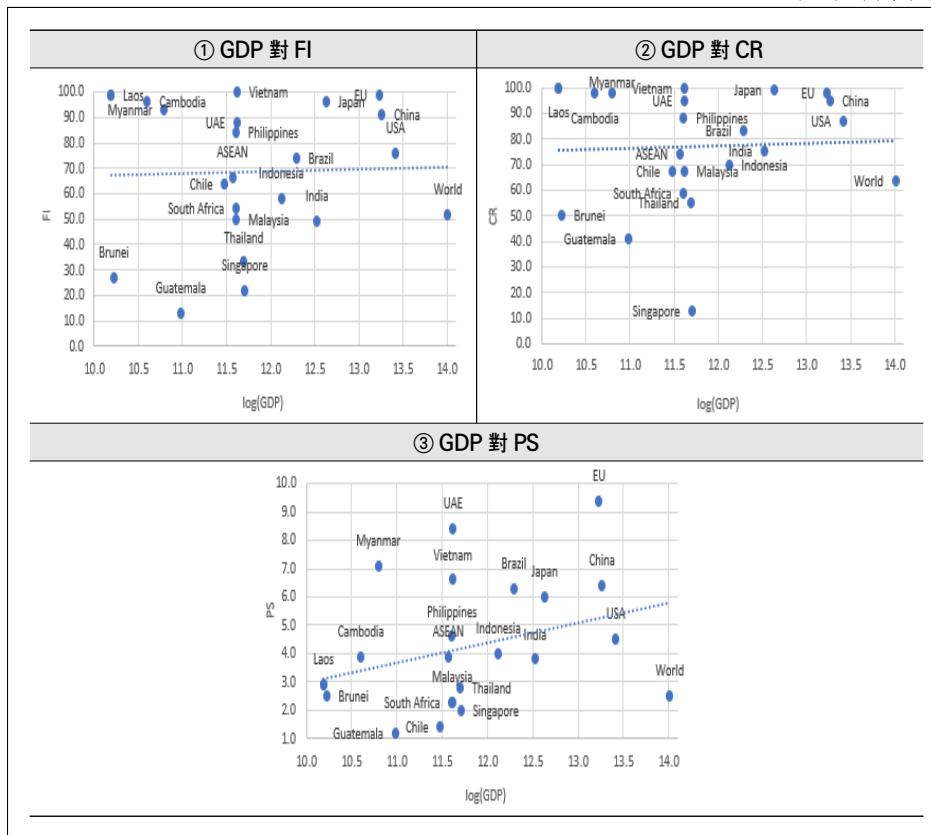
자료: UNCTAD(검색일: 2025. 8. 26.), Data on non-tariff measures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GDP와 관세, 그리고 비관세조치 지표 간의 관계를 개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산포도(scatter plot)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¹⁷⁾ 먼저 <그림 3-20>은 산포도를 통해 GDP와 빈도지표(FI), 범위지표(CR), 강도지표(PS) 간의 연관성을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분석 결과, 경제발전 수준(소득 증가)이 비관세조치의 증가와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가 발전하고 현대화될수록 소비자들은 품질이 다양하고 수준이 높은 제품을 요구하게 되며, 이에 따라 SPS나 TBT와 같은 기술적 규제 조치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다시 말해 소비자 선호가 고품질·고안전 제품 중심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규제의 강화는 이러한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당국의 자연스러운 정책적 반응으로 해석될 수 있다.

17) 비관세조치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핵심 질문 중 하나는 정책 대체성 여부와 관련된다. 즉 각국이 무역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관세조치를 관세의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는지, 혹은 기존 관세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쟁점을 더욱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통한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UNCTAD, 2018).

<그림 3-20> 주요 수출대상국 GDP별 CR, FI, PS 분포

단위: %, 개수(좌측)



주: GDP와 FI의 상관계수는 0.029, GDP와 CR은 0.039, GDP와 PS는 0.327로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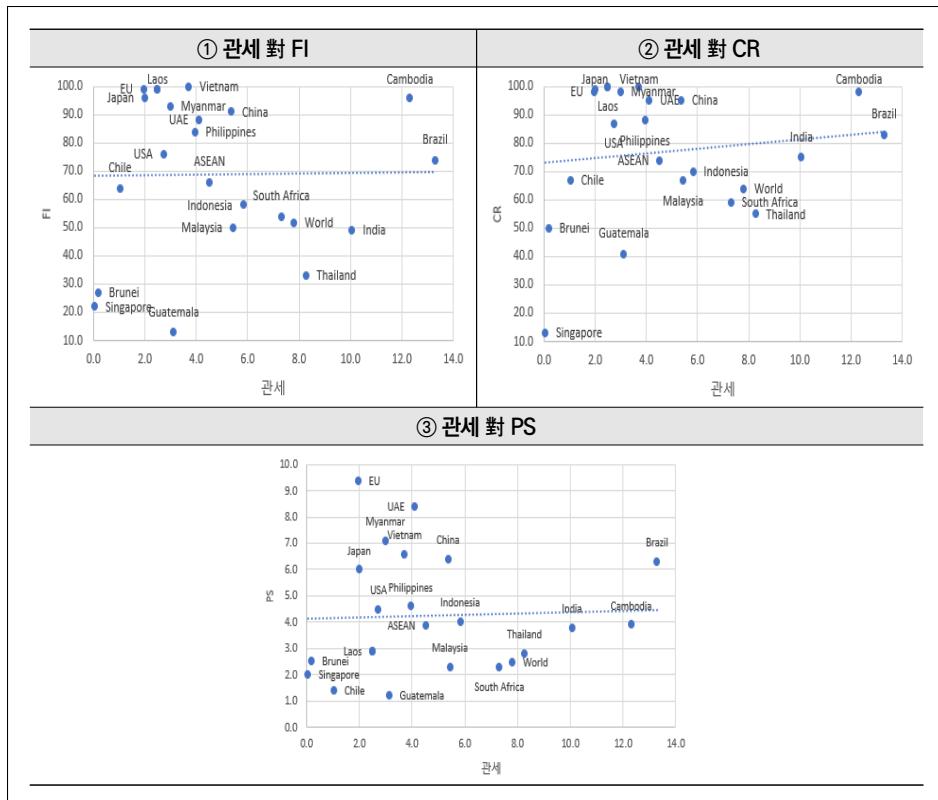
자료:UNCTAD(검색일: 2025. 8. 26.), Data on non-tariff measures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21>은 산포도를 통해 양허관세와 지표(FI, CR, PS) 간의 연관성을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분석 결과, 관세를 통한 보호 수준이 높은 시장일수록 비관세조치를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수입을 규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선진국인 미국, EU, 일본의 경우 전반적으로 관세 수준은 낮지만, 비관세조치의 활용 빈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관세보다는 기술조치 등 비관세장벽을 중심으로 무역 규제가 이루어지는 선진국 시장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콜롬비아, 브라질 등 일부 국가의 경우 관세 수준과 비

관세조치 활용도 모두 높은 양상을 보여 두 조치를 병행하여 수입을 규제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21〉 주요 수출대상국 관세수준별 CR, FI, PS 분포

단위: %, 개수(좌측)



주 1) 실행관세 기준이며, 양허관세의 경우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2) 관세와 FI의 상관계수는 0.013, 관세와 CR은 0.126, 관세와 PS는 0.039로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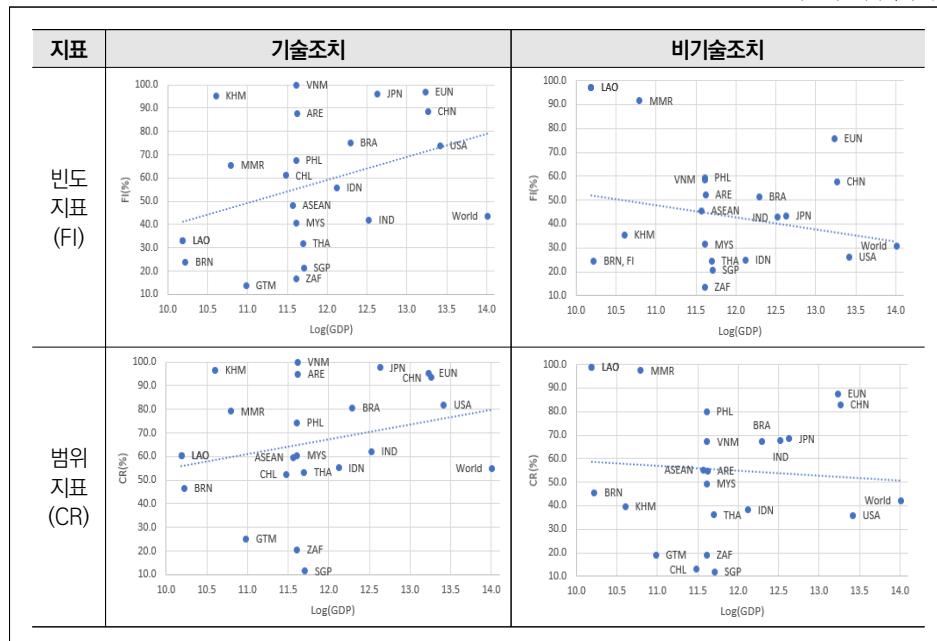
자료: UNCTAD(검색일: 2025. 8. 26.), Data on non-tariff measures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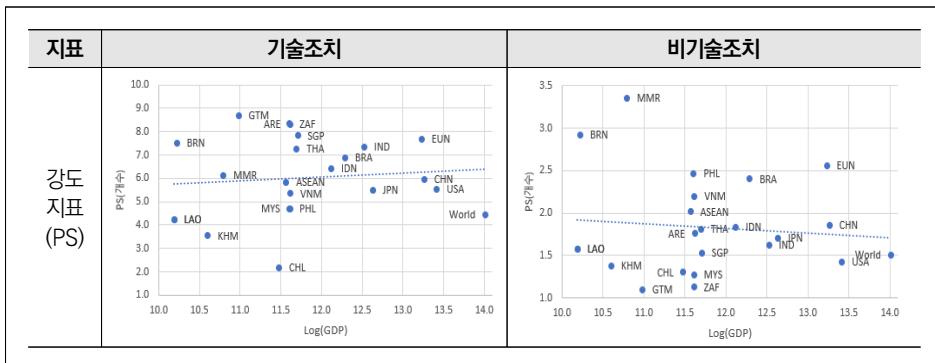
〈그림 3-22〉와 〈그림 3-23〉은 기술적 비관세조치와 비기술적 비관세조치의 지표(FI, CR, PS)를 경제 규모 및 관세 수준에 따라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 SPS, TBT, 선적전검사와 같은 기술적 비관세조치는 GDP 증가와 함께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인다. 반면 수량제한조치·가격통제조치 등 비기술적 비관세조치는

GDP가 증가할수록 우하향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국가별 경제 규모가 커질 수록 기술적 비관세조치의 활용도가 증가하고, 반대로 비기술적 조치의 활용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반영한다. 기술적 비관세조치 활용의 증가는 경제발전과 소비자 선호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정책적 대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Hummels & Lugovsky(2009)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수입 품목의 단위 가치가 상승하며, 이는 소비자들이 더욱 고급스럽고 안전한 제품을 선호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SPS·TBT와 같은 기술적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규제 당국의 합리적인 반응으로 해석된다. 반면 비기술적 조치와 GDP 간의 부정적 상관관계는 저소득 국가들이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비기술적 조치를 규칙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 비관세조치는 국가 간 이질성이 크지만, 비기술적 조치는 규칙적으로 적용하는 국가와 간헐적으로 적용하는 국가가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그림 3-22〉 경제 규모별 기술적·비기술적 비관세조치 분포 비교

단위: %, 개수(좌측)





주: 기술조치의 경우, GDP와 FI의 상관계수는 0.371, GDP와 CR은 0.260, GDP와 PS는 0.099로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비기술조치의 경우 GDP와 FI의 상관계수는 -0.197, GDP와 CR은 -0.081, GDP와 PS는 -0.100로 모두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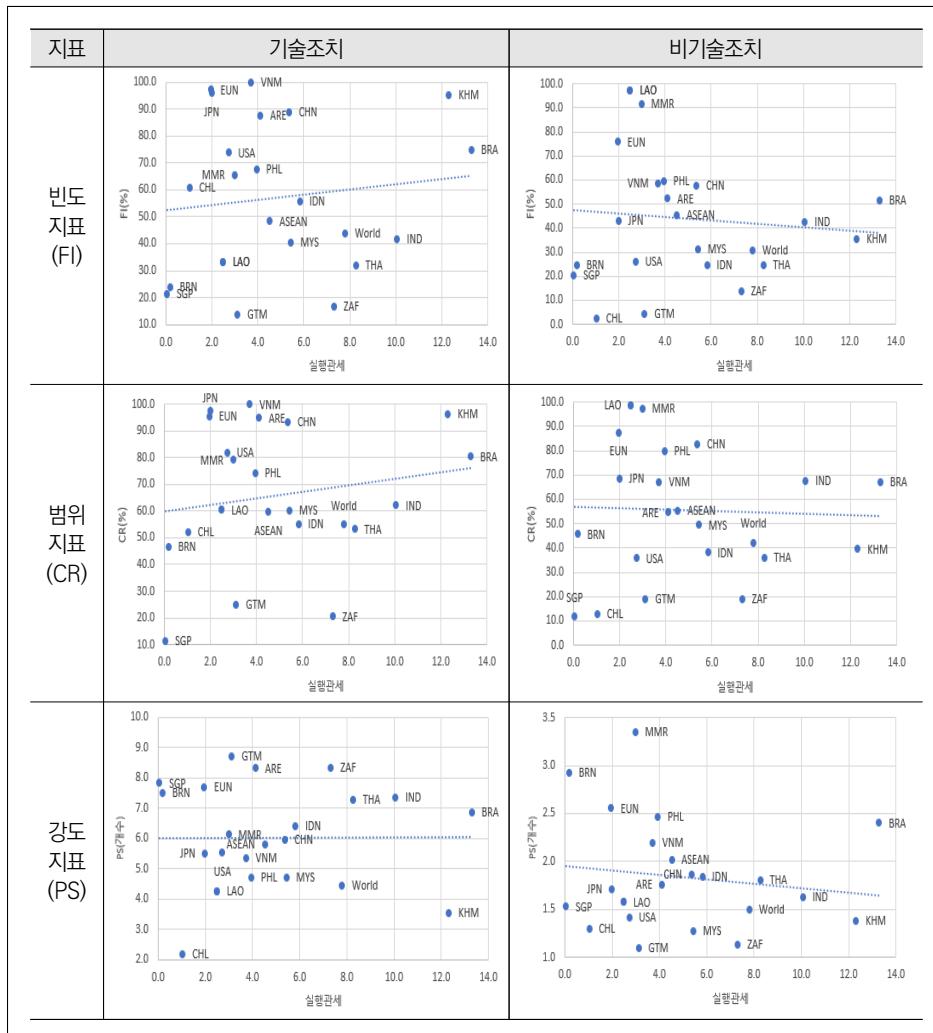
자료: UNCTAD(검색일: 2025. 8. 26.), Data on non-tariff measures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비관세조치와 관세 수준 간의 관계 역시 GDP와의 관계와 유사한 패턴을 나타낸다. 무역정책 분석에서 반복적으로 논의되는 쟁점은 비관세조치가 관세의 대체적 수단인지 또는 관세를 보완하는 수단인지 여부이다. <그림 3-23>의 분석 결과, SPS·TBT·선적전검사 등 기술적 비관세조치를 활발하게 활용하는 국가들은 대체로 낮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다. 이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관세보다는 기술조치를 통해 무역을 규제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대로 관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일수록 수량제한이나 가격통제 등 비기술적 비관세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GDP 규모가 큰 선진국은 관세율이 낮고, GDP 규모가 작은 개도국은 비교열위에 있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다. 본 분석에서는 GDP와 관세 수준이 높을수록 기술적 비관세조치의 활용도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성숙·유망·잠재 시장에 아세안 국가 등 다수의 농산물 수출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국가가 FTA를 통해 관세율을 상당 수준 감축함으로써 기술적 비관세장벽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활용하는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림 3-23〉 관세 수준별 기술적·비기술적 비관세조치 분포 비교

단위: %, 개수(좌측)



주: 기술조치의 경우, 관세와 FI의 상관계수는 0.125, 관세와 CR은 0.172, 관세와 PS는 0.009로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비기술조치의 경우 관세와 FI의 상관계수는 -0.096, 관세와 CR은 -0.038, GDP와 PS는 -0.144로 모두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UNCTAD(검색일: 2025. 8. 26.), Data on non-tariff measures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3. ESG 관련 비관세조치 유형 분포

ESG 경영 이슈는 환경·사회·지배구조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제도 및 규제의 도입을 촉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비관세조치(NTMs)의 형태로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환경(Environment)’ 영역에서 환경규제 및 친환경 기준의 확산은 환경 관련 기술규제(TBT)와 동식물 위생검역조치(SPS)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각국이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이나 국가는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플라스틱 규제, 생물다양성 보호 등 다양한 환경정책이 잠재적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확대되고 있다.

‘사회(Social)’ 영역에서는 노동·인권·포용 관련 무역 조건이 강화되고 있다.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조항이 무역협정 및 국내 수입 규제에 포함되면서 공급망 내 인권 문제가 직접적인 수출입 제약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회적 인증(Social compliance certification) 요구 역시 공공조달과 대형 바이어의 규제 요건으로 정착하고 있으며 포용성, 양성평등,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 가치 요소가 비관세조치에 반영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배구조(Governance)’ 영역에서는 기업의 투명성과 윤리적 무역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각국은 기업의 ESG 경영 정보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특정 시장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한 기업 정책과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부패방지 조치, 투명한 소싱 및 공급망 관리 체계는 무역 참여를 위한 필수 자격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ESG 경영 논의의 확산은 비관세조치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며 전통적인 무역 규범 및 정책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본 절에서는 ESG 경영의 사회·환경·지배구조 영역에 대응하는 세부 비관세조치 유형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정량 지표를 산출하여 ESG 경영 관련 비관세조치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표 3-14>는 환경·사회·지배구조의 세 영역에 따라 ESG 경영 관련 제도 및 규제가 반영될 수 있는 비관세

조치의 세부 코드를 식별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세부 비관세조치가 모두 ESG 경영 논의의 확산에 직접적으로 기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ESG 경영 규범 도입이 관련 비관세조치 강화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있다.

〈표 3-14〉 ESG 경영 관련 비관세조치 분류

항목	세부 비관세조치와 코드	ESG 경영 관련성	분석 대상
환경	A86 검역 요건	해충이나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해 동식물의 수입 시 격리 및 검사를 요구함.	○
	B22 특정물질의 사용 제한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수입을 제한함.	○
	B31 환경 정보 라벨 요구	에너지 효율, 재활용 가능성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친환경 소비를 유도함.	○
	B33 포장재 관련 규제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 사용, 과도한 포장 방지 등을 요구하여 폐기물 발생을 줄임.	○
	E123 환경 보호를 위한 수입허가	유해물질이나 화학물질 수입에 대해 허가를 요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함.	○
	E323 환경 보호를 위한 수입금지	생물다양성 훼손, 기후변화 유발 물질 등 환경 위해요소가 있는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함.	○
	P11 수출 허가 요건 (기술적 사유)	멸종위기종, 유해 화학물질 등의 수출을 허가제로 관리하여 환경을 보호함.	○
사회	A21 잔류물질 최대 허용치	식품에 포함될 수 있는 유해 잔류물질의 최대 허용 기준을 설정함.	○
	A31 식품 안전 관련 표시 요구	영양성분,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 표시를 요구함.	○
	B7 제품 안전 및 품질 요건	소비자 제품의 안전기준을 설정하여 사고와 부상을 예방함.	○
	E125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한 수입허가	위해 식품, 의약품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허가를 요구함.	○
	E321 종교/도덕/문화적 이유의 수입금지	도덕적 기준에 따라 아동노동 등 인권 문제 관련 제품의 수입을 제한함.	○
	E325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한 수입금지	석면, 위해 식품 등 공중 보건을 위협하는 제품의 수입을 금지함.	○
	M62 특정 사회집단을 위한 공공조달 할당제	소수자, 중소기업 등을 위한 계약 할당제를 통해 포용성을 증진함.	×
지배 구조	B85 공급망 추적성 요건	제품의 원산지, 유통경로 등을 추적함으로써 공급망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임.	○
	M14 비경제적 목적의 공공조달 예외	가격 이외의 환경, 사회적 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 조달 예외 규정을 포함함.	×
	M61 인증·면허 기준	공공조달 참여 기업에 환경·윤리 관련 인증 보유를 요구함.	×

자료: 저자 작성.

ESG 경영 관련 비관세조치 지표는 제3장 제2절과 동일한 유형과 산출 방법을 기반으로 분석하였으나, 특정 사회집단을 위한 공공조달 할당제(M62), 비경제적 목적의 공공조달 예외(M14), 인증·면허 기준(M61)과 같은 일부 비관세조치 코드는 분석대상 국가 중 해당 조치를 적용한 사례가 없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3-15>는 농식품 상품류별 ESG 경영 관련 세부 비관세조치의 정량 지표 산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환경 관련 조치 중에서는 TBT의 ‘환경 정보 라벨 요구(B31)’과 ‘포장재 관련 규제(B33)’가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사회 관련 조치에서는 SPS의 ‘잔류물질 최대 허용치(A21)’와 ‘식품 안전 관련 표시 요구(A31)’, 그리고 TBT의 ‘제품 안전 및 품질 요건(B7)’의 비관세조치 지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농식품 상품류 간에 ESG 경영 관련 비관세조치 지표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5> 농식품 류별 ESG 경영 관련 비관세조치 정량 지표

구분		동물성 생산물			식물성 생산물			가공식음료		
항목	코드	FI	CR	PS	FI	CR	PS	FI	CR	PS
환경	A86	32.3	31.6	49.7	37.5	26.3	49.7	8.7	8.4	11.8
	B22	1.0	0.4	1.0	3.3	3.6	3.7	4.5	4.2	4.7
	B31	72.4	85.0	181.3	80.6	86.5	187.2	87.9	93.1	252.9
	B33	25.9	36.1	27.3	31.3	36.2	39.2	35.0	51.0	42.3
	E123	11.6	10.7	12.6	2.9	4.7	3.2	1.8	5.5	2.0
	E323	4.2	2.5	6.2	1.3	0.3	1.5	2.2	1.2	2.3
	P11	42.4	25.0	66.3	33.0	11.6	50.5	17.4	10.0	23.2
사회	A21	65.8	76.3	119.7	69.1	71.3	96.9	68.9	56.2	89.3
	A31	68.1	79.5	169.7	77.2	86.0	174.1	81.7	87.2	196.8
	B7	28.1	24.2	57.6	38.3	41.4	58.2	39.4	44.7	70.6
	E125	4.9	5.7	4.9	6.9	14.9	6.9	6.4	8.7	6.4
	E321	3.0	4.0	3.1	3.0	2.6	3.0	3.2	2.5	3.5
	E325	1.0	0.6	1.1	1.5	0.9	1.5	2.6	1.3	2.7
지배구조	B85	7.8	8.4	7.8	9.4	7.1	10.8	12.3	20.8	14.1

주 1)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41개국(분석 가능 64개 국가 중 2개년 이상의 NTMs 자료가 이용 가능한 국
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FI, PS, CR는 각각 빈도 지표(Frequency Index), 적용 지표(Coverage Ratio),
강도 지표(Prevalence Score)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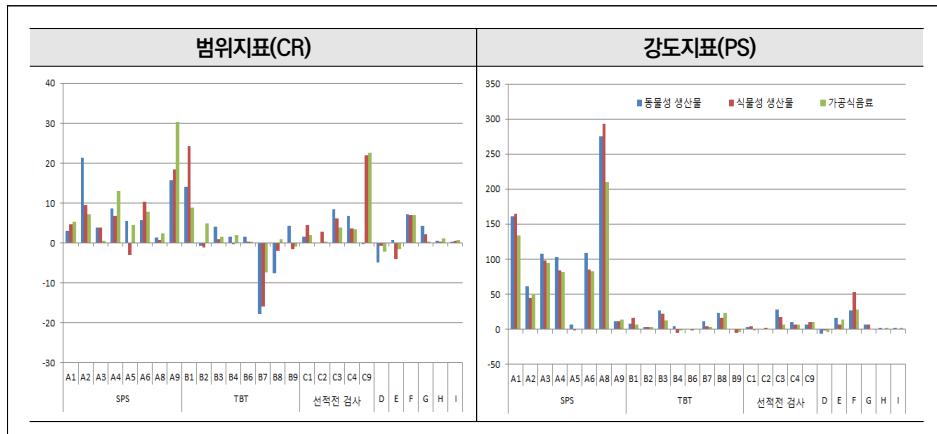
2) 동물성 생산물은 HS 제1류~5류(제3류 제외), 식물성 생산물은 HS 제6류~제15류, 가공식음료는 HS 제
16류~23류에 해당함.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24>는 2015~20년 기간 ESG 경영과 관련된 비관세조치의 동태적 변화를 보여준다. 이는 2020년 비관세조치 지표에서 2015년 지표를 차감하여 5년간의 증감을 파악한 것이다. 분석 결과, 해당 비관세조치의 영향을 받는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범위지표(CR)와 수출상대국의 도입 건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강도지표(PS) 간에 서로 다른 변화 양상이 확인되었다.

특히 강도지표(PS)는 대부분의 세부 비관세조치에서 증가했지만, 범위지표(CR)는 일부 비관세조치에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ESG 경영 관련 비관세조치의 도입 건수는 증가했지만, 그 조치들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수입액이 반드시 비례하여 증가하지는 않았음을 의미한다. 분석 기간 도입된 ESG 경영 관련 규제는 주로 SPS 조치가 중심이었으나, SPS 조치뿐 아니라 TBT 조치와 선적 전검사 등 일부 조치에서도 영향을 받는 수입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TBT 조치 중 ‘제품 안전 및 품질 요건(B7)’의 경우 강도지표(PS) 점수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CR 점수는 오히려 크게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해당 조치의 빈도는 유지되었으나, 그 영향이 미치는 교역 규모는 감소했음을 시사한다.

<그림 3-24> ESG 경영 관련 비관세조치 지표의 동태 변화



주: 2020년 비관세조치 지표 점수에서 2015년 비관세조치 지표 점수를 뺀 값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3. 요약 및 시사점

주요 국제기구 자료(WTO I-TIP, UNCTAD NTMs, World Bank WITS)를 바탕으로 비관세조치 동향을 분석한 결과, TBT(무역기술장벽)와 SPS(위생검역조치)가 전 세계 교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비관세장벽 유형으로 파악되었다. 1995~2024년 누적 기준 전산업에서는 TBT가 전체 비관세조치의 53.7%, SPS가 28.0%를 차지하며 ADP(반덤핑), QR(수량제한조치)이 그 뒤를 잇는다. 농식품 부문은 전산업 비관세조치의 41.4%를 차지할 만큼 비관세조치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높은 분야로, 전체 농식품 비관세조치 중 SPS 비중이 53.1%, TBT가 34.3%로 압도적이다. 특히 SSG(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 TRQ(관세할당제), XS(수출금지), SPS 등 농업특유의 조치 유형은 전산업 대비 농식품 비중이 80~90%에 달해 농업·식품 부문이 비관세장벽의 가장 중요한 적용 대상임을 보여준다.

지역·국가별로 보면, 전산업 기준에서는 미국, 브라질, 중국, EU, 아시아 및 남미 국가에서 SPS·TBT 활용도가 높게 나타난다. 농식품 부문에서는 남미, 아시아, 중동 지역과 미국, 브라질, 일본, EU, 페루 등이 주요 규제 도입국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비관세조치는 과거에는 ADP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인체·동식물 건강 및 안전을 다루는 SPS 조치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정부의 수출시장 전략에서 중요한 축인 성숙·유망·잠재시장별 비관세조치 분포를 보면, 전산업 차원에서는 잠재시장에 비해 성숙·유망시장에서 TBT·SPS 활용도가 높다. 반면 농식품의 경우 잠재·성숙·유망시장 모두에서 비관세조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 시장 유형과 관계없이 농식품 수출은 사실상 상시적인 규제 환경에 놓여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 수출상대국(미국·중국·일본 등)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공통적으로 농식품 수입의 90% 이상이 SPS·TBT 등 비관세조치 적용 대상이며, 품목당 적용 건수도 성숙·유망시장에서 1개 품목당 5~6개, 농식품

에 한정하면 10~20개에 달한다. 이는 농식품 수출이 단순 관세 문제가 아니라 복수의 복잡한 기술·검역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UNCTAD·세계은행의 FI(빈도지표), CR(범위지표), PS(강도지표)를 활용한 분석 결과, 경제발전 수준(GDP)이 높을수록 SPS·TBT 등 기술적 비관세조치의 활용도가 증가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소비자는 고품질·고안전 제품을 요구하고, 이에 대응하여 규제 당국은 안전·품질·환경 관련 기준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정책 반응으로 해석된다. 관세 수준과의 관계에서는 미국·EU·일본 등 선진국 등의 관세율은 낮지만 기술적 비관세조치 활용도는 높은 전형적인 ‘저관세-고비관세장벽’ 구조를 보인다. 반면 일부 개도국은 높은 관세와 더불어 비기술적 조치(수량제한, 가격통제 등)도 병행하는 이중 보호 패턴을 보였다. 최근 FTA 확산과 관세 인하가 진전되면서, 특히 농산물 수출국·FTA 체결국에서는 관세를 낮추는 대신 기술적 비관세조치를 강화하는 구조적 전환이 진행 중인 것으로 해석된다.

ESG 경영 규범 확산은 새로운 형태의 비관세조치를 양산하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E) 측면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플라스틱 규제, 포장 규제, 환경정보 라벨링 등 환경기준이 TBT·SPS 조치로 구체화하고 있다. 사회(S) 측면에서는 강제노동·아동노동 금지, 사회적 인증, 인권·포용 관련 조항이 무역규범에 편입되며 공급망 전반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지배구조(G) 측면에서는 ESG 정보공시, 투명한 소싱, 반부패·윤리 경영 요건이 수출입 참여의 전제 조건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ESG 관련 세부 비관세조치의 강도(PS 지표)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영향 범위(CR 지표)는 일부 항목에서 정체·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규제의 종류와 건수는 늘어나지만 그 영향이 집중되는 품목·시장에 편중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농식품 부문에서는 환경 라벨, 포장 규제, 잔류물질 허용치, 식품 안전 표시, 제품 안전·품질 요건 등이 대표적인 ESG 경영 연계 비관세조치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결과를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첫째, 농식품 수

출은 ‘저관세-고규제’ 환경을 전제로 하는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 관세 인하나 FTA 체결만으로는 수출 확대 효과가 제한적이며, SPS·TBT 대응 역량이 실질적인 시장 접근 능력을 좌우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검역·통관, 성분·라벨링, 환경·ESG 요건에 대한 통합 대응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둘째, 비관세조치는 농식품 수입 품목의 95~100%에 적용되는 ‘상시 리스크’인 만큼 개별 사건 대응 중심에서 상시 모니터링, 사전 대응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주요 수출상대국의 규제 변화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고, 위험도가 높은 품목·시장에 대해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과 대응 매뉴얼을 제시하는 체계가 중요하다. 셋째, ESG 연계 비관세조치 확산에 대응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농식품 수출전략의 핵심 축으로 편입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환경 라벨, 포장 규제, 잔류허용기준, 노동·인권 기준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생산·가공단계에서 ESG 기준을 내재화하여 비관세조치를 ‘시장 진입 장애’가 아닌 ‘경쟁 우위 요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선진국과 일부 개도국에서 관세와 비관세조치가 보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역시 FTA 협상·개정, 무역규범 논의 시 비관세조치 의제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농식품 분야에서는 특히 SPS·TBT 위원회, 무역분쟁 해결 절차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과도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완화·조정하는 외교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국제 비관세조치 환경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수출업체-전문기관 간 역할 분담과 협력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정보·제도·국제협상 인프라를, 민간은 현장 데이터와 기술적 대응을, 전문기관은 분석·컨설팅 기능을 맡는 삼각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식품 수출의 구조적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비관세조치의 농식품 수출 영향분석

비관세조치의 농식품 수출 영향분석

1. 분석 개요

1.1. 분석모형 설정 이론적 접근

비관세조치(NTMs)는 수입품에 다양한 조건과 제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수입국이 새로운 NTMs를 도입하는 경우 수출국은 생산·유통·수출 과정 전반에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NTMs 준수비용은 결국 수출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무역량 감소를 초래하는 무역장벽(NTBs)으로 기능한다. 이와 같은 NTMs 의 무역장벽화 현상은 관세율 하락에 따른 시장개방 효과를 상쇄하고, NTMs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대체 보호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다.¹⁸⁾

NTMs 준수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수출기업이 수입국 NTMs의 조건과 제한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 비용으로 적응비용(adaptation costs), 정

18) Novy(2013a, 2013b); Arvis et al.(2016) 연구에 따르면, 저소득 국가에서는 관세가 인하되었음에도 전반적인 무역비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 수출국을 배제하거나 자국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정과 비용을 부과하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보비용(information costs), 적합성평가비용(conformity assessment costs)을 포함한다(Cadot et al., 2018). 적응비용은 수입국의 규제나 기술표준을 충족하기 위해 원재료 조달·제조·포장·유통 등 공급망 전반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어 특정 원재료 사용 금지에 따른 대체재 확보, 원산지·성분·경고문구 등 라벨링 요건 준수, 전압 등 규격 차이에 따른 제품 설계 변경 비용이 이에 해당한다. 정보비용은 수입국의 규제·표준·인증 절차를 탐색하고 이해하기 위한 비용으로, 법령 조사·컨설팅·법률 자문, 사내 교육 등이 포함되며 NTMs가 복잡하거나 자주 변경 될수록 증가한다. 적합성평가비용은 시험·검사·인증·등록 절차를 거쳐 해당국 규제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안전·위생 시험비용, 인증기관 수수료, 현지 검사 및 샘플 운송비 등이 대표적이다.

NTMs의 무역 영향을 분석한 초기 연구들은 주로 준수비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역 저해 효과를 추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NTMs가 관세와 유사하게 수입품 가격을 상승시키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이러한 저해 효과를 관세상당치(Ad-valorem Equivalents: AVEs)의 형태로 계량화하고자 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Kee et al.(2009)은 NTMs가 준수비용을 유발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음(非陰) 제약($AVEs \geq 0$)을 적용하여 NTMs의 단순 평균 AVEs를 12%, 수입량 가중 평균 AVE를 10%로 산정하였다.¹⁹⁾ 또한 NTMs의 준수비용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부담하기 어려운 품목, 기업(특히 영세기업), 그리고 개도국 등은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로 인한 무역 저해 효과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²⁰⁾

그러나 위생 및 식물위생(SPS) 조치와 무역기술장벽(TBT) 조치를 포함하는 기술적 NTMs는 수입품의 부정적 외부효과나 정보 비대칭성과 같은 시장 실패를 완

19) Kee et al.(2009)은 HS 6단위 품목 수준에서 수입액을 종속변수로 한 중력모형을 추정하였다. 반면 Beghin et al.(2015)은 NTMs가 무역 촉진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제약을 완화한 모델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 AVEs는 약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 Fontagne et al.(2015)은 기업자료 분석을 통해 SPS 조치가 소규모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준수비용을 수반하며, Asprilla et al.(2019)은 준수비용 부담으로 소규모 기업이 시장에서 이탈하는 경우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지배력을 획득하게 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화하기 위한 규제로, 이러한 조치의 도입은 오히려 수입국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van Tongeren et al., 2009; Beghin et al., 2012).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는 NTMs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수입품의 안전성, 건강상 위험, 기술적 호환성 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요를 줄이게 된다. 또한 수출기업 역시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전성·품질 향상을 위한 추가 비용을 부담할 유인이 부족하다. 따라서 수입품의 품질이 이질적이고 구매자가 이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NTMs는 해당 제품이 수입국의 규제와 기술표준을 충족했다는 신호를 제공하여 시장 신뢰를 높임으로써 수요를 확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반면 수입량 제한이나 가격통제 등 비기술적 NTMs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수입가격과 수입량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수입업체에 대한 물량 할당 방식의 수입제한은 특정 수입업체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여 수입가격을 낮출 수 있다. 반면 수출국의 자발적 수출제한은 수입량 축소와 더불어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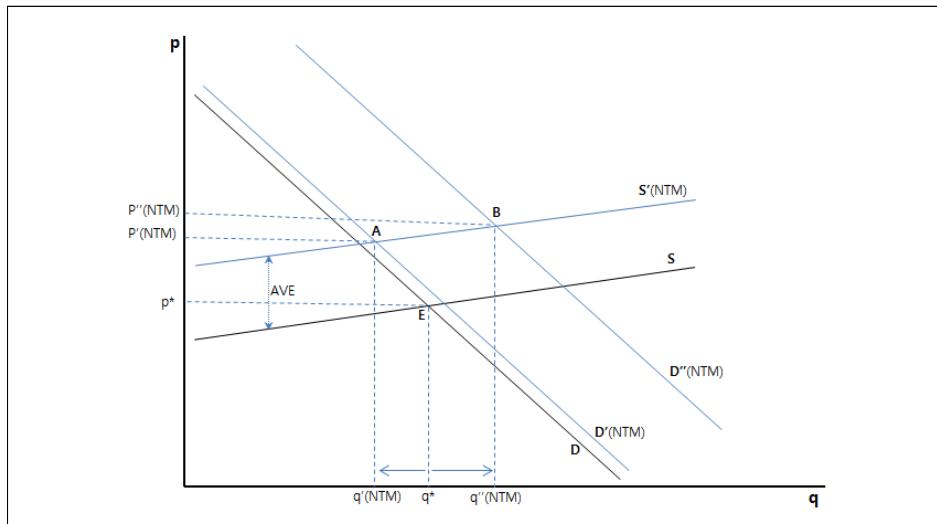
이상의 논의는 비관세조치(NTMs)가 수입국 시장에서 두 가지 상반된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첫째, NTMs는 준수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수입품 공급 함수를 상향 이동시킨다. 둘째, SPS나 TBT와 같은 기술적 NTMs는 정보 비대칭이나 안전성 우려와 같은 시장 실패를 완화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NTMs는 공급 측면에서는 비용 증가로 인해 수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수요 측면에서는 품질 신호 제공을 통해 수요를 확대하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그림 4-1>은 이런 메커니즘을 도식화한 것으로 수입국에서 NTMs 도입 시의 균형 수입량과 수입단가의 이동을 설명한다. NTMs가 도입되기 이전의 시장 균형 점을 $E(p^*, q^*)$ 라고 할 때, NTMs 부과로 인해 공급 함수는 준수비용만큼 상향 이동($S \rightarrow S'(NTMs)$) 한다. 동시에 기술적 NTMs 도입은 시장 신뢰 제고를 통한 수요 창출 효과를 유발하며, 수요함수 또한 상향 이동($D \rightarrow D'(NTMs)$ 혹은 $D''(NTM)$) 한다. 시장 균형점은 $E(p^*, q^*)$ 에서 A 혹은 B로 이동할 수 있는데, 이는 NTMs의 수요 창출 효과가 준수비용의 크기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결정

된다. 즉 NTMs의 수요 창출 효과 정도에 따라 수입량은 감소($q^* \rightarrow q'(NTM)$)할 수도 있고 오히려 증가($q^* \rightarrow q''(NTM)$)할 수도 있다.

다만 준수비용은 항상 0 이상이므로, NTMs 도입 후 수입국 소비자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논리는 무역창출 효과(수요 곡선 이동)가 고정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급 곡선 이동만 발생하므로 가격은 반드시 상승한다. 그러나 수입량은 수요탄성치의 크기와 준수비용의 규모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결국 NTMs의 무역 영향은 준수비용과 수요 창출 효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준수비용이 더 큰 경우 무역량은 감소하고, 수요 창출 효과가 더 큰 경우 무역량은 증가한다. 그리고 준수비용이 존재할지라도 무역량이 변하지 않았다면, 이는 NTMs의 수요 창출 효과가 준수비용을 정확히 상쇄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4-1〉 비관세조치 도입의 수입(가격 및 수입량) 영향



자료: Cadot et al.(2018)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함.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NTMs의 무역 영향을 분석할 때 무역액을 직접 사용하는 방식보다는 가격을 통해 준수비용(AVEs)을 식별하고, 시장 창출 효과는 무

역량 변화와 결부하여 해석하는 접근이 더욱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NTMs에 관한 초기 연구²¹⁾들은 주로 무역액 변화를 기반으로 AVEs를 추정하였으나 준수 비용으로 인한 무역량 감소가 가격 상승으로 상쇄되는 경우 무역액 자체는 변화하지 않아 AVEs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Cadot et al.(2018) 역시 NTMs가 부과되었지만, 무역액이 변화하지 않는 관측치가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무역액만으로는 NTMs의 영향을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수입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인 경우 무역액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며, 따라서 NTMs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변화와 무역량 변화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가격이 주어진 상황에서 수입국이 필요한 수입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개방 소국’ 가정을 적용하면 <그림 4-1>에서 공급 곡선은 수평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 상승분은 곧 NTMs 준수비용에 해당하며, AVEs는 가격 차이를 통해 직접 식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미국·중국·EU와 같이 시장 규모가 크고 가격결정력이 존재하는 개방 대국들은 개방 소국으로 가정하기 어려워, 이 경우 분석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1.2. 추정 방법

Cadot et al.(2018)은 NTMs의 무역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수입단가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AVEs를 직접 추정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는 수입 수요탄력성을 고려하지 않고 NTMs의 AVEs를 추정한 Cadot & Gourdon(2014)의 가격 기반 접근법과 무역액이 아닌 무역량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한 Grüberl et al.(2016)의 방법론을 결합한 것으로 수입가격 함수와 수입량 함수를 하나의 방정식 세트로 구성하

21) Kee et al.(2009); Beghin et al.(2015); Bratt(2014); Cadot & Gourdon(2014) 등 NTMs의 영향을 분석한 주요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무역액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여 NTMs가 무역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 NTMs의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식별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Cadot et al.(2018)의 방법론에 따라 수입가격(수입단가) 함수와 수입량 함수를 동시에 추정함으로써 NTMs의 관세상당치(AVEs)와 무역창출 또는 무역 저해 효과를 분석하였다. NTMs의 AVEs를 직접 산출하기 위한 수입가격 함수는 다음의 식 (1)과 같이 설정된다.

$$\text{가격 함수: } \ln p_{ijkt} = \sum_l \gamma^l N_{ijkt}^l + G_{ijt}' \beta + \sigma_j + \sigma_i + \sigma_k + \sigma_t + e_{ijkt} \quad \text{식 (1)}$$

위 식에서 p , N , σ 는 각각 수입가격, NTMs, 고정 효과를 의미하며 G 는 통상적인 중력모형 변수들로 구성된 벡터이다. 아래 첨자 t 는 연도, k 는 상품(HS 6단위), i 는 수출국, j 는 수입국을 의미하며, 위첨자 l 은 NTMs 세부 유형을 지칭한다. NTMs는 MAST 분류체계에서 문자-숫자 1단위 코드(예: A1)를 사용하여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별 세부 NTMs가 무역창출 또는 무역 저해 효과를 유발하는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²²⁾

식 (1)의 추정은 무역이 발생하지 않은 수입선(i 국에서 j 국으로 수입되는 경로)에서는 가격이 관측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측치는 분석에서 제외하고 일반최소 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 OLS)을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그러나 특정 수입국이 어떤 품목에 대해 NTMs를 도입할지, 또는 어느 정도의 강도로 도입할지는 해당 국가의 무역 상황, 즉 수입가격이나 수입량 등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생성 문제는 문화·보건·위생·검역 등과 같은 유사한 정책 이슈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즉, 해당 국가의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규제 환경이 유사한 인접국의 NTMs($\overline{N_{jikt}^l}$: 인접 3개국 평균값)를 도구변수(IVs)로 활용하는 전략을 적용할 수 있다.²³⁾ IVs를 활용한 내생

22) 기존 연구들은 SPS, TBT 등 통합된 NTMs의 존재 여부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왔으나, 이런 접근방식은 무역 저해 효과를 초래하는 구체적인 세부 NTMs를 식별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23) 인접 국가들이 지역무역협정(RTA) 등을 통해 관세율이나 NTMs와 같은 공통의 무역정책을 채택한 경우, 인접국의 무역정책을 도구변수로 활용하는 전략은 타당성을 상실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성 통제 방식에서는 2단계 최소자승법(2 Stage Least Squares: 2SLS)을 사용한다.

1단계에서는 IVs와 외생변수를 이용해 내생변수를 예측(\hat{N}^l)하고, 2단계에서는 이 예측치로 원래의 내생변수를 대체하여 회귀식을 추정한다. 그러나 내생변수 N^l 이 l 번째 특정 규제의 존재 여부를 나타내는 이항 더미변수인 경우, 1단계에서 선형회기 대신 프로빗(Probit) 모형을 사용하여 예측치를 도출해야 한다. 이때 프로빗 모형의 비선형성으로 인해 단순히 예측치(\hat{N}^l)를 2단계 식에 대체하는 것만으로는 내생변수와 오차항과의 상관관계를 적절히 통제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Heckman 2단계 접근방법과 유사하게 1단계 회귀에서 도출된 회귀 잔차항을 2단계 추정식에 직접 포함시켜 내생성을 통제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이런 방식은 비선형 1단계 모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 편의를 보다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합하다.²⁴⁾

에서는 EU 회원국 전체를 하나의 국가로 간주하여 분석자료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Cadot et al.(2018) 역시 동일한 이유로 EU를 단일 국가처럼 처리한 자료를 사용하여 이러한 잠재적 편의를 회피하였다. 또한 패널 자료 분석에서는 선결변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자유도 감소로 인해 추정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고려하여 선결변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하는 방법은 채택하지 않았다.

24) 회귀분석에서 내생성을 통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2SPS(Two-Stage Predictor Substitution) 접근방법은 내생변수를 도구변수(IVs)를 이용해 1단계에서 예측한 값으로 대체한 후 2단계 회귀 방정식에 투입하여 추정하는 방식이다. 내생변수 x 에 대해 도구변수와 기타 외생변수로 구성된 Z 를 사용하는 경우 2SPS의 추정 방정식은 아래와 같이 설정된다.

$$- 2SPS: \begin{cases} 1\text{단계} : x = Zw + u \\ 2\text{단계} : y = \alpha + \beta\hat{x} + e \end{cases} \quad \text{단, } \hat{x} = Z\hat{w}$$

둘째, 2SRI(Two-Stage Residual Inclusion) 접근방법은 내생변수의 실제치와 1단계에서 산출된 예측치의 차이, 즉 회귀잔차를 2단계 추정 방정식에 포함시켜 내생성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2단계 추정 방정식은 아래와 같이 설정된다.

$$- 2SRI(\text{선형}) : \begin{cases} 1\text{단계} : x = Zw + u \\ 2\text{단계} : y = \alpha + \beta x + \rho\hat{\tau} + e \end{cases} \quad \text{단, } \hat{\tau}(x, \omega) = x - \hat{x} (= Z\hat{w})$$

내생변수가 이항 더미변수인 경우, 1단계에서 프로빗(probit) 모형을 사용하여 예측치를 생성하게 된다. 그러나 프로빗 모형의 비선형성으로 인해 단순히 예측치(\hat{x})를 내생변수의 대체값으로 사용하는 2SPS 접근방식은 내생변수와 오차항 간의 상관관계를 충분히 통제하지 못해 일치성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1단계가 프로빗 모형인 경우 2SRI 접근방법이 더욱 적합하다. 이때 통상적 의미의 회귀잔차($\hat{\tau}(x, \omega) = x - \hat{x} = x - \hat{p}$)는 2단계 추정 방정식의 오차항 조건부 기댓값($E(e|x, \omega)$)에 비

가격 함수의 추정을 통해 도출되는 l 번째 NTM의 관세상당치(AVEs)는 수요탄성치를 고려하지 않고도 아래 식 (2)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²⁵⁾

$$\text{NTMs의 관세상당치: } AVE_p^l = \exp(\gamma^l) - 1 \quad \text{식 (2)}$$

NTMs 준수비용은 수출국의 생산·유통 과정뿐만 아니라 수출 단계(해상운송, 검역 등)와 수입국의 판매·유통 과정에서도 발생한다.²⁶⁾ 그러므로 NTMs 부과가 가격에 미치는 전반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출가격(FOB)이나 수입가격(CIF)보다 수입국 소비자가격을 활용하는 것이 이론상 더 적합하다. 일반적으로 NTMs 준수비용이 가격에 일부만 반영되더라도 비용 증가에 따른 직접적인 가격 반응은 상승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러나 ‘비용 구조’가 아닌 ‘시

례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 수식과 같이 정의되는 일반화잔차(Generalized residual, $\hat{\tau}_g$)를 회귀잔차 대신 2단계 추정방정식에 포함하여 내생성을 통제해야 한다.

- 비선형(2SRI): $\begin{cases} 1\text{단계: } x = \Phi(Z\omega) + u \\ 2\text{단계: } y = \alpha + \beta x + \rho \hat{\tau}_g + e \end{cases}$

단, $\hat{\tau}_g(x, \omega) = \begin{cases} \phi(\hat{Zw})/\Phi(\hat{Zw}), & x = 1 \\ -\phi(\hat{Zw})/(1 - \Phi(\hat{Zw})), & x = 0 \end{cases}$

표본 선택 편의, 즉 특정 결과가 관측 가능한 표본에서만 나타나는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내생성을 다루는 Heckman 2단계 추정 방법 또한 1단계 추정방정식이 비선형이라는 점에서 2SRI의 특수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 Heckman: $\begin{cases} 1\text{단계: } I(y > 0) = \Phi(Z\omega) + u \\ 2\text{단계: } y = \alpha + \beta x + \rho \hat{\tau}_g + e \end{cases}$. 단, $\hat{\tau}_g(x, \omega) = \begin{cases} \phi(\hat{Zw})/\Phi(\hat{Zw}), & y = 1 \\ missing & y = 0 \end{cases}$

25) 다음과 같이 유도될 수 있다. 식 1)로부터 l 번째 NTMs(N^l)가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의 가격 차이는 $\ln p_{N^l=1} - \ln p_{N^l=0} = \gamma^l$. 따라서 N^l 이 도입될 경우의 가격 상승률을 나타내는 AVEs는 $(p_{N^l=1} - p_{N^l=0})/p_{N^l=0} = \exp(\gamma^l) - 1$.

26) NTMs이 어느 단계에서 규제로 작동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가격에 반영되는 시점과 경로는 달라진다.

첫째, FOB 단계에서는 기술규제(TBT)나 위생·검역조치(SPS)에 따른 시험·검사, 인증,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비용이 발생하여 수출가격에 직접 반영된다. 둘째, CIF 단계에서는 선적전검사(Pre-shipment Inspection), 통관서류 제출 요건, 수입검사, 통관 지연 등으로 인해 검사비용과 추가 운송비가 발생하며, 이는 수입가격(CIF)에 반영된다. 셋째, 소비자가격 단계에서는 현지어 라벨 부착, 재포장, 국내 유통기준 충족 등과 같은 요구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이 추가되며, 이 비용은 최종 소비자가격에 포함된다. 이와 같이 NTMs는 규제가 적용되는 단계별로 서로 다른 형태의 비용을 유발하며, 각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 가격 구조에 반영되는 방식 역시 상이하다.

장 반응과 경쟁 압력' 측면을 고려하면, 수출가격은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도 존재 한다. 예를 들어 수입국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하거나 대체재가 충분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큰 경우, 수출기업은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이윤을 축소하여 수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 이는 NTMs 준수비용을 수입업자나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또한 NTMs 도입 초기에는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생산공정의 효율화, 표준화된 규제 대응체계 구축,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어 가격 인하 압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아울러 정부의 보조금·수출 지원정책이나 신규 시장 확보 전략이 작동할 경우, 기업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식 (1)의 추정에서 수입국 소비자가격이 아닌 수출가격(FOB)을 사용하는 경우 NTMs의 회귀계수가 음(-)으로 추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수출가격을 사용한 가격 함수 추정 시 NTMs 계수에 비음 제약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음(-)의 AVEs가 도출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²⁷⁾ 수입량 함수도 식 (3)과 같이 가격 함수와 동일한 구조로 설정할 수 있다.

$$\text{수입량 함수: } \ln q_{ijkt} = \sum_l \eta^l N_{ijkt}^l + G_{ijt}' \theta + \sigma_j + \sigma_i + \sigma_k + \sigma_t + e_{ijkt} \quad \text{식 (3)}$$

가격 함수와 달리 수입량 함수는 다수의 '0'의 무역 관측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로그 변환 시 결측치가 발생한다. 이러한 표본 선택 문제는 추정치 편의를 유발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Heckman 2단계 추정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보정하였다. Heckman 2단계 추정 방법은 표본 선택으로 인해 설명변수와 오차항 간에 발생하는 상관관계(내생성)를 보정하기 위한 방법으로(1단계) 프로빗 모형을 이용해 무

27) NTMs 계수에 비음 제약을 부과하는 경우 식 (1)은 아래와 같이 설정되며, 비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수입국 소비자가격이 아닌 수출가격(FOB)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회귀식을 추정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NTMs가 부과되더라도 시장 경쟁 압력, 대체재 존재, 가격탄력성, 정부 지원정책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수출가격이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NTMs 계수에 비음 제약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비음 제약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을 수행하였다.

- 비음제약 가격 함수: $\ln p_{ijkt} = \exp(\sum_l \gamma^l N_{ijkt}^l) + G_{ijt}' \beta + \sigma_j + \sigma_i + \sigma_k + \sigma_t + e_{ijkt}$

역 발생 여부($q > 0$) 확률을 추정하고 여기서 도출된 역밀스비(Inverse Mills Ratio, λ)를(2단계) 수입량 함수 추정방정식에 보정항(λ)으로 포함시켜 선택 편의를 통제한다. 또한 가격 함수 추정에서와 동일하게 식 (3)에서도 NTMs(N_{ijkt}^l)는 내생 변수로 간주되며, 인접국의 비관세조치($\overline{N_{jikt}^l}$)를 도구변수로 사용한다. 즉 식 (3)의 추정에서는 표본 선택 편의와 무역정책의 내생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단계 수입량 함수 추정 방정식에 선택 편의를 보정하기 위한 역밀스비($\hat{\lambda}$)와 함께, NTMs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한 일반화잔차(Generalized residual, $\hat{\tau}_g$)를 동시에 포함하여 회귀분석하였다. 식 (3)의 추정치를 이용해 산출한 NTMs의 무역창출 또는 저해 효과는 AVEs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NTMs 도입 시 예상되는 수입량의 증감률로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text{NTMs의 무역창출 효과: } AVE_q^l = \exp(\eta^l) - 1 \quad \text{식 (4)}$$

1.3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NTMs의 무역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관세율 자료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무역정책 데이터 플랫폼인 WITS²⁸⁾에서 수집하였으며, 비관세조치(NTMs) 자료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TRAINS Portal²⁹⁾에서 확보하였다. 또한 중력변수 및 무역자료(수입량·수출단가)는 프랑스 국제경제연구기관 CEPII³⁰⁾와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GMI) 등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무역 자료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64개국³¹⁾을 대상으로 HS(2012 기준) 1~24류에 해당하는 농식품 899개 HS 6단위 품목의 수입량과 수출

28) WITS(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검색일: 2025. 5. 20.).

29) TRAINS Welcome to TRAINS Portal(검색일: 2025. 6. 10.).

30) CEPII(Research and Expertise on the World Economy)(검색일: 2025. 6. 10.).

31) EU는 동일한 무역정책(관세율 및 NTMs)이 적용되어 1개의 국가로 취급하여 EU 국가 간 수출입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가격 정보를 바탕으로 구축하였다. 전체 데이터에서 실제 무역이 발생한 수입처(수입액이 0보다 큰 경우)는 약 9.7%로 나타났다. NTMs 도입에 따른 수출국의 가격 반응을 분석하기 위해 가격 변수는 수출국이 보고한 FOB(Free on Board) 가격을 사용하였다.³²⁾ 그러나 수입량 단위의 상이함 등 기술적 요인으로 인해 수입액이 존재함에도 약 0.8%의 품목·수입선에서는 수출가격이 결측치로 나타났다.³³⁾

관세율은 실제 거래에 적용되는 실행관세율(Applied Tariff)을 사용하였다. WITS는 (i) MFN 종가세 관세율, (ii) 협정관세율(Preferential Tariff), (iii) 총액·수입량 기반 관세를 종가세로 환산한 관세율(AVEs-MFN 관세율), (iv) 동일 방식으로 환산한 협정 관세율(AVEs-Preferential 관세율)인 네 가지 형태의 관세 자료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품목·수입선별로 이들 중 가장 낮은 관세율을 선택하여 실행관세율을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자료에는 일부 연도에 결측치가 존재하였으며, 이런 경우 동일 품목·수입선 내에서 선형보간을 적용하여 보완하였다.³⁴⁾

본 연구에서 활용한 NTMs 자료는 UNCTAD의 MAST 분류 기준에 따라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TRAINS Portal의 연구자용 벌크 자료에서 추출하였다. TRAINS Portal은 국가별 NTMs를 HS 6단위 및 국가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수집된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로 각 조치를 부여 대상 범위(수평적 조치 對비수평적 조치, 전체 적용 조치 對 부분 적용 조치) 및 MAST 코드별로 구분하여 건수 자료 형태로 제공한다.

32) CEPII은 FOB 가격 결측치를 CIF 및 중력변수 등으로 추산하여 일관성 있는 무역 자료를 제공한다.

33) 실제 회귀분석에서는 결측치로 인한 편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자료 처리를 수행하였다. 먼저 수입량 함수의 경우, 1단계에서 무역 발생 확률을 추정할 때 종속변수는 수입량이 아닌 수입액이 0보다 큰 경우를 1로 정의하여 추정하였다. 이어지는 2단계에서는 수입량 자료의 결측치를 제외한 관측치만을 활용하여 수입량 함수를 추정하였다. 가격 함수 추정의 경우에도 수입량 자료 결측으로 인해 수출가격이 계산되지 않은 관측치는 모두 제외하였다. 품목별·수입국별 평균가격 또는 평균가격을 이용해 산출한 대체 수출량(수입액/평균가격)을 활용하여 결측치를 보간하는 방식은 수입선별 가격의 표준편차가 매우 큰 특성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적용하지 않았다. 이를 러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측치 발생은 주로 수입량 단위가 상이한 데서 기인한 기술적 문제로, 관심 변수인 NTMs와 체계적인 연관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결측치로 인한 표본 선택이 NTMs의 무역 영향 추정에 유의미한 편의를 초래할 가능성은 낫다고 판단하였다.

34) 동일 수입선·품목의 특정 연도가 결측된 경우에만 선형보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체 자료에서 결측치는 여전히 존재한다.

TRAINS 자료에서 수평 조치(horizontal measures)란 특정 품목에 한정되지 않고 해당 국가로 수출·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일괄 적용되는 NTMs를 의미한다. 가령, 수입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은 모든 품목에 공통으로 적용되므로 수평 조치에 해당한다. 반면 특정 HS 세번에만 적용되는 규제는 비수평 조치(non-horizontal measures)로 분류된다. 수평 조치는 모든 품목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강도지표(PS), 빈도지표(FI), 적용지표(CR)가 항상 100으로 계산되어 NTMs의 분포를 구별하기 어려워 대부분의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적용 범위에 따라 NTMs는 전체 적용 조치(full coverage measures)와 부분 적용 조치(partial coverage measures)로 구분된다. 특정 HS 6단위에 속하는 하위 품목(HS 8단위) 모두에 일괄 적용되면 전체 적용 조치로, 일부 세부 품목이나 특정 조건에만 적용되는 경우 부분 적용 조치로 분류된다(UNCTAD, 2023).³⁵⁾

본 연구에서는 무역 영향분석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비수평 조치만을 고려하였으며, 전체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조치의 건수를 합산하여 품목·수입선·연도별 NTMs 부과 건수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TRAINS 자료는 조사 대상 국가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조사 주기가 불규칙적이어서 다수의 결측치를 포함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일 국가·품목의 NTMs 정보가 두 시점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선형보간 방식으로 결측치를 보완하였다.³⁶⁾ 최종적으로 구축된 NTMs 자료의 국가별·연도별 이용가능성은 부록 4의 <부표 4-1>에 제시하였다.

중력변수와 수입처별 수출 발생 가능성을 추정하기 위한 변수(1단계 추정용 변수)는 CEPII에서 제공하는 별크 자료를 활용하여 구축하였다. 다만 CEPII 중력자료는 EU 회원국을 각각 별도의 국가로 간주하고 있어 EU를 하나의 단일국가로 처리한 본 연구의 분석 틀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 정비가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거리 변수는 EU의 중심 국가인 독일을 기준으로 EU와 타국 간의 거리를

35) 전체 적용 조치와 부분 적용 조치는 세부 품목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의 무역 영향도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27개의 세부 NTMs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면서 범위에 따른 구분을 추가할 경우, 분석이 매우 복잡해지므로 이러한 구분은 생략하였다.

36) 전체 자료의 평균 NTMs 건수는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모습을 반영하여 결측치는 두 시점 간의 기울기로 선형보간 한 이후 반올림하여 정수화하는 방식으로 보완하였다.

재설정하였다. 또한 식민지 경험 여부, 공통언어 여부, 인접국 여부와 같은 이항 변수(binary variables)는 EU 회원국 중 한 국가라도 해당 특성을 가지는 경우 전체 EU를 1로 처리하여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CEPII가 제공하는 인구와 1인당 GDP 자료는 결측치가 다수 존재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GMI)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일괄 대체하였다. EU 인구는 개별 회원국 인구의 합으로 구성하고, 1인당 GDP는 EU 회원국의 GDP 합계를 총인구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표 4-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의 정의와 자료 출처 등을 정리한 것이다. 중력모형 변수를 제외한 변수 대부분은 선형보간 등으로 보완했음에도 여전히 많은 결측치를 포함한다. 특히 수출가격(FOB) 변수는 실제 무역이 발생한 수입처에서만 정의되므로 다수의 결측치가 존재하며, NTMs 자료 또한 국가별 조사 시점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결측치가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변수별 관측치 수와 기초통계량은 부록 4의 <부표 4-2>에 제시하였다.

<표 4-1> 주요 변수의 내용 및 출처

변수명		내용	출처	단위
무역 변수	수입량(q)	품목(HS2012 기준 6단위), 수출국, 수입국별 수입량	CEPII/BACI	톤
	수입가격(p)	품목(HS2012 기준 6단위), 수출국, 수입국별 수입가격(CIF)	CEPII/BACI	USD/kg
무역 정책	관세율(t)	실행 관세율	WITS	%
	비관세조치(N^i)	UNCTAD-MAST 분류체계에서 문자 숫자 각 1단위 기준 NTMs 건수(총 27개 변수)	TRAINS Portal	건
중력 변수 (G)	거리	수출국과 수입국 간 거리	CEPII/Gravity	Km
	식민지 경험 여부	수출국과 수입국의 식민지 관계 경험 여부. 경험이 있는 경우가 1인 더미변수	CEPII/Gravity	-
	공통언어 여부	공식어를 공유하거나 인구의 9% 이상이 공통언어 사용하는 경우가 1인 더미변수	CEPII/Gravity	-
	인접국 여부	인접국인 경우가 1인 더미변수	CEPII/Gravity	-
	FTA 체결 여부	양국 간 RTA(regional trade agreement)가 체결된 경우가 1인 더미변수	CEPII/Gravity	-
	1인당 GDP	명목 1인당 GDP	S&P GMI	USD
	인구수	인구수	S&P GMI	천 명

자료: 저자 작성.

2. 농식품 교역에 미치는 비관세조치 영향

본 절에서는 식 (1)의 가격 함수와 식 (3)의 수입량 함수를 추정하여 NTMs가 농식품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수출가격과 수입량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제1절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적용한 가격 함수 추정에서는 더미변수 형태의 세부 NTMs가 내생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접국의 NTMs를 도구변수(IVs)로 사용하였다. NTMs 존재 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1단계 프로빗 모형에서는 2단계 추정에 사용되는 중력모형 변수 외에도 식민지 경험 여부, 공통언어 여부, 인접국 여부, FTA 체결 여부 등을 추가로 포함하였다. 2단계 가격 함수 추정은 프로빗 추정 1단계의 비선형성을 반영하기 위해 일반화된 잔차를 회귀식에 직접 포함하는 2SRI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수입량 함수 추정에서는 가격 함수와 동일하게 NTMs 변수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함과 동시에, 무역이 발생하지 않은 수입선의 누락에서 기인하는 표본 선택 편의를 보정하기 위해 Heckman 2단계 추정법을 적용하였다. 즉 2단계 수입량 함수 추정에는 NTMs 내생성 통제를 위한 일반화잔차와 더불어 선택편의를 교정하는 역밀스비(λ)를 함께 포함하여 추정을 수행하였다. 한편 관세율은 수입품의 가격과 수입량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며, 관세율과 NTMs 변수 간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즉,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변수가 모형에서 통제되지 않는 경우 누락변수 편의(omitted variable bias)가 발생할 수 있어 가격·수입량 함수 모두에서 관세율 변수를 포함하였다. 단, 관세율은 NTMs와 마찬가지로 내생변수이지만 연속형 변수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인접국의 평균 관세율을 도구변수로 활용하는 2SPS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내생성을 통제하였다.

2.1. 세계 농식품 무역 영향

<표 4-2>는 HS 부류(제1~4부) 전 품목에서 제3류(수산물)와 제24류(담배)를 제외한 품목을 농식품으로 정의하고, 이를 대상으로 가격 함수와 수입량 함수를 추정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전체 추정식에 대한 상세 결과는 부록 4의 <부표 4-4>에 제시하였다. 관세 탄성치와 중력모형 변수는 국제무역 이론과 정합적인 방향으로 추정되었으며, 내생성 통제를 위해 포함한 일반화된 잔차와 역밀스비 역시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³⁷⁾

우선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한 가격 함수 추정 결과 ‘TBT 관련 수입허가·라이센스(B1)’, ‘수입 모니터링·감시 요건(C4)’ 수출가격을 유의하게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품질·안전성·성능에 대한 요건(B7)’은 가격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의 계수는 해당 NTMs 도입이 준수비용을 유발하여 수출가격 상승으로 이어짐을 의미하며, 음(-)의 계수는 준수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장 경쟁 압력 및 수요 확대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전체 수입국을 중저소득국과 고소득국으로 구분한 결과는 다소 상이하였다. 중저소득국으로 수출에서는 ‘잔류 허용·제한(B2)’, ‘라벨링·표시·포장 요건(C3)’이 수출가격을 상승시키는 NTMs로 식별되었다. 반면 고소득국으로 수출에서는 ‘SPS 관련 적합성 평가(A8)’, ‘품질·안전성·성능에 대한 요건(B7)’이 오히려 수출가격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소득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시장신뢰 개선, 규제 준수가 신호 효과(Signal Effect)로 작용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NTMs의 무역창출·저해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수입량 함수 추정 결과에서도 소득수준별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전체 수입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TBT 관련 수입허가·라이센스(B1)’와 ‘생산·생산 후 요건(B4)’이 유의하게 음으로 추정되어 이들 조치가 농식품 수입량을 감소시키는 전형적인 무역장벽 역할을 하는

37) 조문희 외(2017)의 연구에서도 농축산업 수입액을 종속변수로 분석한 결과 관세탄성치 -2.3, 거리 -0.67, 수출국 및 수입국 GDP가 각각 0.64, 0.55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수입국 소득수준에 따라 NTMs의 영향은 다르게 나타났다. 중저소득국의 수입선에서는 ‘품질·안전성·성능에 대한 요건(B7)’과 ‘수입 모니터링·감시 요건(C4)’이 수입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라벨링·표시·포장 요건(B3)’은 수입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고소득국의 수입선에서는 ‘SPS 관련 적합성 평가(A8)’와 ‘품질·안전성·성능에 대한 요건(B7)’이 모두 유의하게 양의 값을 보여 시장 실패 해소로 인한 수요 확대 효과가 준수비용을 압도하여 오히려 무역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NTMs는 대체로 준수비용을 증가시켜 수출가격을 상승시키고 무역량을 감소시키는 경향을 보이지만 특정 NTMs, 특히 SPS 및 TBT 조치 가운데 품질·안전성 신호 기능을 수행하는 조치 등은 오히려 수출가격을 낮추거나 무역량을 증가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고소득국가 시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이 시장에서는 규제 준수가 신뢰제고와 수요 확대를 이끄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4-2〉 농식품 대상 가격 및 수입량 함수 추정 결과

설명변수		전 세계		중저소득국		고소득국	
		가격 함수	수입량 함수	가격 함수	수입량 함수	가격 함수	수입량 함수
SPS	A1	-0.019	0.356	-0.057	0.390*	0.030	-0.387
	A2	0.117*	-0.166	0.089	0.344	0.136*	-0.386
	A3	-0.014	-0.102	-0.031	0.483*	-0.075	-0.521
	A4	-0.051	0.126	-0.038	-0.300	-0.021	0.366
	A5	0.045	-0.048	0.111*	-0.062	-0.028	0.198
	A6	0.056	-0.278*	0.042	-0.147	-0.060	-0.209
	A8	-0.073	-0.217	0.016	0.107	-0.371***	1.109***
	평균	0.009	-0.047	0.019	0.116	-0.056	0.024
TBT	B1	0.114**	-0.649**	0.023	-0.409	0.070	-0.721*
	B2	0.078	-0.027	0.150**	-0.128	-0.090	0.362
	B3	0.054	0.319	0.103	0.480**	0.061	0.295
	B4	0.026	-0.686**	0.005	-0.358	0.081	-0.951*
	B6	-0.052	-0.109	-0.046	-0.197	-0.047	-0.171*
	B7	-0.073**	-0.007	-0.071*	-0.832***	-0.092**	0.506***
	B8	-0.027	0.044	-0.091	0.198	-0.068	0.206
	평균	0.017	-0.159	0.011	-0.178	-0.012	-0.068

(계속)

설명변수		전 세계		중저소득국		고소득국	
		가격 함수	수입량 함수	가격 함수	수입량 함수	가격 함수	수입량 함수
선적전검사 및 기타 형식	C3	0.074*	-0.319	0.072	0.222	0.118*	-0.476
	C4	0.157***	-0.395	0.120**	-0.515**	0.127*	0.563
	평균	0.116	-0.357	0.096	-0.146	0.122	0.044
E		0.023	0.005	0.110	-0.103	-0.031	0.279
F		-0.054	-0.040	-0.056	-0.251	-0.060	0.027
NTMs 전체 평균		0.021	-0.122	0.025	-0.060	-0.018	0.005
관세율		-0.204	-4.677***	-0.112	-3.317***	-0.092	-5.862***

주: 평균은 추정치가 아니라 해당 부류 추정치의 단순 평균값임. 중저소득국과 고소득국은 2015~2020년 평균 1인당 GDP의 3만 달러 초과 여부로 구분하였음.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2>는 전체 수입국을 대상으로 도출한 추정치를 식 (2)와 식 (4)에 따라 가격 및 수입량의 증감률(관세상당치 및 무역창출효과)로 전환한 결과를 시각화 한 것이다. 우선, ‘TBT 관련 수입허가·라이센스(B1)’는 앞서 제1절에서 설명한 이론과 동일하게 수출가격을 약 12.1% 상승시키고 수입량을 47.8% 감소시키는 전형적인 무역장벽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산·생산 후 요건(B4)’은 수출가격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수입량을 약 49.6%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어 무역 저해 효과가 뚜렷한 조치로 평가된다.³⁸⁾

38) 조문희 외(2017) 연구에서는 농축수산업을 대상으로 NTMs의 AVEs를 추정한 결과, SPS 조치는 6.1%, TBT 조치는 5.6%로 나타났다.

〈그림 4-2〉 농식품 대상 NTMs 도입 시 수출가격 및 수입량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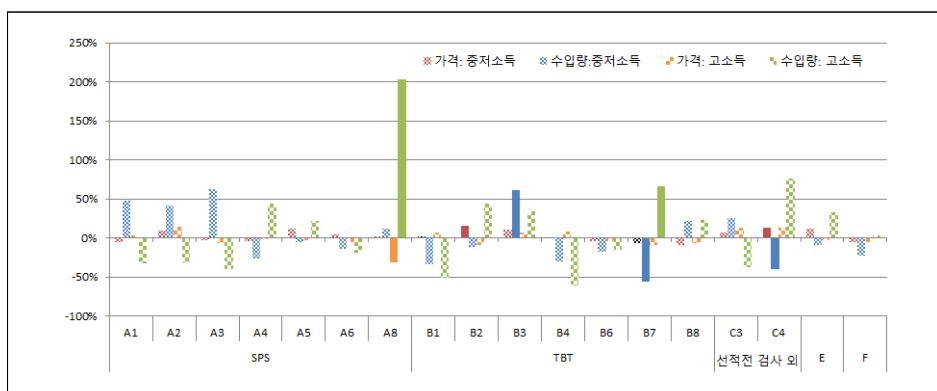


주: 〈표 4-2〉의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식 (2)와 식 (4)로 계산한 결과임. 단색 막대는 계산에 사용된 추정치가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3>은 중저소득국과 고소득국을 대상으로 한 농식품 수출에서 NTMs 가 수출가격과 수입량에 미치는 영향을 시각화한 것이다. 앞서 계수 추정 결과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NTMs 효과는 수입국의 소득수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고소득국으로의 수출의 경우, ‘SPS 관련 적합성 평가(A8)’는 수입량을 약 두 배 수준으로 증가시키는 강한 무역창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농식품 대상 수출상대국 소득수준별 NTMs 도입 시 수출가격 및 수입량 변화



주: 〈표 4-2〉의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식 (2)와 식 (4)로 계산한 결과임. 단색 막대는 계산에 사용된 추정치가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표 4-3>은 농식품 품목별로 가격 및 수입량 함수를 추정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동물성 생산물, 식물성 생산물, 가공식음료의 세부 추정 결과는 부록 4의 <부표 4-5~4-7>에 제시하였다. 앞서 수입국 소득수준에 따라 NTMs의 영향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품목별 분석에서도 수출가격 및 수입량에 영향을 미치는 NTMs의 종류와 그 효과의 크기가 상당히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품목별 가격 및 수입량 함수 추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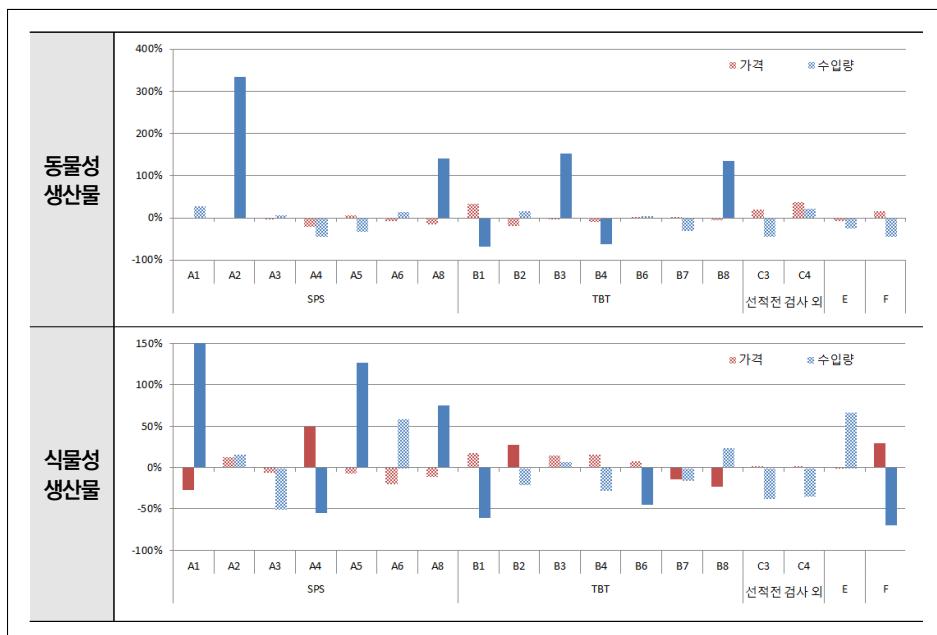
구분	동물성 생산물		식물성 생산물		가공식음료		
	가격	수입량	가격	수입량	가격 함수	수입량 함수	
SPS	A1	-0.003	0.244	-0.324***	1.224***	-0.018	0.575
	A2	-0.014	1.471***	0.121	0.147	-0.059	0.191
	A3	-0.043	0.061	-0.064	-0.690*	0.057	0.163
	A4	-0.251*	-0.621	0.402***	-0.801***	-0.015	-0.804**
	A5	0.051	-0.407	-0.076	0.820***	0.067	-0.498
	A6	-0.093	0.120	-0.225	0.468	0.087	-2.210***
	A8	-0.185	0.881**	-0.116	0.561**	0.043	-0.496
	평균	-0.077	0.250	-0.040	0.247	0.023	-0.440
TBT	B1	0.286*	-1.136***	0.168*	-0.935***	0.203***	-1.951***
	B2	-0.227*	0.146	0.241**	-0.229	0.118	0.183
	B3	-0.045	0.928**	0.137	0.069	0.017	0.493
	B4	-0.111	-0.978**	0.152	-0.334	0.130	-1.325***
	B6	0.011	0.040	0.073	-0.593***	-0.061	0.674***
	B7	0.018	-0.394	-0.150**	-0.160	0.002	-1.650***
	B8	-0.070	0.853**	-0.265***	0.213	-0.151**	0.137
	평균	-0.020	-0.077	0.051	-0.281	0.037	-0.491
선적전검사 및 기타형식	C3	0.172	-0.617*	0.020	-0.454*	0.097	-0.352
	C4	0.305*	0.198	0.022	-0.410	0.041	-0.565
	평균	0.238	-0.209	0.021	-0.432	0.069	-0.459
비기술적 조치	E	-0.093	-0.304	-0.008	0.514*	0.105	0.356
	F	0.134	-0.624	0.253***	-1.198***	0.041	0.626
NTMs 평균		-0.009	-0.008	0.020	-0.099	0.039	-0.359
관세율		-0.797*	-3.211**	-0.806***	-4.727***	0.165	-3.748***

주: 평균은 추정치가 아니라 해당 추정치의 단순 평균값임.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4>는 <표 4-3>의 추정치를 바탕으로 품목별 NTMs가 수출가격과 수입량에 미치는 영향을 시각화한 것이다. 분석 결과, 동물성 생산물의 경우 NTMs가 수출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무역을 촉진하는 NTMs가 무역을 저해하는 NTMs보다 더 많고 그 효과도 큰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식물성 생산물은 NTMs 유형에 따라 수출가격과 수입량에 미치는 영향이 혼재되어 있으며, 특히 수출가격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NTMs의 수가 다른 품목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가공식음료에서는 NTMs의 가격효과가 전반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량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NTMs는 식별되지 않았다. 그러나 수입량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NTMs는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TBT 관련 수입허가·라이센스(B1)’는 수출가격을 유의미하게 상승시키고 동시에 수입량을 감소시키는 전형적인 무역 저해 NTMs로 확인되었다.

〈그림 4-4〉 품목별 NTMs 도입 시 수출가격 및 수입량 변화



(계속)



주: <표 4-3>의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식 (2)와 식 (4)로 계산한 결과임. 단색 막대는 계산에 사용된 추정치가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2.2.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영향

본 절에서는 수출국을 우리나라로 한정하여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에서 NTMs 가 수출가격 및 수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기간 및 국가 (2012~22년, 63개국)에 대한 우리나라 농식품 연평균 수출액은 약 57억 달러로 이 가운데 가공식음료가 76.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어 식물성 생산물 18.9%, 동물성 생산물 4.5%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출량 기준으로도 가공식음료 80.7%, 식물성 생산물 15.7%, 동물성 생산물 3.6% 등의 순이다. 가공식음료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가공식품에 영향을 미치는 NTMs의 변화가 전체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수출국을 우리나라로 한정하여 NTMs의 영향을 추정한 결과, 수출가격을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시키는 NTMs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⁹⁾ 이는 NTMs 준수비용이 수출가격으로 전가되지 않았음을 의미한

39) 조성주 외(2017)에서도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관세율은 유의미하지 않게 추정하였으며 거리(-1.91)와 GDP(0.65)는 유의미하게 추정되었다. 다만, 해당 연구는 수출액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다. 관세상당치(AVEs)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중력모형 변수들은 무역이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정되었고, 내생성 통제를 위한 변수들 역시 대부분 유의미하게 나타나 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전체 농식품을 대상으로 한 추정에서 ‘상품 정체성 요건(B6)’과 ‘품질·안전성·성능에 대한 요건(B7)’, 그리고 가공식음료의 ‘잔류 허용·제한(A2)’ 및 ‘수입 모니터링·감시 요건(C4)’이 우리나라 수출가격을 유의미하게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국내 규제 수준이 수입국의 NTMs 요구 수준을 이미 충족하고 있어 추가 준수비용이 크지 않으며, 수출기업이 시장 확대를 위해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수출가격을 낮게 설정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농식품 수출량 측면에서도 NTMs는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농식품 기준으로는 ‘SPS로 인한 수입금지·제한(A1)’과 ‘위생 요건(A4)’이 수출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반면, ‘SPS 관련 적합성 평가(A8)’와 ‘TBT 관련 적합성 평가(B8)’는 수출량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동물성 생산물에서는 수출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NTMs가 식별되지 않았다. 식물성 생산물에서는 ‘생산·생산 후 요건(B4)’과 ‘TBT 관련 적합성 평가(B8)’가 수출량을 감소시키는 반면, ‘라벨링·표시·포장 요건(C3)’과 ‘허가·할당·금지·수량제한조치(E)’는 수출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공식음료의 경우, ‘기타 생산·사후 공정 요건(A6)’과 ‘SPS 관련 적합성 평가(A8)’는 수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라벨링·표시·포장 요건(A3)’, ‘위생 요건(A4)’, ‘품질·안전성·성능에 대한 요건(B7)’은 우리나라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대상 품목별 세부 NTMs 추정 결과는 부록 4의 <부표 4-5~4-7>에 제시하였다.

〈표 4-4〉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대상 품목별 가격 및 수입량 함수 추정

비관세조치		전체 농식품		동물성 생산물		식물성 생산물		가공식음료	
		가격	수입량	가격	수입량	가격	수입량	가격 함수	수입량 함수
SPS	A1	-0.087	1.824***	-0.328	1.835	-0.221	0.838	0.342	1.011
	A2	-0.212	0.228	-0.365	3.029	-0.022	0.522	-0.408***	-0.202
	A3	-0.009	-0.310	-0.736	3.017	-0.364*	-1.177*	-0.076	1.136**
	A4	0.126	0.836***	0.426	-2.965	0.068	0.542	0.069	1.394***
	A5	-0.086	0.303	0.591	-2.302	-0.160	0.776*	-0.253	-0.235
	A6	0.234*	-0.425	1.000	-2.392	0.121	-0.622	0.123	-1.168**
	A8	-0.103	-1.936***	-0.021	-0.377	0.279	-1.068	0.130	-1.726**
	평균	-0.020	0.074	0.081	-0.022	-0.043	-0.027	-0.011	0.030
TBT	B1	-0.046	-0.106	-1.376*	1.654	-0.176	-1.025	-0.045	-0.611
	B2	0.210	0.193	-0.003	2.873	0.229	0.313	0.162	-0.279
	B3	0.178	-0.173	0.382	2.986	-0.256	0.470	0.236	-0.302
	B4	0.122	-0.175	-0.141	-2.209	0.129	-1.123**	0.214	-0.274
	B6	-0.233***	0.124	-1.064	-2.296	-0.182	-0.036	-0.073	0.208
	B7	-0.239**	0.661*	-0.218	-0.478	-0.317	0.405	-0.221*	1.047***
	B8	0.025	-1.125***	-0.386	1.225	0.038	-1.200**	-0.282*	0.584
	평균	0.002	-0.086	-0.401	0.536	-0.076	-0.314	-0.001	0.053
선적전검사 및 기타형식	C3	0.012	-0.305	0.153	5.564	-0.335	1.204**	0.186	-0.776
	C4	-0.266**	-0.546	0.038	-3.386	0.125	-0.057	-0.649***	0.639
	평균	-0.127	-0.425	0.096	1.089	-0.105	0.573	-0.232	-0.069
비기술적 조치	E	0.081	0.456	-0.817	-2.363	0.292	1.157**	0.186	-0.609
	F	0.081	0.126	0.632	-3.435*	0.049	0.182	0.223	-0.091
NTMs 평균		-0.012	-0.019	-0.124	-0.001	-0.039	0.006	-0.008	-0.014
관세율		-0.971**	-1.834	0.456	16.921	-0.743	-5.213**	-0.860	-0.890

주: 평균은 추정치가 아니라 해당 추정치의 단순 평균값임.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5>는 앞서 제시한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수입국의 NTMs 도입이 우리나라 농식품의 수출가격과 수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한 것이다. 분석 결과, 동물성 생산물에서는 수출량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NTMs가 식별되지 않았다. 반면 식물성 생산물의 경우 ‘생산·생산 후 요건(B4)’과 ‘TBT 관련 적합성 평가(B8)’가 수출량을 50% 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공식음료에서

는 ‘기타 생산·사후 공정 요건(A6)’과 ‘SPS 관련 적합성 평가(A8)’가 수출량을 각각 50% 이상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가공식음료 부문에서 ‘잔류 허용·제한(A2)’과 ‘수입 모니터링·감시 요건(C4)’은 우리나라 수출가격을 유의미하게 하락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NTMs 준수 과정에서 추가적인 생산비 증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NTMs 부과로 인해 수입국 내 경쟁 구도가 변화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4-5〉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품목별 NTMs 도입 시 수출가격 및 수입량 변화



주: 〈표 4-5〉의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식 (2)와 식 (4)로 계산한 결과임. 동물성 생산물은 유의미하게 추정된 계수가 없어 생략함. 단색 막대는 계산에 사용된 추정치가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2.3. ESG 경영 확산과 NTMs 영향

ESG 경영의 확산은 환경·사회·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와 규제의 도입을 촉진하고 있으며, 국제무역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새로운 비관세조치(NTMs)의 등장 또는 기존 조치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절에서는 ESG 경영 관련 NTMs가 농식품 분야의 세계 교역과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수출가격과 수입량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표 4-5>는 ESG 경영 관련 NTMs를 포함하여 가격 함수와 수입량 함수의 주요 추정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먼저 세계 농식품 수출가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ESG 경영 관련 NTMs로는 환경 분야 조치인 ‘환경 보호를 위한 수입허가(E123)’와 ‘환경 보호를 위한 수입금지(E323)’가 식별되었다. 또한 수입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로는 동일한 환경 분야의 ‘환경 보호를 위한 수입금지(E323)’와 사회 분야의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한 수입허가(E125)’가 확인되었다. 주목할 점은 이렇게 유의미하게 식별된 ESG 경영 관련 NTMs가 수출가격을 하락시키고 수입량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까지 ESG 경영 관련 NTMs가 전통적인 의미의 무역장벽이라기보다는 수입국의 시장 실패를 보완하거나 시장 경쟁 구조에 변화를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무역을 촉진하는 효과를 나타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분석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확인되었다. ESG 경영 관련 NTMs 가운데 5% 유의수준에서 우리나라 수출가격을 유의미하게 상승시키거나 수출량을 감소시키는 조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이 ESG 경영 기반 규제 변화로 인해 비용 증가나 시장 진입 저해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ESG 경영 관련 NTMs 도입 시 가격 함수 및 수입량 함수에 대한 자세한 추정 결과는 부록 4의 <부표 4-8>에 제시하였다.

〈표 4-5〉 ESG 경영 관련 NTMs 도입 시 가격 및 수입량 함수 추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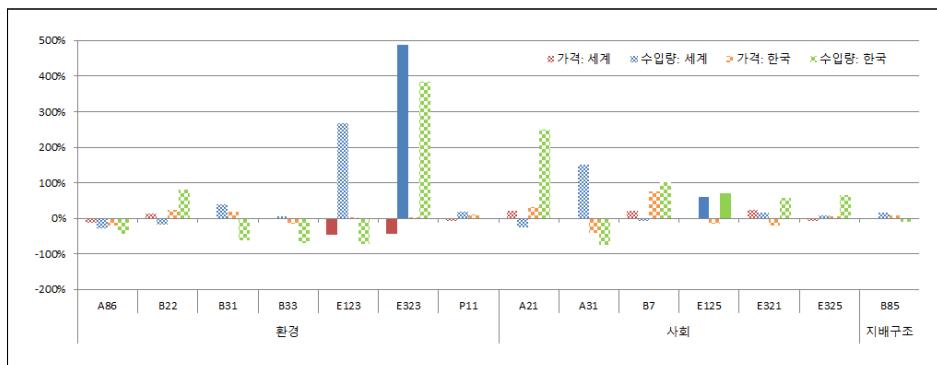
변수명	세계		한국 수출		
	가격 함수	수입량 함수	가격 함수	수입량 함수	
환경	A86	-0.149	-0.356	-0.228	-0.600
	B22	0.105	-0.213	0.193	0.590
	B31	-0.039	0.321	0.157	-0.975
	B33	-0.043	0.051	-0.183	-1.199
	E123	-0.617***	1.300	0.004	-1.372*
	E323	-0.593**	1.774**	0.022	1.573
	P11	-0.088	0.163	0.098	-0.034
	평균	-0.203	0.434	0.009	-0.288
사회	A21	0.178*	-0.308	0.267	1.251
	A31	-0.039	0.910*	-0.571	-1.426
	B7	0.188	-0.093	0.561*	0.695
	E125	-0.031	0.466***	-0.180	0.528***
	E321	0.204	0.134	-0.245	0.447
	E325	-0.088	0.058	0.033	0.493
	평균	0.069	0.195	-0.023	0.331
지배구조	B85	-0.046	0.141	0.077	-0.122
ESG 전체 평균		-0.076	0.311	0.000	-0.011
관세율		-0.344	-5.534**	-1.958*	-5.398

주: 평균은 추정치가 아니라 해당 추정치의 단순 평균값임.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6>은 ESG 경영 관련 NTMs의 영향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조치 도입 시 수출가격과 수입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시각화한 것이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ESG 경영 관련 NTMs는 수출가격과 수입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출가격과 수입량 모두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환경 보호를 위한 수입금지(E323)’의 경우, 수입량을 크게 증가시키는 강한 무역창출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해당 ESG 경영 관련 NTMs가 시장 실패 보완 또는 시장 경쟁 구조 변화 등을 통해 교역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6〉 ESG 관련 NTMs 도입 시 농식품 수출가격 및 수입량 변화



주: 〈표 4-6〉의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식(2)와 식(4)로 계산한 결과임. 동물성 생산물은 유의미하게 추정된 계수가 없어 생략함. 단색 막대는 계산에 사용된 추정치가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3. 요약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농식품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NTMs를 식별하기 위하여 무역 자료를 사용한 계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존 연구가 수입액 기반 분석을 중심으로 하여 NTMs의 효과를 충분히 식별하는데 한계를 가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NTMs가 수출가격과 수입량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추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NTMs 준수에 따른 비용 규모(관세상당치, AVEs)와 더불어 수입국의 외부효과 개선 또는 정보 비대칭성 완화를 통해 발생하는 무역창출 효과까지 동시에 도출하는 분석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NTMs의 구체적 영향을 식별하기 위해 MAST의 NTMs 분류체계에서 제공하는 세분화된 NTMs 수준에서 효과를 추정한 점도 선행 연구와 차별화되는 특징이다.

본 장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NTMs가 세계 농식품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준수비용 증가로 인한 무역 저해 효과가 나타났지만, 개별 NTMs의 성격과 수입국의 특성에 따라 그 영향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부 NTMs의 경우 준수비용

이 존재함에도 수출가격이 오히려 하락하거나 수입량이 증가하는 등 무역창출 효과가 관측되었다. 둘째, 농식품 부류별로도 NTMs의 무역 영향은 상이하였다. 동물성 생산물과 식물성 생산물에서는 개별 NTMs별로 무역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NTMs가 혼재해 있었던 반면, 가공식음료 분야에서는 유의미하게 식별된 NTMs가 모두 수입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ESG 경영 관련 NTMs는 대부분 수출가격과 수입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유의미하게 나타난 경우에도 수출가격 하락 또는 수입량 증가 등 무역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현재 단계에서 ESG 경영 기반 NTMs는 전통적 의미의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NTMs(10% 유의수준 기준)를 살펴보면, 동물성 생산물에서는 ‘가격 통제조치(F)’가, 식물성 생산물은 ‘라벨링·표시·포장 요건(A3)’, ‘위생 요건(B4)’, ‘TBT 관련 적합성 평가(B8)’ 등이 수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식음료에서는 ‘기타 생산·사후 공정 요건(A6)’과 ‘SPS 관련 적합성 평가(A8)’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우리나라 수출가격을 유의미하게 상승시키는 NTMs는 모든 품목류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NTMs의 영향이 그 종류와 세부 내용에 따라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상당수 NTMs는 오히려 무역을 촉진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농식품에 대한 국내 규제·제도 수준이 국제 수준의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어 NTMs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다른 수출국 대비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수출량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파악된 NTMs에 대해서는 기업의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제5장

농식품 수출업체 비관세장벽 대응 실태조사

농식품 수출업체 비관세장벽 대응 실태조사

1. 조사개요 및 농식품 수출 현황

본 설문조사는 481개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일반 현황과 수출 현황, 비관세장벽(NTBs) 경험 및 대응 실태, 관련 정부 지원사업 경험과 향후 계획, 만족도 및 건의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응답업체 총 481개 중 설립연도를 살펴보면, 2010년대에 설립된 업체가 36.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2000년대 설립 업체가 28.9%로 뒤를 이었다. 수출개시 연도 또한 2010년대에 수출을 시작한 업체가 4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종업원 수 규모는 5~20명 미만 업체가 31.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명 미만(22.0%), 20~50명 미만(21.6%) 순으로 나타났다. 수출 전담부서 운영 여부를 살펴보면,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업체는 29.1%, 영업부서 내 배속된 형태가 29.5%, 전담부서가 없는 업체는 41.4%로 조사되었다. 2024년 매출액은 10억~100억 원 미만 업체가 3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수출액은 1억 원 미만(34.5%), 1억~10억 원 미만(27.4%), 10억~100억 원 미만(23.7%) 순으로 나타났다<표 5-1>.

〈표 5-1〉 농식품 수출업체 비관세장벽 대응 실태조사 기본통계

구분		응답 수	비율(%)
설립연도	전체	481	100.0
	1990년대 이전	65	13.5
	1990년대	74	15.4
	2000년대	139	28.9
	2010년대	177	36.8
	2020년대	25	5.2
	응답 없음	1	0.2
수출개시연도	1990년대 이전	13	2.7
	1990년대	43	8.9
	2000년대	84	17.5
	2010년대	209	43.5
	2020년대	125	26.0
	응답 없음	7	1.5
종업원 수	5명 미만	106	22.0
	5~20명 미만	152	31.6
	20~50명 미만	104	21.6
	50~300명 미만	95	19.8
	300명 이상	24	5.0
수출 전담부서	전담부서 운영	140	29.1
	영업부서에 배속	142	29.5
	없음	199	41.4
2024년 매출액	1억 원 미만	27	5.6
	1억~10억 원 미만	98	20.4
	10억~100억 원 미만	189	39.3
	100억~1,500억 원 미만	129	26.8
	1,500억 원 이상	22	4.6
	응답 없음	16	3.3
2024년 수출액	1억 원 미만	166	34.5
	1억~10억 원 미만	132	27.4
	10억~100억 원 미만	114	23.7
	100억~1,500억 원 미만	38	7.9
	1,500억 원 이상	5	1.0
	응답 없음	26	5.4

자료: 저자 작성.

업체 규모별 생산방식 분석 결과, 규모가 클수록 직접 생산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반면 종업원 5명 미만의 영세업체는 위탁 생산과 대외 구매 등 다양한 생산방식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2>. 전체 응답 업체 기준으로는 직접 생산을 활용하는 비율이 84.0%로 가장 높았으며, 위탁 생산 27.0%, 대외 구매(소싱) 13.9% 순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종업원 50~300명 미만(96.8%), 300명 이상(95.8%) 업체에서는 직접 생산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5명 미만 업체에서는 위탁 생산 활용 비율이 32.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2> 업체 규모별 생산방식(중복응답)

구분	직접 생산	위탁 생산	대외 구매(소싱)	단위: %
전체 평균	84.0	27.0	13.9	
5명 미만	62.3	32.1	22.6	
5~20명 미만	85.5	21.7	10.5	
20~50명 미만	89.4	25.0	6.7	
50~300명 미만	96.8	31.6	14.7	
300명 이상	95.8	29.2	25.0	

자료: 저자 작성.

업체 규모별 가공방식을 조사한 결과, 대규모 업체일수록 가공 과정을 내부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경향이 뚜렷한 반면, 소규모 업체는 위탁 가공 활용 또는 신선 농산물 중심의 취급을 통해 가공 부담을 분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5-3>. 전체 응답 업체 기준으로는 78.8%가 직접 가공을 수행하고 있으며, 23.1%는 위탁 가공을 활용, 15.2%는 가공하지 않은 신선 품목을 취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50~300명 미만(93.7%)과 300명 이상(91.7%) 업체에서 직접 가공 비율이 매우 높았다. 반면 5명 미만 업체는 직접 가공 비율이 55.7%로 상대적으로 낮고, 위탁 가공(31.1%)과 신선 품목 취급(26.4%) 비중이 상대적 높게 나타났다.

〈표 5-3〉 업체 규모별 가공방식(중복응답)

구분	직접 가공	위탁 가공	가공하지 않음(신선)	단위: %
전체 평균	78.8	23.1	15.2	
5명 미만	55.7	31.1	26.4	
5~20명 미만	83.6	17.8	11.8	
20~50명 미만	78.8	14.4	18.3	
50~300명 미만	93.7	29.5	5.3	
300명 이상	91.7	33.3	12.5	

자료: 저자 작성.

업체 규모별 수출방식을 분석한 결과, 농식품 수출업체는 직·간접 수출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중견 규모 업체(종업원 50~300명 미만)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수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5-4>. 전체 응답 업체 기준으로는 직접 수출 64.2%, 간접 수출 75.1%, 온라인 플랫폼 수출 5.8%로 조사되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명 이상 대형 업체는 직접 수출(79.2%)과 간접 수출(79.2%) 비율이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50~300명 미만 중견업체는 온라인 플랫폼 수출을 9.5%로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4〉 업체 규모별 수출방식(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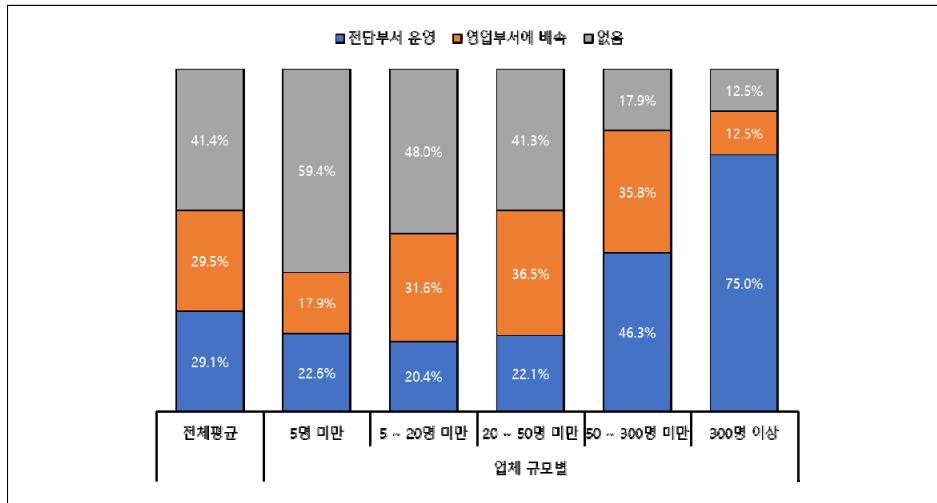
구분	직접 수출	간접 수출	온라인 플랫폼 수출	단위: %
전체 평균	64.2	75.1	5.8	
5명 미만	68.9	58.5	6.6	
5~20명 미만	59.2	78.9	6.6	
20~50명 미만	51.9	80.8	1.9	
50~300명 미만	76.8	80.0	9.5	
300명 이상	79.2	79.2	-	

자료: 저자 작성.

수출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업체는 전체의 29.1%이며, 영업부서 내 배치 형태가 29.5%, 전담부서가 없는 업체가 41.4%로 조사되었다<그림 5-1>. 업체 규모별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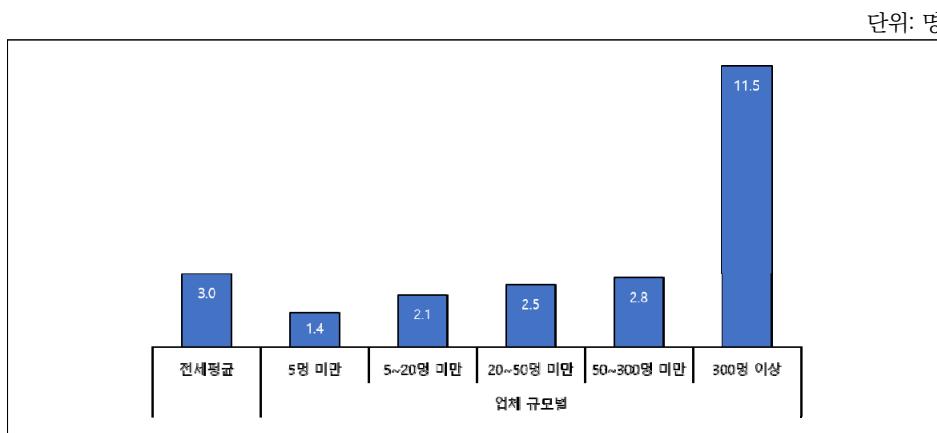
군 수출 전담 인력을 살펴보면, 종업원 300명 이상 업체에서 전담 인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업체 규모가 클수록 수출 전담 인력 규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대규모 업체일수록 수출 업무의 전문화와 기능적 분업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그림 5-2>.

〈그림 5-1〉 수출 전담부서 운영 여부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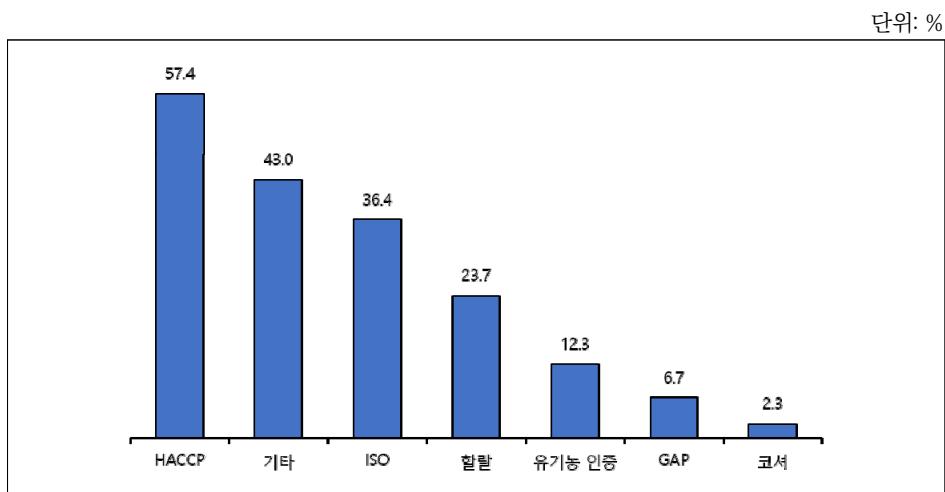
〈그림 5-2〉 업체 규모별 평균 수출 전담 인력



자료: 저자 작성.

농식품 수출업체들은 식품 안전 관련 기본 인증인 HACCP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다양한 국제 인증 획득을 병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3>. 응답 업체의 해외 인증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HACCP이 57.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ISO 36.4%, 할랄인증 23.7%, 유기농 인증 12.3%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5-3〉 보유하고 있는 해외 인증(중복응답)



자료: 저자 작성.

업체 규모별 수출대상국을 분석한 결과, 대규모 업체일수록 수출시장 다변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5>. 이는 시장 리스크 분산 측면에서도 대규모 업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체 응답 업체는 평균 6.6개국에 수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업체 규모가 클수록 수출대상국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종업원 300명 이상 업체는 평균 23.7개국으로 수출하고 있어 5명 미만 업체의 평균 3.8개국 대비 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업체 규모별 수출대상국

구분	1~2개	3~5개	6~9개	10~19개	20개 이상	평균(개)	단위: %
전체 평균	38.5	32.4	10.2	12.1	6.9	6.6	
5명 미만	52.8	31.1	4.7	10.4	0.9	3.8	
5~20명 미만	40.8	42.1	6.6	9.2	1.3	4.0	
20~50명 미만	42.3	29.8	15.4	8.7	3.8	5.0	
50~300명 미만	22.1	26.3	15.8	17.9	17.9	11.2	
300명 이상	8.3	12.5	12.5	29.2	37.5	23.7	

자료: 저자 작성.

2022~24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2022년 24.5%에서 2024년 25.5%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6>. 특히 유망시장 수출 비중은 2022년 29.2%에서 2024년 29.8%로 상승하여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업체 규모별로는 종업원 5명 미만 업체의 매출 대비 수출 비중이 2024년 기준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소규모 업체일수록 수출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갖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5-6〉 업체 규모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2022~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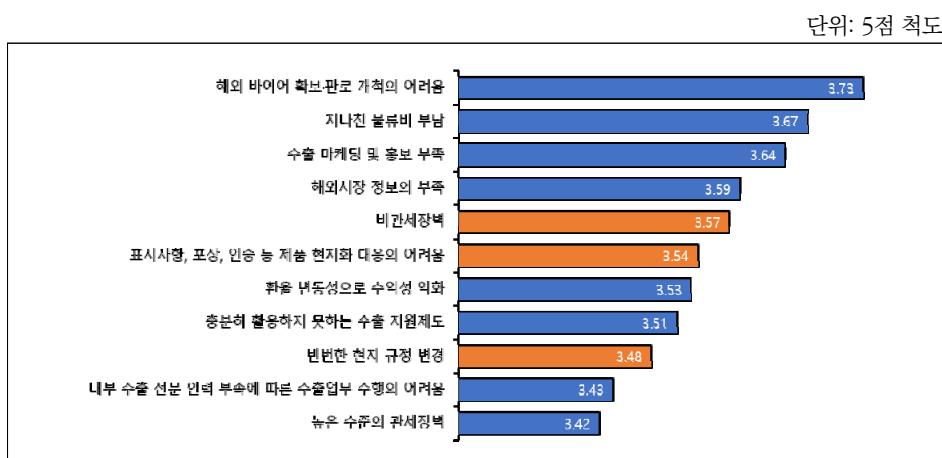
구분	전체 평균			시장 유형별									단위: %
				성숙시장			유망시장			기타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전체	24.5	24.7	25.5	22.0	21.8	22.5	29.2	29.8	29.8	28.2	29.0	31.2	
5명 미만	41.6	42.1	42.7	35.5	35.5	36.3	49.9	51.3	50.9	46.6	47.3	48.2	
5~20명 미만	24.4	25.0	26.2	22.8	22.8	24.1	25.5	27.3	25.6	29.2	30.7	34.4	
20~50명 미만	16.0	15.5	16.0	15.3	15.0	14.8	22.8	21.6	23.8	8.9	8.8	9.6	
50~300명 미만	16.0	16.1	16.7	16.7	16.3	16.7	18.9	19.3	20.1	3.7	4.8	6.0	
300명 이상	20.9	20.8	22.4	19.0	18.8	19.6	36.0	34.0	31.8	22.6	24.1	33.0	

주: 기타 국가들은 성숙시장, 유망시장을 제외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대만,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임.
자료: 저자 작성.

농식품 수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수출업체들은 시장 개척의 어려움과 물류비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비관세장벽을 관세장벽보다 더 큰 애로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그림 5-4>. 애로사항 인식도는 5점 만점으로 측정되었으며, 가장 인식도가 높은 항목은 ‘해외 바이어 확보 및 판로 개척의 어려움’과 ‘지나친 물류비 부담’이었다. 또한 ‘비관세장벽(인증, 통관, 위생검역, 기술 규정 등)(3.57점)’, ‘표시사항·포장·인증 등 제품 현지화 대응의 어려움(3.54점)’, ‘빈번한 현지 규정 변경(3.48점)’ 등 비관세장벽 관련 요인들이 관세장벽(3.42점)보다 더 큰 애로로 인식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5-4〉 수출과정의 애로사항별 인식도



자료: 저자 작성.

농식품 수출업체들은 미국·일본·중국 등 성숙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을 전개하고 있으며, 향후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ASEAN과 EU 등 유망시장에 대한 신규 개척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업체들의 주요 수출대상국 분포를 살펴보면, 성숙시장이 62.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 중 미국 38.3%, 중국 13.3%, 일본 10.4%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유망시장으로 수출하는 업체 비율은 21.8%이었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이 ASEAN(17.5%) 지역으로의 수출이었다<표 5-7>. 또한 신규로 개척 중인 수출대상국을 보면, 유망시장이 28.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특히 ASEAN(17.5%)과 EU(4.8%)에 대한 진출 노력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8>.

〈표 5-7〉 주요 수출대상국

구분	응답 수	비율(%)
전체	481	100.0
성숙시장	298	62.0
미국	184	38.3
중국	64	13.3
일본	50	10.4
유망시장	105	21.8
ASEAN	84	17.5
EU	14	2.9
UAE	5	1.0
인도	2	0.4
기타	78	16.2
영국	1	0.2
호주	15	3.1
캐나다	11	2.3
뉴질랜드	1	0.2
홍콩	15	3.1
대만	18	3.7
러시아	9	1.9
카자흐스탄	1	0.2
몽골	6	1.2
방글라데시	1	0.2

자료: 저자 작성.

〈표 5-8〉 신규 개척 중인 수출대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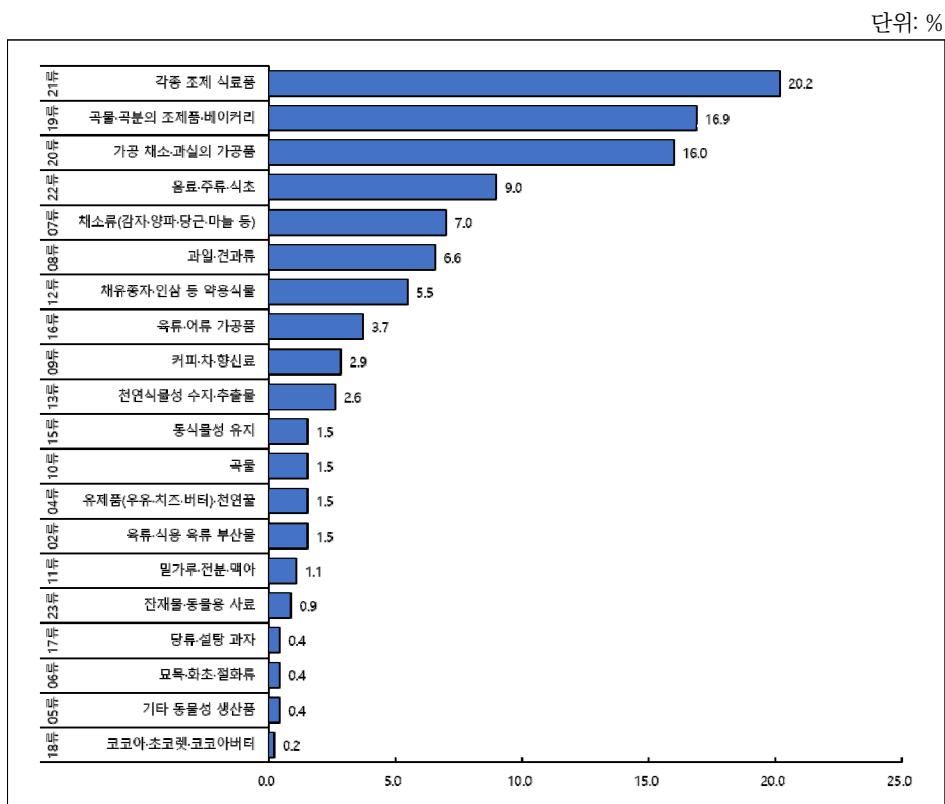
구분	응답 수	비율(%)
성숙시장	111	23.1
미국	52	10.8
중국	37	7.7
일본	22	4.6
유망시장	136	28.3
ASEAN	84	17.5
EU	23	4.8
UAE	19	4.0
브라질	2	0.4
인도	8	1.7
잠재시장	2	0.4
과테말라	1	0.2
남아프리카공화국	1	0.2

주: 수출국·시장별 비율은 전체 응답 업체 수(481개)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저자 작성.

응답 업체들의 주요 수출 품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은 신선 농산물보다 가공·조제식료품 중심의 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5-5>.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서는 조제식료품(HS21)이 20.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 곡물·곡분의 조제품(네이커리) 16.9%, 가공 채소·과실 조제품(HS20, 16.0%), 음료·주류(HS22, 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5-5〉 주요 수출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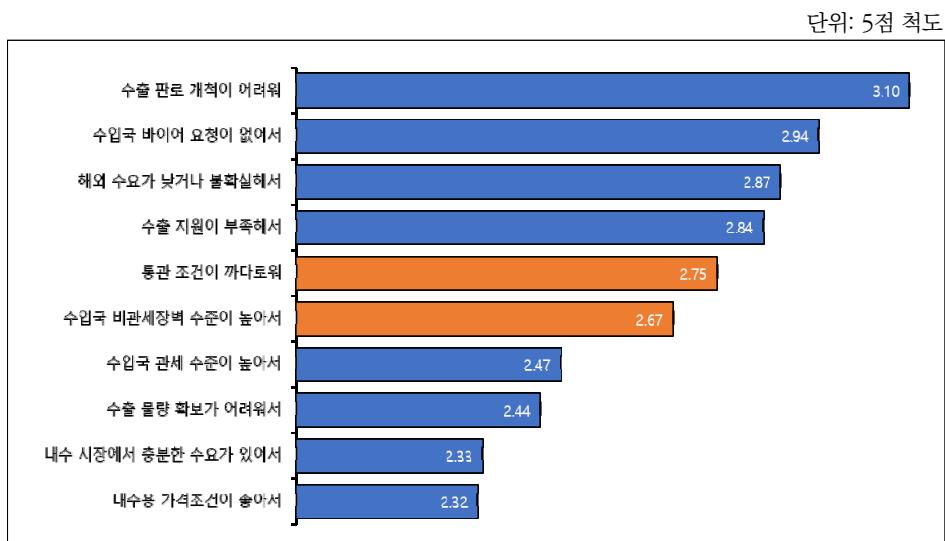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농식품 수출업체가 취급 품목을 내수용으로 판매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수출 판로 개척의 어려움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비관세장벽 역시 국내 시장 중심 판매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5-6>. 취

급 품목을 내수용으로 판매하는 이유의 인식도는 5점 척도 기준으로 측정되었으며, ‘수출 판로 개척이 어려워’가 3.1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어 ‘수입국 바이어 요청이 없어서(2.94점)’, ‘해외 수요가 낮거나 불확실해서(2.87점)’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관세장벽 관련 요인인 ‘통관 조건이 까다로워(2.75점)’와 ‘수입국 비관세장벽 수준이 높아서(2.67점)’는 ‘수입국 관세 수준이 높아서(2.47점)’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해 관세보다 비관세장벽이 내수 집중의 더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림 5-6〉 취급 품목의 내수용 판매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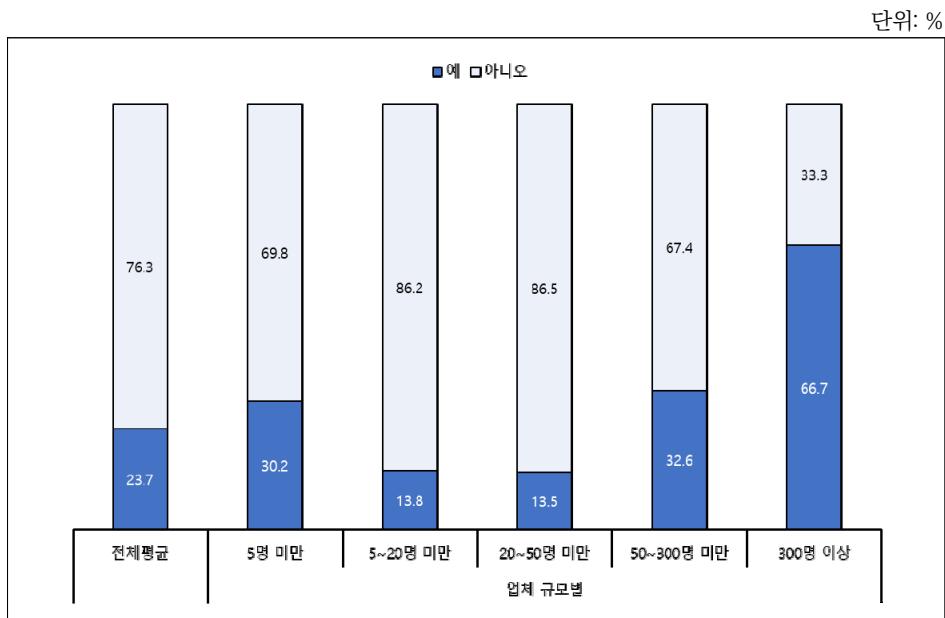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2. 비관세장벽 경험 및 대응 실태

업체 규모별 비관세장벽 경험 여부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 업체의 23.7%가 비관세장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7>. 특히 업체 규모가 클수록 비관세장벽 경험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대규모 업체일수록 다양한 해외

시장에 진출하면서 더 복잡한 규제 환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반대로 소규모 업체는 수출 초기 단계에서 진입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비관세장벽 경험 비율이 낮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5-7〉 업체 규모별 비관세장벽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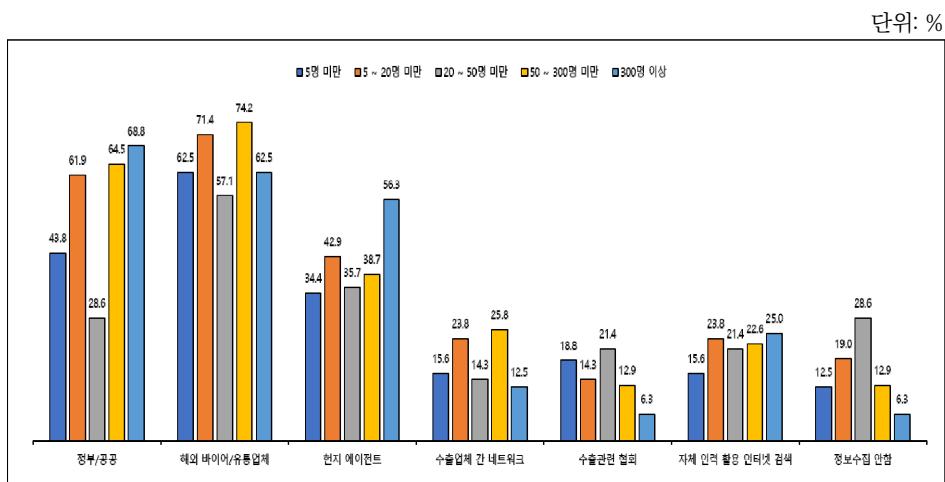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업체 규모별 비관세장벽 정보수집 경로를 분석한 결과, 규모에 따라 정보 접근성과 활용 능력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그림 5-8>. 종업원 300명 이상 대규모 업체는 정부·공공기관(68.8%), 해외 바이어·유통업체(62.5%), 현지 에이전트(56.3%) 등 다양한 채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자체 인력을 통한 정보수집(25.0%) 비중도 높아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내부 역량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5명 미만의 소규모 업체는 정부·공공기관을 통한 정보수집 비중이 43.8%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현지 에이전트(34.4%)나 수출업체 간 네트워크(15.6%) 활용 역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규모 업체의 경우 수출 관련 협회를 통한 정보수집 비율이 18.8%로 대규모 업체(6.3%)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정부·공공기관 접근성이 낮은 소규모 업체에 협회가 실질적인 정보수집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협회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가 영세업체의 비관세장벽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임을 시사한다.

〈그림 5-8〉 업체 규모별 비관세장벽 정보수집 경로



자료: 저자 작성.

〈참고〉 UNCTAD 비관세장벽 분류체계

비관세장벽 유형

A. 식물위생 및 동식물 검역조치	A1	차별적인 농약잔류검사 절차
	A2	특정물질(식품첨가물, 항생제 등) 잔류 허용 및 사용 금지
	A3	식품 안전 관련 라벨링/표시/포장 요건
	A4	신규 위생/검역 규정 도입
	A5	동식물 해충과 질병유발 유기체 제거를 위한 처리 방식(저온·열처리, 방사선조사, 훈증처리)
	A6	생산 및 생산 후 공정 및 절차 요건
	A8	위생 보장을 위한 통제/검사/승인 절차 요건
	A9	사전 수입허가 행정절차

비관세장벽 유형	
B. 무역기술 장벽	B1 특정 제품 수입허가 요건 및 라이선스 요구
	B2 특정물질 잔류 허용 한도 및 사용 제한
	B3 제품 기술 규정 관련 라벨링/표시/포장 요건
	B4 제조 공정 및 운송·보관 규정
	B6 상품 성분/영양 요건
	B7 상품 품질/안전성/성능 요건
	B8 기술 규정 충족 여부를 위한 표본추출/시험·검사/평가/검증/인증 요건
	B9 신규 기술 규정 도입
	C 선적전검사/직송요건/세관의 통관 항구 지정 요건
D	반덤핑조치/상계관세조치/세이프가드조치
E	제한적 조건부 수입허가절차
F	현지 추가 세금, 부과금 징수 등 가격통제
G	외환 및 금융 조치
H	현지 국영 보험 및 운송 이용 의무 조항
I	현지 원재료 사용 요건
J	국내 및 자체 유통채널 구축 제한
K	국내 및 자체 판매 후 서비스 채널 구축 제약
L	정부 보조지원 및 가격규제
M	현지 정부조달에 국내 수출업체 참여 제한
N	특허/지리적표시//산업디자인/저작권/상표 등 지식재산권
O	원산지 규정
Other	기타 절차상 장벽

비관세장벽 유형별 경험 여부를 총합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A유형(식물위생 및 동식물 검역조치)과 B유형(무역기술장벽) 관련 경험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표 5-9>. 구체적으로는 ‘식품 안전 관련 라벨링·표시·포장 요건(A3)’이 35건으로 가장 많은 경험 사례를 보였으며, 이어 ‘상품 성분·영양 요건(B6)’ 24건, ‘차별적인 농약잔류검사 절차(A1)’ 23건, ‘원산지 규정(O)’ 22건, ‘특정물질 잔류 허용 및 사용 금지(A2)’ 21건 등의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영세업체와 대규모 업체는 생산 및 수출방식의 차이로 인해 경험하는 비관세장벽 유형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는 생산관리 역량 강

화, 정책·규제정보 모니터링 지원 등 규모별 맞춤형 지원 전략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5명 미만 영세업체에서는 A1(농약잔류검사 절차, 9건), A3(식품 안전 관련 라벨링, 8건), O(원산지 규정, 7건) 유형이 주로 발생하였다. 이는 영세업체가 직접 생산·가공 비중이 낮고 신선 농산물 중심의 수출 구조를 갖는 경우가 많아 원재료 및 생산 과정 통제가 어렵고 현장 기반 규제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노출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종업원 300명 이상 대규모 업체에서는 A4(신규 위생·검역 규정, 6건), A2(특정물질 잔류검사, 5건), B6(상품 성분·영양 요건, 4건) 등이 주요 장벽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규모 업체가 수출대상국 수가 많고 시장 다변화를 활발히 추진하며, 수출 업무의 전문화 수준이 높은 만큼, 수출국의 제도 도입·변경 등 정책적·시스템적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 과제임을 시사한다.

〈표 5-9〉 업체 규모별 비관세장벽 유형별 경험 여부

구분	5명 미만	5~20명 미만	20~50명 미만	50~300명 미만	300명 이상	단위: 건
A1	9	4	4	3	3	<u>23</u>
A2	3	4	3	6	5	<u>21</u>
A3	8	8	5	11	3	<u>35</u>
A4	5	2	1	3	6	<u>17</u>
A5	2	-	3	-	3	8
A6	3	1	-	1	1	6
A8	6	1	2	3	2	14
A9	5	3	2	6	3	<u>19</u>
B1	5	2	2	2	2	13
B2	4	2	1	1	2	10
B3	4	1	1	2	1	9
B4	3	-	-	1	1	5
B6	6	5	4	5	4	<u>24</u>
B7	2	-	2	-	1	5
B8	3	1	-	2	1	7
B9	-	-	-	-	1	1
C	1	-	-	2	1	4
D	-	-	-	-	-	0
E	-	-	1	1	-	2
F	1	1	-	2	1	5
G	-	-	-	1	-	1
H	-	-	-	1	-	1

(계속)

구분	5명 미만	5~20명 미만	20~50명 미만	50~300명 미만	300명 이상	총합계
I	2	3	-	4	3	12
J	-	1	-	1	-	2
K	-	-	1	-	-	1
L	-	1	-	-	-	1
M	-	-	-	-	-	0
N	1	1	-	1	1	4
O	7	6	2	5	2	<u>22</u>
Other	4	6	5	3	2	20

자료: 저자 작성.

비관세장벽 유형별 중요도의 경험빈도 기준 분석 결과, ‘A1(농약잔류검사 절차)’이 4.57점으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0>. 다음으로 A2(특정물질 잔류검사, 4.43점), A4(신규 위생·검역 규정, 4.35점), B6(상품 성분·영양 요건, 4.33점), A3(식품 안전 관련 라벨링, 4.31점), A9(사전 수입허가 행정절차, 4.26점), O(원산지 규정, 4.18점)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업체 규모별로는 5명 미만 영세업체가 A1과 A2(각각 4.67점)를 가장 중요한 비관세장벽 유형으로 평가한 반면, 종업원 300명 이상 대규모 업체는 A1(5.00점), B6(4.75점), A4(4.67점)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업체 규모에 따라 직면하는 규제 환경과 리스크 요인이 상이함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10> 업체 규모별 비관세장벽 유형별 중요도

단위: 점/5점

구분	5명 미만	5~20명 미만	20~50명 미만	50~300명 미만	300명 이상	총합계
A1	4.67	5.00	3.75	4.33	5.00	<u>4.57</u>
A2	4.67	4.50	4.33	4.50	4.20	<u>4.43</u>
A3	4.13	4.25	4.20	4.55	4.33	<u>4.31</u>
A4	3.60	4.00	5.00	5.00	4.67	<u>4.35</u>
A9	4.00	4.67	4.50	4.50	3.67	<u>4.26</u>
B6	4.00	4.40	4.25	4.40	4.75	<u>4.33</u>
O	4.00	4.67	3.50	4.40	3.50	<u>4.18</u>

주: <표 5-9>에서 비관세장벽 유형별 경험 빈도가 15건 이상인 7개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저자 작성.

HS2 단위 품목별 비관세장벽 유형을 분석한 결과, 신선 농산물(HS08 등)에서는 검역 및 위생조치(A1)가 주로 발생한 반면, 가공식품(HS19, HS21 등)에서는 라벨링 및 성분 요건(A3, B6) 등 기술규제 성격의 장벽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5-11>. 전체 품목 중 비관세장벽 경험 빈도가 가장 높은 품목은 HS19(곡물 조제품)로 나타났다. HS19 품목에서는 A3(식품 안전 관련 라벨링) 유형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B6(상품 성분·영양 요건)와 O(원산지 규정)가 각각 8건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A1(농약잔류검사 절차)은 HS08(과일·견과류) 품목에서 9건으로 가장 높은 경험 빈도를 보였다.

<표 5-11> HS2 단위 품목별 비관세장벽 유형별 경험 여부

구분	단위: 건													
	HS02	HS04	HS05	HS07	HS08	HS09	HS12	HS13	HS16	HS19	HS20	HS21	HS22	
A1	-	-	-	4	9	1	1	1	-	4	2	1	-	
A2	-	-	1	-	3	-	1	-	1	5	2	5	-	
A3	-	-	-	2	4	-	5	1	1	9	4	8	1	
A4	1	-	1	-	3	-	2	1	1	2	3	2	-	
A9	-	-	-	1	2	1	3	1	-	4	-	3	2	
B6	-	-	-	-	-	-	3	-	-	8	7	4	2	
O	-	-	-	2	2	-	1	-	-	8	5	4	-	

주: <표 5-9>에서 비관세장벽 유형별 경험 빈도가 15건 이상인 7개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저자 작성.

주요 수출대상국의 비관세장벽 유형별 경험 사례를 살펴보면, 시장 성숙도와 무역 환경에 따라 수출업체가 직면하는 핵심 비관세장벽 유형이 상이하게 나타나 국가별로 차별화된 시장 진출·유지 전략의 필요성을 시사한다<표 5-12>. 미국 시장에서는 A3(식품 안전 관련 라벨링)과 B6(상품 성분·영양 요건) 유형의 경험이 각각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식품 정보의 정확성·투명성 요구 수준이 매우 높으며, 라벨링 및 성분 관리가 핵심 규제 요소임을 보여 준다.

일본 시장에서는 A3(식품 안전 관련 라벨링, 3건)와 A1(농약잔류검사 절차, 2

건) 등 검역 및 식품 안전과 관련된 비관세장벽이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시장에서는 A3(식품 안전 관련 라벨링), A4(신규 위생·검역 규정), B6(상품 성분·영양 요건), O(원산지 규정) 등 다양한 유형의 장벽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는 중국이 위생검역뿐 아니라 원산지 규정 등 정책적 규제를 결합해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 유망시장인 ASEAN 시장에서는 A3(식품 안전 관련 라벨링) 유형이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A9(사전 수입허가 행정 절차) 등 통관·행정절차 관련 장벽이 5건으로 높게 나타나 행정·제도적 접근성 개선이 주요 과제임을 시사한다.

〈표 5-12〉 주요 수출대상국별 비관세장벽 유형별 경험 여부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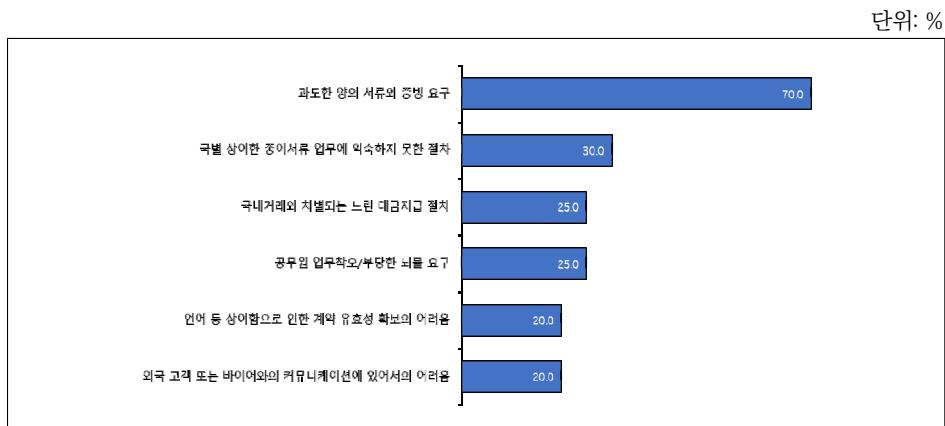
구분	성숙시장			유망시장				기타
	미국	일본	중국	ASEAN	EU	UAE	인도	
A1	6	2	3	3	1	-	-	8
A2	10	1	2	2	1	1	-	4
A3	15	3	5	6	-	-	-	6
A4	5	1	5	2	-	-	1	3
A9	5	1	3	5	-	-	-	5
B6	15	1	5	-	2	-	-	1
O	8	1	5	1	2	-	-	5

주: 〈표 5-9〉에서 비관세장벽 유형별 경험 빈도가 15건 이상인 7개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저자 작성.

기타 절차상 장벽의 구체적 유형을 분석한 결과,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다양한 행정적·절차적 장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수의 업체는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과도한 양의 서류 및 증빙 제출(70.0%)을 주요 절차상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그림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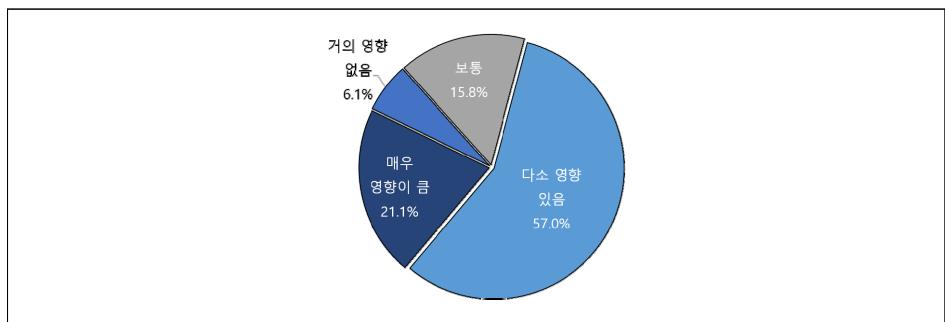
〈그림 5-9〉 기타 절차상 장벽의 구체적 유형(중복응답)



자료: 저자 작성.

비관세장벽이 수출 성과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의 78.1%가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수출량 감소, 비용 증가 등 실질적인 손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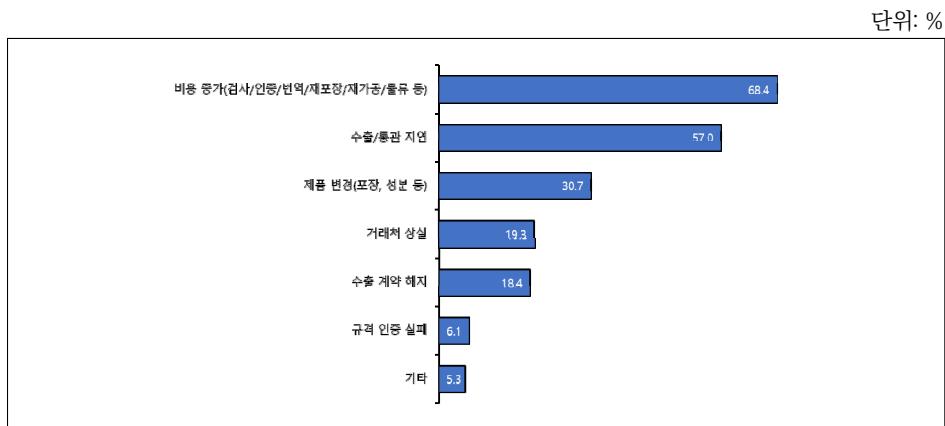
〈그림 5-10〉 비관세장벽이 수출 성과에 미친 영향



자료: 저자 작성.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검사·인증·번역·재포장·재가공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68.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수출 및 통관지연도 57.0%로 높게 나타나 비관세장벽이 비용뿐 아니라 시간적 측면에서도 기업 활동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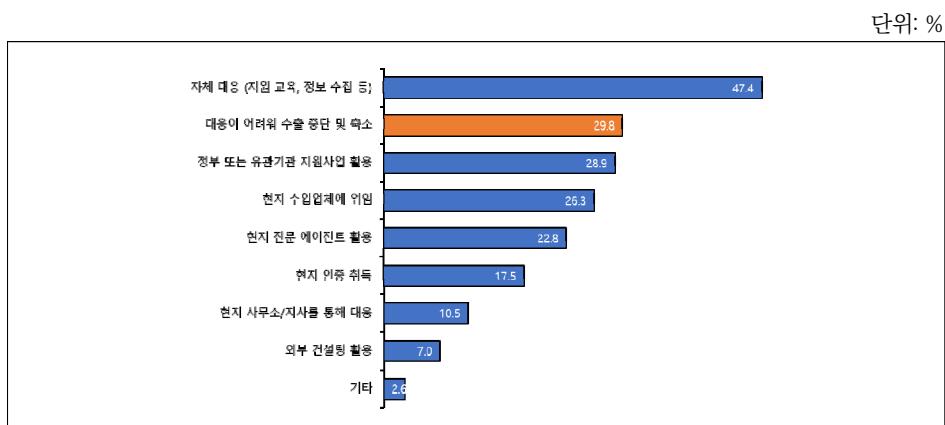
〈그림 5-11〉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피해(중복응답)



자료: 저자 작성.

비관세장벽 발생 시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비율이 4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응이 어려워 수출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비율은 29.8%로 조사되었다<그림 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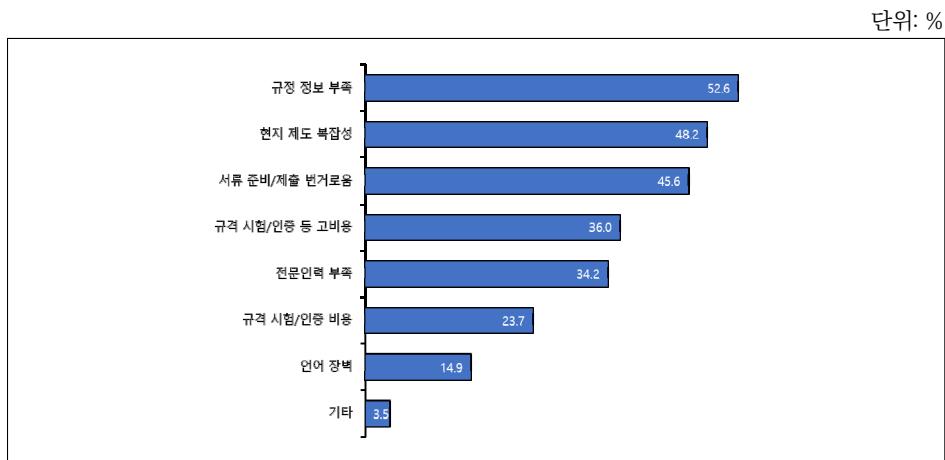
〈그림 5-12〉 비관세장벽 발생 시 대응 방법(중복응답)



자료: 저자 작성.

비관세장벽 대응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으로는 규정 정보 부족(52.6%), 현지 제도 복잡성(48.2%), 서류 준비 번거로움(45.6%) 등이 지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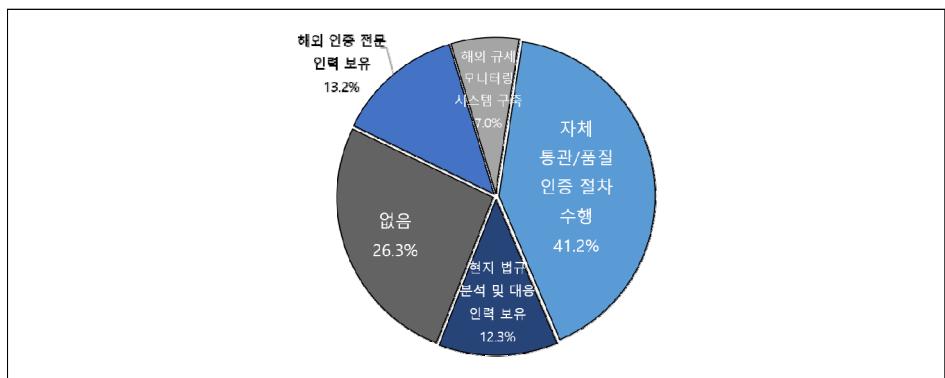
〈그림 5-13〉 비관세장벽 대응 시 애로사항(중복응답)



자료: 저자 작성.

응답 업체의 비관세장벽 대응 역량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41.2%가 자체적으로 통관·품질 인증 절차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12.3%는 현지 법규 분석 및 대응을 담당할 인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14>. 반면 응답 업체의 26.3%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내부 대응 역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상당수 업체가 비관세장벽 대응에서 정부 등 외부 지원에 높은 의존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시사한다.

〈그림 5-14〉 비관세장벽에 대한 내부 대응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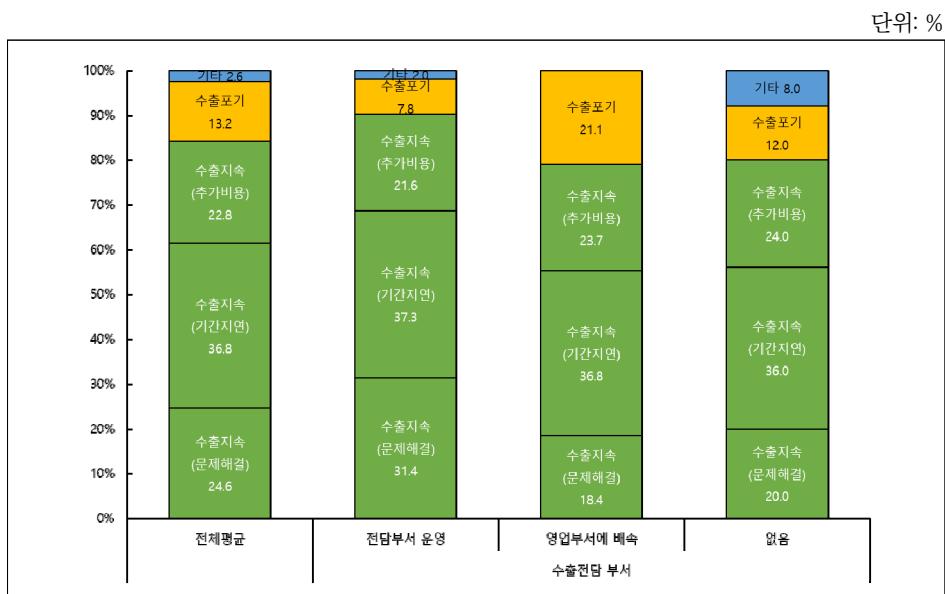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비관세장벽은 수출 지속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수출 전담 조직 보유 여부에 따라 대응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15>. 비관세장벽 발생 이후에도 추가 비용 증가나 기간 지연을 감수하면서 수출을 지속한 업체는 전체의 84.2%였으며, 수출을 포기한 업체는 13.2%로 조사되었다. 특히 수출 전담부서가 없는 업체의 수출 포기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담 조직이 없는 경우 규정 정보 부족, 전문 인력 부재 등 핵심 애로사항을 극복하지 못해 수출을 포기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편 수출을 지속한 업체(84.2%) 가운데에서도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검사·인증·재포장·재가공 등 추가 비용을 경험한 비율이 22.8%, 수출 및 통관 지연을 경험한 비율이 3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가 비용 및 시간 손실은 경쟁국 대비 가격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지원정책은 수출 포기 방지뿐만 아니라 수출 지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시간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그림 5-15〉 비관세장벽 대응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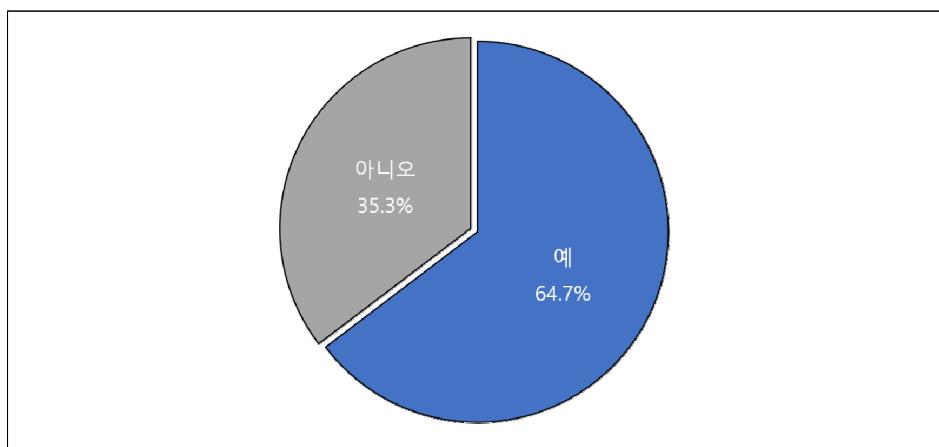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3. 정부 지원사업 경험 및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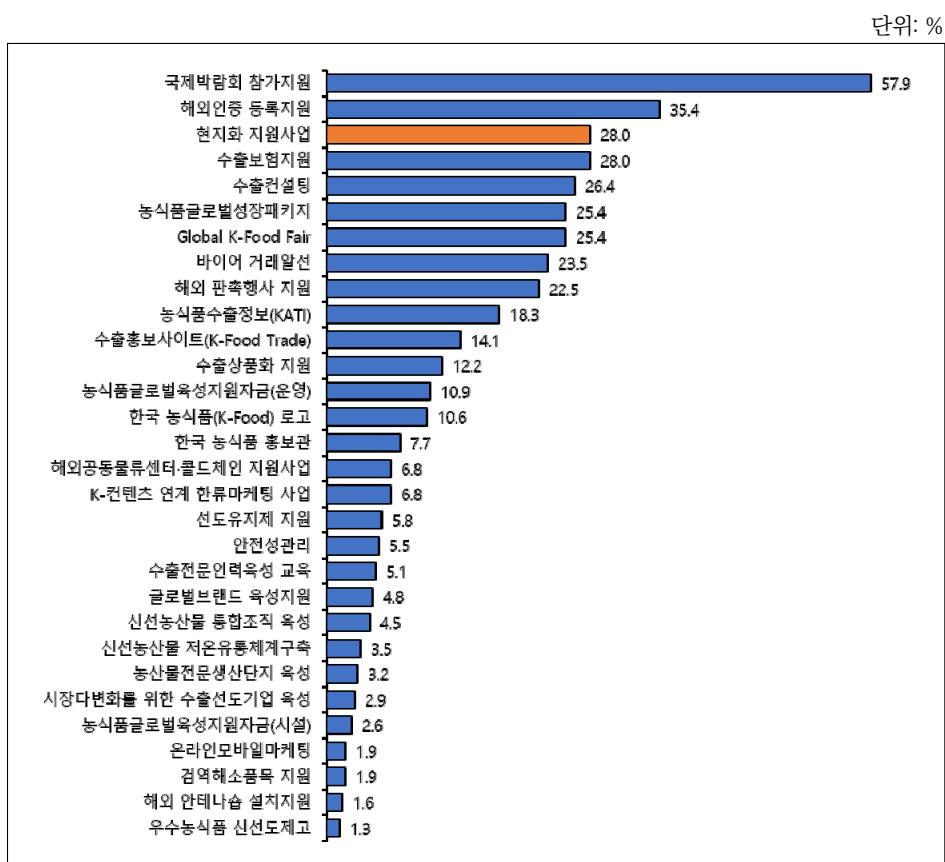
정부의 수출지원사업 활용 경험은 전체의 64.7%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실제 참여 사업은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의 활용 비율이 57.9%로 가장 높았으며,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현지화 지원사업 활용도는 28.0%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5-16, 5-17>.

〈그림 5-16〉 정부의 수출지원사업 활용 경험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17〉 참여 경험이 있는 수출지원사업(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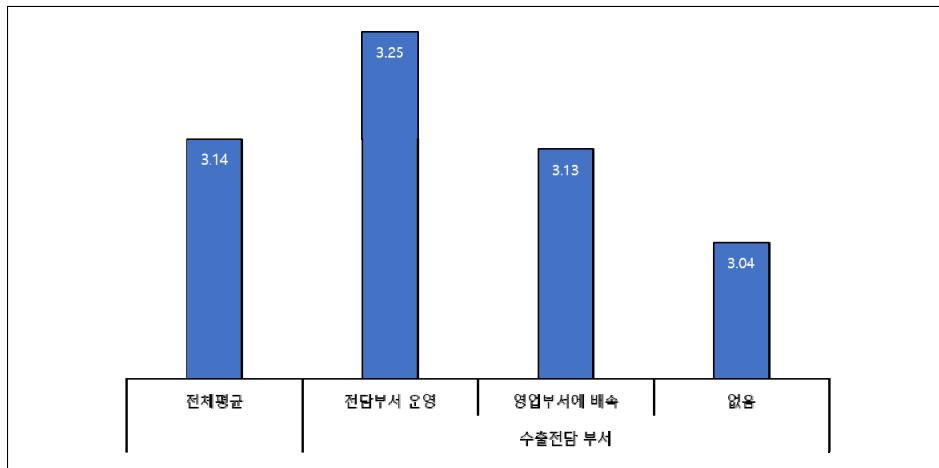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정부 수출지원사업의 신청 절차 수월성은 5점 척도 기준 3.14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수출 전담 조직의 보유 여부가 신청 절차 수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그림 5-18>. 수출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신청 절차 수월성 점수가 3.25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전담부서가 없는 업체는 3.04점으로 낮게 나타나 조직 내 수출 전담 기능의 유무가 정부 지원 사업 활용 역량과 직결됨을 시사한다.

〈그림 5-18〉 정부 수출지원사업 신청 절차 수월성

단위: 점/5점



자료: 저자 작성.

정부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체감 만족도는 대규모 업체에 상대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영세업체의 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확인되었다<표 5-13>. 업체 규모 및 비관세장벽 유형별 지원사업 만족도는 전체 평균 3.63점(5점 만점)으로 조사되었다. 규모별로는 300명 이상 대형 업체의 만족도가 4.00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20~50명 미만 업체는 3.48점으로 가장 낮아 기업 규모에 따른 지원 체감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비관세장벽 유형별로 살펴보면, 농식품 수출업체들은 A9(사전 수입허가 행정절차)와 A2(특정물질 잔류검사) 유형에서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핵심 비관세장벽으로 지목되는 A4(신규 위생·검역 규정 도입) 유형은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경험 빈도가 높은 주요 비관세장벽을 기준으로 정부 지원사업 만족도를 비교하면, A9(사전 수입허가 행정절차)와 A2(특정물질 잔류검사)가 3.84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이어 O(원산지 규정, 3.75점), A1(농약잔류검사 절차, 3.70점), A3(식품 안전 관련 라벨링, 3.55점), B6(상품 성분·영양 요건, 3.52점), A4(신규 위생·검역 규정, 3.5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13〉 업체 규모 및 비관세장벽 유형별 정부 수출지원사업 만족도

단위: 5점 척도

구분	5명 미만	5~20명 미만	20~50명 미만	50~300명 미만	300명 이상	총합계
전체	3.55	3.69	3.48	3.67	4.00	3.63
A1	3.43	3.75	3.33	3.67	4.67	3.70
A2	2.67	4.25	3.00	3.80	4.60	3.84
A3	3.29	3.75	3.00	3.50	4.67	3.55
A4	2.75	4.00	4.00	2.67	4.40	3.50
A9	3.80	4.00	3.00	3.67	4.67	3.84
B6	3.75	3.60	2.75	3.60	4.00	3.52
O	3.80	3.17	3.50	4.20	4.50	3.75

주: 〈표 5-9〉에서 비관세장벽 유형별 경험 빈도가 15건 이상인 7개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저자 작성.

현지화 지원사업의 항목별 지원 여부와 중요도를 비교한 결과, 기업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항목과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는 항목 간에 뚜렷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19>. 현지화 지원사업 항목별 실제 지원 여부를 보면, ‘해외 인증 및 표준 획득 지원(66.7%)’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 ‘라벨링 현지화 지원(54.0%)’, ‘지식재산권 지원(41.4%)’ 순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중요도 평가에서는 ‘라벨링 현지화 지원(4.57점)’이 가장 높았고, ‘현지 수입 등록을 위한 등록·갱신·검사비 지원(4.56점)’과 ‘지식재산권(4.56점)’이 뒤를 이었다. 이는 기업들이 실제로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항목이 지원 규모와 충분히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현지화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적 재정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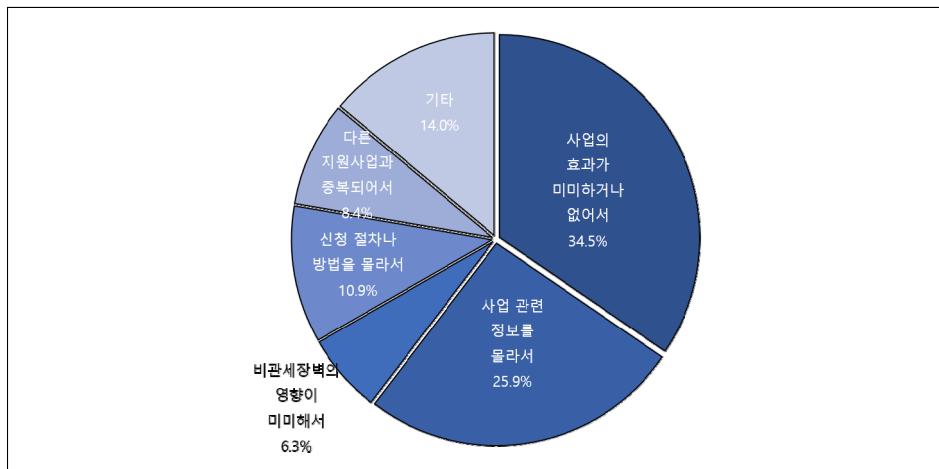
〈그림 5-19〉 현지화 지원사업 항목별 지원 여부 및 중요도



자료: 저자 작성.

현지화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는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지원 효과에 대한 불 확실성과 정보 접근성 부족이 핵심 요인으로 나타나 향후 현지화 지원사업의 홍보 방식 개선과 정보 제공 채널의 확대 필요성을 시사한다<그림 5-20>. 현지화 지원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들은 주로 ‘사업 효과가 미미하거나 없어서(34.5%)’와 ‘사업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해서(25.9%)’를 이유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현지화 지원사업이 단순히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라벨링, 통 관·검역 대응 등 수출업체가 중요하게 인식하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 성과와 성공 사례 중심의 홍보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영세업체의 경우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홍보 채널보다 수출 관련 협회나 업체 간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러한 실제 접근 경로에 기반한 정보 제공 강화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영세업체의 현지화 지원사업 접근성을 높이고, 비관세장벽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20> 현지화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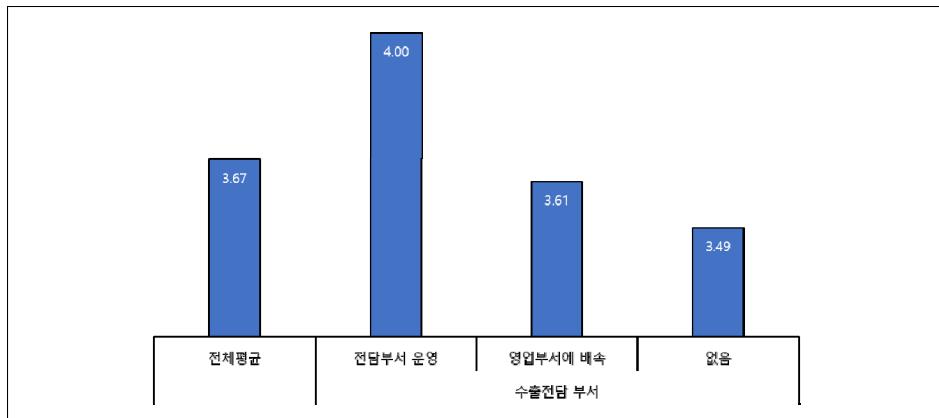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현지화 지원사업의 실질적 도움 정도는 5점 척도 기준 3.67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 전담부서를 보유한 업체는 4.00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움을 체

감한 반면, 수출 전담부서가 없는 업체는 3.49점으로 낮게 나타나 조직 내 전담 기능의 유무가 지원사업의 체감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5-21〉 현지화 지원사업의 실질적 도움 정도

단위: 점/5점



자료: 저자 작성.

농식품 수출업체가 체감하는 정부의 비관세장벽 대응 실효성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업체들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신규 규정 대응 지원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5-14>. 업체 규모 및 비관세장벽 유형별 정부 대응 실효성 평균 점수는 5점 척도 기준 3.01점으로 정부 지원사업 만족도(3.63점)에 비해 낮은 평가를 보였다.

비관세장벽 경험 빈도가 높은 유형을 기준으로 실효성을 살펴보면, A9(사전 수입허가 행정절차)이 3.53점으로 가장 높았고, A1(농약잔류검사 절차, 3.30점), A2(특정물질 잔류검사, 3.24점), A3(식품 안전 관련 라벨링, 3.23점), O(원산지 규정, 3.23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체 규모별로는 20~50명 미만 업체의 실효성 평가가 2.91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300명 이상 대규모 업체의 3.42점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중소 규모 업체들이 정부 지원으로부터 실질적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표 5-14〉 업체 규모 및 비관세장벽 유형별 정부 비관세장벽 대응 실효성

단위: 5점 척도

구분	5명 미만	5~20명 미만	20~50명 미만	50~300명 미만	300명 이상	총합계
전체	2.97	3.09	2.91	2.96	3.42	3.01
A1	3.44	3.25	3.00	2.67	4.00	3.30
A2	3.67	3.50	2.67	2.83	3.60	3.24
A3	3.13	3.25	2.80	3.27	4.00	3.23
A4	3.20	2.50	2.00	2.67	3.50	3.06
A9	3.40	3.33	3.00	3.67	4.00	3.53
B6	3.17	3.20	2.50	3.20	3.25	3.08
O	3.14	3.17	3.50	3.00	4.00	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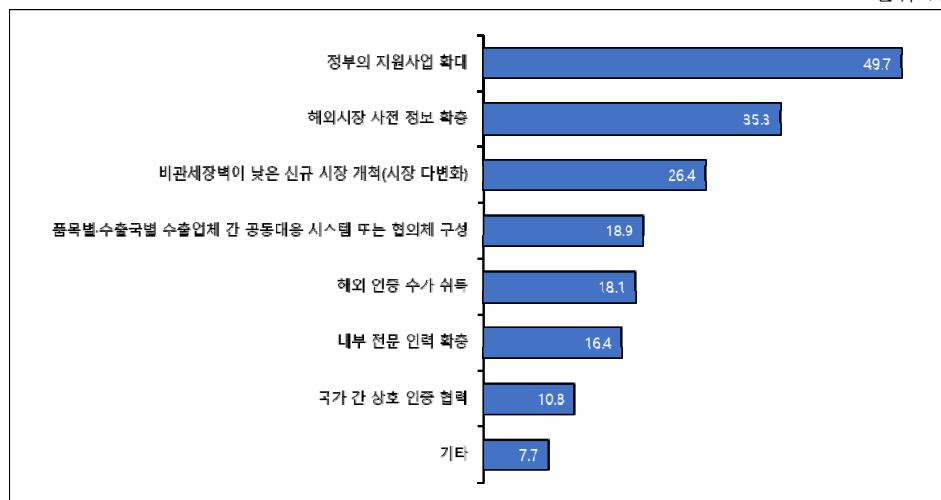
주: 〈표 5-9〉에서 비관세장벽 유형별 경험 빈도가 15건 이상인 7개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저자 작성.

비관세장벽 대응력 강화를 위한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 ‘정부 지원사업 확대’가 49.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그다음으로 ‘해외시장 사전 정보 확충(35.3%)’과 ‘시장 다변화(2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5-22>.

〈그림 5-22〉 비관세장벽 대응력 강화를 위한 향후 계획(종복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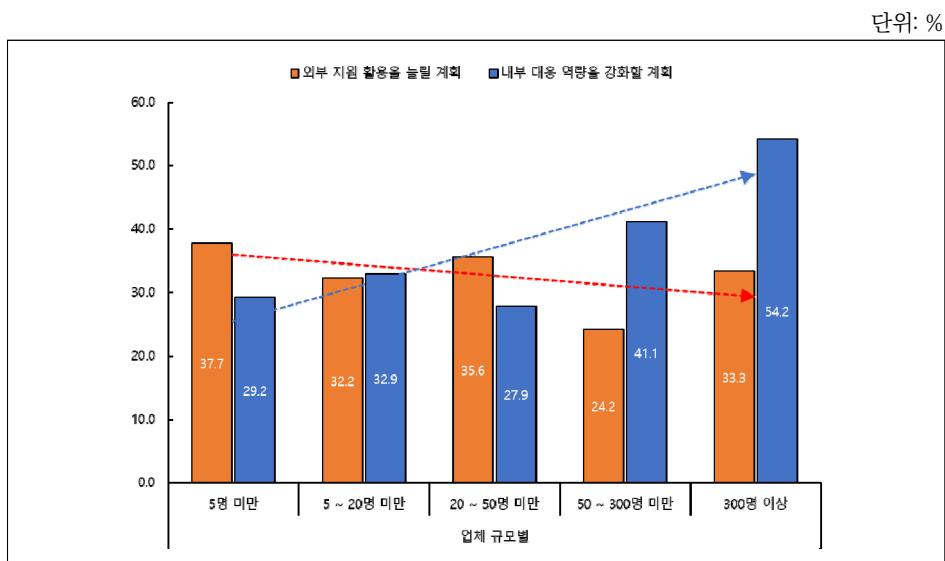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업체 규모별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 방안을 살펴보면, 소규모 업체는 외부 지원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대규모 업체는 내부 대응 역량 강화에 보다 큰 비중을 두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5-23>.

구체적으로 5명 미만 업체는 외부 지원 활용 비율이 37.7%로 내부 대응 역량 강화(29.2%)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300명 이상 대규모 업체는 외부 지원 활용이 33.3%, 내부 대응 역량 강화가 54.2%로 조사되어 대규모 업체일수록 자체 대응 역량 구축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림 5-23> 업체 규모별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 방식



자료: 저자 작성.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실효성이 검증된 지원사업 중심의 확대 추진이다. 특히 A9(사전 수입허가 행정절차) 유형과 같이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지원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규모별 맞춤형 정보 제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업체 규모에 따라 정보 접근 경로와 활용 역량이 상이하므로 대규모 업체는 고도화

된 규제정보 모니터링, 소규모 업체는 협회 기반 정보 제공 등 규모별 대응 구조에 적합한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소규모 업체를 위한 외부 지원 방안의 구체화가 요구된다. 수출 전담 조직 및 전문 인력 부재 등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매칭, 컨설팅 지원, 규정 분석 대행 등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외부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확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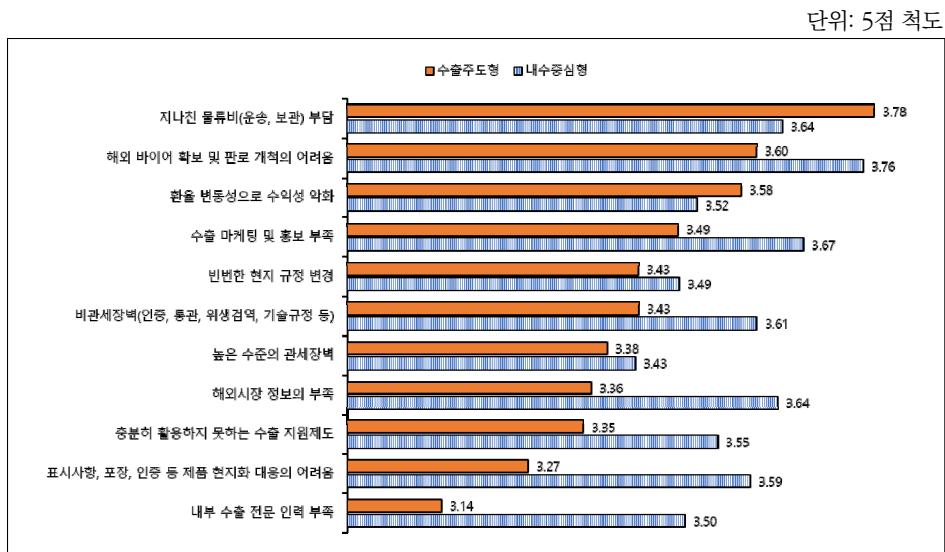
4. 수출업체 특성별 비관세장벽 대응 현황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을 기준으로 업체 특성을 구분하여 수출과정의 애로사항 인식도를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내수중심형 그룹이 애로사항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24>. 또한 수출주도형 그룹은 물류비 부담을, 내수중심형 그룹은 시장 개척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는 경향을 보였다. 수출주도형 그룹이 애로사항을 크게 느끼는 항목은 ‘지나친 물류비 부담(3.78 점)’과 ‘해외 바이어 확보 및 판로 개척의 어려움(3.60점)’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수중심형 그룹에서는 ‘해외 바이어 확보 및 판로 개척의 어려움(3.76점)’과 ‘수출 마케팅 및 홍보 부족(3.67점)’ 등이 높은 인식도를 보였다. 특히 ‘표시사항·포장·인증 등 제품 현지화 대응의 어려움’, ‘비관세장벽(인증, 통관, 위생검역, 기술 규정 등)’, ‘빈번한 현지 규정 변경’ 등 비관세장벽 관련 애로는 내수중심형 그룹에서 더 높게 나타나 수출 초기 단계 기업이 구조적으로 더 큰 진입 장벽에 직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업체 특성별로 필요한 지원을 살펴보면, 수출주도형 기업은 물류비 절감 지원과 해외 바이어 매칭 지원의 필요성이 높았고, 내수중심형 기업은 해외 판로 개척, 수출 마케팅 및 홍보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출 성숙도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 설계가 요구됨을 시사한다. 또한 내수중심형 그룹은 비관세장벽 대응, 제품 현지화, 시장 개척 등 수출 초기 단계의 구조적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신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원스톱 컨설팅, 현지화 지원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림 5-24〉 업체 특성별 수출과정의 애로사항 인식도



주: 최근 3개년(2022~2024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평균이 50% 초과인 업체는 수출주도형 그룹, 50% 이하인 업체는 내수중심형 그룹으로 구분함.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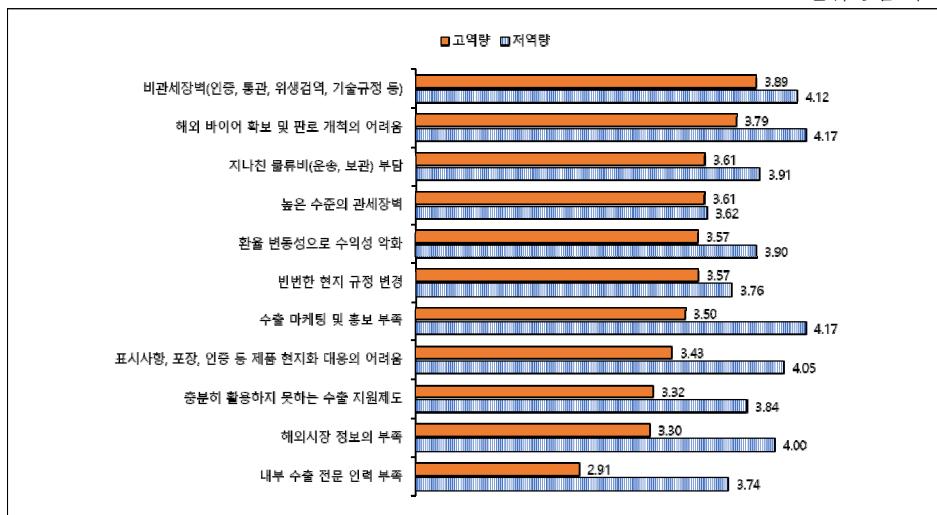
비관세장벽 대응 역량 수준에 따라 업체를 구분해 수출과정의 애로사항 인식도(5점 척도)를 분석한 결과, 대응 역량이 낮은 저역량 그룹이 전반적으로 더 큰 애로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관세장벽 대응 역량이 높은 그룹은 ‘비관세장벽(인증, 통관, 위생검역, 기술 규정 등)(3.89점)’과 ‘해외 바이어 확보 및 판로 개척의 어려움(3.79점)’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인식하였다. 반면 저역량 그룹은 ‘해외 바이어 확보 및 판로 개척의 어려움(4.17점)’과 ‘수출 마케팅 및 홍보 부족(4.17점)’을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수출 마케팅 및 홍보 부족’, ‘표시사항, 포장, 인증 등 제품 현지화 대응의 어려움’, ‘해외시장 정보의 부족’,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수출 지원제도’, ‘내부 수출 전문 인력 부족’ 등의 항목들은 비관세장벽 대응 역량에 따른 그룹 간 인식 격차가 큰 영역으로 나타났다.

업체 역량을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면, 저역량 그룹은 수출 마케팅·홍보, 제품 현지화, 시장 정보 접근 등 수출 준비 단계 전반에서 고역량 그룹보다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관세장벽 대응 역량 제고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선결과제임을 시사한다. 또한 두 그룹 모두 해외 바이어 확보 및 판로 개척을 공통적으로 주요 애로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고역량 3.79점, 저역량 4.17점), 이는 역량 수준과 관계없이 해외시장 진입 자체의 구조적 어려움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저역량 그룹은 수출 전문 인력 부족과 지원제도 활용 미흡을 주요 애로로 지적하여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전문 인력 양성, 맞춤형 컨설팅 확대 등 자생적 수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25〉 업체 역량별 수출과정의 애로사항 인식도

단위: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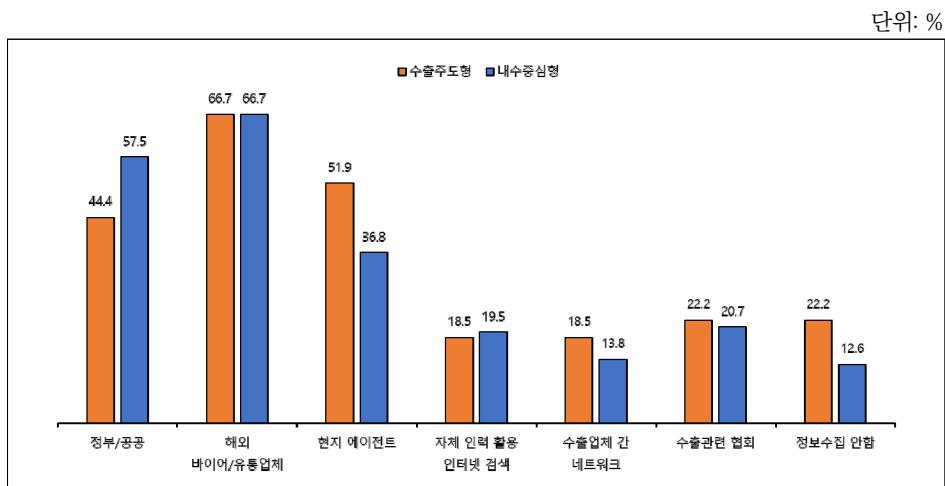
주: 자체적으로 비관세장벽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응답이 보통 이상(보통, 대체로 우수, 매우 우수)일 경우 고역량 그룹, 취약(다소 취약, 매우 취약)일 경우 저역량 그룹으로 구분함.
자료: 저자 작성.

비관세장벽 정보수집 경로를 분석한 결과, 해외 바이어·유통업체를 통한 정보 수집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수중심형 그룹은 정부·공공기관 정

보를, 수출주도형 그룹은 현지 에이전트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5-26>. 매출액 대비 수출 비율을 기준으로 업체 특성을 구분해 살펴보면, 수출주도형 그룹은 해외 바이어·유통업체(66.7%)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현지 에이전트(51.9%), 정부 및 공공기관(44.4%) 순으로 나타났다. 내수중심형 그룹 또한 해외 바이어·유통업체(66.7%)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57.5%), 현지 에이전트(36.8%) 순이었다.

한편 비관세장벽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업체의 비율은 수출주도형 그룹(22.2%)이 내수중심형 그룹(12.6%)보다 높게 나타나 일부 수출주도형 기업이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 모니터링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내수중심형과 수출주도형 그룹 모두 해외 바이어·유통업체를 통한 정보수집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은 민간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비관세장벽 정보의 주요 채널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정부의 바이어 매칭 지원이 단순 거래 알선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인 정보 흐름과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5-26〉 업체 특성별 비관세장벽 정보수집 경로(종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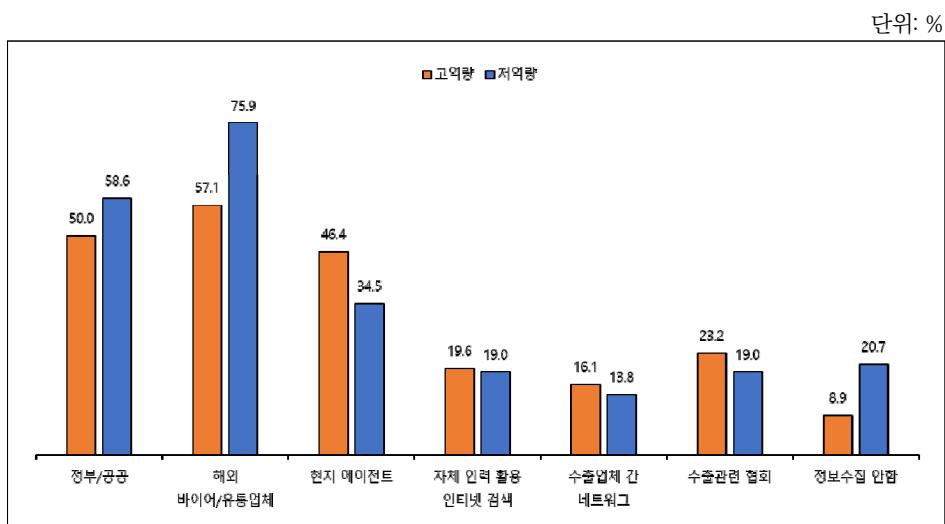
주: 최근 3개년(2022~2024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평균이 50% 초과인 업체는 수출주도형 그룹, 50% 이하인 업체는 내수중심형 그룹으로 구분함.

자료: 저자 작성.

비관세장벽 대응 역량 수준에 따라 정보수집 경로를 비교한 결과, 고역량과 저역량 그룹 모두 ‘해외 바이어·유통업체 → 정부 및 공공기관 → 현지 에이전트’ 순으로 비관세장벽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27>. 다만, 비관세장벽 정보를 전혀 수집하지 않는 비율은 저역량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해외 바이어·유통업체를 통한 정보수집 비율은 저역량 그룹이 75.9%로 고역량 그룹(57.1%)보다 높았으며, 반대로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비율은 고역량 그룹이 46.4%로 저역량 그룹(34.5%)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을 통한 정보수집 비율 역시 고역량 그룹(58.6%)이 저역량 그룹(50.0%)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특히 비관세장벽 정보를 전혀 수집하지 않는 업체 비율은 저역량 그룹에서 20.7%로 고역량 그룹(8.9%)보다 월등히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저역량 기업이 정보 접근 과정에서 구조적 장벽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5-27> 업체 역량별 비관세장벽 정보수집 경로(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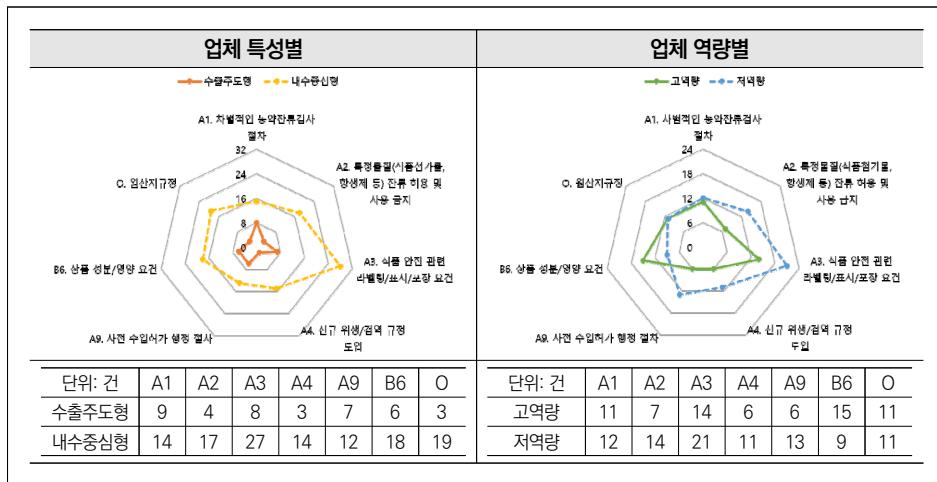


주: 자체적으로 비관세장벽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응답이 보통 이상(보통, 대체로 우수, 매우 우수)일 경우 고역량 그룹, 취약(다소 취약, 매우 취약)일 경우 저역량 그룹으로 구분함.
자료: 저자 작성.

농식품 수출업체가 경험하는 비관세장벽 유형을 업체 특성 및 대응 역량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내수중심형 그룹이 수출주도형 그룹보다 비관세장벽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역량 그룹과 저역량 그룹 간에도 경험하는 주요 비관세장벽 유형에서 차이가 확인되었다<그림 5-28>. 업체 특성별로 보면, 내수중심형 그룹은 A3(식품 안전 관련 라벨링, 27건), O(원산지 규정, 19건), B6(상품 성분·영양 요건, 18건), A2(특정물질 잔류검사, 17건) 등 주요 비관세장벽 유형에서 수출주도형 그룹보다 높은 경험 빈도를 보였다. 이는 내수중심형 업체가 수출 초기 단계에서 다양한 규제에 더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비관세장벽 대응 역량별로는 고역량 그룹은 B6(상품 성분·영양 요건, 15건) 유형에서 저역량 그룹(9건)보다 많은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역량 그룹은 A2(특정물질 잔류검사), A3(식품 안전 관련 라벨링), A4(신규 위생·검역 규정), A9(사전 수입허가 행정절차) 등에서 고역량 그룹보다 더 많은 경험 빈도를 보였다. 이는 저역량 업체가 절차적·행정적 성격의 비관세장벽에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의미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내수중심형·저역량 그룹은 절차적·행정적 성격의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초기 컨설팅 및 행정 애로 해소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반면 수출주도형·고역량 그룹은 A3(식품 안전 관련 라벨링), B6(상품 성분·영양 요건) 등 전문적 규제 대응이 핵심 과제로 나타나 고도화된 규제 대응 지원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그림 5-28〉 업체 특성 및 역량별 비관세장벽 경험 여부



주 1) 비관세장벽 유형별 경험 빈도가 15건 이상인 7개 유형을 기준으로 비교함.

2) 최근 3개년(2022~2024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평균이 50% 초과인 업체는 수출주도형 그룹, 50%

이하인 업체는 내수중심형 그룹으로 구분함.

3) 자체적으로 비관세장벽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응답이 보통 이상(보통,

대체로 우수, 매우 우수)일 경우 고역량 그룹, 취약(다소 취약, 매우 취약)일 경우 저역량 그룹으로 구분함.

자료: 저자 작성.

비관세장벽이 수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업체 특성과 대응 역량별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내수중심형 그룹은 비관세장벽 대응 역량이 낮을수록, 수출주도형 그룹은 대응 역량이 높을수록 비관세장벽이 수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업체 역량별로 보면, 비관세장벽이 수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저역량 그룹에서 3.98점으로 고역량 그룹(3.88점)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한편 업체 특성별(내수중심형 vs. 수출주도형)로는 수출 성과 영향 수준에서 큰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표 5-15>.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비관세장벽 대응 역량이 낮을 때 장벽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는 내수중심형 그룹은 수출 포기 방지를 위한 위기관리 지원, 기초 통관·검역 대응 교육, 실무 중심의 컨설팅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수출주도형 그룹은 대응 역량이 높더라도 장벽의 영향을 크게 체감하기 때문에 선도 수출기업이 직면하는 전문적·고도화된 기술규제 대응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기술적 장벽을 수출 경쟁력 강화 요소로 전환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표 5-15〉 업체 특성 및 역량별 비관세장벽이 수출 성과에 미친 영향

단위: 점/5점

구분	내수중심형	수출주도형	소계
고역량	3.83	4.00	3.88
저역량	4.02	3.82	3.98
소계	3.93	3.93	3.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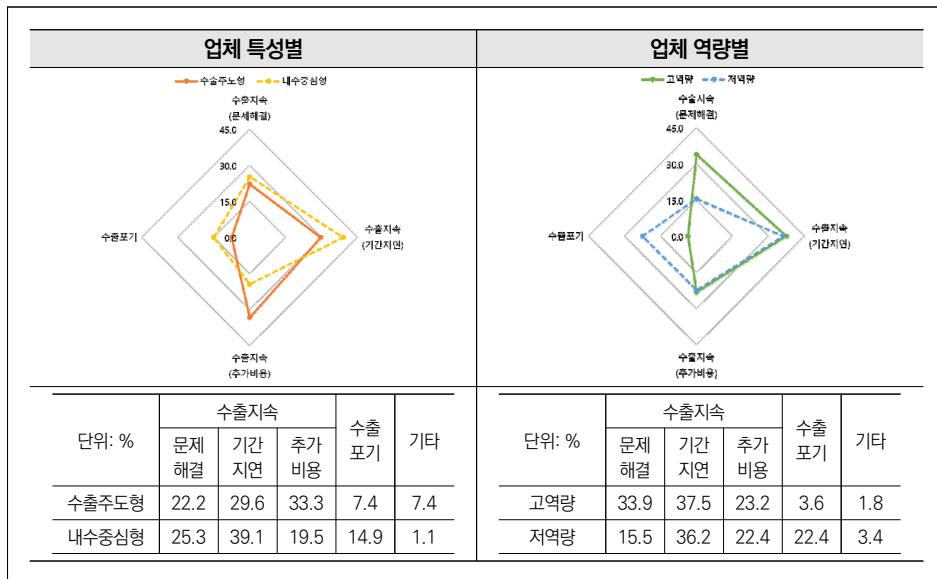
주 1) 최근 3개년(2022~2024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평균이 50% 초과인 업체는 수출주도형 그룹, 50% 이하인 업체는 내수중심형 그룹으로 구분함.

2) 자체적으로 비관세장벽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응답이 보통 이상(보통, 대체로 우수, 매우 우수)일 경우 고역량 그룹, 취약(다소 취약, 매우 취약)일 경우 저역량 그룹으로 구분함.
자료: 저자 작성.

농식품 수출업체의 비관세장벽 대응 결과를 분석한 결과, 업체 특성별로는 비관세장벽 극복 방식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역량별로는 수출 지속 여부에서 큰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5-29>. 업체 특성별로 살펴보면, 내수중심형 그룹은 일정 기간 지연 이후 수출을 지속한 비율이 39.1%로 가장 높았던 반면, 수출주도형 그룹은 추가 비용을 감수하고 수출을 지속한 비율이 33.3%로 가장 높았다. 즉 내수중심형 기업은 시간적 부담을, 수출주도형 기업은 비용 부담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수용하며 비관세장벽을 극복하는 경향을 보였다.

비관세장벽 대응 역량별로 보면, 고역량 그룹의 3.6%만이 대응 실패로 수출을 포기한 반면, 저역량 그룹에서는 22.4%가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수출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응 역량 부족이 수출 포기 확률을 크게 높이는 주요 요인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부 정책은 대응 역량이 낮은 초기·저역량 업체의 구조적 취약성(정보 부족, 전문 인력 부재)을 해소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업체 특성별로 내수중심형 기업은 기간 지연을, 수출주도형 기업은 비용 증가를 감수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관세장벽 극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비용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림 5-29〉 업체 특성 및 역량별 비관세장벽 대응 결과



- 1) 업체 특성 및 역량별 비관세장벽 대응 결과 그림은 기타를 제외하여 나타냄.
 - 2) 최근 3개년(2022~2024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평균이 50% 초과인 업체는 수출주도형 그룹, 50% 이하인 업체는 내수중심형 그룹으로 구분함.
 - 3) 자체적으로 비관세장벽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응답이 보통 이상(보통, 대체로 우수, 매우 우수)일 경우 고역량 그룹, 취약(다소 취약, 매우 취약)일 경우 저역량 그룹으로 구분함.
- 자료: 저자 작성.

수출업체의 특성 및 비관세장벽 대응 역량별로 정부 수출지원사업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저역량-수출주도형’ 그룹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16>. 업체 특성별로 살펴보면, 내수중심형 그룹은 고·저역량 간 만족도 차이가 크지 않았던 반면, 수출주도형 그룹에서는 저역량 그룹의 만족도(4.13점)가 고역량 그룹(3.2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출 의지는 강하지만 역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주도형 저역량 기업에게 정부 지원이 실질적인 돌파구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수출주도형 고역량 기업의 낮은 만족도는 지원의 질적 문제라기보다 현행 지원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반영한다. 이미 높은 역량을 갖춘 기업들은 표준화된 지원 프로그램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개별적·전략적 과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 주도의 획일적 지원방식만으로는 고역량 기업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이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첫째, 저역량 그룹에 대한 ‘기회 제공형’ 지원을 지속하고 강화해야 한다. 특히 기초 역량 강화, 초기 컨설팅, 통관·검역 실무 교육 등 현재 효과를 보이고 있는 지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역량 그룹 대상 ‘전략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들 그룹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민간 전문기관 연계, 기업 간 네트워킹 촉진, 해외 파트너십 매칭 등 시장 기반 솔루션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차별화된 정책 접근은 역량 수준에 따라 상이한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전체 수출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5-16> 업체 특성 및 역량별 정부 수출지원사업 만족도

단위: 점/5점		
구분	내수중심형	수출주도형
고역량	3.74	3.25
저역량	3.60	4.13

주 1) 최근 3개년(2022~2024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평균이 50% 초과인 업체는 수출주도형 그룹, 50% 이하인 업체는 내수중심형 그룹으로 구분함.

2) 자체적으로 비관세장벽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응답이 보통 이상(보통, 대체로 우수, 매우 우수)일 경우 고역량 그룹, 취약(다소 취약, 매우 취약)일 경우 저역량 그룹으로 구분함.
자료: 저자 작성.

정부 수출지원사업 중 ‘현지화 지원사업’의 실질적 도움 정도는 업체 특성과 비관세장벽 대응 역량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7>. 업체 특성 별로 보면, 내수중심형 그룹은 비관세장벽 대응 역량이 높은 그룹에서 현지화 지원사업의 실질적 도움 정도를 4.08점으로 평가하여 대응 역량이 낮은 그룹(3.88 점)보다 지원 효과를 더 크게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출주도형 그룹에서는 비관세장벽 대응 역량이 낮은 기업의 도움 체감도 (4.00점)가 대응 역량이 높은 기업(3.2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출 의지는 높지만 대응 역량이 부족한 수출주도형 기업에게 현지화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보완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5-17〉 업체 특성 및 역량별 ‘현지화 지원사업’의 실질적 도움 정도

구분	내수중심형	수출주도형	단위: 점/5점
고역량	4.08	3.25	
저역량	3.88	4.00	

주 1) 최근 3개년(2022~2024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평균이 50% 초과인 업체는 수출주도형 그룹, 50% 이하인 업체는 내수중심형 그룹으로 구분함.

2) 자체적으로 비관세장벽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응답이 보통 이상(보통, 대체로 우수, 매우 우수)일 경우 고역량 그룹, 취약(다소 취약, 매우 취약)일 경우 저역량 그룹으로 구분함.
자료: 저자 작성.

정부의 비관세장벽 대응 실효성을 업체 특성과 대응 역량별로 구분해 살펴본 결과, ‘저역량–수출주도형’ 그룹이 정부 지원 효과를 가장 크게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고역량–내수중심형’ 그룹이 잇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5-18>. 업체 특성별로 보면, 내수중심형 그룹은 비관세장벽 대응 역량이 높은 기업에서 정부 대응 실효성을 3.15점으로 평가해 대응 역량이 낮은 그룹(3.02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움을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출주도형 그룹은 저역량 기업의 정부 대응 실효성 평가가 3.27점으로, 고역량 기업(3.06점)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저역량–수출주도형’ 그룹의 경우 수출 의지는 높지만 역량 부족으로 인해 수출 진입 단계에서 큰 장벽을 겪고 있으며, 정부 지원이 이들의 초기 애로 해소에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고역량–내수중심형’ 그룹에서는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규정 정보, 절차 안내, 초기 사전준비 지원 등이 특히 유용하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5-18〉 업체 특성 및 역량별 정부 비관세장벽 대응 실효성

구분	내수중심형	수출주도형	단위: 점/5점
고역량	3.15	3.06	
저역량	3.02	3.27	

주 1) 최근 3개년(2022~2024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평균이 50% 초과인 업체는 수출주도형 그룹, 50% 이하인 업체는 내수중심형 그룹으로 구분함.

2) 자체적으로 비관세장벽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응답이 보통 이상(보통, 대체로 우수, 매우 우수)일 경우 고역량 그룹, 취약(다소 취약, 매우 취약)일 경우 저역량 그룹으로 구분함.
자료: 저자 작성.

5. 요약 및 시사점

본 조사에 참여한 농식품 수출업체들은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구조를 보이며, 수출·생산·가공 방식에서도 규모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대규모 업체는 직접 생산·가공 비중이 높고 수출대상국도 평균 20개국 이상으로 다양했으나, 소규모 업체는 위탁 생산·가공 및 제한적 시장 진입에 의존하는 패턴이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대규모 업체일수록 수출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전문 인력도 확보하고 있어 수출 업무의 조직화·전문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출업체의 23.7%가 비관세장벽을 경험했으며, 특히 식품 안전 관련 라벨링(A3), 농약잔류검사(A1), 성분·영양 요건(B6) 등의 규제가 주요 장벽으로 나타났다. 애로사항 인식도 조사에서는 해외 바이어 확보·판로 개척의 어려움, 과도한 물류비 부담, 현지 규정 변경 등이 높게 나타났고, 비관세장벽 관련 항목은 관세장벽 보다 높은 수준의 부담으로 인식되었다. 업체 특성별 애로 차이도 확인되었다. 내수중심형·저역량 그룹에서는 시장 개척, 마케팅, 현지화, 정보 부족 등 초기 단계에서 애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수출주도형·고역량 그룹에서는 라벨링·성분 규제 등 고도화된 기술규제 부담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비관세장벽 발생 시 저역량 그룹의 수출 포기율(22.4%)이 고역량 그룹(3.6%) 대비 훨씬 높아 대응 역량 수준이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수출지원사업 활용률은 높았지만 참여 분야가 특정 사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현지화 지원사업의 실질적 도움은 역량 및 특성에 따라 다르게 체감되었다. 저역량·수출주도형 그룹은 정부 지원 효과를 크게 체감하고 있었으며, 고역량·수출주도형 그룹은 표준형 지원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고도화된 규제 대응 니즈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내수중심형 그룹은 규정 정보 제공과 절차 안내 등 기초적 지원에서 큰 도움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지화 지원 사업 또한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라벨링·수입 등록 지원 등과 실제 지원 항목 간

에 미스매치가 존재하였다. 정보 접근성 부족으로 사업 활용조차 하지 못하는 업체도 적지 않아 홍보 및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첫째, 규모·역량별 맞춤형 비관세장벽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내수중심형·저역량 업체에는 수출 입문 단계의 원스톱 컨설팅, 통관·검역·라밸링 등 기본 행정절차 지원, 필수 정보 제공과 같은 ‘기초 역량 강화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반면 수출주도형·고역량 업체에는 고도화된 기술규제·신규 제도 대응, 글로벌 규범 변화 모니터링, 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 ‘전략·고급형 지원’으로 지원방식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관세장벽 정보 인프라와 네트워크 기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정보수집을 하지 못하는 저역량 업체와 협회 의존도가 높은 영세업체를 위해 정부·공공기관 정보와 수출 관련 협회, 민간 바이어·유통망을 연계한 다층적 정보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바이어 매칭 지원도 단순 거래 알선 수준을 넘어 비관세장벽 정보와 대응 노하우가 교류되는 네트워크로 설계해야 한다. 셋째, 실효성이 검증된 사업의 집중 지원과 신규 규정 대응 강화가 요구된다. 사전 수입허가(A9), 농약잔류검사 절차(A1) 등 효과가 확인된 분야는 예산·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현장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신규 위생·검역 규정(A4) 등 핵심 장벽에 대해서는 전용 대응 프로그램과 선제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소규모·저역량 업체에 대한 구조적 취약성 해소 지원이 필요하다. 수출 전담 조직 부재, 전문 인력 부족, 정보 접근 제한 등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매칭, 상시 컨설팅, 공동 인증·공동 라밸링 지원, 표준화된 매뉴얼 제공 등 ‘외부 역량 보완형 지원 모델’을 구체화해야 한다. 이는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수출 포기 비율을 낮추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다섯째, 지원방식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역량 그룹에는 현행 정부 직접 지원(보조금·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수출 기회 확대와 초기 진입 장벽 완화에 주력하되, 고역량 그룹에는 민간 전문기관·글로벌 컨설팅사 연계, 기업 간 공동 대응 플랫폼, 해외 파트너십 매칭 등 시장 기반 솔루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합하면, 농식품 수출업체의 비관세장벽 문제는 단순히 ‘규제가 많다’는 수준을 넘어 업체 규모·역량·수출 성숙도에 따라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구조적 과제이다. 향후 정책은 일률적 지원에서 벗어나 그룹별 특성을 반영한 정밀한 지원 설계를 통해 비관세장벽을 ‘수출 포기 요인’이 아닌 ‘경쟁 우위 요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제6장

케이-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비관세장벽 대응 방안

케이-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비관세장벽 대응 방안

1. 비관세장벽 대응 기본 방향

세계 농식품 교역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수출통상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케이-푸드(K-Food)의 해외시장 진출을 제약하는 비관세장벽(NTBs)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 WTO 다자통상체제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농업 통상정책은 주로 수입관리 중심의 방어적 정책 기조 속에서 발전해 왔다. 국제무역 협상에서도 순수입국의 입장을 기반으로 한 수세적 대응이 지속되었다. 특히 정부는 수입 농식품의 국내 유입을 제약하고,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집중한 측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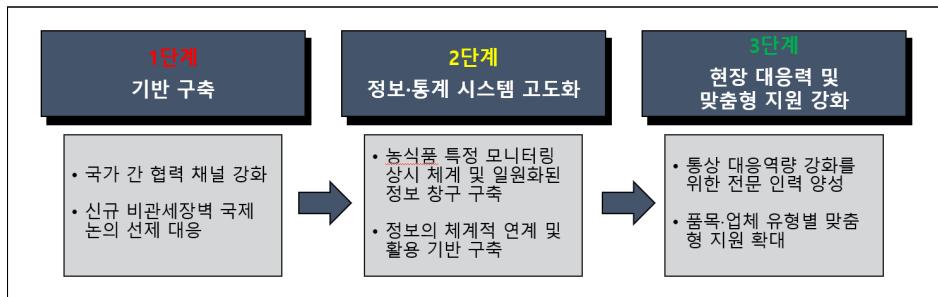
그러나 최근 들어 케이-푸드 및 케이-컬처(K-Culture)를 비롯한 한류 확산으로 해외시장에서 한국 농식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정부도 신시장 개척, 현지 홍보, 한식 진흥 등 수출진흥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현재의 수출 확대 전략은 주로 수요창출형 마케팅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 수출기업이 직면하는 통관절차, 기술규제, 위생·검역 기준, 인증제도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 문제에 대한 대응은 상대적으로 미흡

한 실정이다. 정부와 유관기관이 통관 관련 정보 제공과 행정지원을 일부 수행해 왔지만, 수출상대국 시장의 불합리한 인증절차 또는 차별적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은 아직 체계화되지 못하였다.

최근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수출통상 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농식품 수출통상 로드맵’을 마련하여 수출 위생·검역, 기술장벽, 통관거부, 할랄인증 등 다양한 통상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수출전략을 추진 중이다(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4. 2. 20.). 이에 본 연구는 주요 수출국의 비관세장벽 현황뿐 아니라 케이-푸드 수출업체의 비관세장벽 대응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① 비관세장벽 현황 파악 ⇒ ② 비관세장벽의 무역 영향분석 ⇒ ③ 수출업체 실태조사 ⇒ ④ 비관세장벽 종합 대응 방안 제시의 단계적 구조를 통해 정책 활용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가 통계 분석에 집중했던 한계를 보완하고자 실제 수출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 질적 분석을 병행하여 현장 기반의 실효성 높은 정책 제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하여 본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대응 방안을 제안한다<그림 6-1>. 비관세장벽(NTBs) 대응체계 구축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며, 본 연구는 이를 세 단계의 정책 로드맵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1단계 기반구축 단계에서는 ① 국가 간 협력 채널을 강화하고, ② 신규 비관세장벽에 대한 국제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설정한다. 이어서 2단계 정보·통계 시스템 고도화 단계에서는 ③ 농식품 분야에 특화된(K-Food specific) 상시 모니터링 체계와 일원화된 정보 통합 창구를 운용하고, ④ 유관기관 간 정보를 체계적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마지막으로 3단계 현장 대응력 및 맞춤형 지원 강화 단계에서는 ⑤ 통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⑥ 품목 및 업체 유형별 특성에 대응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은 단계별 대응 방안은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비관세장벽 해소의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림 6-1〉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구축 3단계 정책 로드맵



자료: 저자 작성.

2. 비관세장벽 세부 대응 방안

2.1. 기반구축 단계(1단계)

2.1.1. 국가 간 협력 강화 채널 구축: 양자·다자 협의체를 통한 상호검증, 공동연구 및 규제정보 교류를 강화하여 제도 간 신뢰성 제고

비관세조치(NTMs)는 국제무역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정책 수단을 포괄한다. 그 범위는 SPS·TBT 조치와 같은 기술적 조치에서 쿼터·수입허가·수출제한 조치 등 전통적 무역정책 조치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UNCTAD, 2004). 기술적 조치는 주로 안전성과 품질 기준을 중심으로 하고, 비기술적 조치는 무역 흐름 통제, 국내산 보호, 경제 안전성 유지 등과 관련된다. 이러한 NTMs는 무역비용 증가, 시장접근 제한, 복잡한 절차 준수 요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역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며, 그 복잡성은 특히 중·소규모 수출업체의 규정 이해와 이행을 어렵게 한다.

UNCTAD & World Bank(2018)는 NTMs로 인한 무역비용이 관세의 3~4배에 달한다고 분석하였다. UNCTAD(2025)는 국경 비관세조치 비용을 50% 감축하는

경우, 글로벌 후생은 3,300억 달러, 무역 규모는 3,000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만, NTMs는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보호와 환경 보호 등 정당한 정책 목적을 가지고 있어 단순 폐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조치는 아니다. 이에 따라 투명성 제고, 국제협력, 절차 간소화 등 모범 규제관행을 확대하고 무역 흐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가 간 NTMs의 무역비용을 줄이는 국가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1994 GATT 제11조(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는 관세·조세 또는 기타 과징금 이외에 수출입 금지, 쿼터, 수출입 허가 등과 같은 WTO 회원국의 무역제한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반면, 국내 생산안정, 일시적 품귀 상황 대응, 국제상품협정 이행 등 특정 조건에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1994 GATT 제20조(일반적 예외)에 따라 공중도덕 보호, 인간·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보호, 고갈되는 천연자원 보존 등 정당한 공익 목적을 위한 무역제한조치는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자의적이고 부당한 차별 수단으로 작용하거나 국제무역의 흐름을 과도하게 제약해서는 안 된다.

무역 관련 규정과 조치⁴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유관기관, 무역업자, 이해당사자가 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명확하게 공표해야 하며, 각국은 수출입 및 통관절차 등과 관련된 질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질의처(Enquiry Point)⁴¹⁾를 설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는 수출입업자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고 무역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 제도이다.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업체가 해외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문제에 직면할 경

40) ① 수입·수출 및 통과 절차 그리고 요구 형식 및 서류 ②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관세 및 조세의 실행 세율 ③ 수입·수출 또는 통과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정부 기관에 의해 또는 정부 기관을 위해 부과되는 수수료 및 부과금 ④ 관세 목적의 상품 분류 또는 평가 규칙 ⑤ 원산지 규정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규정 및 행정적 결정 ⑥ 수입·수출 또는 통과 제한 또는 금지 ⑦ 수입·수출 또는 통과 형식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 ⑧ 불복청구 절차 ⑨ 수입·수출 또는 통과 관련한 국가 또는 국가들과의 합의 또는 그 부분 ⑩ 관세 쿼터 시행 관련 절차(관세청, 검색일: 2025. 10. 10.).

41) 우리나라는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하여 분야별로 9개의 질의처를 운영하고 있다(WTO, 검색일: 2025. 9. 23., Contact Information of the TFA Enquiry Points.).

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지 정책당국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수출상대국의 질의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먼저 정부-수출업체 간 일원화된 협의 창구를 구축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이 선행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국가 간 협력 채널의 체계적 구축은 우리 농식품의 안정적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는 핵심 전략으로 기능할 것이다.

2.1.2. 신규 비관세장벽 국제 논의 선제 대응: 기후·환경·디지털 전환 관련 신규 비관세장벽에 대한 국제표준 논의에 적극 참여 및 대응체계 마련

우리나라 케이-푸드의 주요 수출상대국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표면적으로 시장 개방을 기반으로 한 자유무역주의를 지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주의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 사회, 노동, 기업 지배구조 등 비전통적 통상 분야에서 새로운 통상 규범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규범화는 우리나라 케이-푸드 수출업체에 추가적인 부담과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한 무역조치가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장벽으로 부상하고 있다. EU는 그린딜(Green Deal)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실사지침(CSDDD) 등 환경·ESG 정책을 통상 규범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규범 변화는 농식품 분야에서도 환경·지속가능성 기준 강화, 생산공정 내 탄소배출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요구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중·소규모 농식품 수출업체에는 상당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하나 실제로는 수입 규제나 생산제약 효과를 발생시키는 잠재적 위험도 존재한다.

기존 WTO 체제에서는 위생검역(SPS)이나 기술장벽(TBT) 등 과학적·위험 예방 목적의 무역제한조치만이 명확하게 인정되었다. 그러나 환경 목적의 무역조치는 국제규범상 기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향후 국제통상 규범의 새로운 쟁

점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 논의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부 및 유관기관은 기후·환경·디지털 전환 등 신규 비관세장벽 관련 국제표준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규정 변화가 국내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중소 농식품 기업들도 자체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제규범 변화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와 업체 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은 향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농식품의 지속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2.2. 정보·통계 시스템 고도화 단계(2단계)

2.2.1. 농식품 특화된 상시 모니터링 체계 및 일원화된 정보 통합 창구 운용: 네트워크형 상시 모니터링 체계 및 다종적 비관세장벽 정보 플랫폼 구축

농식품 수출업체가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주요 경로는 해외 바이어나 현지 유통업체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상당수 수출업체가 자체적인 정보 수집 역량을 갖추기보다 제3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 수출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규모가 큰 대기업은 정부나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영세 중·소업체는 수출 관련 협회나 수출업체 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정보를 얻는 경향이 강하였다. 즉 규모가 큰 수출업체는 내부 역량이나 대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공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수출시장 진입을 해결하지만, 영세한 중·소업체는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정보수집 역량이 낮은 영세 중·소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유관기관의 공공 정보와 수출 관련 협회, 민간 바이어·유통망이 보유한 시장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다종적 정보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전반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

더욱이 제3장의 비관세조치 유형별 분포 현황 분석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비관세조치는 농식품 수입 품목의 95~100%에 적용되는 상시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사건 대응 중심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상시 모니터링 기반의 사전 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주요 수출시장의 규제 변화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분석하고, 고위험 품목 및 시장에 대해 선제적 가이드라인과 대응 매뉴얼을 제공하는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 더불어 수출업체와 바이어·유통망 매칭을 넘어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와 대응 경험이 공유되는 네트워크형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WTO, UNCTAD, OECD)에서 제공하는 비관세장벽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여 농식품에 특화된 국가별·품목별 비관세장벽 현황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 통합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수출상대국의 위생검역(SPS), 기술규제(TBT), 환경규제 등이 변경될 경우 농식품 수출업체에 신속히 통지하는 즉시 알림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농식품 수출업체의 대응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아울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림축산식품부(MAFRA)가 공동으로 해외 농식품 비관세장벽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농식품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수집·분석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신고 채널의 기능을 강화하고, 수출업체의 문제를 정책 반영으로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2.2. 정보의 체계적 연계·활용 기반 구축: KITA·KATI·MFDS·QIA 등 기관별 데이터를 상호 연계한 비관세장벽 대응 통합 플랫폼 구축

해외 비관세장벽 정보는 복잡성이 높고 변동 속도가 빨라 중소규모 농식품 수출업체가 규제 변화를 적시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 현재 여러 기관이 다양한 정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는 분산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단순 나열 형태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기업이 실무적으로 활용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표 6-1>. 특히 국가별 규제정보가 기관별로 흩어져 있고 실시간 업데이트 체계가 부족해 수출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공되는 정보의 전문성 수준이 높아 일반 이용자뿐 아니라 전문가 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따라서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정보의 실제 활용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 연계·활용 기반 구축이 요구된다.

<표 6-1> 비관세장벽 정보 제공 플랫폼 특징

구분	강점	한계/유의
KITA TradeNAVI (한국무역협회)	통관거부사례·비관세조치·TBT·수입요건을 HS·국가별 일괄 조회	일부 세부 원문은 각국 규정/기관 링크 재확인 필요(한국무역협회)
KATI (농식품수출정보)	농식품첨가물·오염물질·비관세장벽·통관문제사례·동식물수출검역 실무형 자료	일부 데이터 출처(무역협회 등) 연계 → 원출처 최신본 교차점검 권장 (aT 수출 종합 지원 시스템)
MFDS CES Food DataBase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별 통관·표시·기준·규격 구조화 국별 통관절차 SPS/TBT 통보 요약(주간)	식품 외 품목(기기·용기 등)은 범위 외 가능
KATS KnowTBT (국가기술표준원)	TBT 통보/미통보 규제·해외인증·대응사례·상담 전용	일부 서비스 회원 필요, 농식품에 한정되지 않음(범용)
QIA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축산물 수출검역 요건 DB (부기 문구 예시 포함)	품목·국가별 다양성 때문에 수입자 확인 병행 권고
Kotra Dream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라벨링·인증 최신이슈(무역관 현장 리포트) 수출승인정보·통관·수출결재	기사형 콘텐츠 → 원 규정 링크/근거 확인 필수

자료: 저자 작성.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 주요 공공·민간 포털을 상호 연계하여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통합 정보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간 바이어 정보, 협회 제공 자료, 정부의 공식 규제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연결해 흐름 기반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농식품 수출기업이 비관세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경보 - 규정 확인 - 검증 및 증명 - 사례분석 및 사후 대응으로 이어지는 4단계 정보 활용 구조를 정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표 6-2>.

〈표 6-2〉 비관세장벽 정보의 단계별 대응

단계	핵심 목적	주요 포털	주요 활용 포인트
① 사전경보 (상시 모니터링)	해외의 신규 규제·통보 파악	• KATS KnowTBT • MFDS CES Food DB	WTO TBT·SPS 통보 모니터링 → 상시 모니터링 기반 예고 규제 리스트 확보
② 규정 확인 (세부요건검토)	통보된 규제의 실제 내용·요건 확인	• MFDS CES Food DB • KOTRA Dream	국가별 통관절차·표시기준·첨가물 기준, 인증 절차 해설
③ 검증 및 증명 (수출절차/문서화)	실제 수출품 검역·위생증명 확보	• APQA QIA	수출대상국 검역·위생증명, 수출시설 등록요건
④ 사례분석 및 사후 대응	유사 사례분석·자체 대응 가이드	• KITA TradeNAVI • aT KATI	통관거부사례·비관세장벽 사례를 분석해 예방대책 수립

자료: 저자 작성.

우선 사전경보 단계에서는 국가기술표준원의 KnowTBT 포털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CES Food DB를 활용해 주요 수출국이 WTO에 통보한 TBT 및 SPS 조치를 실시간 모니터링함으로써 초기 규제 변화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 기업은 품목별 키워드를 기반으로 신규 규제나 기술표준 개정 예고를 탐지하고, 시행 예정 일과 의견 제출기한을 관리하여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둘째, 규정 확인 단계에서는 CES Food DB를 통해 통관절차, 기준·구격, 표시기준 등 국가별 식품 규제를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Dream)에서 제공하는 인증·표준 해설 자료와 연계해 실제 적용 요건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또한 aT의 KATI 포털을 활용하여 식품첨가물, 유해물질 기준 및 통관 유의사항 등을 검토함으로써 제품 성분 구성과 라벨링 설계 과정에서부터 현지 규정 준수를 확보할 수 있다.

셋째, 검증 및 증명 단계에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QIA)가 제공하는 수출검역 요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축산물, 식물 등 품목별 수출검역 및 위생증명 요건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위생증명서, 검역증명서 등 필요한 증명서를 사전에 준비하고 검역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지연이나 반송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마지막 사례분석 및 사후 대응 단계에서는 한국무역협회의 TradeNAVI와 KATI에 축적된 통관거부 사례와 비관세장벽 사례를 분석하여 국가별·HS코드별 거부 사유를 체계적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업 내부의 품질 관리 및 라벨 검증 절차를 개선하고 향후 동일 유형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와 같은 단계별 연계체계를 구축할 경우, 수출업체는 단편적인 정보수집을 넘어 정책 및 규제 사전예고, 규정 확인, 수출문서 확보, 사례분석, 사후 대응으로 이어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KnowTBT와 CES Food DB 등 정부의 공식 통보·규제정보와 KITA, aT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현장 중심의 사례 데이터를 결합하면 수출업체와 정책당국이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농식품 분야에 특화된 비관세장벽 대응 통합정보망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연계 기반은 개별 기업의 통관 리스크 감소뿐 아니라 정부의 수출지원정책 수립 및 국제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 자료 축적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2.3. 현장 대응력 및 맞춤형 지원 강화(3단계)

2.3.1. 통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비관세장벽 분석, 위생·검역·통관·표시 등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를 양성하고, 민관 합동 농업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해서는 위생·검역·통관·표시 기준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농업 분야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제 식품 안전기준, 기술규제, 환경 및 탄소 규제 등 통상 규범이 다층적으로 복잡해지면서 단순한 무역실무 지식만으로는 농식품 수출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다양

한 수출대상국의 정책 변화와 법규 구조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이 필수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농식품 수출은 단순한 상품 거래를 넘어 규제 대응, 표준 관리, 인증취득, 브랜드 전략 구축 등 복합적 요소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융·복합형 수출 전문 인력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식품 수출업체는 중소 및 영세 규모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과 조직 역량이 제한적이며 수출 담당자가 무역, 물류, 인증, 마케팅 등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해외시장 조사, 인증취득, 해외 바이어 관리 등 주요 수출 활동은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를 지원할 교육·훈련 체계가 부족하여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형 전문 인력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비관세장벽 문제로 수출을 포기한 기업 상당수는 독립된 수출 전담부서를 운영하지 못하고 영업부서가 수출 기능을 병행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던 반면, 수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수출 지속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문 인력 확보 여부가 수출 유지·확대의 핵심 결정요인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특히 소규모 영세업체의 경우 비용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수출 전담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에서는 중·소규모 수출업체의 비관세장벽 대응을 지원하는 비관세장벽(NTBs) 대응 컨설팅 파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농식품 분야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기업이 직면한 기술·통관·표시·마케팅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진단하고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수출대응 역량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문 인력 양성과 인력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농식품 수출기업은 비관세장벽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수출 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진출 확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2.3.2. 품목·업체 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품목 및 기업 특성 맞춤형 컨설팅 지원 강화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한 품목 및 업체 유형별 맞춤형 지원체계는 안정적인 해외시장 개척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수출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지원은 단기적인 수출 성과를 넘어 기업의 장기적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실제 수출업체 대상 설문조사 분석 결과, 수출 업체 규모에 따라 경험하는 비관세장벽의 유형이 뚜렷하게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종업원 5명 미만의 영세 수출업체는 주로 농약잔류검사, 식품 안전 관련 라벨링·표시·포장 기준, 원산지 규정 등 전통적인 형태의 비관세장벽을 경험하였다. 반면 종업원 300명 이상의 대규모 업체는 신규 위생검역 규정, 성분 및 영양 기준, 특정물질의 잔류 허용 또는 사용 금지 등 보다 고도화된 규제형 비관세장벽에 직면하였다.

이는 수출업체 규모에 따라 비관세장벽의 노출 유형과 대응 방식이 근본적으로 상이함을 보여준다. 중소·영세업체는 기존 전통적 규제에 대한 정보 접근성과 대응 역량이 부족한 데 비해, 대규모 업체는 새로운 시장 진입 과정에서 복합적이고 고난도 규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정보 획득 경로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대규모 업체는 정부 및 유관기관의 정보 제공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반면 영세업체는 수출 관련 협회 또는 수출업체 간 네트워크 등 비공식적 채널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할 때,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정책은 수출업체 규모와 역량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중견 이상 수출업체는 자체 역량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규제 대응 및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나, 중소·영세업체는 정보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규제 변화에 대한 이해와 실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영세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정보 제공 체계를 마련하고, 해외 규제 변화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정보 전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나아가 영세업체에는 현장 중심의 컨설팅, 인증 획득 지원, 규제 재정비

컨설팅과 같은 실무형 지원을 확대하고, 대규모 업체에는 신규 규제 대응 전략, 글로벌 시장 진입 전략 등 고도화된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품목 특성을 고려한 지원의 필요성도 확인된다. HS 2단위 기준 분석 결과, HS16~22류에 해당하는 가공식품은 SPS(동식물 위생검역)와 TBT(무역기술장벽) 조치가 빈번히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HS08류 신선 농산물은 SPS 중심의 규제를 주로 경험하는 반면, HS19~21류 가공식품은 라벨링, 성분 기준 등 기술규제형 비관세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는 품목의 가공단계 및 특성에 따라 비관세장벽의 양상이 달라짐을 의미하며, 품목별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규제 대응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농식품 수출기업의 비관세장벽 대응 역량 제고는 단순히 ‘규제가 많다’는 차원을 넘어 기업 규모·역량·수출 발달 단계별로 구조적인 다른 문제가 나타나는 복합적 과제이다. 향후 정책은 일률적인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그룹별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비관세장벽이 수출 포기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력 확보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2.4. 기타 지원 방안⁴²⁾

해외 비관세장벽(NTBs)과 관련된 규정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빈번하게 변경되고 있으며, 예기치 못한 통관거부 사례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수출업체가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는 전담 핫라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출업체

42) 기타 지원 방안은 케이-푸드 수출업체 대상 사전 면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함.

가 규제 변화에 대응하는 초기 단계를 지원하고, 불필요한 지연이나 반송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불합리한 해외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협의와 제도 개선 요청이 병행되어야 한다. 주요 수출상대국과의 협력 채널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케이-푸드 수출업체가 직면한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통상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최근 푸드테크 산업의 성장과 함께 건강기능식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별 등록 규정과 절차가 상이하고 새로운 기능성 원료가 도입되면서 규제 체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차원에서 국가별 등록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종합 가이드라인을 구축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주요 수출상대국의 규제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체계적인 정보관리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수출업체의 행정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신규 시장 진입 장벽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규제 정보를 단편적으로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기업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비관세장벽 대응을 포함한 케이-푸드 수출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과 심층분석을 위한 농식품 수출업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기업의 특성, 주요 수출 품목과 시장 정보, 수출 애로사항, 정책 수요 등을 구조적으로 연계하여 기업 단위의 수출 활동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를 행정통계 및 무역통계와 연계·통합함으로써 보다 정밀한 정책 타겟팅과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에는 품목별 HS 코드 기준 수출 실적을 보유한 업체를 중심으로 하되, 향후 수출을 준비 중이거나 시범적으로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잠재적 수출업체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잠재-진입-성장-확장 등 수출 단계별 업체군을 포괄함으로써 정책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UNCTAD MAST 비관세조치 세부 분류체계

1. UNCTAD-MAST 비관세조치 분류체계 요약

국제 무역 시스템이 복잡해짐에 따라 비관세조치 분류체계 코드는 2012년 235개에서 2019년 539개로 증가하였다. 기존 대비 새로 추가된 코드는 310개, 삭제된 코드는 6개이며, L(보조금), M(정부조달제한), O(원산지규정), N(지식재산권) 분야 순으로 분류체계의 세분화가 크게 이루어졌다.

A(동식물위생검역조치: SPS)와 B(무역기술장벽: TBT) 분야 코드는 2019년 기준 각각 43개와 30개로 기존 대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이는 SPS 및 TBT 분야의 규제 체계가 상대적으로 안정화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P(수출 관련 조치)의 경우, 기존 코드의 70%(14개)가 수정되고 18개 코드가 신규로 추가되면서 내용적 변화와 규제 범위의 확대가 동시에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는 수출 관련 조치들이 더욱 정교화·세분화 되었음을 보여주며, 기존 코드의 수정은 수출규제 환경의 질적 변화를 시사한다.

〈부표 1〉 UNCTAD-MAST 비관세조치 분류체계 요약

조치별 유형	2012ver.	2019ver.	신규	삭제
A.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	43	43(4)	-	-
B. 무역기술장벽(TBT)	31	30(3)	-	1
C. 선적전검사 및 기타 형식	6	6	-	-
D. 조건부무역보호조치	19	19	-	-
E. 허가, 할당, 금지 및 수량제한조치(SPS, TBT 외)	48	54(1)	7	1
F. 가격통제조치(부가세 및 부가요금 포함)	29	29	-	-

(계속)

조치별 유형	2012ver.	2019ver.	신규	삭제
G. 금융조치	18	18	-	-
H. 경쟁 관련 조치	9	9	-	-
I. 무역 관련 투자조치	4	4	-	-
J. 유통제한	3	6(2)	3	-
K. 판매후서비스제한	1	4	3	-
L. 보조금 및 기타 지원	1	108	107	-
M. 정부조달제한	1	63	62	-
N. 지식재산권	1	55	54	-
O. 원산자규정	1	57	56	-
P. 수출 관련 조치	20	34(14)	18	4
총합계	235	539(24)	310	6

주: 2019년 코드에서 폐호 안은 변경된 코드 개수를 의미함.

자료: 조문희 외(2017), UNCTAD(2019)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UNCTAD-MAST 비관세조치 분류체계

유형별 조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A. 동식물위생 검역조치 (SPS)	A1. SPS 수입 금지 및 제한	A11. SPS 수입금지		
		A12. 특정 국가 및 지역의 특정 품목 수입금지		
		A13. 2개 이상의 SPS 결합 조치		
		A14. 특정 수입품목 승인요건		
		A15. 수입자 허가요건		
		A19. 기타 SPS 수입의 금지 및 제한 조치		
	A2. 임류 허용 한도 및 사용 제한	A21. (미생물학적이 아닌) 특정물질의 임류 허용		
		A22. 식품, 사료 및 접촉물질의 특정물질 사용 제한		
		A31. 라벨링 요건		
	A3. 라벨링, 표시, 포장 요건	A32. 마킹 요건		
		A33. 패키징 요건		
		A41. 최종 제품의 미생물학 기준		
	A4. 위생 요건	A42. 생산과정 위생요건		
		A49. 기타 위생 요건		

(계속)

유형별 조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A5. 최종제품의 동식물 해충과 질병 유발 유기체 제거를 위한 처리 또는 해당 처리의 금지	A51. 저온/열처리 A52. 방사선 조사 A53. 훈증 처리 A59. 기타 최종 제품 내 동식물 해충 및 질병 유발 유기체를 제거하기 위한 처리 또는 해당 처리의 금지		
	A6. 기타 생산 및 생산 사후 공정 요건	A61. 식물 생육 공정 A62. 동물사육 혹은 포획 과정 A63. 식품과 사료 공정 A64. 보관과 운송 조건 A69. 기타 생산과 생산 후 절차 요건		
	A8. SPS 관련 적합성 평가	A81. 제품등록 요건 A82. 시험 요건 A83. 인증 요건 A84. 검사 요건 A85. 이력관리 요건	A851. 재료와 부품의 원산지 A852. 생산절차 이력관리 A853. 인도 후 제품의 유통과 장소 A859. 기타 생산이력관리 요건	
	A9. 기타 SPS 조치	A86. 격리 요건 A89. 기타 SPS 관련 적합성 평가		
B. 무역기술 장벽 (TBT)	B1. TBT와 관련된 수입 허가/라이선스	B14. 특정 제품 수입의 허가 요건 B15. 수입업자 허가요건 B19. 기타 무역 기술장벽과 관련된 수입 허가 및 라이선스		
	B2. 잔류 허용 한도 및 사용 제한	B21. 특정물질 오염 또는 잔류 허용 한도 B22. 특정물질의 제한적 사용		
	B3. 라벨링, 표시, 포장 요건	B31. 라벨링 요건 B32. 마킹 요건 B33. 패키징 요건		
	B4. 생산 및 생산 후 요건	B41. 생산공정 규정 B42. 운송과 보관 규정 B49. 기타 생산 및 생산 후 요건		
	B6. 제품 ID 요건			
	B7. 제품 품질, 안전성 또는 성능에 대한 요건			

(계속)

유형별 조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B8. TBT 적합성 평가	B81. 제품등록/승인 요건 B82. 시험 요건 B83. 인증 요건 B84. 검사 요건		
		B85. 생산이력 관리 요건	B851. 재료와 부품의 원산지 B852. 생산절차 이력관리 B853. 인도 후 제품의 유통과 장소 B859. 기타 생산이력관리 요건	
			B89. 기타 TBT 관련 적합성 평가	
	B9. 기타 TBT 조치			
C. 선적전검사 및 기타 형식	C1. 선적 전 검사 C2. 직송 요건 C3. 세관통과항구의 지정 C4. 수입 모니터링과 감시요건 C9. 기타 형식			
D. 조건부 무역보호 조치	D1. 반덤핑 조치 D2. 상계관세조치 D3. 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	D11. 반덤핑 조사 D12. 반덤핑 관세 D13. 덤프방지 관세 부과 회피를 위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D21. 상계관세 조사 D22. 상계관세 D23. 가격인상약속(상계관세) D31. 다자간 세이프가드 D32.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 D39. 기타 세이프가드	D311. 세이프가드 조사 D312. 세이프가드 관세 D313. 세이프가드(수량 제한) D314. 기타 세이프가드 D321. 물량기준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 D322. 가격기준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	
E. 허가, 할당, 금지 및 수량제한 조치(SPS, TBT 외)	E1. 수입 허가 절차(SPS, TBT 외)	E11. 경제적 사유의 허가 E12. 비경제적 사유의 허가	E111. 재량적 수입 허가 절차 E112. 특정 용도 허가 E113. 현지 생산 관련 허가 E119. 기타 허가 E121. 종교, 도덕, 문화적 사유의 허가 E122. 정책적사유의 허가 E123. 환경보호 사유의 허가 E124. 보안상 사유의 허가 E125. 공공보건 사유의 허가 E129. 기타 허가	

(계속)

유형별 조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E. 가격통제 조치 (부가세 및 과징금 포함)	E2. 할당(쿼터)	E21. 영구적 쿼터	E211. 글로벌 할당 E212. 국별 할당	
		E22. 계절 쿼터	E221. 글로벌 할당 E222. 국별 할당	
		E23. 일시적 쿼터	E231. 글로벌 할당 E232. 국별 할당	
	E3. 금지 조치 (SPS, TBT 외)	E31. 경제적 사유의 금지	E311. 완전 수입 금지 E312. 계절 수입 금지 E313. 일시적 금지 E314. 대량 구매 금지 E316. 사용, 수리 또는 재제조 제품의 금지	
			E319. 기타 경제적 사유의 금지	
			E321. 종교, 도덕, 문화적 사유의 금지 E322. 정책적 사유의 금지(엠바고)	
			E323. 환경보호 사유의 금지 E324. 보안상 사유의 금지	
			E325. 공공보건 이유의 금지 E329. 기타 비경제적 이유의 금지	
		E51. 수출 자율 규제	E511. 쿼터 계약 E512. 협의 계약 E513. 행정 협력 계약	
			E59. 기타 수출 제약 조치	
			E61. WTO TRQ	E611. 글로벌 할당 E612. 국별 할당
	E6. 저율관세할당(TRQ)	E62. 기타 무역협정의 TRQ	E621. 글로벌 할당 E622. 국별 할당	
		E69. 기타 TRQ		
		E9. 기타 수량제한조치		
F. 관세 평가 (부가세 및 과징금 포함)	F1. 관세평가 행정조치	F11. 최저 수입 가격 F12. 참고 가격 F19. 기타 행정조치		
		F2. 수출 가격 자율 규제		
		F3. 가변 과징금	F31. 가변 부과금 F32. 가변 요소(종가세 포함) F39. 기타 가변 부과금	
	F4. 관세 할증금			

(계속)

유형별 조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F5. 계절 관세			
		F61. 세관 검사, 절차, 서비스 수수료		
		F62. 제품 취급 또는 보관 수수료		
		F63. 외환거래세		
	F6. 정부서비스 관련 부가세 및 부과금	F64. 인지세		
		F65. 수입면허 요금		
		F66. 영사사증료		
		F67. 통계세		
		F68. 운송 시설에 대한 세금		
		F69. 기타 부가금		
	F7. 수입 관련 내국세 및 부과금	F71. 소비세		
		F72. 특별소비세		
		F73. 민감품목 세금 및 부과금		
		F79. 기타 수입 관련 국내세 및 부과금		
	F8. 감면 세관 평가			
	F9. 기타 가격통제조치			
G. 금융조치	G1. 사전 지불 요건	G11. 사전 수입 보증금		
		G12. 현금 예수금 요건		
		G13. 관세 선급금		
		G14. 민감품목에 대한 환불 가능 보증금		
		G19. 기타 사전 지불 요건		
	G2. 복수 환율 제도			
	G3. 공식 외환 할당 규정	G31. 외환 할당 금지		
		G32. 은행 인증		
		G33. 비공식 외환 관련 허가	G331. 외국환 지불 규정	
			G332. 수입국환 사용 규정	
			G339. 기타 비공식 외환 관련 허가	
	G4. 수입 지불에 관한 규정	G39. 기타 공식 외환 할당 규제		
	G9. 기타 금융조치			
H. 경쟁 관련 조치	H1. 국영무역기업; 선택적 수입 경로	H11. 국영무역기업 관련 수입조치		
		H19. 기타 선택적 수입 경로		
	H2. 국영 서비스 사용 의무	H21. 국영 보험 의무		
		H22. 국영 운송 의무		
		H29. 기타 국영 서비스 의무		
	H9. 기타 경쟁 관련 조치			

(계속)

유형별 조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I. 무역 관련 투자조치	I1. 현지 제조 부품 사용 요건				
	I2. 무역 균형조치				
	I9. 기타 무역 관련 투자조치				
J. 유통제한	J1. 판매 제한				
	J2. 유통채널 제한	J21. 국내유통업체 접근 제한			
		J22. 자체유통채널 구축 제한			
K. 판매후 서비스제한	J9. 기타 유통채널 제한				
	K1. 국내판매후서비스 채널 접근 제한				
	K2. 자체판매후서비스 채널 구축 제한				
L. 보조금 및 기타지원	K9. 기타 판매후서비스 제한				
	L1. 정부보조지원	L11. 보조금 (가격지원과 별개)	L111. 고정금액 보조		
			L112. 생산 또는 판매 연동		
			L113. 기업 소득 연동		
	L12. 신용보조		L114. 원재료 및 중간재 투입 연동		
			L115. 고용 연동		
			L116. 토지 또는 천연자원 사용 연동		
			L117. 자본 투입 연동		
			L118. 수출 연동		
			L119. 기타 또는 복합요인 연동		
	L13. 직접자본 투입		L121. 고정금액 보조		
			L122. 생산 또는 판매 연동		
			L123. 기업 소득 연동		
			L124. 원재료 및 중간재 투입 연동		
			L125. 고용 연동		
			L126. 토지 또는 천연자원 사용 연동		
			L127. 자본 투입 연동		
			L128. 수출 연동		
			L129. 기타 또는 복합요인 연동		

(계속)

유형별 조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L14. 정부구매	L141. 고정금액 보조 L142. 생산 또는 판매 연동 L143. 기업 소득 연동 L144. 원재료 및 중간재 투입 연동 L145. 고용 연동 L146. 토지 또는 천연자원 사용 연동 L147. 자본 투입 연동 L148. 수출 연동 L149. 기타 또는 복합요인 연동 L15. 가격 보조 또는 가격연동직불제	
	L2. 가격 규제			
	L3. 정부로의 위험 이전	L31. 정부보증 L32. 정책보험		
L4. 정부수입포기		L41. 세금 및 관세 면제	L411. 고정금액 보조 L412. 생산 또는 판매 연동 L413. 기업 소득 연동 L414. 원재료 및 중간재 투입 연동 L415. 고용 연동 L416. 토지 또는 천연자원 사용 연동 L417. 자본 투입 연동 L418. 수출 연동 L419. 기타 또는 복합요인 연동	
		L42. 기타 정부수입 포기	L421. 고정금액 보조 L422. 생산 또는 판매 연동 L423. 기업 소득 연동 L424. 원재료 및 중간재 투입 연동 L425. 고용 연동 L426. 토지 또는 천연자원 사용 연동 L427. 자본 투입 연동 L428. 수출 연동 L429. 기타 또는 복합요인 연동	
L5. 현물이전		L51. 제품 제공	L511. 고정금액 보조 L512. 생산 또는 판매 연동 L513. 기업 소득 연동 L514. 원재료 및 중간재 투입 연동 L515. 고용 연동 L516. 토지 또는 천연자원 사용 연동 L517. 자본 투입 연동 L518. 수출 연동 L519. 기타 또는 복합요인 연동	

(계속)

유형별 조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L52. 서비스 제공	L521. 고정금액 보조 L522. 생산 또는 판매 연동 L523. 기업 소득 연동 L524. 원재료 및 중간재 투입 연동 L525. 고용 연동 L526. 토지 또는 천연자원 사용 연동 L527. 자본 투입 연동 L528. 수출 연동 L529. 기타 또는 복합요인 연동	
		L53. 기타 (토지, 자원, 인프라) 제공	L531. 고정금액 보조 L532. 생산 또는 판매 연동 L533. 기업 소득 연동 L534. 원재료 및 중간재 투입 연동 L535. 고용 연동 L536. 토지 또는 천연자원 사용 연동 L537. 자본 투입 연동 L538. 수출 연동 L539. 기타 또는 복합요인 연동	
	L6. 소비자원		L61. 보조금 및 소득지원 L62. 신용보조	
	L7. 소비자 대상 정부수입포기		L71. 세금 및 관세 면제	
	L8. 정부의 제품 구매/제공		L81. 제품제공 L82. 제품구매	
	L9. 기타지원			
M. 정부조달 제한		M1. 시장접근 제한	M11. 국내공급자로 제한 M12. 지역공급자로 제한 M13. 조건부 접근 M14. 비경제적 사유 예외 M19. 기타 시장접근 제한	
			M21. 국내공급자 가격우대 M22. 지역공급자 가격우대 M23. 조건부 가격우대 M29. 기타 국내 가격우대	
			M31. 부품, 투입재 및 데이터 국내 조달 M32. 국내 서비스 이용 M33. 현지 인력 채용 M34. 현지 기업 하청 M39. 기타 상쇄조치	

(계속)

유형별 조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M4. 추가제한 조치	M41. 외국기업 세금 부과 M43. 외국기업 보조금/세금 혜택 제한 M44. 제한 기간 특정 M49. 기타 추가제한 조치		
	M5. 조달절차 관련 조치	M51. 조달 방식 설계 M52. 공급업체 등록 시스템 M53. 사전선정업체 리스트 M54. 직접 및 제한적 입찰 M55. 선별적 입찰 M56. 보증금 및 보증서 M561. 입찰 보증금 M562. 이행 보증금 M57. 제한 기간 특정 M59. 기타 조달절차 관련 조치		
	M6. 자격 요건 기준	M61. 인증 또는 면허 기준 M62. 특정그룹(중소기업 등) 우대 M63. 과거 실적 요구사항 M64. 사전 경험 요구사항 M69. 기타 자격 요건 기준		
	M7. 평가 기준	M71. 기술적 계약 조건 M72. 재정적 계약 조건 M73. 특정그룹(중소기업 등) 재입찰 M79. 기타 평가 기준		
	M8. 심사 및 이의 제기	M81. 입찰 및 낙찰에 대한 이의 제기 M82. 이의 제기 기관 선택 M83. 이의 제기 기간 M84. 이의 제기 비용 M85. 입찰 절차 중단 M86. 제재 및 구제 조치 M89. 기타 심사 및 이의 제기		
	M9. 투명성 및 정보 접근 조치	M91. 접근 가능한 공식 출판물에 정보 공개 M92. 전자조달 시스템 접근 가능 보장 M921. 입찰공고 온라인 공개 M922. 입찰과정 온라인 처리 M923. 낙찰결과 온라인 발표 M924. 온라인을 통한 직접 커뮤니케이션 M925. 전자서명 시스템 M926. 기타 전자조달시스템 접근 M99. 기타 투명성 및 정보 접근 조치		

(계속)

유형별 조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N. 지식재산권	N1. 적격성 및 유지관리	N11. 특허		
		N12. 지리적 표시		
		N13. 산업디자인		
		N14. 저작권		
		N15. 상표		
	N2. 지식재산권 소진	N21. 특허	N211. 국내 권리 소진	
			N212. 지역적 권리 소진	
			N213. 국제적 권리 소진	
		N22. 지리적 표시	N221. 국내 권리 소진	
			N222. 지역적 권리 소진	
	N3. 지식재산권 보호조치		N223. 국제적 권리 소진	
	N23. 산업디자인	N231. 국내 권리 소진		
		N232. 지역적 권리 소진		
		N233. 국제적 권리 소진		
	N24. 저작권	N241. 국내 권리 소진		
		N242. 지역적 권리 소진		
		N243. 국제적 권리 소진		
	N25. 상표	N251. 국내 권리 소진		
		N252. 지역적 권리 소진		
		N253. 국제적 권리 소진		
	N9. 기타 지식재산권	N31. 특허	N311. 국경조치	
			N312. 민사조치	
			N313. 형사조치	
			N314. 행정조치	
		N32. 지리적 표시	N321. 국경조치	
			N322. 민사조치	
			N323. 형사조치	
			N324. 행정조치	
		N33. 산업디자인	N331. 국경조치	
			N332. 민사조치	
			N333. 형사조치	
			N334. 행정조치	
		N34. 저작권	N341. 국경조치	
			N342. 민사조치	
			N343. 형사조치	
			N344. 행정조치	
		N35. 상표	N351. 국경조치	
			N352. 민사조치	
			N353. 형사조치	
			N354. 행정조치	

(계속)

유형별 조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O. 원산지규정	O1. 특혜원산지규정	O11. 원산지 기준	O111. 완전생산품	
			O112. 실질적 변형 (부가가치 기준)	O1121. 양자누적 O1122. 유사누적 O1123. 완전누적 O1129. 기타누적
			O113. 실질적 변형 (원재료 기준)	O1131. 양자누적 O1132. 유사누적 O1133. 완전누적 O1139. 기타누적
			O114. 실질적 변형 (세번 기준, 예외없음)	O1141. 양자누적 O1142. 유사누적 O1143. 완전누적 O1149. 기타누적
			O115. 실질적 변형 (세번 기준, 예외포함)	O1151. 양자누적 O1152. 유사누적 O1153. 완전누적 O1159. 기타누적
			O116. 실질적 변형 (기술요건)	O1161. 양자누적 O1162. 유사누적 O1163. 완전누적 O1169. 기타누적
			O117. 대체요건(선택적 기준적용)	O1171. 양자누적 O1172. 유사누적 O1173. 완전누적 O1179. 기타누적
			O119. 기타 원산지 기준	
		O12. 원산지 증명	O121. 기관발급	
			O122. 수출업체 발급	
			O123. 수입업체 신고	
			O129. 기타 원산지 증명	
O2. 비특혜원산지규정	O21. 원산지 기준	O21. 원산지 기준	O211. 완전생산품	
			O212. 실질적 변형(부가가치 기준)	
			O213. 실질적 변형(원재료 기준)	
			O214. 실질적 변형(세번 기준, 예외없음)	
			O215. 실질적 변형(세번 기준, 예외포함)	
			O216. 실질적 변형(기술요건)	
			O217. 대체요건(선택적 기준적용)	
			O219. 기타 원산지 기준	
			O221. 기관발급	
	O22. 원산지 증명	O22. 원산지 증명	O222. 수출업체 발급	
			O223. 수입업체 신고	
			O229. 기타 원산지 증명	
	O9. 기타 원산지규정			

(계속)

유형별 조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P. 수출 관련 조치	P1. SPS 및 TBT 관련 조치 P2. 수출 절차 및 형식 요건 P3. 수출 허가, 할당, 금지 및 기타 제한 조치 P4. 수출 가격 통제조치 P5. 국영무역기업 및 선택적 수출 채널 P6. 수출 지원 조치 P7. 재수출 관련 조치 P9. 기타 수출 관련 조치	P11. 기술적 요인에 대한 승인 요건		
		P12. 기술적 요인에 대한 등록 요건		
		P13. 생산 공정 및 생산 후 절차 요구		
		P14. 제품 품질, 안전성 또는 성능에 대한 요건		
		P15. 라벨링, 표시, 포장 요건		
		P16. 적합성 평가	P161. 시험 요건	
			P162. 검사 요건	
			P163.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인증	
			P169. 기타 적합성 평가	
		P17. SPS 관련 수출 금지		
		P19. 기타 기술적 조치		
		P21. 특정 세관을 통한 수출 요구		
		P22. 수출 모니터링 및 감시 요구		
		P29. 기타 수출 절차 및 형식 요건		
		P31. 수출 금지		
		P32. 수출 할당		
		P33. 수출을 위한 면허 또는 허가 요건		
		P39. 기타 수출 제한 조치		
		P41. 수출 제품 가격 통제조치		
		P42. 수출세 및 관세		
		P43. 수출 관련 서비스 요금		
		P49. 기타 수출 가격 통제조치		
		P51. 국영무역기업을 통한 수출		
		P59. 기타 선택적 수출 채널		
		P6. 수출 지원 조치		
		P7. 재수출 관련 조치		
		P9. 기타 수출 관련 조치		
16개	89개	206개	204개	24개

자료: UNCTAD(2019)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미국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의 NTBs 주요 내용

국가	유형	주요 내용
중국	SPS/ TB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 안전법 시행에 따른 수출업체 시설 및 제품 등록 요구 조치와 이에 대한 WTO SPS/TBT 위원회에 통보의 일관성 결여 식품 안전법 248호 및 249호는 외국 규제 당국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무역 방해 과학 또는 위험 기반 식품 안전 규정 시행 및 시설 등록 절차 관련 명확성 부족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금) 중국 내 농산물 공급관리를 위한 농산물 부가가치세 환급 조정으로 글로벌시장 왜곡 및 불확실성 초래 (TRQ) 밀, 옥수수, 쌀에 대한 WTO TRQ 협정 미이행 (보조금) 직접 지불 프로그램, 최저 가격지지, 투입재 보조금 유지
일본	S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확 전/후 살균제 분류 방식(수확 전-농약, 수확 후-식품 첨가물)의 과학적 근거 부족 및 살균제 목록 라벨링 요구(장거리 유통을 위해 수확 후 처리가 필요한 미국산 제품에 불리) 최대 잔류 허용 기준(MRL) 집행 절차 불확실성 초래(수출업자 단일 위반 시 국가 전체 조치 적용)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SRM 제거 요건이 국제/미국 기준보다 엄격
	TBT	영양 보충제가 '건강식품'으로 엄격하게 규제되어 건강 효능 주장 및 성분에 대한 장벽 존재
UAE	SPS/ TBT	<ul style="list-style-type: none"> (GCC) 사료에 대한 할랄 요건 및 인증을 수립하는 기술 규정 초안을 WTO에 통보(불필요한 요건 및 무역 제한 가능성 우려) (GCC) 식품 첨가물로서 이산화티타늄 사용 금지(국제기구의 안전성 평가와 상반) 행정적 이유로 가금류 할랄 도축 요건 등 여러 미국 할랄 인증 기관의 인증 갱신 거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금) GCC 제조 설탕 주스에는 소비세가 면세되어 미국 제품에 불리하게 작용 (수입허가) UAE에 등록된 회사만 수입을 허가
브라질	S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프리카 돼지열병 우려를 이유로 미국산 신선 및 냉동 돼지고기 시장 폐쇄 브라질은 이 금지 조치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는 WOAH(세계동물보건기구) 국제 기준과 불일치 현상
인도	S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 및 농산물 수입에 대한 과학 및 위험 관리 기반 부족 농업 생명공학 제품 승인 절차가 느리고 불투명하며 정치적 영향받음. 유전자 엔지니어링 평가 위원회(GEAC)의 불확실성으로 무역 방해 과학적 정당화 없이 24개 제품에 대해 비유전자변형(non-GM) 및 GM-free 증명서 요구 우유 및 유제품, 육류 제품 등에 대한 새로운 건강 증명서 요구(중복 및 비과학적 내용 포함) 특정 동물 제품(우유 및 유제품, 육류 및 육류 제품) 수출업체 시설 등록 요건 유제품 수입에 대한 과도한 요건(반추 동물 사료 섭취 제한 등) DDGS(Distiller's Dried Grains with Solubles) 규제 불명확 및 승인 지연 알파파 건초(alalfa hay) 시장 접근 지연 기금류 수입 금지(조류 인플루엔자 우려) WTO 분쟁 해결: 인도 관세 인하 합의 특정 식물 해충에 대해 위험 평가에 기반하지 않는 무관용 기준을 적용 콩류 수입 조건으로 출발 항구 메틸 브로마이드 훈증 요구(대체 처리 또는 도착 항구 훈증 승인 요청 중)

(계속)

국가	유형	주요 내용
	TBT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코올 음료 규제 관련 우려(성분 관련 분석 매개변수, 에틸알코올 함량 요건, 미국 위스키 보호 부족, 위스키 기준과 관련된 정의 불명확성, 미국 실험실 발행 분석 증명서 미인정 등) 농업 부문에 대한 광범위한 보조금 및 지원(신용, 보험, 투입재 보조금 등) 제공으로 시장 왜곡 가능성 최저 지원 가격(MSP) 프로그램(25개 농산물에 적용, 시장 가격 지원으로 생산 및 무역 왜곡)에 따른 과잉 생산, 수입 수요 제한, 인위적인 수출 경쟁력 강화 초래 WTO에 쌀 농업 보조금 한도 초과 통보, 영구적 해결책 모색 주도
EU	S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르몬, 베타 아고니스트(락토파민 포함) 등 성장 촉진제를 사용하여 생산된 육류에 대한 금지 및 제한 조치 유지 EU에 육류 및 육류 제품을 수출하기 위한 관련 프로그램 참여 비용 및 부담 발생 수의약품 사용 제한(항균제 내성 대응 목적) 조치 도입 및 강화, 제3국 수출업체로의 제한 확대 WOAH의 미국산 쇠고기 인정에도 불구하고, 특정 위험 물질(SRM)에 대한 자체적인 BSE 요건 유지
	TB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쇠고기, 커피, 코코아, 팜유, 대두, 목재, 고무 제품과 같은 특정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와 관련된 별채 및 산림 파괴를 억제하기 위한 규정 존재 EU 지역별 표준(ENs)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에 대한 시장 접근 제한(EU 적합성 테스트는 EU 내 위치한 기관으로 한정) 과도한 지리적 표시(GI)로 미국 와인 수출 방해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금) 공동 농업 정책의 생산자 단체에 대한 지급 및 직접 지급은 무역을 왜곡
필리핀	S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식물 검역 수입 증명서(SPSIC) 관련 문제(발급 중단, 유효기간 제한, 농업부 행정 명령에도 지침 발행 지연) 지방 정부의 국제/국가 권고를 초과하는 생돈·가금류 및 제품에 제한 조치(WTO 미통보) 냉장 유통 규정(냉동/수입 육류에 불리) 시행 중단 명령에도 수입 육류/가금류에 대한 냉동 창고 증명서 요구 유지 냉동 수산물 판매 금지 조치 확대(슈퍼마켓, 전자상거래 포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TRQ) 정확하지 않은 돼지고기 할당량 배포로 수입업자 불확실성 초래 동물 사료 제조에 사용되는 성분에 대한 이용 보고서 제출 요구(WTO 미통보)
태국	S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타 아고니스트(락토파민 포함)로 처리된 소에서 유래된 쇠고기 수출 금지 돼지고기 락토파민 잔류허용기준 미설정으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방지 미국 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을 이유로 미국산 가금류 및 가금육 수입 금지 (WOAH의 지역별 금지 권고와 달리 국가 전체 금지) 미국산 칠면조고기 수입 금지 지속
	TB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가공 육류 제품 승인 절차 지연 및 개별 공급업체에 대한 요건 미발표
인도네시아	S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 제품 수출 시설에 대한 번거로운 등록 요건(파트너 국가 중 가장 부담스러움) 서류 심사 및 시설 검사 과정에서 부과되는 과도한 수수료는 수출업체(중소규모)의 장벽으로 작용 식물성 신선식품(FFPO)에 대한 미국 식품 안전 통제 시스템 인정(3년마다 갱신) 수출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일부 FFPO 품목 인정 범위에서 제외
브루나이	SPS/ TBT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할랄 수입 요건(인증서 필수, 수입 허가증, 현장 검사 등) 현재 브루나이 이슬람 종교 위원회(MUIB) 승인 도축 센터 40곳 중 미국 소재지 전무

자료: USTR(2025)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WTO 비관세장벽 수출시장별 현황: 유망·잠재 시장

1. 유망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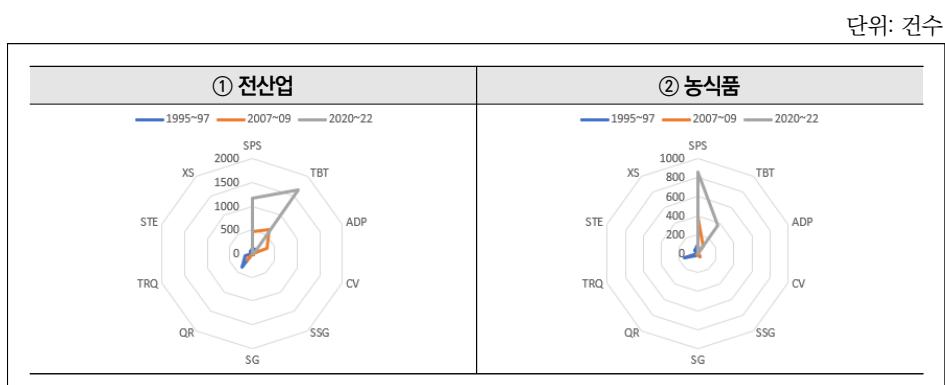
〈부표 3-1〉 유망시장 對세계 1995~2024년 누적 기준 비관세장벽 현황

구분	SPS	TBT	ADP	CVD	SSG	SG	QR	TRQ	STE	XS	전체(C)
전산업(A)	5,124	6,099	2,480	87	186	64	549	147	19	49	14,804
A/C	(34.6)	(41.2)	(16.8)	(0.6)	(1.3)	(0.4)	(3.7)	(1.0)	(0.1)	(0.3)	(100.0)
농식품(B)	4,002	1,538	49	17	175	8	99	145	15	47	6,095
B/C	65.7)	(25.2)	(0.8)	(0.3)	(2.9)	(0.1)	(1.6)	(2.4)	(0.2)	(0.8)	(100.0)
A/B	78.1	25.2	2.0	19.5	94.1	12.5	18.0	98.6	78.9	95.9	41.2

주: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세번 01~97류,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부도 3-1〉 유망시장 3개년 기준 對세계 비관세장벽 분포



주 1) WTO 회원국의 NTMs 통보 추이가 2023~24년 감소세로 전환됨. 이는 WTO 회원국 대부분의 통보 지역으로 나타나 2022년을 최근 자료로 활용하여 분석함.

2)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기준 01~97류,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부표 3-2〉 유망시장 對한국 1995~2024년 누적 기준 비관세장벽 현황

단위: 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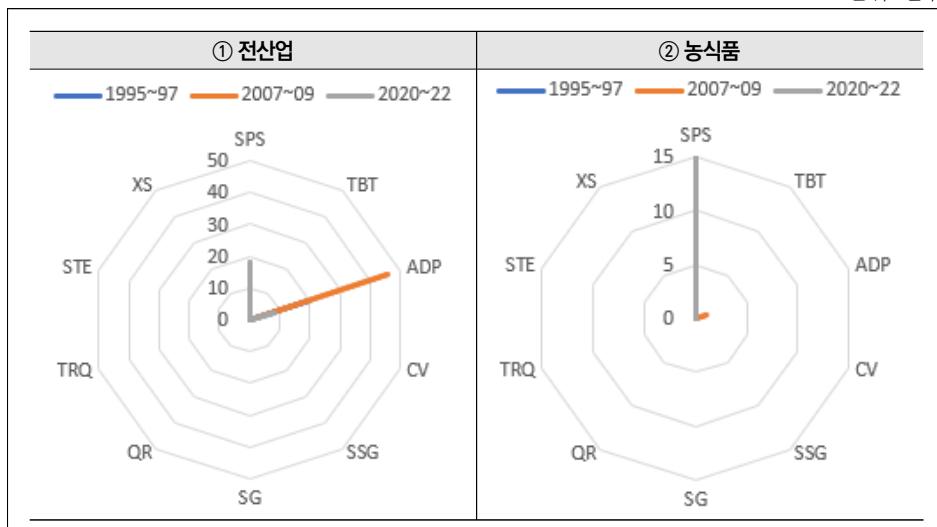
구분	SPS	TBT	ADP	CVD	SSG	SG	QR	TRQ	STE	XS	전체(C)
전산업(A) A/C	26 (7.3)	- (92.1)	327 (92.1)	2 (0.6)	- (0.6)	- (0.6)	- (0.6)	- (0.6)	- (0.6)	- (0.6)	355 (100.0)
농식품(B) B/C	23 (88.5)	- (11.5)	3 (11.5)	0 0.0	- 0.0	- 0.0	- 0.0	- 0.0	- 0.0	- 0.0	26 (100.0)
B/A	88.5	-	0.9	0.0	-	-	-	-	-	-	7.3

주: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세번 01~97류,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부도 3-2〉 유망시장 對한국 3개년 기준 비관세장벽 동향

단위: 건수



주 1) WTO 회원국의 NTMs 통보 추이가 2023~24년 감소세로 전환됨. 이는 WTO 회원국 대부분의 통보 지역인 것으로 나타나 2022년을 최근 자료로 활용하여 분석함.

2)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기준 01~97류,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① 아랍에미리트(UAE)

〈부표 3-3〉 UAE 對세계 1995~2024년 누적 기준 비관세장벽 현황

단위: 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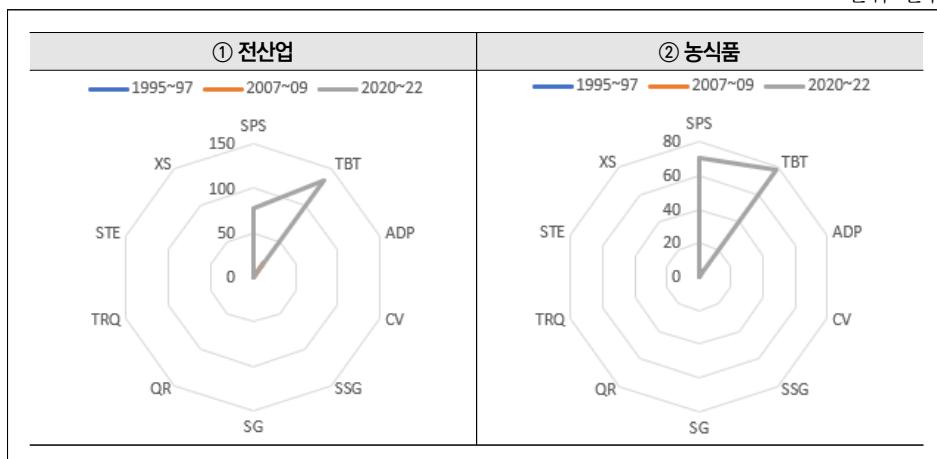
구분	SPS	TBT	ADP	CVD	SSG	SG	QR	TRQ	STE	XS	전체(C)
전산업(A) A/C	291 (27.4)	772 (72.6)	-	-	-	-	-	-	-	-	1,063 (100.0)
농식품(B) B/C	253 (33.1)	512 (66.9)	-	-	-	-	-	-	-	-	765 (100.0)
B/A	86.9	66.3	-	-	-	-	-	-	-	-	72.0

주: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세번 01~97류,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부도 3-3〉 UAE 3개년 기준 對세계 비관세장벽 분포

단위: 건수



주 1) WTO 회원국의 NTMs 통보 추이가 2023~24년 감소세로 전환됨. 이는 WTO 회원국 대부분의 통보 지원인 것으로 나타나 2022년을 최근 자료로 활용하여 분석함.

2)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기준 01~97류,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1995~2024년 누적기준 UAE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양자 간 비관세장벽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對UAE 수출은 UAE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SPS나 TBT 조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② 브라질

〈부표 3-4〉 브라질 對세계 1995~2024년 누적 기준 비관세장벽 현황

단위: 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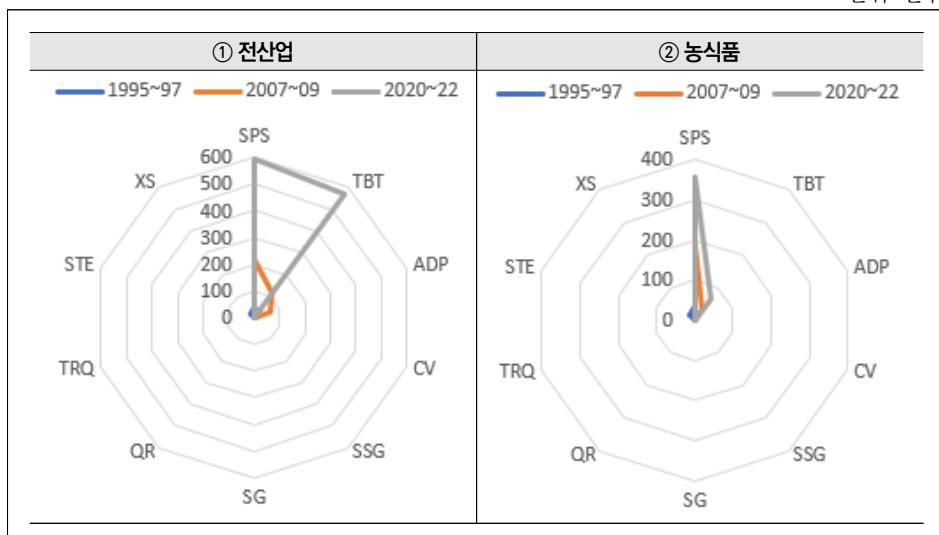
구분	SPS	TBT	ADP	CVD	SSG	SG	QR	TRQ	STE	XS	전체(C)
전산업(A) A/C	1,943 (48.1)	1,621 (40.2)	447 (11.1)	3 (0.1)	-	2 (0.05)	-	1 (0.02)	-	20 (0.5)	4,037 (100.0)
농식품(B) B/C	1,316 (79.3)	307 (18.5)	16 (1.0)	-	-	1 (0.1)	-	1 (0.1)	-	18 (1.1)	1,659 (100.0)
B/A	67.7	18.9	3.6	-	-	50.0	-	100.0	-	90.0	41.1

주: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세번 01~97류,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부도 3-4〉 브라질 3개년 기준 對세계 비관세장벽 분포

단위: 건수



주 1) WTO 회원국의 NTMs 통보 추이가 2023~24년 감소세로 전환됨. 이는 WTO 회원국 대부분의 통보 지역인 것으로 나타나 2022년을 최근 자료로 활용하여 분석함.

2)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기준 01~97류,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부표 3-5〉 브라질 對한국 1995~2024년 누적 기준 비관세장벽 현황

단위: 건수, %

구분	SPS	TBT	ADP	CVD	SSG	SG	QR	TRQ	STE	XS	전체(C)
전산업(A) A/C	1 (2.6)	- (97.4)	37	-	-	-	-	-	-	-	38 (100.0)
농식품(B) B/C	1 (100.0)	- (100.0)	-	-	-	-	-	-	-	-	1 (100.0)
B/A	100.0	-	-	-	-	-	-	-	-	-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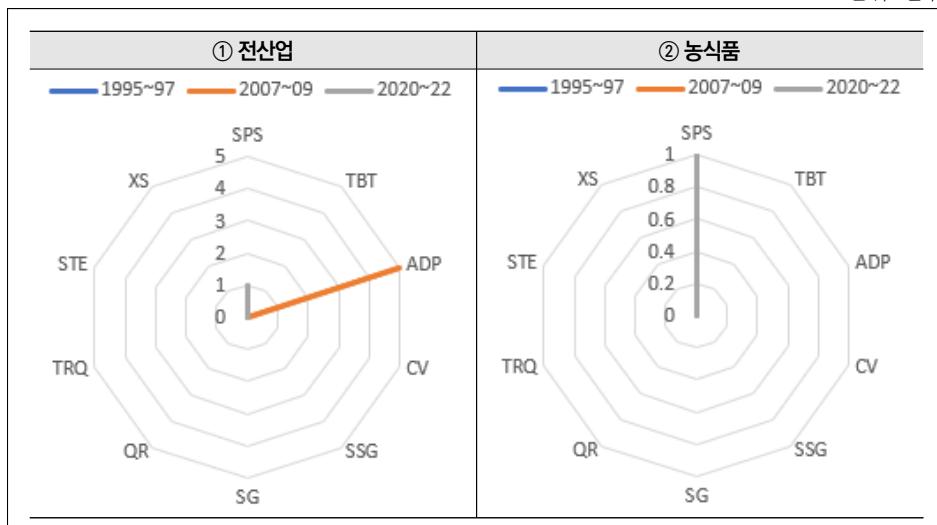
주 1)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세번 01~97류,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2) SPS 1건은 신선 단감(081090) 수입 승인 요건과 관련된 조치임.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부도 3-5〉 브라질 對한국 3개년 기준 비관세장벽 동향

단위: 건수



주 1) WTO 회원국의 NTMs 통보 추이가 2023~24년 감소세로 전환됨. 이는 WTO 회원국 대부분의 통보 지역으로 나타나 2022년을 최근 자료로 활용하여 분석함.

2)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기준 01~97류,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③ 인도

〈부표 3-6〉 인도 對세계 1995~2024년 누적 기준 비관세장벽 현황

단위: 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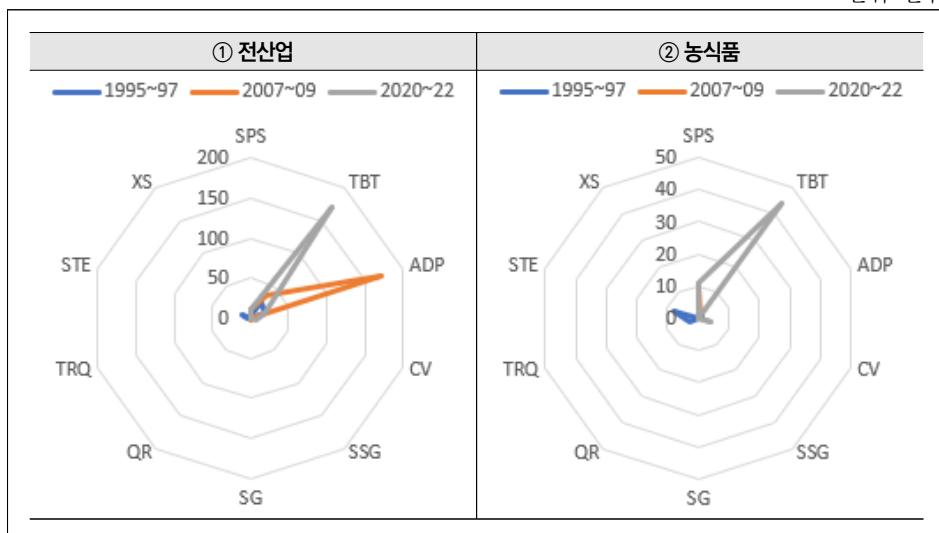
구분	SPS	TBT	ADP	CVD	SSG	SG	QR	TRQ	STE	XS	전체(C)
전산업(A) A/C	246 (12.8)	366 (19.1)	1,169 (61.0)	17 (0.9)	-	28 (1.5)	76 (4.0)	3 (0.2)	11 (0.6)	-	1,916 (100.0)
농식품(B) B/C	212 (55.5)	86 (22.5)	11 (2.9)	6 (1.6)	-	4 (1.0)	52 (13.6)	3 (0.8)	8 (2.1)	-	382 (100.0)
B/A	86.2	23.5	0.9	35.3	-	14.3	68.4	100.0	72.7	-	19.9

주: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세번 01~97류,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부도 3-6〉 인도 3개년 기준 對세계 비관세장벽 분포

단위: 건수



주 1) WTO 회원국의 NTMs 통보 추이가 2023~24년 감소세로 전환됨. 이는 WTO 회원국 대부분의 통보 지역인 것으로 나타나 2022년을 최근 자료로 활용하여 분석함.

2)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기준 01~97류,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부표 3-7〉 인도 對한국 1995~2024년 누적 기준 비관세장벽 현황

단위: 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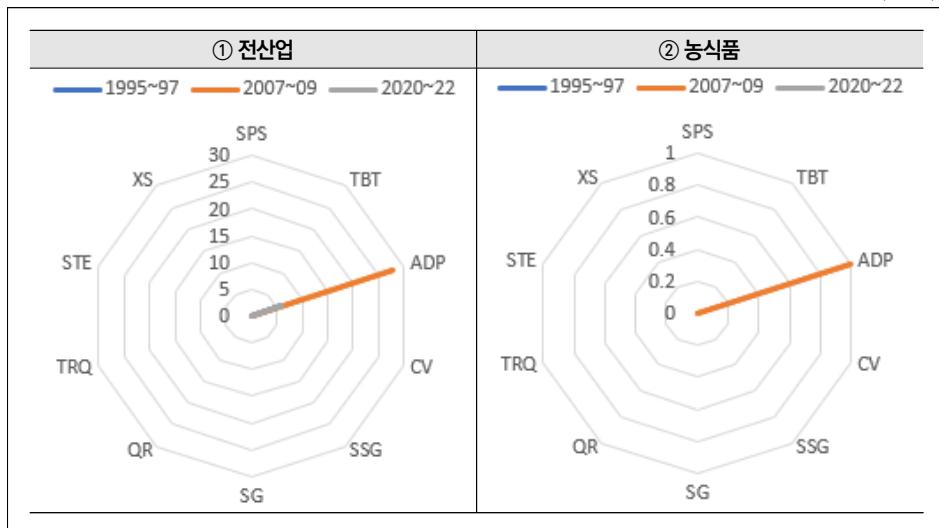
구분	SPS	TBT	ADP	CVD	SSG	SG	QR	TRQ	STE	XS	전체(C)
전산업(A) A/C	-	-	176 (100.0)	-	-	-	-	-	-	-	176 (100.0)
농식품(B) B/C	-	-	2 (100.0)	-	-	-	-	-	-	-	2 (100.0)
B/A	-	-	1.1	-	-	-	-	-	-	-	1.1

주: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세번 01~97류,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부도 3-7〉 인도 對한국 3개년 기준 비관세장벽 동향

단위: 건수



주 1) WTO 회원국의 NTMs 통보 추이가 2023~24년 감소세로 전환됨. 이는 WTO 회원국 대부분의 통보 지역으로 나타나 2022년을 최근 자료로 활용하여 분석함.

2)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기준 01~97류,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④ EU

〈부표 3-8〉 EU 對세계 1995~2024년 누적 기준 비관세장벽 현황

단위: 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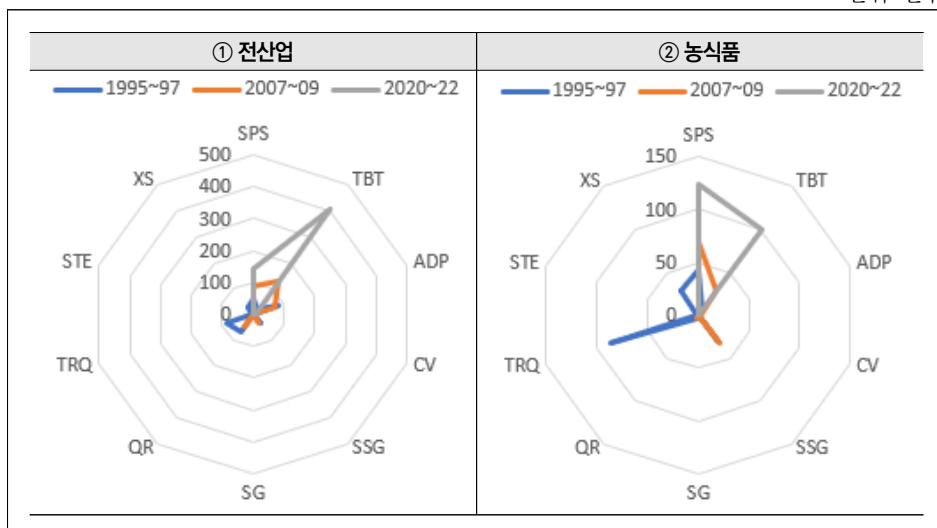
구분	SPS	TBT	ADP	CVD	SSG	SG	QR	TRQ	STE	XS	전체(C)
전산업(A) A/C	1,071 (33.1)	1,079 (33.3)	628 (19.4)	67 (2.1)	167 (5.2)	-	105 (3.2)	88 (2.7)	3 (0.1)	28 (0.9)	3,236 (100.0)
농식품(B) B/C	885 (62.2)	229 (16.1)	17 (1.2)	11 (0.8)	156 (11.0)	-	7 (0.5)	87 (6.1)	2 (0.1)	28 (2.0)	1,422 (100.0)
B/A	82.6	21.2	2.7	16.4	93.4	-	6.7	98.9	66.7	100.0	43.9

주: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세번 01~97류,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부도 3-8〉 EU 3개년 기준 對세계 비관세장벽 분포

단위: 건수



주 1) WTO 회원국의 NTMs 통보 추이가 2023~24년 감소세로 전환됨. 이는 WTO 회원국 대부분의 통보가 연인 것으로 나타나 2022년을 최근 자료로 활용하여 분석함.

2)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기준 01~97류,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부표 3-9〉 EU 對한국 1995~2024년 누적 기준 비관세장벽 현황

단위: 건수, %

구분	SPS	TBT	ADP	CVD	SSG	SG	QR	TRQ	STE	XS	전체(C)
전산업(A) A/C	6 (9.1)	- (87.9)	58 (3.0)	2 (3.0)	- -	- -	- -	- -	- -	- -	66 (100.0)
농식품(B) B/C	3 (100.0)	- -	- -	- -	- -	- -	- -	- -	- -	- -	3 (100.0)
B/A	50.0	-	-	-	-	-	-	-	-	-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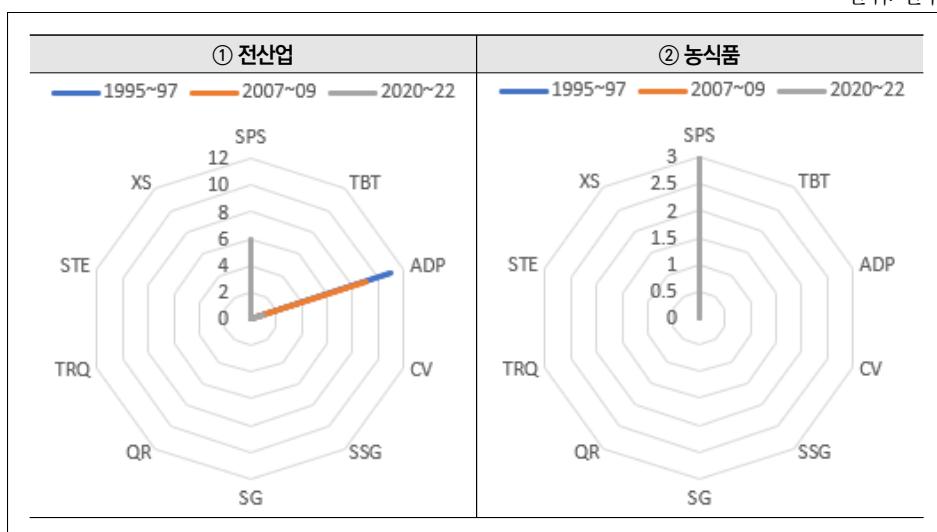
주 1)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세번 01~97류,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2) SPS 3건의 조치는 특정 제3국의 특정 물품의 역내 반입을 규제하는 공식 통제 및 긴급 조치의 일시적 강화에 관한 시행규정 개정(고추류(070960), 그 밖의 채소(0709), 냉동채소(0710))과 관련됨.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부도 3-9〉 EU 對한국 3개년 기준 비관세장벽 동향

단위: 건수



주 1) WTO 회원국의 NTMs 통보 추이가 2023~24년 감소세로 전환됨. 이는 WTO 회원국 대부분의 통보 지연인 것으로 나타나 2022년을 최근 자료로 활용하여 분석함.

2)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기준 01~97류,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⑤ ASEAN

〈부표 3-10〉 ASEAN 對세계 1995~2024년 누적 기준 비관세장벽 현황

단위: 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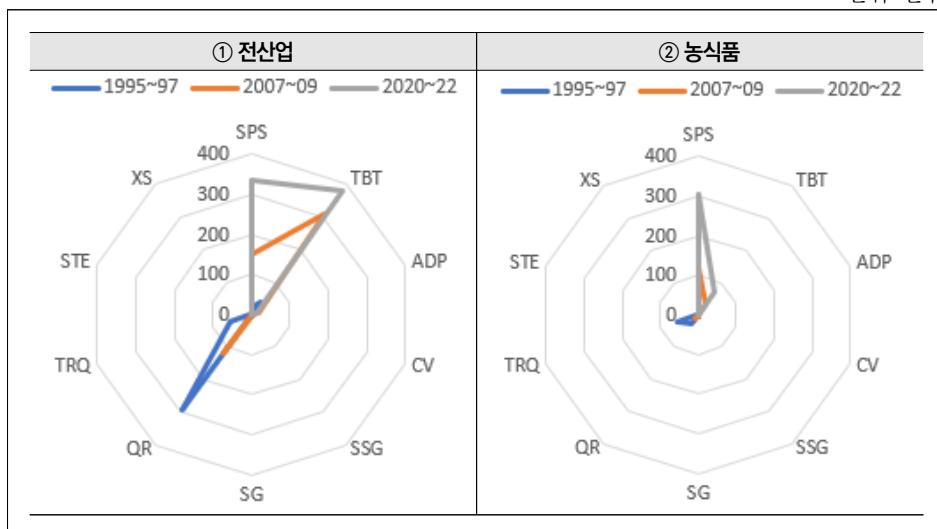
구분	SPS	TBT	ADP	CVD	SSG	SG	QR	TRQ	STE	XS	전체(C)
전산업(A) A/C	1,573 (34.6)	2,261 (49.7)	236 (5.2)	-	19 (0.4)	34 (0.7)	368 (8.1)	55 (1.2)	5 (0.1)	1 (0.0)	4,552 (100.0)
농식품(B) B/C	1,336 (71.6)	404 (21.6)	5 (0.3)	-	19 (1.0)	3 (0.2)	40 (2.1)	54 (2.9)	5 (0.3)	1 (0.1)	1,867 (100.0)
B/A	84.9	17.9	2.1	-	100.0	8.8	10.9	98.2	100.0	100.0	41.0

주: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세번 01~97류,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부도 3-10〉 ASEAN 3개년 기준 對세계 비관세장벽 분포

단위: 건수



주 1) WTO 회원국의 NTMs 통보 추이가 2023~24년 감소세로 전환됨. 이는 WTO 회원국 대부분의 통보가 연인 것으로 나타나 2022년을 최근 자료로 활용하여 분석함.

2)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기준 01~97류,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부표 3-11〉 ASEAN 對한국 1995~2024년 누적 기준 비관세장벽 현황

단위: 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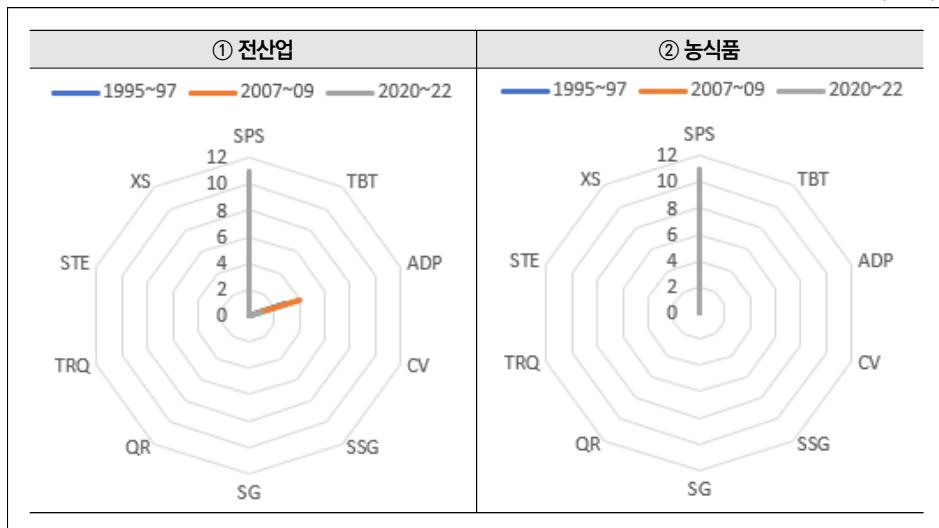
구분	SPS	TBT	ADP	CVD	SSG	SG	QR	TRQ	STE	XS	전체(C)
전산업(A) A/C	19 (25.3)	- (25.3)	56 (74.7)	- (25.3)	75 (100.0)						
농식품(B) B/C	19 (95.0)	- (95.0)	1 (5.0)	- (95.0)	20 (100.0)						
B/A	100.0	-	1.8	-	-	-	-	-	-	-	26.7

주: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세번 01~97류,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부도 3-11〉 ASEAN 對한국 3개년 기준 비관세장벽 동향

단위: 건수



주 1) WTO 회원국의 NTMs 통보 추이가 2023~24년 감소세로 전환됨. 이는 WTO 회원국 대부분의 통보 지역으로 나타나 2022년을 최근 자료로 활용하여 분석함.

2)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기준 01~97류,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3) 농식품 부분 SPS 11건은 축산물 관련 수입 금지 및 중지 관련 조치임.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2. 잠재시장

〈부표 3-12〉 잠재시장 對세계 1995~2024년 누적 기준 비관세장벽 현황

단위: 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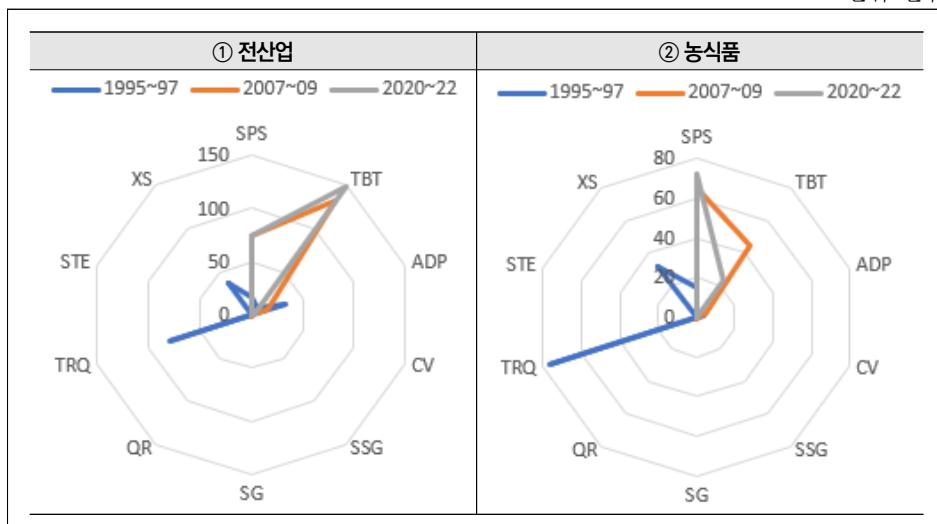
구분	SPS	TBT	ADP	CVD	SSG	SG	QR	TRQ	STE	XS	전체(C)
전산업(A) A/C	851 (36.1)	1,127 (47.8)	230 (9.7)	- -	- -	16 (0.7)	18 (0.8)	80 (3.4)	- -	37 (1.6)	2,359 (100.0)
농식품(B) B/C	739 (62.4)	289 (24.4)	34 (2.9)	- -	- -	11 (0.9)	2 (0.2)	77 (6.5)	- -	32 (2.7)	1,184 (100.0)
B/A	86.8	25.6	14.8	-	-	68.8	11.1	96.3	-	86.5	50.2

주: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세번 01~97류,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부도 3-12〉 잠재시장 3개년 기준 對세계 비관세장벽 분포

단위: 건수



주 1) WTO 회원국의 NTMs 통보 추이가 2023~24년 감소세로 전환됨. 이는 WTO 회원국 대부분의 통보 지역인 것으로 나타나 2022년을 최근 자료로 활용하여 분석함.

2)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기준 01~97류,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부표 3-13〉 잠재시장 對한국 1995~2024년 누적 기준 비관세장벽 현황

단위: 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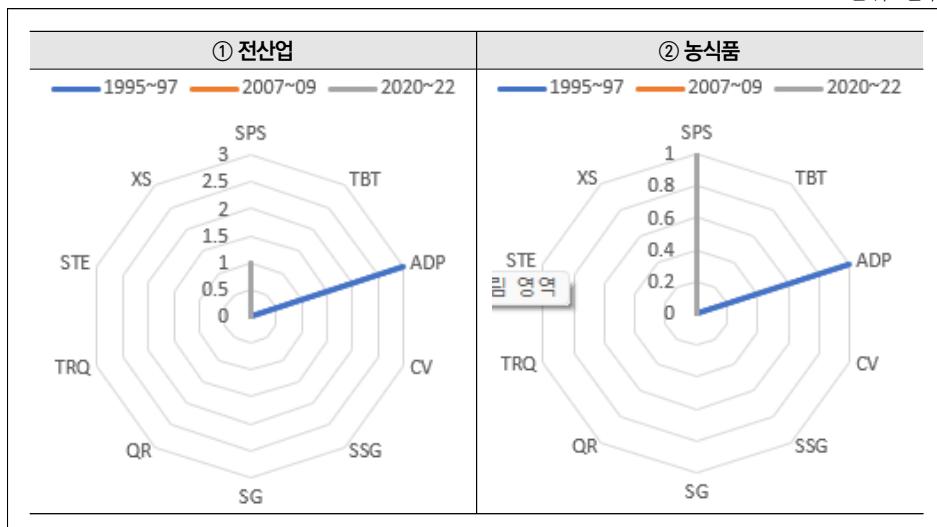
구분	SPS	TBT	ADP	CVD	SSG	SG	QR	TRQ	STE	XS	전체(C)
전산업(A) A/C	1 (2.4)	- (97.6)	41 -	- -	- -	- -	- -	- -	- -	- (100.0)	42
농식품(B) B/C	1 (12.5)	- (87.5)	7 -	- -	- -	- -	- -	- -	- -	- (100.0)	8
B/A	100.0	-	17.1	-	-	-	-	-	-	-	19.0

주: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세번 01~97류,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부도 3-13〉 잠재시장 對한국 3개년 기준 비관세장벽 동향

단위: 건수



주 1) WTO 회원국의 NTMs 통보 추이가 2023~24년 감소세로 전환됨. 이는 WTO 회원국 대부분의 통보 지역으로 나타나 2022년을 최근 자료로 활용하여 분석함.

2)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기준 01~97류,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3) 농식품 부분 SPS 1건은 신선 단감(081090) 수입위생요건과 관련된 조치임.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① 칠레

〈부표 3-14〉 칠레 對세계 1995~2024년 누적 기준 비관세장벽 현황

단위: 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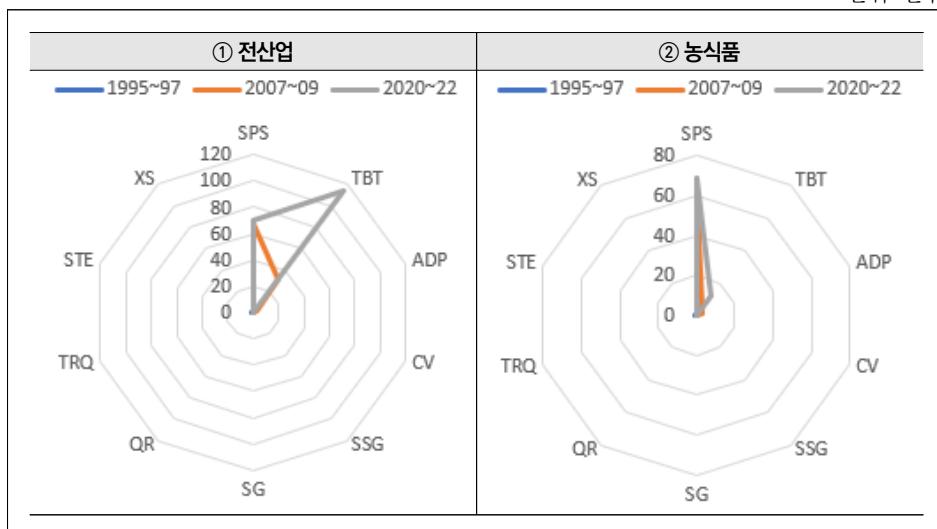
구분	SPS	TBT	ADP	CVD	SSG	SG	QR	TRQ	STE	XS	전체(C)
전산업(A) A/C	663 (61.2)	398 (36.7)	10 (0.9)	-	-	12 (1.1)	-	1 (0.1)	-	-	1,084 (100.0)
농식품(B) B/C	601 (91.3)	42 (6.4)	5 (0.8)	-	-	9 (1.4)	-	1 (0.2)	-	-	658 (100.0)
B/A	90.6	10.6	50.0	-	-	75.0	-	100.0	-	-	60.7

주: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세번 01~97류,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부도 3-14〉 칠레 3개년 기준 對세계 비관세장벽 분포

단위: 건수



주 1) WTO 회원국의 NTMs 통보 추이가 2023~24년 감소세로 전환됨. 이는 WTO 회원국 대부분의 통보가 연인 것으로 나타나 2022년을 최근 자료로 활용하여 분석함.

2)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기준 01~97류,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부표 3-15〉 칠레 對한국 1995~2024년 누적 기준 비관세장벽 현황

단위: 건수, %

구분	SPS	TBT	ADP	CVD	SSG	SG	QR	TRQ	STE	XS	전체(C)
전산업(A) A/C	1 (100.0)	-	-	-	-	-	-	-	-	-	1 (100.0)
농식품(B) B/C	1 (100.0)	-	-	-	-	-	-	-	-	-	1 -
B/A	100.0	-	-	-	-	-	-	-	-	-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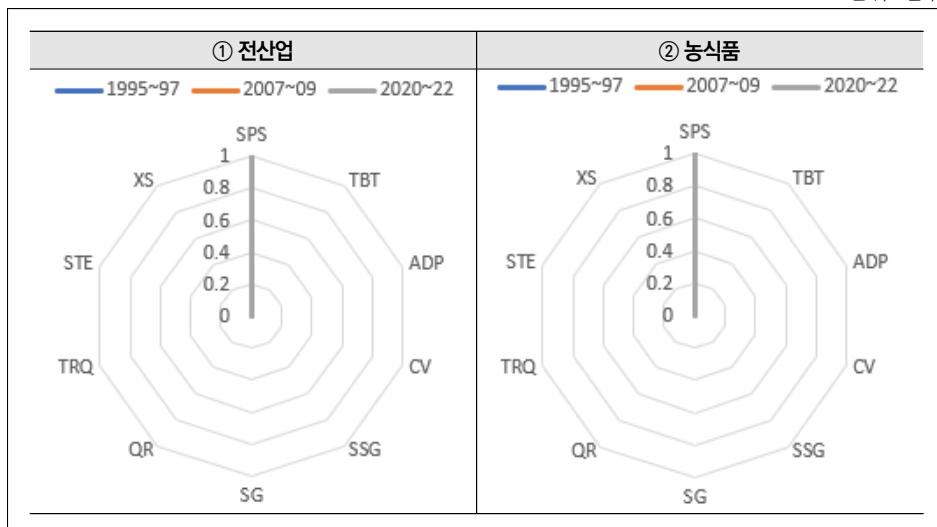
주 1)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세번 01~97류,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2) SPS 1건은 신선 단감(081090) 수입요건 관련 조치임.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부도 3-15〉 칠레 對한국 3개년 기준 비관세장벽 동향

단위: 건수



주 1) WTO 회원국의 NTMs 통보 추이가 2023~24년 감소세로 전환됨. 이는 WTO 회원국 대부분의 통보 지역으로 나타나 2022년을 최근 자료로 활용하여 분석함.

2)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기준 01~97류,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② 과테말라

〈부표 3-16〉 과테말라 對세계 1995~2024년 누적 기준 비관세장벽 현황

단위: 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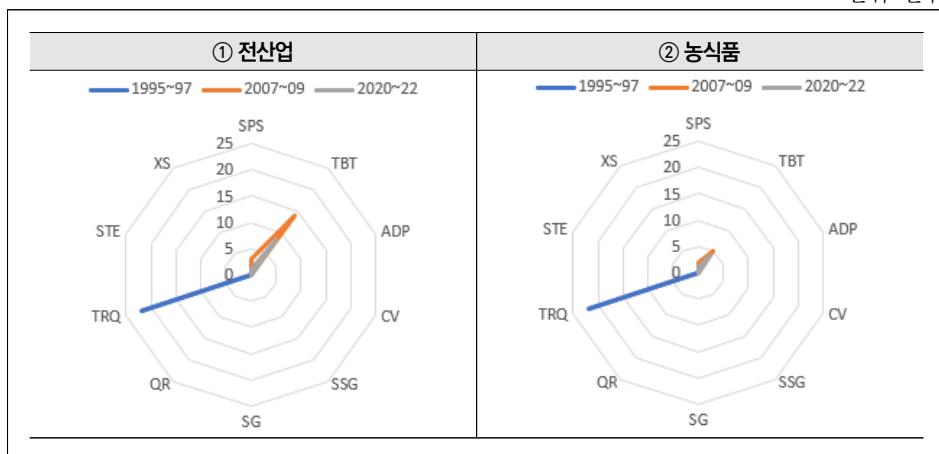
구분	SPS	TBT	ADP	CVD	SSG	SG	QR	TRQ	STE	XS	전체(C)
전산업(A) A/C	124 (41.5)	152 (50.8)	1 (0.3)	-	-	-	-	22 (7.4)	-	-	299 (100.0)
농식품(B) B/C	84 (53.2)	52 (32.9)	-	-	-	-	-	22 (13.9)	-	-	158 (100.0)
B/A	67.7	34.2	-	-	-	-	-	100.0	-	-	52.8

주: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세번 01~97류,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부도 3-16〉 과테말라 3개년 기준 對세계 비관세장벽 분포

단위: 건수



주 1) WTO 회원국의 NTMs 통보 추이가 2023~24년 감소세로 전환됨. 이는 WTO 회원국 대부분의 통보 지역으로 나타나 2022년을 최근 자료로 활용하여 분석함.

2)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기준 01~97류,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1995~2024년 누적 기준 과테말라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시행한 양자 간 비관세장벽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비관세장벽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라오스

〈부표 3-17〉 라오스 對세계 1995~2024년 누적 기준 비관세장벽 현황

단위: 건수, %

구분	SPS	TBT	ADP	CVD	SSG	SG	QR	TRQ	STE	XS	전체(C)
전산업(A) A/C	1 (5.3)	-	-	-	-	-	18 (94.7)	-	-	-	19 (100.0)
농식품(B) B/C	1 (33.3)	-	-	-	-	-	2 (66.7)	-	-	-	3 (100.0)
B/A	100.0	-	-	-	-	-	11.1	-	-	-	15.8

주 1)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세번 01~97류,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2) SPS 1건은 2018년 살아있는 돼지(0103), 신선·냉장·냉동 돼지고기(0203)에 대한 일시 수입 중지 관련 조치이고, QR 2건은 2014년 인경·괴경·괴근·구경·관근·근경(0601) 관련 비자동 수출허가 및 양귀비씨(12079100), 코카잎(121130), 양귀비줄기(121140) 관련 수입금지 조치임.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1995~2024년 누적 기준 라오스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시행한 양자 간 비관세장벽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비관세장벽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④ 남아프리카공화국

〈부표 3-18〉 남아프리카공화국 對세계 1995~2024년 누적 기준 비관세장벽 현황

단위: 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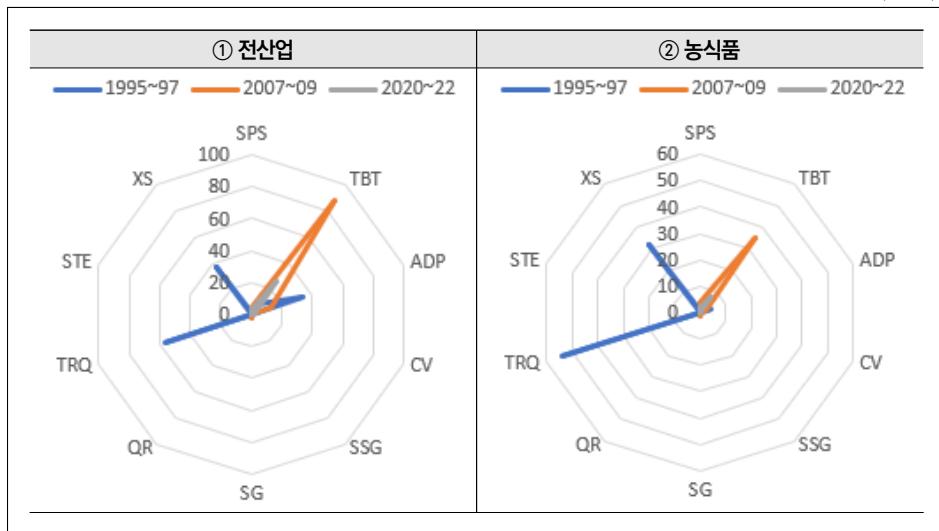
구분	SPS	TBT	ADP	CVD	SSG	SG	QR	TRQ	STE	XS	전체(C)
전산업(A) A/C	63 (6.6)	577 (60.3)	219 (22.9)	-	-	4 (0.4)	-	57 (6.0)	-	37 (3.9)	957 (100.0)
농식품(B) B/C	53 (14.5)	195 (53.4)	29 (7.9)	-	-	2 (0.5)	-	54 (14.8)	-	32 (8.8)	365 (100.0)
B/A	84.1	33.8	13.2	-	-	50.0	-	94.7	-	86.5	38.1

주: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세번 01~97류,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부도 3-19〉 남아프리카공화국 3개년 기준 對세계 비관세장벽 분포

단위: 건수



주 1) WTO 회원국의 NTMs 통보 추이가 2023~24년 감소세로 전환됨. 이는 WTO 회원국 대부분의 통보 지연인 것으로 나타나 2022년을 최근 자료로 활용하여 분석함.

2)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기준 01~97류,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부표 3-19〉 남아프리카공화국 對한국 1995~2024년 누적 기준 비관세장벽 현황

단위: 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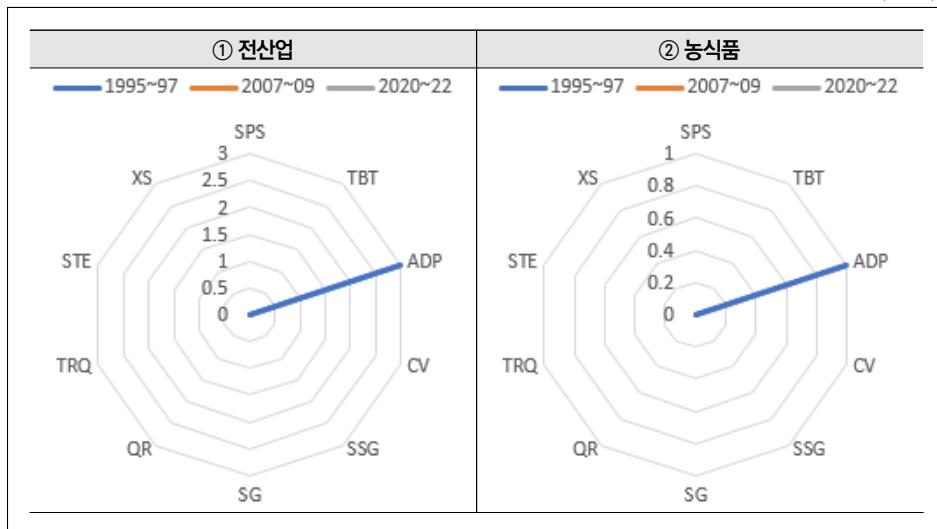
구분	SPS	TBT	ADP	CVD	SSG	SG	QR	TRQ	STE	XS	전체(C)
전산업(A) A/C	-	-	41 (100.0)	-	-	-	-	-	-	-	41 (100.0)
농식품(B) B/C	-	-	7 (100.0)	-	-	-	-	-	-	-	7 (100.0)
B/A	-	-	(17.1)	-	-	-	-	-	-	-	(17.1)

주: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세번 01~97류,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부도 3-20〉 남아프리카공화국 對한국 3개년 기준 비관세장벽 동향

단위: 건수



- 주 1) WTO 회원국의 NTMs 통보 추이가 2023~24년 감소세로 전환됨. 이는 WTO 회원국 대부분의 통보 지역인 것으로 나타나 2022년을 최근 자료로 활용하여 분석함.
- 2) HS 코드가 없는 NTMs는 제외함. 전산업은 HSK 기준 01~97류, 농식품은 01~24류(03류 수산물 제외)를 기준으로 분류함.
- 3) 농식품 부문 ADP 1건은 마늘(070320), 건조채소류의 혼합물(07129090)과 관련하여 1997년 발효된 조치임.

자료: WTO(검색일: 2025. 5. 15.), I-TIP Goods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NTMs 영향분석 자료 및 결과

〈부표 4-1〉 NTMs 자료의 이용가능 여부

순서	국가명	연도											분석 대상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	Afghanistan	○											
2	Algeria					○	○	○	○	○			○
3	Azerbaijan							○					
4	Argentina	○	○	○	○	○	○	○	○	○			○
5	Australia				○	○							○
6	Bahrain				○	○	○	○	○	○			○
7	Bangladesh						○						
8	Brazil	○	○	○	○	○	○	○	○	○			○
9	Myanmar				○	○	○	○	○	○	○	○	○
10	Belarus						○						
11	Cambodia					○	○	○	○				○
12	Canada				○	○	○	○	○	○	○	○	○
13	Sri Lanka					○							
14	Chile	○	○	○	○	○	○	○	○	○			○
15	China						○						
16	Colombia	○	○	○	○	○	○	○	○	○			○
17	Costa Rica				○	○	○	○	○	○	○	○	○
18	Cuba	○	○	○	○	○	○	○	○	○			○
19	Ecuador	○	○	○	○	○	○	○	○	○			○
20	El Salvador				○	○	○	○	○	○			○
21	Ethiopia					○							
22	State of Palestine			○									
23	EU	○	○	○	○	○	○	○	○	○	○	○	○
24	Ghana				○								
25	Guatemala				○	○	○	○	○	○	○		○
26	Honduras				○	○	○	○	○	○	○		○
27	China, Hong Kong					○							
28	Indonesia	○	○	○	○	○	○	○	○	○	○		○
29	Israel					○							

(계속)

순서	국가명	연도											분석 대상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30	Cote d'Ivoire								○				
31	Japan			○	○	○	○	○	○	○	○	○	
32	Kazakhstan					○							
33	Jordan				○								
34	Kenya									○			
35	Rep. of Korea				○								
36	Kuwait								○				
37	Lebanon					○							
38	Malaysia			○	○	○	○					○	
39	Mexico	○	○	○	○	○	○	○	○	○			○
40	Morocco				○	○	○	○	○	○			○
41	Mozambique										○		
42	Oman			○	○	○	○	○	○	○			○
43	Nepal	○											
44	New Zealand			○	○	○	○	○	○	○	○		○
45	Norway								○				
46	Pakistan				○	○	○	○					○
47	Panama			○	○	○	○	○	○	○			○
48	Peru	○	○	○	○	○	○	○	○	○			○
49	Philippines			○	○	○	○						○
50	Qatar				○	○	○	○	○	○			○
51	Russian Federation				○	○	○	○	○	○			○
52	Saudi Arabia				○	○	○	○	○	○			○
53	Senegal										○		
54	Singapore			○	○	○	○						○
55	Viet Nam			○	○	○	○	○	○	○	○	○	○
56	South Africa					○	○	○	○	○	○	○	○
57	Switzerland			○	○	○	○	○					○
58	Thailand			○	○	○	○	○	○	○			○
59	UAE			○	○	○	○	○	○	○			○
60	Tunisia				○	○	○	○	○	○			○
61	Turkiye				○	○	○	○	○	○			○
62	Egypt				○								
63	USA			○	○	○	○	○	○	○	○	○	○
64	Venezuela	○	○	○	○	○	○	○	○	○			○
합계		12	11	19	33	47	44	41	38	35	13	6	41

주: 크로아티아는 2013년에 EU 가입, 영국은 2020년 EU 탈퇴함.

자료: 저자 작성.

〈부표 4-2〉 농축산물 분류

본 연구	HS 부	HS 류	HS 류 설명
동물성 생산물	제1부	제1류	살아 있는 동물
	제1부	제2류	육과 식용 설육(屠肉)
	제1부	제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제1부	제5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식물성 생산물	제2부	제6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제2부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과·경(莖)
	제2부	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제2부	제9류	커피·차·마테(mate)-향신료
	제2부	제10류	곡물
	제2부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제2부	제12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제2부	제13류	락(lac), 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제2부	제14류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가공 식음료	제3부	제15류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제4부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제4부	제17류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제4부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제4부	제19류	곡류·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제4부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제4부	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
	제4부	제22류	음료·주류·식초
수산물	제4부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제1부	제3류	어류·갑각류 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담배	제4부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자료: 저자 작성.

〈부표 4-3〉 주요 변수의 기초 통계치

변수명		관측치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무역 변수	수입량(q)	40,332,736	316.34	160118.00	0.00	7.06E+08
	수입가격(p)	3,436,819	34.81	980.29	0.00	577963.00
	수입국 점유율(S_j)	40,332,736	1.55	5.88	0.00	99.99
	수출국 점유율(S_i)	40,332,736	1.55	6.94	0.00	99.99
관세율(t)		40,284,218	13.68	59.49	0.00	3000.00
비관세 조치 (N^d)	A1	16,743,269	3.10	2.61	0.00	129.00
	A2	16,743,269	1.34	1.50	0.00	18.00
	A3	16,743,269	2.09	2.30	0.00	25.00
	A4	16,743,269	1.10	1.37	0.00	13.00
	A5	16,743,269	0.24	0.66	0.00	31.00
	A6	16,743,269	1.19	1.76	0.00	50.00
	A8	16,743,269	6.41	5.16	0.00	51.00
	A9	16,743,269	0.21	0.49	0.00	8.00
	B1	16,743,269	0.37	0.87	0.00	8.00
	B2	16,743,269	0.14	0.46	0.00	6.00
	B3	16,743,269	2.11	1.87	0.00	18.00
	B4	16,743,269	0.28	0.74	0.00	10.00
	B6	16,743,269	0.20	0.57	0.00	8.00
	B7	16,743,269	0.49	0.91	0.00	13.00
	B8	16,743,269	1.46	2.11	0.00	52.00
	B9	16,743,269	0.07	0.28	0.00	6.00
	C1	16,743,269	0.07	0.29	0.00	4.00
	C2	16,743,269	0.04	0.24	0.00	4.00
	C3	16,743,269	0.39	0.89	0.00	13.00
	C4	16,743,269	0.16	0.47	0.00	5.00
	C9	16,743,269	0.11	0.36	0.00	4.00
중력 변수 (G)	D	16,743,269	0.01	0.18	0.00	13.00
	E	16,743,269	0.87	1.30	0.00	24.00
	F	16,743,269	0.90	1.50	0.00	12.00
	G	16,743,269	0.06	0.27	0.00	3.00
	H	16,743,269	0.03	0.19	0.00	4.00
	I	16,743,269	0.02	0.15	0.00	2.00
	거리	40,332,736	8532.60	4858.26	70.00	19819.00
	식민지 경험 여부	40,332,736	0.01	0.12	0.00	1.00
	공통언어 여부	40,332,736	0.19	0.39	0.00	1.00
	인접국 여부	40,332,736	0.03	0.17	0.00	1.00
	FTA 체결 여부	40,332,736	0.16	0.37	0.00	1.00
	인구수	40,332,736	78.48	187.42	1.22	1426.44
	1인당 GDP	40,332,736	17757.40	22417.05	368.64	109420.30

자료: 저자 작성.

〈부표 4-4〉 가격 및 수입량 함수 추정 결과: 농식품 전체

변수명			세계		중저소득국		고소득국		한국 수출	
			가격 함수	수입량 함수	가격 함수	수입량 함수	가격 함수	수입량 함수	가격 함수	수입량 함수
		ln(1 + 관세율)	-0.204 (0.182)	-4.677*** (1.261)	-0.112 (0.266)	-3.317*** (0.834)	-0.092 (0.277)	-5.862*** (1.597)	-0.971** (0.428)	-1.834 (2.381)
SPS	비관세 조치	A1	-0.019 (0.059)	0.356 (0.253)	-0.057 (0.089)	0.390* (0.225)	0.030 (0.080)	-0.387 (0.511)	-0.087 (0.164)	1.824*** (0.521)
		A2	0.117* (0.059)	-0.166 (0.201)	0.089 (0.071)	0.344 (0.211)	0.136* (0.074)	-0.386 (0.233)	-0.212 (0.136)	0.228 (0.443)
		A3	-0.014 (0.060)	-0.102 (0.274)	-0.031 (0.074)	0.483* (0.243)	-0.075 (0.076)	-0.521 (0.402)	-0.009 (0.145)	-0.310 (0.464)
		A4	-0.051 (0.054)	0.126 (0.170)	-0.038 (0.060)	-0.300 (0.207)	-0.021 (0.063)	0.366 (0.244)	0.126 (0.115)	0.836*** (0.183)
		A5	0.045 (0.046)	-0.048 (0.186)	0.111* (0.056)	-0.062 (0.210)	-0.028 (0.050)	0.198 (0.198)	-0.086 (0.085)	0.303 (0.248)
		A6	0.056 (0.047)	-0.278* (0.158)	0.042 (0.067)	-0.147 (0.178)	-0.060 (0.050)	-0.209 (0.251)	0.234* (0.128)	-0.425 (0.390)
		A8	-0.073 (0.053)	-0.217 (0.212)	0.016 (0.062)	0.107 (0.214)	-0.371*** (0.088)	1.109*** (0.335)	-0.103 (0.141)	-1.936*** (0.596)
		B1	0.114** (0.043)	-0.649** (0.295)	0.023 (0.046)	-0.409 (0.272)	0.070 (0.079)	-0.721* (0.366)	-0.046 (0.108)	-0.106 (0.425)
TBT	선적전 검사 및 기타 형식	B2	0.078 (0.063)	-0.027 (0.211)	0.150** (0.059)	-0.128 (0.263)	-0.090 (0.060)	0.362 (0.238)	0.210 (0.134)	0.193 (0.521)
		B3	0.054 (0.058)	0.319 (0.214)	0.103 (0.061)	0.480** (0.216)	0.061 (0.059)	0.295 (0.269)	0.178 (0.120)	-0.173 (0.392)
		B4	0.026 (0.054)	-0.686** (0.313)	0.005 (0.067)	-0.358 (0.282)	0.081 (0.057)	-0.951* (0.503)	0.122 (0.096)	-0.175 (0.303)
		B6	-0.052 (0.049)	-0.109 (0.158)	-0.046 (0.068)	-0.197 (0.241)	-0.047 (0.028)	-0.171* (0.096)	-0.233*** (0.080)	0.124 (0.295)
		B7	-0.073** (0.028)	-0.007 (0.272)	-0.071* (0.036)	-0.832*** (0.191)	-0.092** (0.032)	0.506*** (0.153)	-0.239** (0.094)	0.661* (0.359)
		B8	-0.027 (0.044)	0.044 (0.182)	-0.091 (0.071)	0.198 (0.244)	-0.068 (0.060)	0.206 (0.215)	0.025 (0.133)	-1.125*** (0.387)
		C3	0.074* (0.037)	-0.319 (0.199)	0.072 (0.059)	0.222 (0.193)	0.118* (0.057)	-0.476 (0.378)	0.012 (0.107)	-0.305 (0.361)
		C4	0.157*** (0.043)	-0.395 (0.276)	0.120** (0.046)	-0.515** (0.227)	0.127* (0.063)	0.563 (0.461)	-0.266** (0.127)	-0.546 (0.495)
		E	0.023 (0.035)	0.005 (0.161)	0.110 (0.095)	-0.103 (0.217)	-0.031 (0.037)	0.279 (0.368)	0.081 (0.091)	0.456 (0.431)
		F	-0.054 (0.035)	-0.040 (0.173)	-0.056 (0.059)	-0.251 (0.192)	-0.060 (0.036)	0.027 (0.230)	0.081 (0.078)	0.126 (0.284)

(계속)

변수명		세계		중저소득국		고소득국		한국 수출	
		가격 함수	수입량 함수	가격 함수	수입량 함수	가격 함수	수입량 함수	가격 함수	수입량 함수
중력 변수	ln(거리 _{ij})	0.134*** (0.013)	-1.190*** (0.086)	0.118*** (0.020)	-0.994*** (0.090)	0.159*** (0.013)	-1.247*** (0.102)		
	ln(인구 _j)	-0.488* (0.279)	-2.298 (2.715)	-0.281 (0.363)	0.604 (1.335)	-0.808 (0.532)	-8.377* (3.937)	-3.164** (1.432)	0.093 (2.535)
	ln(인구 _i)	-0.009 (0.065)	-0.542 (0.671)	0.040 (0.080)	-1.891*** (0.598)	-0.076 (0.098)	1.186 (1.242)		
	ln(1인당 GDP _j)	0.103*** (0.020)	0.512*** (0.159)	0.096*** (0.022)	0.328** (0.142)	-0.051 (0.074)	1.039 (0.948)	0.101 (0.135)	1.344*** (0.369)
	ln(1인당 GDP _i)	0.139*** (0.029)	0.076 (0.139)	0.163*** (0.047)	0.177 (0.151)	0.091*** (0.019)	-0.063 (0.190)		
내생성 통제	일반화 잔차	τ_{A1}	0.009 (0.034)	-0.172 (0.136)	0.031 (0.051)	-0.134 (0.126)	-0.014 (0.041)	0.058 (0.244)	0.049 (0.088)
		τ_{A2}	-0.060** (0.026)	0.067 (0.100)	-0.055* (0.032)	-0.228** (0.109)	-0.040 (0.030)	0.204 (0.126)	0.085 (0.077)
		...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이하 생략
	$\lambda(\text{IMR})$			0.864*** (0.183)		0.696*** (0.201)		0.524* (0.251)	3.007*** (0.440)
고정 효과 통제	수입국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수출국	Yes	Yes	Yes	Yes	Yes	Yes	No	No
	상품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연도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관측치 수		1,132,585	1,132,585	649,426	649,426	483,159	483,159	30,592	30,592

주: 괄호는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부표 4-5〉 가격 및 수입량 함수 추정 결과: 동물성 생산물

변수명		세계		한국 수출		
		가격 함수	수입량 함수	가격 함수	수입량 함수	
ln(1 + 관세율)		-0.797*	-3.211** (1.262)	0.456 (3.367)	16.921 (20.655)	
비관세 조치	SPS	A1	-0.003 (0.147)	0.244 (0.358)	-0.328 (0.704)	
		A2	-0.014 (0.096)	1.471*** (0.370)	-0.365 (0.638)	
		A3	-0.043 (0.148)	0.061 (0.320)	-0.736 (0.514)	
		A4	-0.251* (0.133)	-0.621 (0.435)	0.426 (0.518)	
		A5	0.051 (0.133)	-0.407 (0.459)	0.591 (0.604)	
		A6	-0.093 (0.183)	0.120 (0.422)	1.000 (0.640)	
		A8	-0.185 (0.225)	0.881** (0.425)	-0.021 (0.938)	
		B1	0.286* (0.149)	-1.136*** (0.379)	-1.376* (0.712)	
TBT	TBT	B2	-0.227* (0.117)	0.146 (0.422)	-0.003 (0.448)	
		B3	-0.045 (0.122)	0.928** (0.369)	0.382 (0.857)	
		B4	-0.111 (0.122)	-0.978** (0.449)	-0.141 (0.501)	
		B6	0.011 (0.139)	0.040 (0.410)	-1.064 (0.674)	
		B7	0.018 (0.080)	-0.394 (0.248)	-0.218 (0.380)	
		B8	-0.070 (0.120)	0.853** (0.379)	-0.386 (0.681)	
		C3	0.172 (0.120)	-0.617* (0.330)	0.153 (0.969)	
		C4	0.305* (0.153)	0.198 (0.493)	0.038 (0.679)	
E			-0.093 (0.123)	-0.304 (0.281)	-0.817 (0.884)	
F			0.134 (0.118)	-0.624 (0.395)	0.632 (0.515)	
					-3.435* (1.768)	

(계속)

변수명		세계		한국 수출	
		가격 함수	수입량 함수	가격 함수	수입량 함수
중력 변수	ln(거리 _{ij})	0.122*** (0.015)	-1.443*** (0.124)		
	ln(인구 _j)	-0.171 (0.514)	-1.080 (2.216)	-7.601** (3.693)	-4.075 (10.439)
	ln(인구 _i)	0.266* (0.151)	-1.538** (0.740)		
	ln(1인당 GDP_j)	0.107*** (0.036)	0.779*** (0.232)	-0.450 (0.722)	2.126 (2.457)
	ln(1인당 GDP_i)	0.172*** (0.045)	0.363* (0.199)		
내생성 통제	일반화잔차	τ_{A1}	-0.020 (0.071)	-0.115 (0.184)	0.242 (0.292)
		τ_{A2}	-0.018 (0.050)	-0.687*** (0.235)	0.260 (0.376)
		...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이하 생략
	$\lambda(\text{IMR})$			1.707*** (0.346)	7.655* (4.032)
	수입국	Yes	Yes	Yes	Yes
고정효과 통제	수출국	Yes	Yes	No	No
	상품	Yes	Yes	Yes	Yes
	연도	Yes	Yes	Yes	Yes
	관측치 수	119,419	119,419	1,703	1,703

주: 팔호는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부표 4-6〉 가격 및 수입량 함수 추정 결과: 식물성 생산물

변수명		세계		한국 수출	
		가격 함수	수입량 함수	가격 함수	수입량 함수
ln(1 + 관세율)		-0.806*** (0.301)	-4.727*** (1.632)	-0.743 (1.297)	-5.213** (2.339)
SPS	A1	-0.324*** (0.111)	1.224*** (0.392)	-0.221 (0.288)	0.838 (0.960)
	A2	0.121 (0.105)	0.147 (0.371)	-0.022 (0.228)	0.522 (0.572)
	A3	-0.064 (0.093)	-0.690* (0.370)	-0.364* (0.195)	-1.177* (0.616)
	A4	0.402*** (0.086)	-0.801*** (0.262)	0.068 (0.222)	0.542 (0.436)
	A5	-0.076 (0.059)	0.820*** (0.194)	-0.160 (0.190)	0.776* (0.422)
	A6	-0.225 (0.139)	0.468 (0.518)	0.121 (0.260)	-0.622 (0.633)
	A8	-0.116 (0.116)	0.561** (0.225)	0.279 (0.342)	-1.068 (0.843)
	B1	0.168* (0.088)	-0.935*** (0.287)	-0.176 (0.192)	-1.025 (0.641)
비관세 조치	B2	0.241** (0.114)	-0.229 (0.255)	0.229 (0.163)	0.313 (0.505)
	B3	0.137 (0.089)	0.069 (0.320)	-0.256 (0.210)	0.470 (0.520)
	B4	0.152 (0.094)	-0.334 (0.337)	0.129 (0.201)	-1.123** (0.530)
	B6	0.073 (0.079)	-0.593*** (0.160)	-0.182 (0.137)	-0.036 (0.429)
	B7	-0.150** (0.067)	-0.160 (0.277)	-0.317 (0.210)	0.405 (0.408)
	B8	-0.265*** (0.098)	0.213 (0.296)	0.038 (0.238)	-1.200** (0.578)
	C3	0.020 (0.066)	-0.454* (0.247)	-0.335 (0.204)	1.204** (0.509)
	C4	0.022 (0.072)	-0.410 (0.262)	0.125 (0.289)	-0.057 (0.773)
E		-0.008 (0.082)	0.514* (0.293)	0.292 (0.236)	1.157** (0.532)
F		0.253*** (0.084)	-1.198*** (0.307)	0.049 (0.191)	0.182 (0.435)

(계속)

변수명		세계		한국 수출	
		가격 함수	수입량 함수	가격 함수	수입량 함수
종력 변수	ln(거리) _{ij}	0.172*** (0.015)	-1.372*** (0.104)		
	ln(인구) _j	-0.045 (0.391)	-1.581 (2.795)	-3.539** (1.651)	3.039 (2.832)
	ln(인구) _i	-0.147** (0.073)	-0.339 (0.640)		
	ln(1인당 GDP) _j	0.069** (0.029)	0.621*** (0.181)	0.035 (0.213)	1.754*** (0.556)
	ln(1인당 GDP) _i	0.165*** (0.028)	0.167 (0.140)		
내생성 통제	일반화잔차	τ_{A1}	0.164*** (0.060)	-0.648*** (0.206)	0.073 (0.157)
		τ_{A2}	-0.060 (0.055)	-0.112 (0.213)	-0.005 (0.129)
		τ_{A3}	0.047 (0.051)	0.415** (0.188)	0.250** (0.112)
		...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이하 생략
	λ (IMR)			1.565*** (0.236)	4.166*** (1.011)
고정효과 통제	수입국	Yes	Yes	Yes	Yes
	수출국	Yes	Yes	No	No
	상품	Yes	Yes	Yes	Yes
	연도	Yes	Yes	Yes	Yes
관측치 수		556,424	556,424	12,754	12,754

주: 팔호는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부표 4-7〉 가격 및 수입량 함수 추정 결과: 가공식음료

변수명		세계		한국 수출		
		가격 함수	수입량 함수	가격 함수	수입량 함수	
$\ln(1 + \text{관세율})$		0.165 (0.263)	-3.748*** (1.035)	-0.860 (0.601)	-0.890 (2.028)	
비관세 조치	SPS	A1	-0.018 (0.108)	0.575 (0.448)	0.342 (0.303)	
		A2	-0.059 (0.086)	0.191 (0.317)	-0.408*** (0.146)	
		A3	0.057 (0.087)	0.163 (0.393)	-0.076 (0.134)	
		A4	-0.015 (0.085)	-0.804** (0.399)	0.069 (0.180)	
		A5	0.067 (0.074)	-0.498 (0.321)	-0.253 (0.169)	
		A6	0.087 (0.053)	-2.210*** (0.306)	0.123 (0.152)	
		A8	0.043 (0.091)	-0.496 (0.343)	0.130 (0.232)	
		B1	0.203*** (0.068)	-1.951*** (0.314)	-0.045 (0.185)	
TBT	TBT	B2	0.118 (0.088)	0.183 (0.400)	0.162 (0.243)	
		B3	0.017 (0.066)	0.493 (0.304)	0.236 (0.184)	
		B4	0.130 (0.082)	-1.325*** (0.460)	0.214 (0.182)	
		B6	-0.061 (0.042)	0.674*** (0.219)	-0.073 (0.095)	
		B7	0.002 (0.061)	-1.650*** (0.278)	-0.221* (0.126)	
		B8	-0.151** (0.060)	0.137 (0.309)	-0.282* (0.155)	
		C3	0.097 (0.071)	-0.352 (0.274)	0.186 (0.180)	
		C4	0.041 (0.077)	-0.565 (0.396)	-0.649*** (0.192)	
E			0.105 (0.082)	0.356 (0.371)	0.186 (0.179)	
F			0.041 (0.051)	0.626 (0.377)	0.223 (0.141)	
					-0.609 (0.589)	
					-0.091 (0.530)	

(계속)

변수명		세계		한국 수출	
		가격 함수	수입량 함수	가격 함수	수입량 함수
종력 변수	ln(거리 _{ij})	0.103*** (0.015)	-1.769*** (0.075)		
	ln(인구 _j)	-1.022*** (0.302)	-1.654 (2.174)	-3.089* (1.546)	0.653 (3.076)
	ln(인구 _i)	0.038 (0.100)	0.263 (0.671)		
	ln(1인당 GDP_j)	0.112*** (0.038)	1.273*** (0.191)	0.042 (0.149)	1.835*** (0.502)
	ln(1인당 GDP_i)	0.109*** (0.035)	0.429*** (0.145)		
내생성 통제	일반화잔차	τ_{A1}	0.017 (0.059)	-0.256 (0.252)	-0.166 (0.161) -0.476 (0.542)
		τ_{A2}	0.036 (0.040)	-0.131 (0.148)	0.181** (0.082) 0.415* (0.244)
		...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이하 생략
	$\lambda(\text{IMR})$			1.841*** (0.185)	3.466*** (0.601)
	관측치 수		456,742	456,742	16,128 16,128

주: 팔호는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부표 4-8〉 가격 및 수입량 함수 추정 결과: 전체 농식품, ESG

변수명		세계		한국	
		가격 함수	수입량 함수	가격 함수	수입량 함수
$\ln(1 + 관세율)$		-0.344 (0.260)	-5.534** (2.261)	-1.958* (1.163)	-5.398 (5.754)
비관세조치	환경	A86	-0.149 (0.093)	-0.356 (0.321)	-0.228 (0.277)
		B22	0.105 (0.133)	-0.213 (0.545)	0.193 (0.338)
		B31	-0.039 (0.074)	0.321 (0.224)	0.157 (0.214)
		B33	-0.043 (0.116)	0.051 (0.290)	-0.183 (0.317)
		E123	-0.617*** (0.189)	1.300 (0.920)	0.004 (0.388)
		E323	-0.593** (0.247)	1.774** (0.839)	0.022 (0.805)
		P11	-0.088 (0.063)	0.163 (0.260)	0.098 (0.184)
중력변수	사회	A21	0.178* (0.091)	-0.308 (0.338)	0.267 (0.261)
		A31	-0.039 (0.132)	0.910* (0.479)	-0.571 (0.371)
		B7	0.188 (0.116)	-0.093 (0.396)	0.561* (0.290)
		E125	-0.031 (0.041)	0.466*** (0.126)	-0.180 (0.114)
		E321	0.204 (0.124)	0.134 (0.362)	-0.245 (0.581)
		E325	-0.088 (0.053)	0.058 (0.168)	0.033 (0.423)
	지배구조	B85	-0.046 (0.093)	0.141 (0.198)	0.077 (0.273)
$\ln(\text{거리}_{ij})$		0.124*** (0.015)	-1.196*** (0.124)		
$\ln(\text{인구}_j)$		-0.428 (0.368)	0.466 (1.634)	-4.825** (2.246)	-1.549 (3.314)
$\ln(\text{인구}_i)$		-0.185** (0.083)	-0.091 (0.620)		
$\ln(1\text{인당 } GDP_j)$		0.087*** (0.032)	0.199 (0.174)	0.259 (0.248)	0.782 (0.516)
$\ln(1\text{인당 } GDP_i)$		0.158*** (0.032)	0.207 (0.139)		

(계속)

변수명			세계		한국	
			가격 함수	수입량 함수	가격 함수	수입량 함수
내생성통제	일반화잔차	tau1	0.098*	0.111 (0.056)	0.095 (0.152)	0.281 (0.513)
		tau2	-0.023 (0.064)	0.011 (0.294)	-0.017 (0.165)	-0.291 (0.485)
		.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이하 생략
	imr			1.064*** (0.321)		2.314*** (0.812)
고정효과통제	수입국	Yes	Yes	Yes	Yes	Yes
	수출국	Yes	Yes	No	No	
	상품	Yes	Yes	Yes	Yes	
	연도	Yes	Yes	Yes	Yes	
관측치수			507,067	507,067	15,067	15,067

주: 팔호는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 강민지(2023), 최근 Mega FTA SPS 규범의 국제논의 동향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강애림(2021), “EU 의회 기업실사지침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32(4): 21-3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강철구·고재경·안찬중·예민지(2023), “ESG 도입 활성화 방안: 경기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61-86, 경기연구원.
- 곽성일·신민금·김제국·장용준·최보영(2023), 아세안 경제통합의 진행상황 평가와 한국의 대응 방향: TBT와 SPS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경필·반현정·한정훈(2015), 한국 농식품 신흥시장 수출확대를 위한 비관세장벽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현정(2023), “ESG 시대 3대 녹색무역장벽과 한국무역의 대응전략”, 무역상무연구, 97: 69-90, 한국무역상무학회.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무역국(2007), 농업통상용어해설.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한국생산성본부(2024), 우리 기업을 위한 EU ESG 통상정책 대응 가이드북, KOTRA 자료, 24-093.
- 문한필·최세균·정대희(2011), 한·중 농산물 경쟁력 및 교역장벽 분석: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웅용(2006), WTO 협정: 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s, 법문사.
- 박근호(2017), “농업수출과 비관세장벽, 글로벌가치사슬 간 관계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75: 179-198, 한국무역상무학회.
- 박슬기(2023), “국제무역 관점에서의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분석”, 2023년 한국무역학회 무역학 통합 학술대회: 859-868, 한국무역학회.
- 박찬엽(2018), “비관세조치 DB를 활용한 국내 식품산업의 수출 비관세장벽에 관한 연구: 통관거부사례를 중심으로”, 무역경영연구, 0(14): 45-76, 한국무역경영학회.
- 박혜리·박지현(2021),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대석·김연중·박현태·박영구·윤승원·강성필(2016), 떨기 수출확대를 위한 대상국별 비관세장벽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주호·김미복·전상곤·정대희·임정민(2010), 농식품분야 비관세조치의 경제적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순병민·한석호(2022), “공적분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비관세조치 정량화: 한국 쇠고기 시장을 중심으로”, 무역연구, 18(3): 191-206, 한국무역연구원.

유정호(2023), 동식물 위생(SPS) 조치의 WTO 분쟁 효과와 대응 방안, GS&J 인스티튜트.

조문희·김종덕·박혜리·정민철(2017), 신보호무역주의하에서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영향에 관한 연구: UNCTAD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성주·오새라·김승애(2017), 국제통상환경변화와 농업통상 전략 - 비관세조치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원목·이지형(2019), 동식물 위생검역 규범에 관한 이해,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3), 2023 식품산업 경기동향조사 상반기 심층분석: 국내 식품제조업체의 ESG 경영 추진 실태분석.

한상범·권재훈·임상균(2021), 글로벌 ESG 동향 및 국가의 전략적 역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허선경·이슬기(2023), “환경 TBT가 국내 주요 제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 무역학회지, 48(1): 193-213, 한국무역학회.

홍지연(2025), “미국의 ESG 후퇴와 글로벌 ESG 정책 분화”, 자본시장포커스, 2025-16호, 자본시장연구원.

Arvis, J. F., Y. Duval, B. Shepherd, C. Utoktham & A. Raj(2016), “Trade costs in the developing world: 1996-2010”, World Trade Review, 15(3): 451-474, Cambridge University Press.

Asprilla, A., N. Berman, O. Cadot & M. Jaud(2019), Trade Policy And Market Power: Firm-Level Evidence, World Bank.

Bao, X. & L. D. Qiu(2012), “How do technical barriers to trade influence trade?”,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20(4): 691-706, Wiley.

Beghin, J. & J. C. Bureau(2001), “Quantitative policy analysis of sanitary, phytosanitary, and technical barriers to trade”, Economie Internationale, 87: 107-130, CEPPII research center.

- Beghin, J., A. C. Disdier, S. Marette & F. Van Tongeren(2012), “Welfare costs and benefits of non-tariff measures in trade: a conceptual framework and application”, World Trade Review, 11(3): 356-375, World Trade Organization.
- Beghin, J., A. C. Disdier & S. Marette(2015), “Trade restrictiveness indices in the presence of externalities: An application to non-tariff measures”,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Revue canadienne d'économique, 48(4): 1513-1536, Canadian Economics Association.
- Bratt, M.(2014), Estimating the bilateral impact of non-tariff measures(NTMs), Univeristy of Geneva working paper.
- Cadot, O. & J. Gourdon(2014), “Assessing the price-raising effect of non-tariff measures in Africa”, Journal of African Economies, 23(4): 425-463, Oxford University Press.
- Cadot, O. & L. Y. Ing(2015), Non-tariff Measures and Harmonisation: Issues for the RCEP, ERIA.
- Cadot, O., A. Asprilla, J. Gourdon, C. Knebel & R. Peters(2015), Deep regional integration and non-tariff measures: A methodology for data analysis,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UNCTAD).
- Cadot, O., J. Gourdon & F. Van Tongeren(2018), Estimating ad valorem equivalents of non-tariff measures: Combining price-based and quantity-based approaches, OECD Publishing.
- Crivelli, P. & J. Groeschl(2015), “The impact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on market entry and trade flows”, The World Economy, 39(3): 444-473, Wiley.
- Dean, J. D., J. E. Signoret, R. M. Feinberg, R. D. Ludema & M. J. Ferrantino(2009), “Estimating the price effects of non-tariff barriers”, B.E. Journal of Economic Analysis & Policy, 9(1): 1-41,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 ESCAP(2023), Making regional integration work: company perspectives on non-tariff measures in Asia-Pacific, International Trade Centre.
- Ferrantino, M. J.(2006), “Quantifying the trade and economic effects of non-tariff measures”, OECD Trade Policy Papers, 28, OECD Publishing.
- Fontagne, L., G. Orefice, R. Piermartini & N. Rocha(2015), “Product standards and margins of trade: Firm-level evidenc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97(1): 29-44, Elsevier.

- Ghodsi, M., J. Grübler, O. Reiter & R. Stehrer(2017), The evolution of non-tariff measures and their diverse effects on trade, The Vienn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 Grübler, J., M. Ghodsi & R. Stehrer(2016), Estimating Importer-Specific Ad-Valorem Equivalents of Non-Tariff Measures, The Vienn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 Hummels, D. & V. Lugovskyy(2009), “International pricing in a generalized model of ideal variety”,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41(s1): 3-33, Wiley.
- International Trade Centre(2014), Cambodia: Company Perspectives - An ITC Series on Non-Tariff Measures.
- _____(2016), Indonesia: Company Perspectives - An ITC Series on Non-Tariff Measures.
- Kee, H. L., A. Nicita & M. Olarreaga(2009). “Estimating Trade Restrictiveness Indices”, Economic Journal, 119(534): 172-199, Oxford University Press.
- Liu, L. & C. Yue(2009), “Non-tariff barriers to trade caused by SPS measures and customs procedures with product quality changes”, Journal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34(1): 196-212, Western Agricultural Economics Association.
- Nardella, M. & S. Boccaletti(2004), The impact of EU and US agro-food non-tariff measures on exports from developing countries, American Agricultural Economics Association Annual Meeting.
- Novy, D(2013a), “International trade without CES: Estimating translog gravit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89(2): 271-282, Elsevier.
- _____(2013b), “Gravity Redux: Measuring International Trade Costs with Panel Data”, Economic Inquiry, 51(1): 101-121, Wiley.
- Gourdon, J., S. Stone & F. Van Tongeren(2020), “Non-tariff measures in agriculture”, OECD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Paper, 147, OECD Publishing.
- Sanjuán, A. I., G. Philippidis & H. Resano(2017), “Pulling back the curtain on ‘behind the border’ trade costs: The case of EU-US agri-food trade”, Agricultural economics, 15(2), Spanish Journal of Agricultural Research.
- Santeramo, F. G. & E. Lamonaca(2019), “The effects of non-tariff measures on agri-food trade: A review and meta-analysis of empirical evidence”,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70(3): 595-617, Wiley.

- _____ (2022), “On the trade effects of bilateral SPS measures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The World Economy*, 45(10): 3109-3145, Wiley.
- UNCTAD(2004), *Marking Sense of Non-tariff Measures: A User’s Guide to Accessing and Analysing the Data*.
- _____ (2018), *Non-Tariff Measures: Economic Assessment and Policy Options for Development*.
- _____ (2019),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Non-Tariff Measures 2019 Version*.
- _____ (2022), *Non-tariff Measures from A to Z*.
- _____ (2023), *Metadata from non-tariff measures bulk download database: Variables in the Researcher file*.
- _____ (2025), *Non-tariff Measures at the Border, a GTAP Level Analysis*.
- UNCTAD & World Bank(2018), *The Unseen Impact of Non-tariff Measures: Insights from a New Database*.
- UNCTAD & WTO(2019), *A Practical Guide to the Economic Analysis of Non-Tariff Measures*.
- USTR(2025), *2025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n the Trade Agreements Program*.
- van Tongeren, F., J. Beghin & S. Marette(2009), *A cost-benefit framework for the assessment of non-tariff measures in agri-food trade*, OECD Publishing.
- Wood, J., J. Wu, Y. Li & H. Jang(2017), “The Economic Impact of SPS Measures on Agricultural Exports to China: An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PPML Method”, *Social Sciences*, 6(2): 51, MDPI.
- WTO(2012), *World Trade Report 2012: Trade and Public Policies-A Closer Look at Non-Tariff Measures in the 21st Century*.
- _____ (2024), *Overview of Developments in the International Trading Environment*. Annual Report by the Director-General. Trade Policy Review Body.
- Ing, L. Y., O. Cadot, R. Anandhika & S. Urata(2016), *Non-tariff measures in ASEAN: A simple proposal*, OECD Publishing.
- Yue, C. & J. C. Beghin(2009), “Tariff equivalent and forgone trade effects of prohibitive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91(4): 930-941, Wiley.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4. 2. 20.),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출기업 육성하고, K-Food+ 10대 수출전략 산업으로 키운다”.

산업통상부 보도참고자료(2025. 4. 1.), “미(美) 무역대표부, 2025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NTE Report) 발표”.

<온라인자료>

관세청(<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10044&mi=10044>), 알림소식-무역원활화, 검색일: 2025. 10. 10.

CEPII(Research and Expertise on the World Economy)(https://www.cepii.fr/CEPII/en/bdd_modele/bdd_modele.asp), 검색일: 2025. 6. 10.

KRX ESG 포털(<https://esg.krx.co.kr/contents/01/01010100/ESG01010100.jsp>), 검색일: 2025. 9. 30.

Law Insider(<https://www.lawinsider.com/dictionary/para-tariffs>), Para-tariff definition, 검색일: 2025. 9. 24.

TRAINS Welcome to TRAINS Portal(<https://trainsonline.unctad.org/home>), 검색일: 2025. 6. 10.

UNCTAD(<https://unctad.org/topic/trade-analysis/non-tariff-measures/NTMs-data>), Data on non-tariff measures, 검색일: 2025. 8. 26.

UNCTAD TRAINS Portal(<https://trainsonline.unctad.org/home>), 검색일: 2025. 6. 10. (<https://trainsonline.unctad.org/bulkDataDownload>), Non-Tariff Measures Data for Researchers, 검색일: 2025. 9. 17.

WITS(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https://wits.worldbank.org/WITS/WITS/Restricted/Login.aspx>), 검색일: 2025. 5. 20.

WITS Non-Tariff Measures(NTMs) Data Download(<https://wits.worldbank.org/tariff/non-tariff-measures/en/ntm-datadownload>), NTM Indicators Measure Sector, 검색일: 2025. 8. 26.

World Bank WITS Portal(<https://wits.worldbank.org/tariff/non-tariff-measures/en/ntm-datadownload>), Non-Tariff Measures Data Download, 검색일: 2025. 9. 17.

World Bank WITS Portal(<https://wits.worldbank.org/WITS/WITS/Restricted/Login.aspx>), 검색일: 2025. 5. 20.

WTO(https://www.wto.org/english/tratop_e/covid19_e/tfa_contact_points_e.htm), Contact Information of the TFA Enquiry Points, 검색일: 2025. 9. 23.

_____ (<https://i-tip.wto.org/goods/Forms/TableView.aspx>), I-TIP Glossary, 검색일: 2025. 5. 8.

_____ (<https://i-tip.wto.org/goods/Default.aspx>), I-TIP Goods, 검색일: 2025. 5. 15.

WTO Regional Trade Agreements Database(<https://rtais.wto.org/UI/PublicMaintainRTAHome.aspx>), 검색일: 2025. 1. 23.

WTO SPS&TBT Platform ePing(<https://eping.wto.org/>), 검색일: 2025. 1. 23.



www.krei.re.kr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T.1833-5500 F.061) 820-2211

